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2020 규제개혁백서

REGULATORY REFORM BOOK

국민의
생각이 **모여**

규제 개혁을
이루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발간사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반등·민생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역경을 맞았으나, 이를 잘 견디며 헤쳐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 경제를 반등시키며 우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가 미래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동력이자 코로나19로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할 열쇠입니다. 지난 한 해 정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산업 활성화, 민생경제 안정, 적극행정 등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신사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 기존규제를 면제시켜 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2019년 1월부터 시행하여 올해까지 총 404건의 과제들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스마트 전기자동차용 220V 충전콘센트, 택시 동승 중개서비스 등 창의적이지만 그간 사회적 갈등과 기존 규제의 틀에 묶여 교착 상태에 있던 신기술의 다양한 실험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시장을 창출함과 동시에, 1조 25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7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적 효과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영업과정에서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 자원의 공동 활용을 허용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부인증 취득에 드는 비용·시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연장, 인증절차 간소화, 중복인증 폐지 등 총 28건의 인증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셋째,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규제혁신을 앞당기고 현장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의료분야 전화 상담과 처방,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승인, 승차진료 도입, 공적마스크 제도 등 국민이 칭찬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많은 K-방역의 모범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신설·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처가 제안한 총 1,515건의 규제를 엄격하게 심사하였으며,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 55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직접 대면심사를 하여 총 32건을 철회 또는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등의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학계·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반산업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1~'23)」을 최초로 마련하여 선도적·체계적 규제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이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 과정에서 유발되는 갈등 요인도 줄이고 원만히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복지·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이 사업화로 진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을 위해 한 해 동안 힘써주신 공무원 및 전문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규제개혁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지형

사진으로 말하다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출범식

사진으로 말하다

❶

❶ 전남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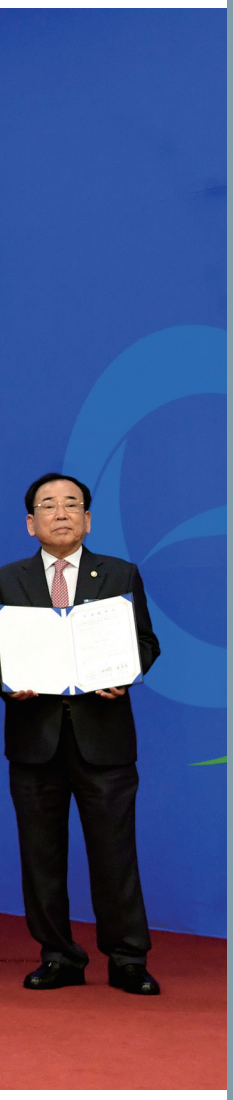

❷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

❸ 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협약식

사진으로 말하다

❹

❺

❹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❺ D.N.A.시대의 변화와 대응방안 목요대화

❻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 대화

사진으로 말하다

❼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❽ 국정현안전검조정회의

❾ 규제샌드박스 성과보고대회

사진으로 말하다

⑩ 규제개혁위원 위촉장 수여식

⑪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⑫ D.N.A.시대의 변화와 대응방안 목요대화

사진으로 말하다

⓭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⑭

⑮

⑭ 삼보 모터스 방문

⑮ 이동식 협동 로봇 특구 발대식

사진으로 말하다

⑯

⑰

⑯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⑰ 전남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2020

규제개혁백서

REGULATORY REFORM BOOK

국민의 생각이 모여
규제 개혁을 이루다

2020
규제개혁백서

CONTENTS

제 1 장 규제개혁 추진체계

1. 개요 26
2. 규제개혁위원회 27
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32
4.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40
5.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41

제 2 장 규제개혁 추진 주요 성과

제1절 2020 규제개혁 추진방향 44
1. 개요 44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 47
1. 규제샌드박스 47
2. 입법방식 유연화(포괄적 네거티브) 62
3.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66
4.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파 80

제3절 민생규제 혁신 84
1.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84
2.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 90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93
4.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 100

제4절 공직사회 혁신 104
1. 적극행정 추진 104
2. 규제입증책임 전환 108

제5절 규제혁신 소통 확대 110
1.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 110
2.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 114
3. 신산업 주요분야 쟁점규제 릴레이 토론(4차로 회의) 116
4.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119
5. 기업·지자체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121

제3장 규제개혁 법령·제도 운영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140
1. 입법 연혁 140
2. 2020년 개정사항 140

제2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혁신 141
1. 규제개혁신문고 개요 141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3단계 검토과정) 141
3.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강화 142
4. 2020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144
5. 주요 규제 개선 사례 144
6. 향후 운영 계획 160

제3절 일몰규제 정비 161
1. 규제일몰제 개요 161
2. 2020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 심사결과 162
3. 주요 정비 사례 163
4. 향후 계획 168

CONTENTS

제4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169
1. 개요 169
2. 제23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참석 169

제5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171
1. 개요 171
2.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및 주요 사례 174

제6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180
1. 개요 180
2. 등록 대상 및 단위 180

제4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184
1.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184
2. 2020년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185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87
1. 기획재정부 187
2. 금융위원회 198
3. 금융감독원 252
4. 공정거래위원회 257
5. 국세청 267
6. 관세청 268

제3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270
1. 산업통상자원부 270
2. 중소벤처기업부 301
3. 특허청 313

제4절 국토·해양 분야 315
1. 국토교통부 315
2. 해양수산부 456
3. 해양경찰청 502

제5절 농림·산림 분야 507
1. 농림축산식품부 507
2. 산림청 523
3. 농촌진흥청 534

제6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53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6
2. 방송통신위원회 551
3. 원자력안전위원회 556

제7절 노동·환경 분야 560
1. 고용노동부 560
2. 환경부 584
3. 기상청 634

제8절 교육·문화 분야 638
1. 교육부 638
2. 문화체육관광부 653
3. 문화재청 664

2020
규제개혁백서

CONTENTS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667

1. 보건복지부 667
2. 여성가족부 689
3. 식품의약품안전처 695
4. 질병관리청 724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725

1. 외교부 725
2. 통일부 727
3. 국방부 730
4. 국가보훈처 732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741

1. 행정안전부 741
2. 법무부 765
3. 국무조정실 770
4. 인사혁신처 771
5. 경찰청 774
6. 소방청 777
7. 국민권익위원회 785

제12절 규제영향분석 789

1. 제도 개요 789
2. 작성항목 및 요소 790
3. 작성대상 및 절차 791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793
5.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도입 800

제5장 규제개혁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20년 규제개혁 평가 806
1. 규제혁신 평가 개요 806
2. 2020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807
3. 부처별 평가결과 808
4. 분야별 평가 결과 809

제2절 2021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811
1. 기본방향 811
2. 세부 추진방향 812

부록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816
2. 규제개혁 관련 법령 820

01

규제개혁 추진체계

국민의 생각이 모여

규제 개혁을 이루다

1. 개요 26
2. 규제개혁위원회 27
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32
4.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40
5.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41

01

규제개혁 추진체계

1 개요

집필자 박유리 사무관
Tel. 044-200-2416, parkyuri@korea.kr

문재인 정부는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비용분석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두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국가 중요 정책의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설치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활용하여 규제혁신 주요 안건을 논의·발표하고 있으며,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 '목요대화'를 활용하여 기업과 학계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 비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자문기구 구성·운영 (신산업규제혁신위, 기술규제위, 비용분석위원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 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덩어리 규제 개혁 및 규제정책 관련 대통령 보좌	•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 규제개혁기획단 - 덩어리규제 개혁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 기업 현장 규제애로 개선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 손톱 밑 가시 등 기업 규제애로 해소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현장 규제애로 해소
• 규제신고센터 - 규제민원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민원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민원 처리

2 규제개혁위원회

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집필자 박유리 사무관
Tel. 044-200-2416, parkyuri@korea.kr

집필자 이정호 사무관
Tel. 044-200-2414, turtleb@korea.kr

(1) 구성 및 기능

(가)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다) 구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당연직) 및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되며, 2020년 12월 현재 위원장 2인, 민간위원 16인, 정부위원 7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명단(2020년 12월 기준)

구분	성명	현직
위 원 장 (2)	정 세 균	국무총리
	김 지 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정부위원 (7)	홍 남 기	기획재정부 장관
	전 해 철	행정안전부 장관
	성 윤 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 영 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 윤 철	국무조정실장
	조 성 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 강 섭	법제처장
민간위원 (16)	김 윤 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준 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문 소 영	서울신문 논설실장
	박 소 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 순 애	서울대학교 행정때학원 교수
	안 소 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 여 송	한국기술교육대 안전환경공학과 교수
	이 세 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이 원 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정 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 지 혜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철 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현 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은 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정 지 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 병 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문위원

(2) 회의 운영

(가)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중앙행정기관 입법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월 2회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회의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조정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20년 본회의 운영실적

2020년에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는 총 24회(426회~443회) 개최되었으며, 18개 부처의 총 51개 안건을 논의(의결 36건, 보고 15건)하였다. 36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총 45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20건, 부대권고 7건, 개선권고 16건, 철회권고 2건이었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부록) 참조

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집필자 장이나 사무관
Tel. 044-200-2398, dlskjulia@opm.go.kr

집필자 신용현 사무관
Tel. 044-200-2443, trustyonghyun@opm.go.kr

(1)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2월 현재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7~8인, 정부위원 4~5인 등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2020년 12월 기준)

구분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	민간위원	이 정 희(위원장) 김 윤 정 김 준 기 문 소 영 이 원 우 이 지 혜 정 은 미 최 병 환	•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위원회 • 국세청 • 통계청 • 특허청 • 행복도시건설청 • 산림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공정거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관세청 • 조달청 • 농촌진흥청 • 새만금개발청 • 해양경찰청

구분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행정사회	민간위원	박 소 라(위원장) 박 순 애 안 소 은 이 현 주 윤 여 송 이 세 영 이 철 수 정 지 연	• 교육부 • 통일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여성가족부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국가보훈처 • 검찰청 • 방위사업청 • 문화재청 • 소방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외교부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무조정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권익위원회 • 병무청 • 경찰청 • 기상청 • 질병관리청
	정부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4) 회의 소집

분과위원회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5)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회의 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8)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9) '20년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실적

경제분과위는 총 3회(526회, 527회, 528회) 개최되었으며, 2개 부처의 총 7개 안건을 처리(의결 7건)하였다. 7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7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1건, 개선권고 1건, 부대권고 5건이었다. 한편, 행정사회분과위의 경우 총 2회(555회, 556회) 개최되었으며, 2개 부처의 총 3개 안건을 처리(의결 3건)하였다.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2건, 철회권고 1건이었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지 참조

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집필자 / 박유리 사무관
Tel. 044-200-2416, parkyuri@korea.kr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담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 주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조율 및 각 부처의 규제개혁정책 추진 지원 등을 총괄한다. 규제조정실은 2020년 12월말 현재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의 3국 15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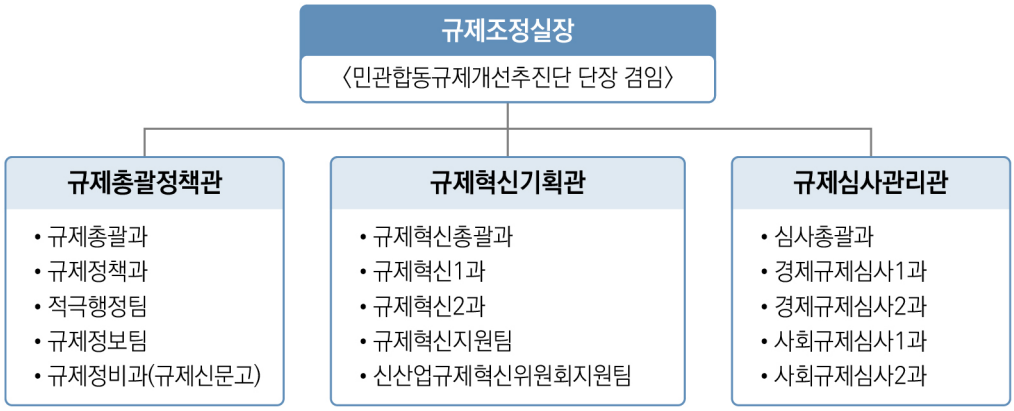

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집필자 장정인 사무관
Tel. 044-200-2665, jeongin@korea.kr

(1) 설치배경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혁파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에서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규제 검토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운영되었고, 국무조정실로 위원회를 이관('16년 3월)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규제 심사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후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체계화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로 확대·재편('17년 6월)하였다.

(2) 구성 및 운영

(가)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

신산업 규제는 기존 규제개혁 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 '官'이 아닌 '民' 주도 규제 시스템 확립 △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규제 심사 방식 도입 △ 국제수준에서 규제 최소성 달성이라는

1) 2016년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민간 주도, 원칙 개선·예외 소명 검토방식 처음 도입

「규제개혁 패러다임 3대 원칙」하에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

첫 번째, 민간주도의 규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 관료의 관점이 아닌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120명 전원 민간전문가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2]를 구성하였다. 특히 신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기술과 업종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파생되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원칙 개선·예외 소명의 규제 심사 방식을 도입하였다. 원칙 개선·예외 소명 심사 방식은 생명·안전·환경 분야를 제외한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한다는 규제 심사 원칙으로, 이러한 심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산업 관련 규제를 적시에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선진국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국내 규제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규제는 국제수준의 규제 최소성 원칙하에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신산업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무인이동체,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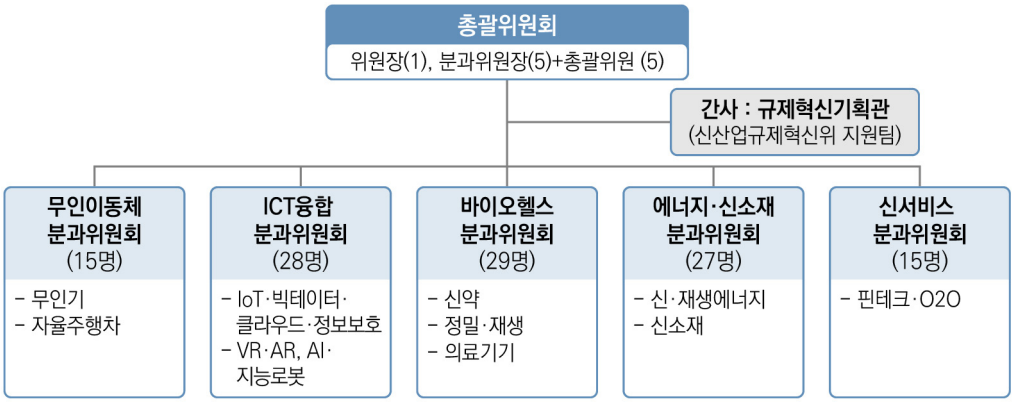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설치

신산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5개 분과위원회 내에 세부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었으며, △무인이동체 분과위원회는 무인기, 자율주행차, △ICT 융합 분과위원회는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호,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지능로봇, △바이오헬스 분과위원회는 신약개발, 정밀·재생의료, 첨단의료기기,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서비스 분과위원회는 O2O(Online to Offline), 핀테크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혁파 과제에 대한 검토방식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분과위원회의 검토로 이루어진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민간 주도의 원칙 하에 민간전문가, 업계,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규제혁파 건의과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위원회가 개선방안을 권고하게 된다. 2단계는 총괄위원회의 검토 단계이다. 총괄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규제혁파 검토의견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조정한다.

신산업 규제혁파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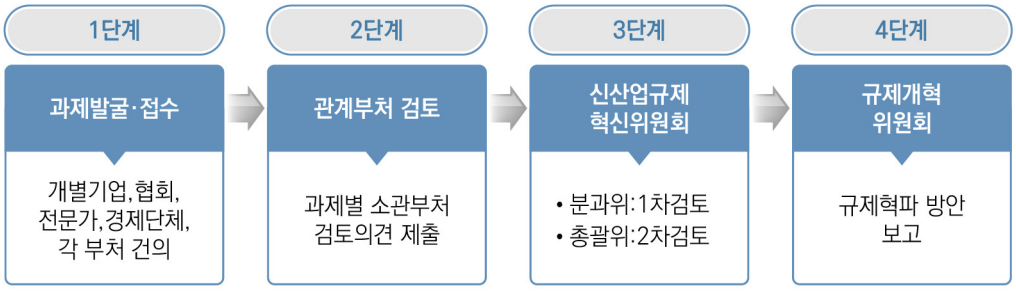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혁파 처리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되며,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을 통해 공개된다.

(다) 2020년 위원회 개최실적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드론, ICT 융합, 바이오헬스 등 핵심 분야별로 총 24회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신산업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애로 과제를 발굴한 후, 총 30회[3]의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 및 다수의 실무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66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과제 발굴은 현장성과 시의적절성을 특징으로 한다. 신산업 관련

3) 2020년 분과위(28회) : '19.11.27~'20.11.9, 총괄위(2회) : '20.5.18 / 11.20.

업계·협회 등과의 현장방문,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지자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과 협업을 통해 각 산업별 현장 규제애로 건의도 수집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6월부터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을 확대하여 경제단체, 업종단체와 소통하였다. 특히 신산업 현장의 개선 목소리가 높은 수소경제 분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안건 토론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권고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신산업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합리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풀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발굴된 건의과제에 대하여 관계 부처, 업계 건의자, 민간위원이 함께 안건의 심층 토론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해결의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당초 소관부처가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도 수용 또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충전인프라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소재 분과(20건),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 ICT 융합(16건), 의료기기,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과(26건), 자율주행차, 드론 등 무인이동체 분과(4건)에서 총 66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이 중 38건은 건의내용을 수용하여 소관부처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8건은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①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내 간이정비시설 설치 허용, ②해외의약품 온라인 구매대행 금지 개선 등 5건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국민 생명, 환경, 안전을 고려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규제를 존치였다.

2020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검토 결과

분과(횟수)	합계	규제애로 해소			규제 존치*
		수용	대안마련	신속확인	
무인이동체(4회)	5건	1건	3건	-	1건
ICT 융합(7회)	16건	9건	7건	-	-
바이오헬스(8회)	28건	12건	11건	3건	2건
에너지/신서비스(9회)	22건	12건	7건	1건	2건
합 계(28회)	71건	34건	28건	4건	5건

* 국민의 생명·안전 위해 우려 등으로 규제존치 인정(해외의약품 온라인 구매대행 금지 개선 등)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20.6월과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를 통해 발표하였다.

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집필자 박도연 사무관
Tel. 02-6050-3293, doyeonpark@korea.kr

(1) 추진단 설치배경

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민(民)과 관(官)이 합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애로사항 발굴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귀를 더 크게 열고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가 필요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개선이 아니라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3년 9월 12일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단을 설립하였다. 추진단은 이전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2013년 2월 새 정부 출범으로 폐지되었으나 업계의 여망에 따라 기능과 조직을 더욱 보강하여 출범하였다.

■ **추진단 설치 근거**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15호, 2013.8.16. 제정)

(2) 추진단 운영

추진단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급),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3인의 공동단장체제로 운영된다. 추진단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맡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팀 조직은 총괄기획팀, 규제개선전략팀, 투자환경개선팀 및 중기·소상공인지원팀의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민간단체에서 파견되어 온 직원 23명(정부 12명, 민간 11명, 단장·부단장 제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은 정부나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민관합동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추진단 사무실은 기업들이 찾아오기 편하도록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자리 잡았다.

추진단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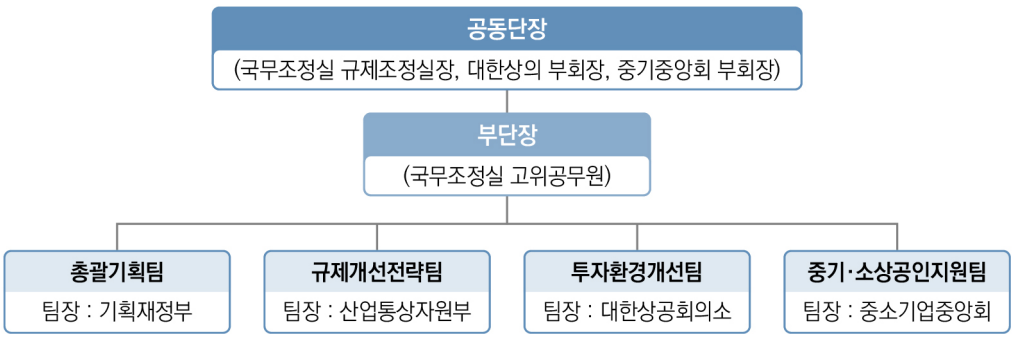

(3) 추진단 역할

추진단은 기업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방문, 찾아가는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 수요자인 기업·국민과 정책 공급자인 정부 상호간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효과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부처의 규제개혁 담당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

(4) 주요 업무처리 절차

추진단 업무는 크게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관계부처 협의·조정 → 규제개선 및 보고·발표 → 이행점검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제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함으로써 건의자에게 과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여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규제개선 추진 중인 과제는 이행계획에 따라 과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규제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규제개선 과제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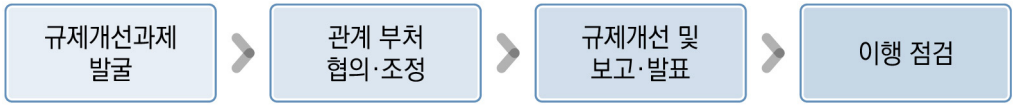

(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단은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사무실을 상시 개방하여 소통의 장소로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건의 규제혁신 신고전화(02-6050-3366)를 통해서도 규제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나) 관계 부처 협의·조정

건의된 과제는 추진단의 자체 검토를 거쳐 소관부처에 전달되며, 소관부처는 건의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추진단은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조정을 진행하며, 이때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선을 추진한다.

(다) 규제 개선 및 보고·발표

개선된 과제는 그 결과를 건의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주요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보고하며, 언론사를 통해서도 발표한다.

(라) 이행 점검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사후관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는 물론 정부의 신뢰 제고도 도모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집필자 / 손민정 사무관
Tel. 044-200-2428, minjeong@opm.go.kr

집필자 / 윤나라 주무관
Tel. 044-200-2452, nemo1934@korea.kr

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각 중앙행정기관은 규제개혁 기본 방향 및 정책 수립,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부처는 부처별 자율규정에 따라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규제개선위원회 등 자유롭게 위원회의 명칭을 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명칭을 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처별 자율규정에 따라 7~4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기관의 소관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과장급이며, 주요 업무는 주요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기획, 과제 이행 및 점검, 규제심사 업무,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등으로 규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행정법무감사담당광실 등 일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이처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소관 규제의 규모에 따라 다른 업무와 함께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집필자 / 김무연 사무관
Tel. 044-200-2633, wiebitte84@mail.go.kr

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업무 지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규제혁신과를 두었다.

* 지방규제혁신과 주요 업무 : △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정비 및 소극행태 개선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시·도별, 시·군·구별로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규제개혁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심사,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혁신추진단 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총괄부서에서는 지자체내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지원, 규제애로사항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02

규제개혁 추진 주요 성과

국민의 생각이 모여

규제 개혁을 이루다

제1절 2020 규제개혁 추진방향 44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 47
제3절 민생규제 혁신 84
제4절 공직사회 혁신 104
제5절 규제혁신 소통 확대 110

02

규제개혁 추진 주요 성과

제 1 절 2020 규제개혁 추진방향

1 개요

집필자 석선영 서기관
Tel. 044-200-2397, ssy1214@korea.go.kr

2020년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새롭게 구축한 규제혁신 제도(선허용-후규제 체계, 정부 입증책임제,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를 바탕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①경제, ②민생, ③공직 분야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하였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혁신을 추진하였다.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유예·면제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여 ('19.1~) 총 404건을 승인하였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지원할 뿐 아니라 갈등 과제의 해결 돌파구 역할도 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주요 사례로는 공유주방·숙박,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안면인식 비대면계좌 개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이 있다. ICT융합·산업융합·지역혁신·금융혁신·스마트도시 5대 분야에서 총 1조 4,344억원 투자유치, 518억원 매출증대, 2,865명 고용증가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법령 등의 개정 없이도 신제품·신기술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18.1, '18.10, '19.4, 총 235건)·자치법규('19.9, 142건)에 이어 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안을 마련하였다.('20.5, 206건). 신산업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규제이슈를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자율자동차 분야를 대상으로 처음

수립한 이후('18.11), '19년에는 드론 분야, '20년에는 친환경차, 로봇,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4대 주요 신산업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산업 현장의 규제 어려움도 해결하였다. '20년에는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드론,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총 66건의 현장애로를 해소하였다.('20.6, '20.12)

아울러,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국무총리가 직접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쟁점규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규제혁신 현장대화, 목요대화 등). 또한, 국무조정실장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4차로 회의)을 신설하여 규제 쟁점에 대해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업계 등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둘째, 공정·포용사회의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민생혁신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였으며('20.5, 46건),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정부인증 제도 관련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건의를 수용하여 중소기업연합회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인증제도를 개선하였다('20.9, 28건). 이 외에도 중소기업 현장애로 개선('20.4, 65건), 건축분야 규제개선('20.10, 20건) 등도 추진하였다.

또한, 지자체 건의규제 개선, 자치법규 정비 등 지자체 규제혁신도 추진하였다. 지자체를 통해 건의된 지역개발·생활불편·영업부담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20.2)을 마련하였다.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 전반을 조사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20.8, 약 2만건)을 마련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사항, 법령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여 국민에게 불편이 되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였다. '20년 ▲민생현장 ▲경제현장 ▲코로나19 대응 및 행정불합리 등 분야에서 약 300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특성화고 학생의 호텔 현장실습 허용, 산업단지 내 공용 구내식당 허용, 학교 신·증축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의 중복절차 개선 등이 있다.

셋째,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공직자가 진정한 규제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직혁신을 추진하였다. '19년에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된 적극행정 제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적용하여 K-방역 성과와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지원하였다. 규정상의 제약을 적극행정 제도로 극복하여 적기에 대응하고(예: 전화상담·처방 등), 방역대응이 속도전임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고(예: 진단키트 긴승승인 등), 전례가 없는 창의적 발상, 혁신적 시도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였다(예: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등).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인 정부 입증책임제 적용대상을 기존의 행정규칙에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을 적용한 사례를 검토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입증책임 전환 방식을 적용하여 개선하였다. 코로나19 대응 법령 정비, 건의과제 재검토 등을 통해 총 1,500건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305개 업종별 협단체 비대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기업의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개선하였다.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

1 규제샌드박스

가. 규제샌드박스 개요

집필자 김동빈 사무관
Tel. 044-200-2449, dongbinkim@opm.go.kr

(1) 개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16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영국 등 먼저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신산업 전분야로 확대하여 도입하는 한편,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규제 유무를 확인해주는 '신속확인' 제도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시장 출시를 허용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임시허가'까지 연계하여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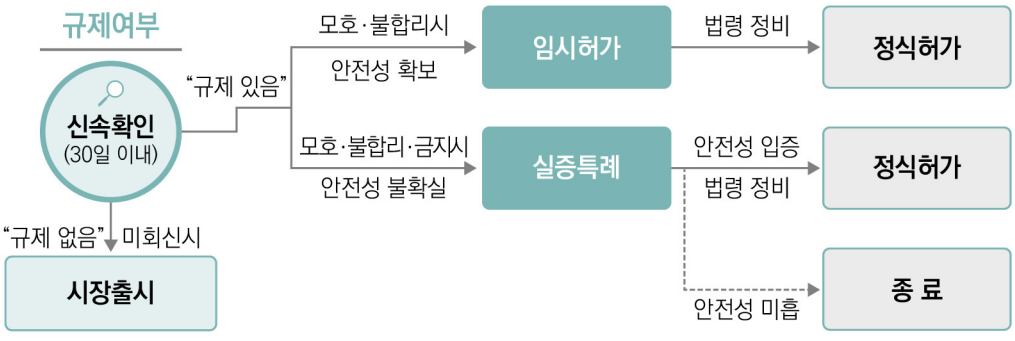

아울러,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의 생명·안전 우려,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고,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다.

(2) 법적근거 및 운영체계

2019년 7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되었고, 2019년 1월 ICT융합·산업융합 분야, 2019년 4월 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까지 총 4개 신산업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20년에는 스마트도시('20.2월)와 연구개발특구('20.12월) 분야로 확대하였다.

* 행정규제기본법 ('19.7.17 개정 시행)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9.1.17 시행)
* 산업융합 촉진법('19.1.17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 시행)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1 시행)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0.2.27 시행)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2.10 시행)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주관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조정하고 있다.

각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특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상위 위원회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추가로 두고 있다. 또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부처는 사전컨설팅 및 접수 등의 업무를 지원할 전담기관들을 두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추진 체계

나. 규제샌드박스 발전을 위한 노력

제도 운영 중 기업들의 추가적인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네 차례('19.4월, '19.7월, '20.1월, '21.2월)에 걸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제도 1주년과 2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제도 발전방안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는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되었다.

(1) 제도 1주년 계기 발전방안('20.1.23) 주요 내용

●● (가) 접수 단계: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운영('20.5월)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했고, 이후 2020년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설치·운영을 전격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2020년 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고, 2020년 5월12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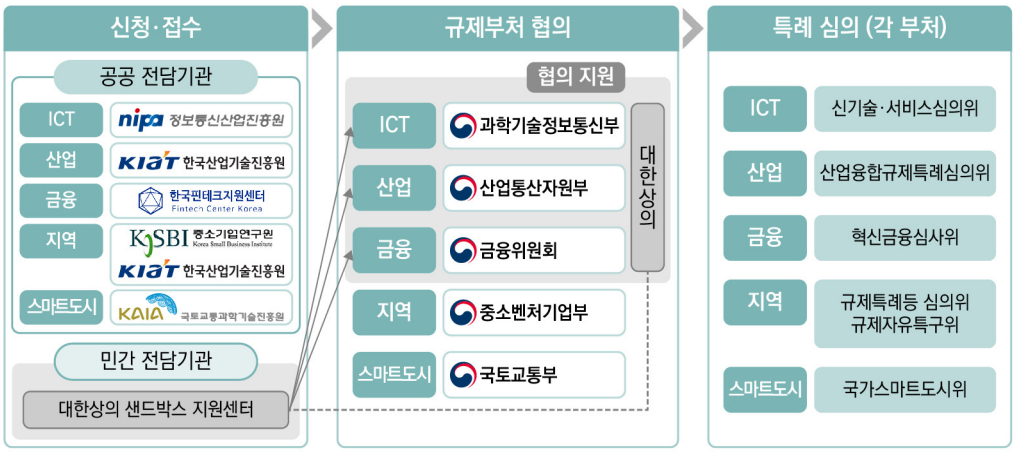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총 223건의 과제를 접수하여 그 중 53건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승인으로 이어졌으며, 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역할을 하며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 (나) 심사 단계: 신속처리(fast-track) 보강 및 부가조건 완화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승인 절차		자료보완 법률자문	사업내용 검토·정리	관계부처 협의·조정	심의·의결 [분과위/특례위]
일반	(3개월)	15일	30일	20~30일	15일/7일
신속처리	유사(2개월)	8일	15일	15일 이내	7일/7일
	동일(1개월)	8일	15일	7일 이내	생략/서면(즉시)

또한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 (다) 시장진출 단계 : 공공조달 및 자금·세제·사업재편 지원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특례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전용펀드·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

(2) 제도 2주년 계기 발전방안('21.2.2) 주요 내용

●● (가) 제도 내실화

① 사업중단 불안 해소: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②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③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하여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나) 제도 운용 효율성 강화

① 신속확인 강화: 신속확인은 "규제 없음" 확인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매우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담당 규제공무원이 “규제 없음” 확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담당 공무원 면책 등 부여)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도 공개하여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② 기업 행정부담 완화: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한다.

③ 실증특례 기간 탄력적 운영: 실증특례 기간이 통상적으로 최대기간인 2년으로 지정(2년 연장 가능)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고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 단축(예 : 6개월) 등을 통해 규제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을 유도한다.

④ 조직 강화: 다양한 신청과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컨설팅 강화 및 심사일정 단축을 위해 각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증원(34명 → 59명)을 추진한다.

●● (다) 기업 지원 강화

① 보증대상 확대: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② 투자확대 유도: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연 8백억 규모, 총 4천억 원 조성 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다. 규제샌드박스 시행성과

✎ 집필자 / 김나래 사무관
Tel. 044-200-2503, knr619@opm.go.kr

(1) 규제샌드박스 승인성과

●● (가) 총괄

’20년 209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여, 총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는 404건이 되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현황

구 분	승인 합계	'19	'20	임시 허가	'19	'20	실증 특례	'19	'20	적극 행정	'19	'20
계	404	195	209	46	21	25	329	158	166	29	16	13
ICT융합 (과기부)	86	40	46	33	16	17	43	20	23	10	4	6
산업융합 (산업부)	102	39	63	13	5	8	75	22	53	14	12	2
혁신금융 (금융위)	135	77	58	-	-	-	135	77	58	-	-	-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65	39	26	-	-	-	65	39	26	-	-	-
스마트도시 (국토부)	16	-	16	-	-	-	11	-	11	5	-	5

'20년 주관부처별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부, 금융위, 과기부, 중기부, 국토부 순으로 많은 과제를 승인하였다. 특히, '20년부터 스마트도시 분야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어 국토부가 주관부처로 추가되었다.

(나) 규제부처별 승인현황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산업부, 식약처, 복지부 순으로 관련 과제가 많았으며, 이 부처들이 전체 승인과제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부처별 승인현황

금융위	국토부	산업부	식약처	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과기부	기타
118(26%)	56(13%)	42(9%)	41(9%)	32(7%)	18(4%)	16(4%)	16(4%)	108(24%)

(다)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승인기업의 67%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규제샌드박스는 매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270건 (67%)	114건 (28%)	20건 (5%)

(2) 규제샌드박스 주요성과

전체 404개 과제 중 185개(46%)가 시장출시(27건) 되었거나 실증테스트(158건)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가) 투자유치

①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누계)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구분	투자유치 금액
ICT융합	468억 원
산업융합	642억 원
혁신금융	5,887억 원
규제자유특구	7,309억 원
스마트도시	38억 원
합계	**1조 4,344억 원**

② 시점별 투자유치 현황

(단위: 억 원,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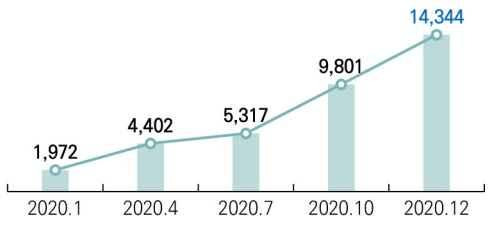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분야	대표사례 및 투자유치 실적
ICT융합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333억 원)**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병원 서버에 저장후 내원시 활용하는 서비스
산업융합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67억 원)**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여 소분·판매하는 서비스
혁신금융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160억 원)** 정보보관앱(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특구, 5,552억 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스마트도시	• **(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30억 원)**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나) 매출증가

① 분야별 매출증가 현황(누계)

구분	매출증가 금액
ICT융합	257억 원
산업융합	261억 원
합계	**518억 원**

② 시점별 매출증가 현황 (단위: 억 원,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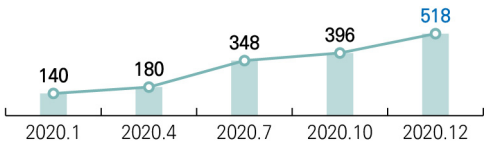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하여 규제샌드박스가 중소기업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야	대표사례 및 매출증가 실적
ICT융합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 '19.12월 대비 **매출액 250% 증가**
산업융합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장애인의 이동성 증진에 기여하는 제품. **약 600대를 판매하여 약 20억 원의 누적 매출** 달성

(다) 고용증가

①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누계)

구분	증가 인원
ICT융합	714명
산업융합	96명
혁신금융	743명
규제자유특구	1,255명
스마트시티	57명
합계	2,865명

② 시점별 고용증가 현황 (단위: 명,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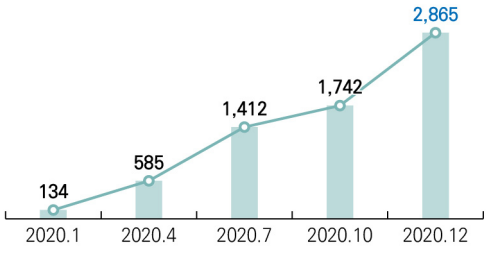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혁신금융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규제샌드박스가 핀테크 발전 및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분야	대표사례 및 고용증가 실적
ICT융합	•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플랫폼)**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위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가사 매니저 72명 채용
산업융합	•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공유주방 방식으로 운영. 총 **20명***의 창업자 사업중 * 청년창업자 10명, 경력단절여성 4명, 중장년창업자 2명, 일반창업자 4명
혁신금융	• **(고객 자산·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관리 제공. 프로그래머 등 **107명** 채용
규제자유특구	•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LNG 등 친환경 차량 관련 실증. **148명** 고용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
스마트시티	• **(인천 혁신지구)**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실증 **9명**, 수요응답형버스 실증 사업관리 및 운영 **25명** 채용

●● (라) 기업 인지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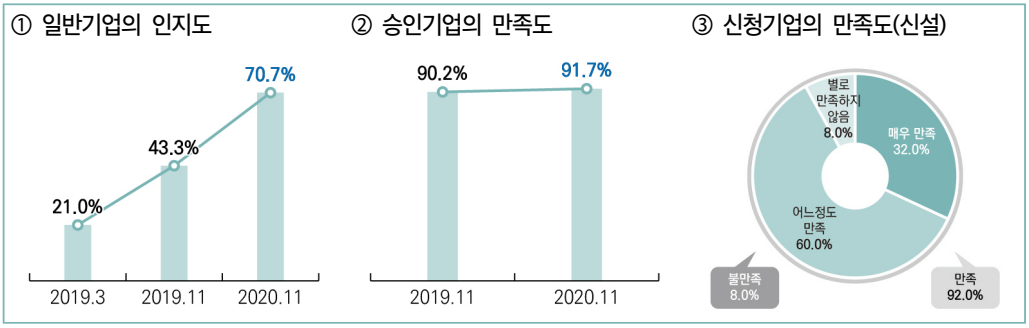

'20년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19년 3월 대비 50%p 가까이 상승하였고, 승인기업의 만족도는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신청기업의 만족도도 92%로 조사되는 등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3) 법령개정 현황

총 31개의 규제가 개선되어 총 60건의 과제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20년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식품위생법 개정('20.12월)을 통한 공유주방(총 7건의 과제) 허용, 복지부 유권해석 변경('20.2월)을 통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서비스 관련 규제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과 제 명	유형	과제수
1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	3건
2	공유주방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	7건
3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1건
4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행정	1건
5	비대면 신탁기반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실증특례	1건
6	모바일 환전(송금) 서비스	실증특례	2건
7	은행 지점 방문 없는 환전, 현금인출	실증특례	2건
8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	실증특례	2건
9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적극행정	1건
10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행정	1건
11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4건
12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적극행정	1건
13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적극행정	1건
14	라떼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1건
15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	적극행정	1건
16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적극행정	1건
17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1건
18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실증특례	1건
19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임시허가	1건
20	통신·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실증특례	8건
21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실증특례	2건
22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실증특례	3건
23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1건
24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1건
25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2건
26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	1건
27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1건
28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행정	1건
29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행정	1건
30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행정	1건
31	On-Off 해외여행자보험	실증특례	5건

(4) 주요 승인사례

(가) 신산업의 다양한 실험 허용

규제로 막혀있었던 다양한 신산업의 실험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해 볼 수 있게 되었다.

-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 부여**('20.5) → 보도·공원의 통행·출입 허용을 통해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술 실증 추진
- **220V 콘센트 활용 전기차 충전서비스 허용**('20.7) → 새로운 방식의 전기차 충전기술 확보 및 소유주 편의성 증대
-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허용**('20.6) → 무선충전 실증을 위한 주파수 부재 문제 해소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허용**('20.6) → 정비사업장 외에서 점검·업데이트 가능
-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허용**('20.12) →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시 필요한 선박·장비 등 없이 로봇을 통해 소규모 유출기름 제거 가능

(나) 갈등과제의 돌파구 마련

규제샌드박스는 사회적 합의 부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였다.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19.2) → 지역주민 반발로 부지확보가 어려웠던 충전소 설치
- **재외국민에 대해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부여**('20.6) →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관리가 어려운 재외 국민의 건강권 보호
- **도시내 공유숙박을 내국인 관광객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19.11) → 숙박공유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다) 국민 생활편의 증진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 시장을 신규 창출하였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허용**('20.6) → 운전면허증 소지 불편 및 분실우려 해소
- **택시 동승 중개서비스('반반택시') 실증특례**('19.7) →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를 통해 소비자, 택시업계 win-win 모델 창출
- **모바일 대출조건 비교 플랫폼 허용**('19.4) → 더 저렴한 대출상품 선택 기회 부여
-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허용**('19.2) → 전자고지를 통한 국민 편의 증대

(5) 신속확인

규제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규제를 확인해 규제가 없을 시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신속확인을 통해 총 57건의 "규제 없음"이 확인되었다.

분야	신속확인 중 "규제 없음" 회신 주요사례
ICT융합	• **(직장인대상 커뮤니티 정기 카풀 서비스)**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카풀의 허용 시간(출근 7~9시, 퇴근 18~20시) 기준(탑승vs하차) 및 별도의 허가 필요여부 질의 → 카풀허용시간은 탑승시 기준이며, 별도의 허가는 불필요하다고 회신
산업융합	• **(아동·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아동·여성의 가방에 영상기기를 부착, 주변 상황을 app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시 불특정 개인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호신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촬영가능하다고 회신
혁신금융	• **(카드번호 없는 실물카드)** 고객이 카드발급시 카드정보 인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카드번호 등 없이 발급 가능한지 질의 → 카드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 가능하다고 회신

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운영

집필자 / 김나래 사무관
Tel. 044-200-2503, knr619@opm.go.kr

(1)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20년에는 총 2차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7월, 11월)하였다. '19년 규제자유특구가 시작된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지정된 3,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가지 핵심축인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4차 지정부터 지자체가 신청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보완하여, 중앙정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안하면 지자체가 이를 구체화하여 신청하는 하향식(Top-down) 특구 지정을 병행하였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① 1~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구분	현황
1차 ('19.7.23)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2차 ('19.11.12)	△광주(무인 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친환경 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제주(전기차 충전)
3차 ('20.7.6)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 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 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4차 ('20.11.13)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활용 스마트공장)

②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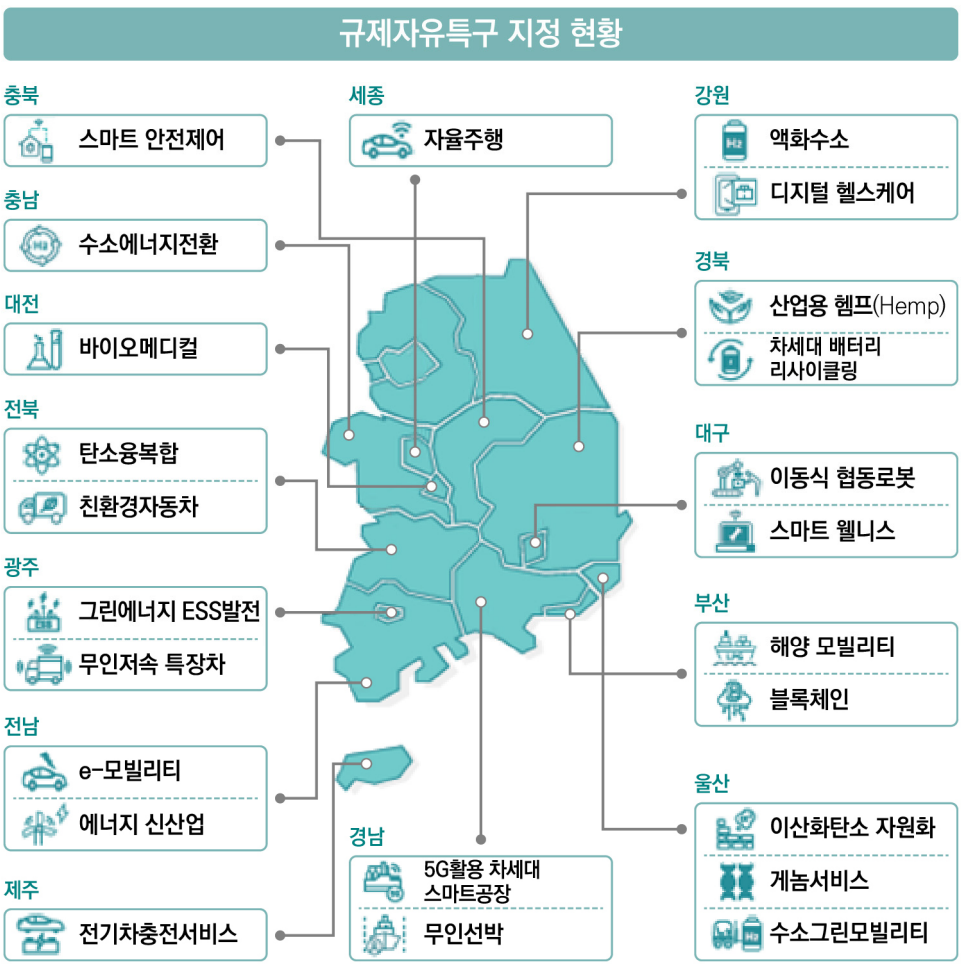

(2)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규제자유특구 시행 2년차인 올해부터 1, 2차 지정 특구를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7,309억 원의 투자(공장설립 등 투자 6,757억 원, 벤처캐피털 투자 552억 원)를 유치하고, 1,255개 신규 일자리 창출, 149개 기업 이전, 13개 공장 신설하는 등 지역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도 올해에만 3차례*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하여 대규모 투자협약을 축하하고 특구 진행상황도 직접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전남 e-모빌리티 특구('20.6),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20.10),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특구('20.11)

규제자유특구 주요 추진성과('20.12월 기준)

분야	시·도	주요 성과
투자유치 (6,757억 원)	경북(1차) (5,552억 원)	•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1,000억 원 투자MOU 체결('20.1월) • ㈜에코프로지이엠(실증Pilot 공장, 전구체 생산라인) 860억 원, 투자('20.2월)
	전남(1차) (1,183억 원)	• ㈜캠시스 433억 원('19.9월), ㈜대풍EV자동차 107억 원 투자('20.6월) • ㈜코리아하이테크 등 5개사 643억 원 투자MOU체결('20.6월)
	충북(1차) (22억 원)	• 인투카오스㈜ 22억 원(스마트차단제어 장치 개발) 투자MOU 체결('20.5월)
VC투자 (552억 원)	부산(1차) (125억 원)	• ㈜코인플러그 75억 원('19.10월) 투자 유치 • ㈜현대페이 45억 원('19.12월), 5억 원('20.8월)투자 유치
	강원(1차) (205억 원)	• ㈜메쥬 10억 원 투자 유치('19.11월) 및 북미시장 진출 예정('21.상) • ㈜휴레이포지티브 45억 원('19.10월), 150억 원('20.10월) 투자 유치
	대구(1차) (50억 원)	• ㈜엔도비전 27억 원 투자 유치('20.2월) • ㈜제나 12억 원 투자 유치('20.6월)
	대전(2차) (140억 원)	• ㈜딥바이오 120억 원('20.3월), 20억 원('20.6월) 투자 유치
	울산(2차) (32억 원)	• ㈜빈센 32억 원 투자 유치('20.8월)
기업유치 (149개)	1차 특구	• 7개 특구 총 66개 기업 이전 완료 * 부산(3), 대구(16), 세종(7), 강원(4), 충북(9), 전남(17), 경북(10)
	2차 특구	• 7개 특구 총 43개 기업 이전 완료 * 광주(6), 대전(2), 울산(12), 전남(9), 전북(2), 경남(2), 제주(10)
	3차 특구	• 7개 특구 36개(총 66개) 기업 이전 완료(추가지정 부산, 대전 포함) * 부산(1), 대구(2), 울산(4), 강원(4), 충남(3), 전북(2), 경북(15), 부산(추가)(4), 대전(추가)(1)
	4차 특구	• 3개 특구 4개(총 12개) 기업 이전 완료(추가지정 세종 포함) * 광주(2), 울산(2)
기반조성 (13개 공장)	전남(1차)	• ㈜대풍EV자동차 공장 준공('20.6월) • ㈜코리아하이테크 등 5개사 공장 착공('20.3월~'21.8월)
	경북(1차)	• ㈜에코프로GEM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20.2월) • GS건설, ㈜피엠그로우 등 4개사 착공 준비 중('20.1월~)
	울산(2차)	• ㈜RTX(수소연료전지 촉매 개발업체) 생산 공장 준공('19.11월)

2 입법방식 유연화(포괄적 네거티브)

집필자 김동빈 사무관
Tel. 044-200-2449, dongbinkim@opm.go.kr

가. 추진개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그 핵심은 신산업 분야의 '선허용-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이다. 국무조정실은 2017년 9월 7일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앞서 서술된 규제샌드박스 외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국무조정실은 2018년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2019년에는 4월 18일 3차로 132건의 과제를 발표하였고, 9월 19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4차로 142건의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어 2020년 5월 7일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206건의 규정까지 '유연한 입법 방식'을 적용하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공고히 하였다. 각각의 과제의 의의 및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나. 제5차 포괄적 네거티브(입법방식 유연화) 규제전환('20.5.7)

공공기관 규정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 조달 및 계약, 시설·정보 등 공공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 등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기업 경제활동,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혁신이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중심으로 추진되어 공공기관 규정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취급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법령, 자치법규 전환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 규정까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최초로 시도하여 공공부문 전반에 지속 확산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와 연계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5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총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공기업 36개 + 준정부기관

95개)으로 「기획 - 사례 발굴 - 개선안 마련」순으로 단계별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신산업, 기존산업, 주민생활, 포용사회 4개 분야에서 총 206개 과제를 발굴하고 전환을 추진하였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신산업·신기술 발전 촉진 : 60건

●● (가)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산업·신기술 지원 대상 유연화 (25건)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입주 자격으로 현행 열거된 기업 이외에도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보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신규벤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자 영상콘텐츠 제작용으로 지원하는 촬영장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세 예비창업자에 대한 실질적 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나)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확장 (35건)

① (한국전력기술) 협력연구 참여자격을 “특정 분야 및 업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 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전환하였다.

② (한국임업진흥원) 융복합 신목재에 대한 旣규정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시험방법”으로 품질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험방법을 추가하여 융복합 목재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2) 기존산업 활력 제고 : 56건

●● (가) 경직적으로 규정된 기존산업 지원 대상 유연화 (26건)

①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지원 대상을 “제조업 분야 지방이전 중소기업” → “지방이전 중소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업종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마케팅, 사후관리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나) 공공기관 조달시장 참여범위 확대 및 계약 부담 완화 (30건)

① (한국서부발전 등) 긴급공사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 → “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사업자 선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② (한국수자원공사) 댐 편의점 운영시 계약 가능한 가맹점 범위를 “특정 업체로 열거”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국내 등록된 편의점 가맹점”이라면 모두 계약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임차인이 보다 유리한 조건(가맹금, 계약기간 등)의 가맹점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주민생활 불편 해소 : 68건

●● (가)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던 불필요한 절차·제약 개선 (31건)

① (한국소비자원) 3천만 원 이상 소송시 지원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의료·금융·보험 분야 소비자” →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소송지원 분야를 유연화하였다.

② (한국조폐공사) 소수 고객의 감사청구 권리 확대를 위해 “20세 이상 고객 10인” 등 열거된 감사청구 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도 고객감사가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였다.

●● (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및 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31건)

① (한국석유공사) 석유개발 기술자료 열람·대출자를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기타 법인도 열람·대출이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였다.

② (그랜드코리아레저) 이용대상을 ”소속 선수단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소속 선수단의 훈련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외에는 유관기관 선수단·지역주민 등 누구나 시설·장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였다.

●● (다) IT 기술을 활용한 주민편의 향상 (6건)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통지방식을 “서면”에 제한하지 않고 전자우편, 모바일 통지 등 분양계약자가 열람가능한 다양한 방법이 허용되도록 하였다.

② (한전 KPS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본인 동의방법을 “서면, 전자우편 등 기존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모바일 앱 등 새로운 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였다.

(4) 포용사회 기반 확산 : 22건

●● (가) 장애인·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16건)

① (한국수자원공사) “부적합한 일부 직무를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직무에 대해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② (한국동서발전)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이 강화를 위해 안전사고 심리치료 지원대상을 “공사 직원” → “근로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 유연화 (6건)

① (한국남부발전) 물품구매 가점 부여 대상 기업을 “고용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다. 향후계획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 발굴·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규제’의 경우 규제·법령 심사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 이미 존재하는 ‘기존규제’는 신산업 분야별 기술·시장 발전 방향 예측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관 단위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과제발굴 방식에서 신산업 분야별(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과제발굴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그간 발표한 전환과제에 대해서도 주기적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전반적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21년)을 통해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3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집필자 류준호 사무관
Tel. 044-200-2437, riswell@opm.go.kr

가. 개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하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2017.9)」에서 최초로 제시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다.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개선하는 그간의 방식은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및 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신산업은 기존의 제도·업역 경계를 허물며 발전하기 때문에 신기술에 적용할 기준이 없거나 기존 기준이 신기술을 금지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신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규제개선을 검토하는 경우 제품 출시 지연, 사회적 갈등 표면화 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에 도래할 신산업·신기술의 전개 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되는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최초 로드맵으로 자율주행차 로드맵(2018)을 수립하고, 이어 드론 로드맵(2019)을 수립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추진 분야를 대폭 확대하여 4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 ('20.4월)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20.8월) 가상·증강현실(VR·AR), ('20.10월) 로봇, ('20.12월) 인공지능(AI)

나.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1) 추진 배경

친환경차(발전 전망, 산업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전기차로 한정)는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도가 기대되는 분야로서 신속한 기술력 확보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다.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며, 향후 기술·성능 고도화, 차종 및 보급량 확대에 따라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기업은 일찍이 친환경차의 핵심요소를 국산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에 도달하였으며, 주도권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측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여러 기술 변수를 조합하여 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한 뒤 발전 단계에 따라 차량, 에너지, 인프라 등 전부문에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결하는 로드맵을 추진하게 되었다.

(2) 로드맵 구축 과정

친환경차 로드맵을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업 체계를 2019년 1월부터 마련·운영하였다. 친환경차 관련 기술·산업·법률 전문가로 연구체계를 구성하였고 총 25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총 19차례에 걸친 회의(2019년 1월~10월)를 통해 기술발전 시나리오, 규제이슈 등을 도출하였고 공청회(2019년 11월)를 거쳐 업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하였다.

친환경차 협업체계(총 25개 기관 참여)

산학	민간 협회(전기자동차협회 등), 민간 업체(현대차 등), 학계
연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한국법제연구원(공동간사), 교통과학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환경부 등

산업부·국토부 등 8개 정부 부처는 발굴된 규제 및 개선방안을 현재 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비추어 검토하였고,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종합하여 최종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로드맵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되었다.

(3) 기술발전 단계 예측

수소차, 전기차의 특성에 맞춰 각각 별도의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수소차는 ①연료전지 성능 ②수소 생산·공급 방식 ③활용 영역에 따라 3단계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전기차는 ①배터리 성능 ②충전 속도·방식 ③활용 영역에 따라 3단계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수소차 기술발전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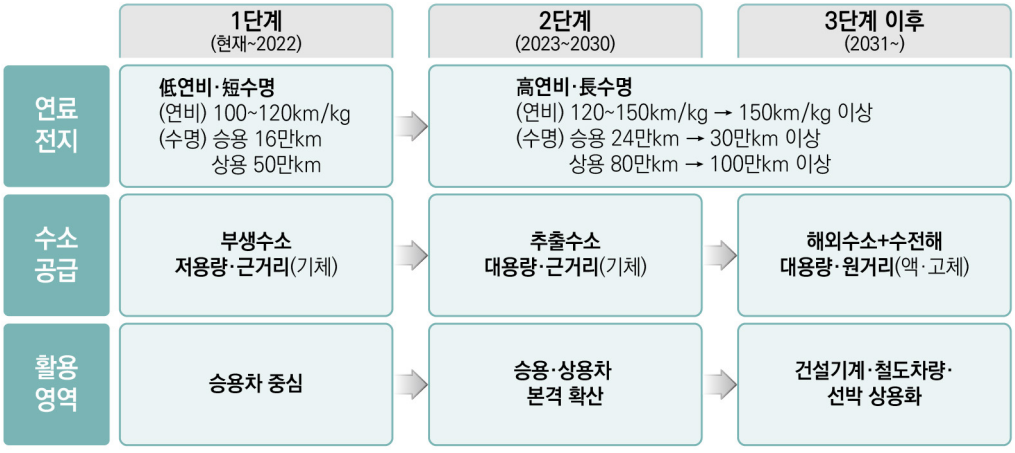

전기차 기술발전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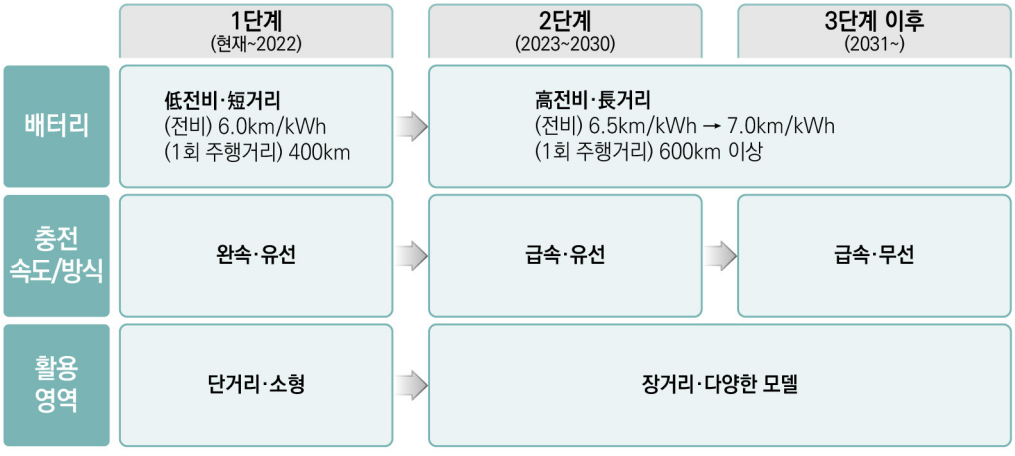

(4) 로드맵 세부내용

수소차·전기차 기술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규제를 발굴하였다. 로드맵은 수소차 과제 24개와 전기차 과제 16개 등 총 40개의 규제이슈와 개선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차 과제는 차량 관련 내연기관 위주의 기존 제도 정비,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밸류체인별 기준 신설, 신산업 확산 인프라 구축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 **차량**(4건) → 수소차 정비기준 신설, 수소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등
-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10건) → 수송 튜브트레일러 압력·용적 제한 완화, 액체수소 안전기준 마련, 수소 굴삭기, 철도, 선박 등 다양한 기관 관련 안전기준 마련 등
- **보급 인프라 구축**(10건) → 수소 제조·충전시설 복층화 허용, 수소충전소 고장 진단 시스템 개발 등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수소차 분야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도		현재 ~ 2022	2023 ~ 2030	2031 ~
기술 발전 시나리오	연료전지	低연비·短수명	高연비·長수명	
	수소공급	부생수소	추출수소	해외+수전해
		저용량·근거리(기체)	대용량·근거리(기체)	대용량·원거리(액·고체)
	활용영역	승용차 중심	승용·상용차 본격 확산	건설기계·열차·선박 상용화
차량		'20 ① 수소차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 '20 ②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21 ③ 자동차정비업에 전기·수소차 정비기준 신설	④ 수소차 전용보험상품(자차특약) 개발 및 보급	
에너지	생산	'22 ①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시설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		② 재생에너지 연계 전기·수소 통합 충전소 활성화 (DC 직배전 허용)
	운송 및 저장	'22 ③ 튜브트레일러 용적기준 제한 완화	④ 튜브트레일러 압력 및 용적 제한 완화(700bar 이상) ⑤ 액화수소 저장·운송 핵심부품 안전기준 마련 ⑥ 액화수소 ISO 탱크 컨테이너 기준 마련 ⑦ 수소 압력용기 및 배관의 취성 검사 기준 마련	
	활용		⑧ 수소건설기계(굴삭기) 기술기준 마련 ⑨ 수소기관차 기술기준 마련	⑩ 수소선박 기술기준 마련
인프라		'22 ① 저압수소 안전관리 법적근거 마련 '22 ② 수소차 용기 충격시험 허용 '21 ⑤ 수소 공급 적정가격 관리 '22 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관련 충전소 설치비 대체 인정 '20 ⑦ 융·복합 수소충전소 범위 확대 '20 ⑧ 수소 제조·충전시설 복층화 건설 허용	③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및 상용차 의무사용 확대 ④ 교통안전수칙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⑨ 수소충전소 고장 진단 시스템 개발 및 보급 ⑩ 수소 부품 등 KS인증 도입 확대	

전기차 과제는 차량 관련 기존 규제 개선, 충전 및 배터리 관련 과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과제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 **차량**(5건) →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 의무화 등
- **충전 및 배터리**(7건) → 400kW급 급속충전 표준 마련(현재 200kW급),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등
- **개인형 이동수단**(4건) → 기본법 제정, 저속(25km/h 이하)제품 안전관리 확대 등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전기차 분야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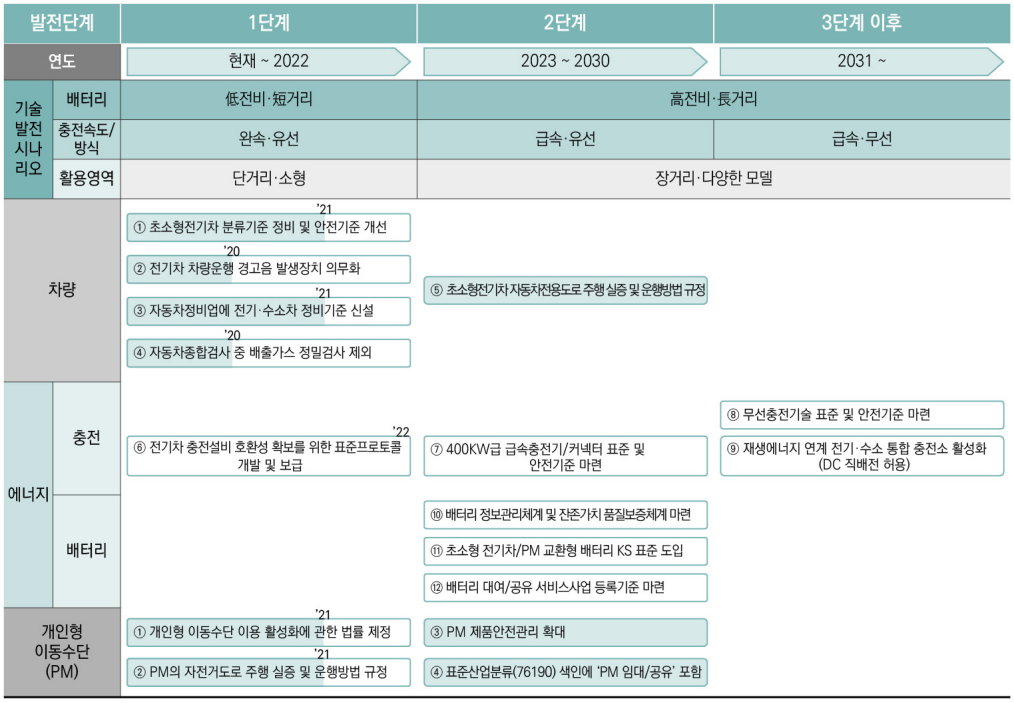

(5)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친환경차 로드맵이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차의 대중화, 전후방 산업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도 기대된다.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하여 로드맵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정책 등을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Rolling Plan)할 계획이다.

다.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1) 추진 배경

가상·증강현실(이하 'VR·AR') 기술은 현실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실감도·몰입감·쌍방향성을 제공하는 실감 콘텐츠로서, 특정 체험에 수반되는 시·공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용자의 경험·지식을 확장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VR·AR 기술은 D·N·A(Data, Network, AI)와 결합하여 향후 문화, 교육, 교통, 제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 기술인 VR·AR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의 핵심수단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VR·AR 분야에 3년간(2018~2020) 약 2,440억 원을 R&D투자하고,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전략(2019)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기술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추진하게 되었다.

(2) 로드맵 구축 과정

VR·AR 로드맵을 위한 산·학·연·관 협업 체계를 2019년 8월부터 마련·운영하였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VR·AR 적용 영역 등 미래예측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정부·연구계·산업계 및 규제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별 규제이슈를 선정·구체화하였다. 과기정통부·문체부 등 16개 정부 부처는 발굴된 규제 및 개선방안을 현재 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비추어 검토하였고,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종합하여 최종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로드맵은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발표되었다.

(3) 기술발전 단계 예측

VR·AR 기술의 주요 요소인 사용성(인터페이스), 플랫폼, 지능화 측면에서 3단계로 미래 기술 변화상을 도출하였다. ①인터페이스는 시청각 중심에서 오감 및 뇌 상호작용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②플랫폼은 단일 사용자 환경에서 다중 사용자 환경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았다. ③지능화 수준은 콘텐츠를 일방 수용하는 형태에서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VR·AR 기술발전 시나리오(작성 협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연도	2020~2022	2023~2025	2026~2029
사용성	시·청각 중심	표정·햅틱 입출력	오감·뇌 입출력
플랫폼	단일 사용	다중 사용(원격 협업)	
지능화	콘텐츠 일방 수용	사용자 ⇄ 시스템 상호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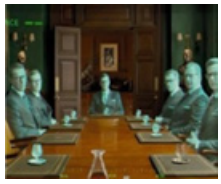

(4) 로드맵 세부내용

VR·AR 기술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규제를 발굴하였다. 로드맵은 총 35개의 규제이슈와 개선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인프라 등 공통영역에서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10건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 **데이터활용 기반 조성**(5건) → 스마트글래스 등으로 수집되는 영상정보 활용기준 마련,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활용기준 완화, 5G 서비스 안정성 확보
- **콘텐츠 체계 개선**(2건) → 기능성 VR·AR의 게임물 분류 완화, 비디오물과 구분되는 등급체계마련 등
- **거버넌스 마련 등**(3건) → 원스톱 지원창구 마련, 가상공간 성범죄 유사행위 관련 제도정비 등

다음으로 산업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①엔터·문화 ②교육 ③제조 등 산업일반 ④교통 ⑤의료 ⑥공공 등 6개 분야에서 25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 **엔터·문화**(5건) → 도심 내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VR영상 제공업 시설규제 등 규제 완화
- **교육**(5건) → 교육현장 VR·AR 지침 마련, 원격학원 시설규제 완화, 학교 내 네트워크 사용 규제 완화 등
- **제조**(5건) →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기준 마련, 고난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 마련 등
- **교통**(2건) → 운전중 착용형(스마트글래스) 영상장치 허용, HUD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준 마련
- **의료**(4건) →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 AR 활용 등
- **공공**(4건) → 경찰서·소방서의 VR·AR 활용 근거 마련, 송수신 기능 있는 장비의 영내 사용 허용

총 35건의 개선과제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VR·AR을 활용한 사업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과제가 7건, 현행 법체계가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VR·AR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과제가 16건, 적용할 인증·기준이 불명확하여 상용화가 어려운 제품에 대해 새로운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과제가 12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전체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5)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정부는 VR·AR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국내 실감콘텐츠 시장 규모가 14.3조원(2018년 기준 8,590억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및 시장변화 상황 등을 파악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Rolling Plan)할 계획이다.

라.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1) 추진 배경

로봇은 스스로 인식하고 제어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의미한다.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산업으로 주력산업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이자 인공지능과 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성장한 '비대면 사회'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수요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8년에 로봇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의 로봇 발전체계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육성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배달로봇·주차로봇 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고, 2019년에는 로봇 분야 규제샌드박스 전주기 지원을 위한 로봇 규제혁신지원센터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내에 개소하여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개별 건의과제 처리 방식을 넘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상용화 시기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시기별 제도개선 계획을 담은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추진하게 되었다.

(2) 로드맵 구축 과정

로봇 로드맵을 위해 산·학·연·관 협업 체계를 2020년 3월부터 마련하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로봇 기술발전 단계 연구를 기반으로 산업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협회, 한국법제연구원를 중심으로 관계 전문가와 함께 총 19회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였다. 이어 2020년 7월부터는 관련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로봇산업 전략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총 30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기술개발 시나리오 및 규제를 구체화하였다.

산업부·복지부·경찰청 등 16개 정부 부처는 발굴된 규제 및 개선방안을 현재 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비추어 검토하였고,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종합하여 최종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로드맵은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발표되었다.

(3) 기술발전 단계 예측

로봇 기술의 주요 요소인 인식, 제어, 환경 및 적용 측면에서 미래 기술 변화상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로봇의 역할은 3단계(①단순 보조 → ②인간 협업 → ③자율 수행)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였다.

로봇 기술발전 시나리오(작성협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연도	2020~2022	2023~2025	2026~
로봇역할	단순 보조/노동력 대체	인간 협업/공존	자율 수행
인식	개별 센서 성능 중심	AI, 클라우드 기반 알고리즘 중심	
제어	개별로봇, 원격제어	다중 로봇 반자율	다중 로봇 자율
적용	[부품] 고도화/내구성 강화 [완제품] 실증 기반 적용성 확대	[부품] 스마트화/염가화 [완제품] 서비스 기반 제품화	
활용 환경	실내, 정형 환경	비정형 환경 (일상환경 중심)	비정형 다양한 환경 (고위험 환경 등)
		실외 확대	실내외 연계

(4) 로드맵 세부내용

로봇 기술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규제를 발굴하였다. 로드맵은 총 33개의 규제이슈와 개선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산업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①산업 ②상업 ③의료 ④공공 등 4개 분야에서 22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 **산업**(6건) → 제조 협동로봇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활용 허용, 농업 로봇 검정 기준 마련 등
- **상업**(9건) → 배달로봇 공원·승강기·보도 통행 규제 완화, 주차로봇 허용 기준 마련, 로봇 활용 음식점 안전관리 규제 마련, 수중로봇 활용 시 불필요한 항만용역업 요건(선박 구비 등) 삭제 등
- **의료**(3건) → 재활로봇 실증 및 수가 기준 개선, 돌봄(배변, 식사 등)로봇 급여 지원제도 개선 등
- **공공**(4건) → 방역로봇 성능·안전성 기준 마련, 재난안전로봇 운용을 위한 근거 마련 등

다음으로 인프라 등 공통영역에서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11건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 **안전성 검증**(3건) → 분야별 안전성 평가방법 개발, 로봇사고 신고 시스템 구축 등
- **데이터·통신망 활용**(3건)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가이드 마련, 5G 활용 제조로봇 평가기반 구축 등
- **활용기반 구축**(5건) → 서비스로봇 대규모 실증 거점 구축, 표준산업 분류 신설, 로봇윤리 제정 등

총 33건의 개선과제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제도에 맞춰져 있는 경직된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과제가 9건, 적용할 인증·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어려운 제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가 13건, 인프라 마련, 보조금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을 위한 과제가 11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전체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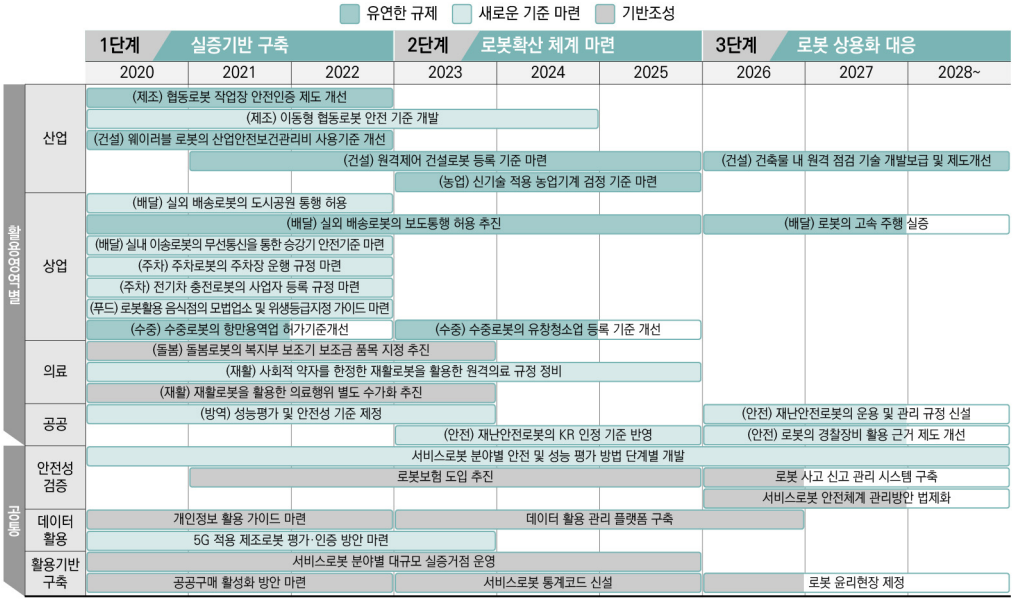

(5)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정부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안정 및 비대면 로봇 경제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국내 로봇시장 규모가 20조원(2018년 기준 5.8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및 시장변화 상황 등을 파악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Rolling Plan)할 계획이다.

마. 인공지능(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1) 추진 배경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국의 국가 혁신 전략 수립·추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 '디지털 뉴딜(2020)'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기존산업 혁신, 국민생활 편의 증진 등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 계층 간 격차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였다.

(2) 로드맵 구축 과정

인공지능 로드맵을 위해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 협의체(법제정비단)를 2020년 3월부터 구성·운영하였다. 총 29회에 걸친 전체회의 및 작업반(9개: 데이터, 지식재산권, 책임, 알고리즘, 금융, 플랫폼사업, 노동, 의료, 포용·복지) 회의를 통해 주요 분야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등 18개 정부 부처는 발굴된 규제 및 개선방안을 향후 기술발전 방향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종합하여 최종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로드맵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되었다.

(3) 정비 기본 방향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기존 법·제도를 정비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선제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적 특성과 빠른 발전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신기술과 기존 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법적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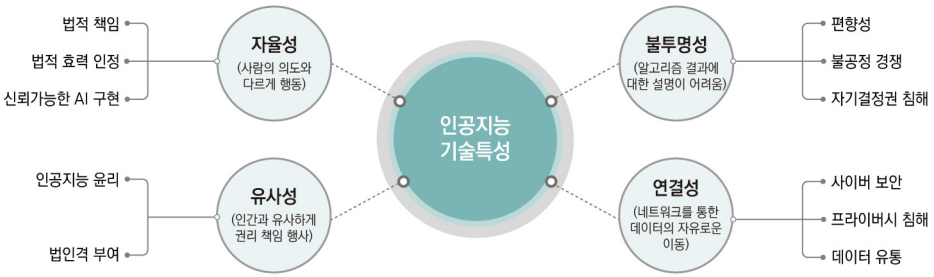

* 출처: KISDI,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19) 재구성

②국내 법체계, 해외 입법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글로벌 법·제도정비 흐름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정비안을 수립하였다. ③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의 자율·창의를 존중하는 시장 친화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우선 고려·마련하였다. ④법제정비단 구성·운영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고 현시점의 사회적 합의 정도에 따라 장·단기 정비과제를 선별하였다.

(4) 로드맵 세부내용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에 따라 분야별 법·제도·규제이슈를 발굴하였다. 로드맵은 총 30개의 법·제도·규제이슈와 개선 계획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인공지능 공통기반 영역에서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사업 활성화를 기반이 되는 과제를 17건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 **데이터 기반**(7건) →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개별 산업 및 수요를 고려한 데이터 활용 지원 등
-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3건) → 자율적 관리·감독 환경 조성,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공개기준 마련 등
- **AI 법인격 인정 검토**(2건) → AI 창작물의 권리관계 정립, AI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
- **AI 책임체계**(3건) → AI에 의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 AI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마련 등
- **AI 윤리**(2건) → AI 윤리기준 정립, AI 윤리교육 커리큘럼 개발

다음으로 산업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①의료 ②금융 ③행정 ④고용 ⑤포용 등 5개 분야에서 13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 **의료**(2건) → AI 의료기기 국제기준 개발, AI 활용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개선
- **금융**(2건) → 금융기관간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 근거 마련, 결제·인증 서비스의 안전성 강화
- **행정**(3건) → AI 활용 자동화 행정 근거 마련, AI 행정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
- **고용**(2건) →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등
- **포용**(4건) →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법적 기반 확립, 고위험 분야 AI 기술기준 마련 등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전체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법·제도·규정 정비 로드맵

		2020	2021		2022		2023~	관계 부처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인공지능 공통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①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② 데이터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③ 개별 산업 및 수요를 고려한 데이터 활용 지원 ④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 ⑤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⑥ 결합절차 및 가명정보 안전 조치에 대한 규제 재검토		⑦ 데이터의 독점 및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한 규율 방안 마련		과기부/ 문체부 산업부/ 개보위 특허청/ 공정위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③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①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②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 기준마련				과기부/ 공정위
	인공지능 법인격 인정 여부 검토			①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관계 정립			②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	문체부/ 특허청 과기부/ 법무부
	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						①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 ②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마련 ③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	과기부/ 법무부 공정위
	인공지능 윤리 정립	① 인공지능 윤리 기준 정립		② 인공지능 윤리 교육 커리큘럼 개발				과기부/ 교육부
인공지능 활용 확산	의료				①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기준(가이드라인) 개발		② 인공지능 활용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개선	식약처/ 복지부
	금융		①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시스템 기반의 전자금융사고 대응체계 강화 ② 결제·인증서비스의 안전성 강화					금융위/ 과기부
	행정			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의 근거 마련	②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 마련		③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	법제처/ 권익위
	고용·노동		①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 확대				②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및 미래형 안전보건 관리 모색	노동부/ 기재부
	포용·복지			①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기반 확립		②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	③ 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 도입 ④ 인공지능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방안 마련	과기부/ 복지부 법무부/ 국토부 해수부

(5)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 과제에 대해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구체화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간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하여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4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파

집필자 장정인 사무관
Tel. 044-200-2665, jeongin@korea.kr

집필자 김영호 사무관
Tel. 044-200-2666, kj335566@korea.kr

집필자 주정호 전문위원
Tel. 044-200-2667, postphone@korea.kr

가.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정부는 기업현장 간담회 등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산업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66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처리결과(비율, 건수)

합계	수용	대안마련	신속확인	규제존치*
100%(71건)	47.9%(34건)	39.4%(28건)	5.6%(4건)	7.0%(5건)

* ①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내 간이정비시설 설치 허용, ②해외의약품 온라인 구매대행 금지 개선 등

특히, 신산업 현장의 개선 목소리가 높은 수소경제, 자율주행차 분야를 핵심 테마로 선정하여 현장의 복잡하고 긴급한 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했다. 수소경제의 경우, 2018년 8월 수소차·전기차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에 포함된 점과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사업(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으로 발표된 점을 감안하여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선제적으로 집중 발굴한

후 정부(국조실·국토부·산업부·환경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4] 추진단 등 관련 업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현 단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10건의 과제를 해소했다.

이러한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해당 부처별로 각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이행토록 조치하고 있다.

나. 주요 규제혁파 사례

(1) 수소경제

●● (가) 수소차 운전자 특별교육 완화

수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렌트카 대여자, 대리운전 등 일회성 운전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 운전자 등을 제외한 대다수 운전자들은 특별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1.6월)

●● (나) 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조건 완화

도심지역 내에서 수소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소충전소를 체육시설 내 편익시설에 포함시켜 체육시설 내에서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1.2월)

●● (다)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등) 설치 허용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에 대한 허용규정이 없어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상업시설 설치를 불허하였으나 설치 금지 규정이 없다면 설치 가능하다라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를 허용하였다.

* 유권해석('20.5월 조치완료.)

●● (라)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시 특례적용 확대

기존 설치된 LPG충전소, 주유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 등 융·복합 충전소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시설의 설치순서와 상관없이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20.7월 조치완료)

4) 정부·지자체, 수소차·부품업체, 수소 제조·유통업체, 수소충전소 설치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16.8월 발족)

(2) 기타 신산업

(가) 자율주행차 운행사고 대비, 배상책임체계 및 보안시스템 마련

3단계 자율주행차(운전자와 자율차 간 수시로 운전 전환) 상용화를 대비하여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사전적·예방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 규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였다.

* 자율차 사고조사 위원회 설치('20.12월), 자율주행 정보기록장치 부착 의무화에 따른 안전기준 개정('20.12월),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의 단계적 적용 추진(`21.6월 예정)

(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우리나라는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 기업간 직접적인 PPA(전력구매계약)가 불가능하여 전 세계적 캠페인인 RE 100(기업 소모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참여가 저조하였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RE 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매출처 확보를 위해 제3자 PPA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1.1월)

(다) 드론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드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비행안전·전파적합 등 각 분야별로 인증·검정을 받아야 하는데,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뤄져 번거로웠다. 관계부처(국토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가 협의를 거쳐 접수창구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로 통합하여 민원인이 여러 인증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드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 세칙 개정('20.12월 조치완료)

(라)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되어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동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여 허가 소요기간 단축으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통상 법정처리기한이 115일이나, 우선심사시 90일로 단축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20.9월 조치완료)

(마) 바이오 의약품 원재료 품질검사 비용부담 완화

보세공장*의 운영 특허 대상에 '검사'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원재료' 검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에 '원재료 검사'도 포함하여 바이오 기업의 원재료 품질검사 과정을 보세작업으로 인정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

* 통관절차가 끝나지 않은 제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공장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7월 조치완료)

제3절 민생규제 혁신

1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집필자 김무연 사무관
Tel. 044-200-2633, wiebitte84@mail.go.kr

가. 추진배경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의 현장성과 효과성 도모를 위해 지자체의 건의과제 발굴과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의 규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부처의 법령과 제도 등을 개선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주민 불편해소, 기업 환경개선 등 성과를 창출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지역기반의 다양한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경제·민생분야 현장밀착형 규제정비 결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3차례(130건)에 걸쳐 보고하였다.

지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1차 ('17.12월)	‣ **△낙후지역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분야 **47건* 개선** * 국유 유휴부지 개발범위 확대, 관광특구의 도시공원내 일반음식점 설치 기준 완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에 임업인 주택 설치 허용 등
2차 ('18.12월)	‣ **△일자리 △지역발전 △주민편의** 분야 **33건* 개선** *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택지지구 학교용지 확대 허용 등
3차 ('20.2월)	‣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분야 **50건* 개선** * 도시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어린이공원·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 허용,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 대상자 범위 확대 등

나. 의의 및 특징

'20년에 추진된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방안은 ① '지방자치단체' 건의, 범정부 규제건의 접수창구인 ②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지역건의, ③ '민생규제 국민공모'를 통한 국민 직접건의 등 다양한 지역건의를 기반으로 해당 과제의 '현장성' 및 개선효과의 '파급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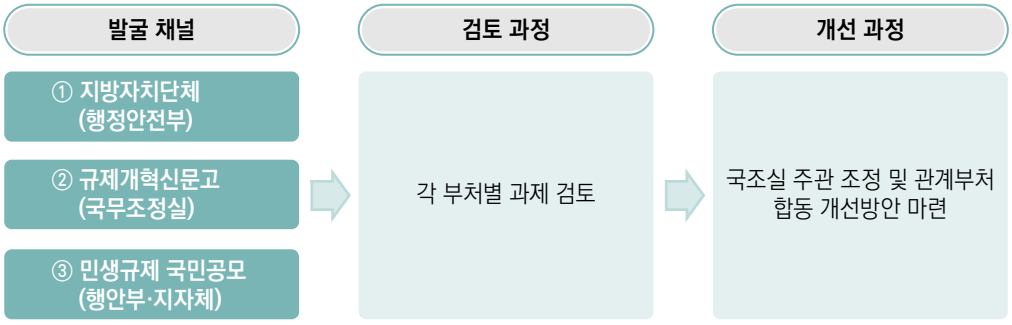

다. 추진결과

'20년은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1 경제현장 규제애로 해소

✓ 지역별 특화된 경제 활성화 지원, 기업 부담 완화
-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체(연구소 등)의 부대시설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 등

2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 신산업 기회 지원, 기존 인프라 등의 재활용 확대
- 동해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 허용
-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 허용
- 화력발전소 연소잔재물을 비료로 활용 허용 등

3 민생현장 규제 합리화

✓ 국민 생활 및 생계관련 제도 정비
-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허용
- 전출입시 별도의 변동신고 없이 보훈수당 자동 지급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 중 '부양가족' 허용범위 확대 등

4 주민불편 해소

✓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행정절차 간소화
-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 등 생산·판매 허용
-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허용
- 소금제조업(염전) 폐업(폐전)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등

라. 주요 정비사례

(1) 경제현장 규제애로 해소

①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산업부)

현황 자유무역지역 내 일반공산품 제조가공업은 입주규제가 없으나,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은 입주 제한 →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지역투자유치 저해

※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해당규제 개선『지자체 공동건의』(부산·전남·경남, '20.10)

개선 국내 농가 보호 및 관세포탈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의 입주 허용

* (입주조건) △전량수출 △소요량산정 등 물품관리체계 △위반시 강화된 제재조치

→ 고부가가치 제조가공업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발전 거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21.6.

②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체(연구소 등)의 부대시설 설치 허용 (산업부)

현황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범위를 제조업체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비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규정 부재로 부대시설 설치가능 여부 불명확

→ 산업단지에 입주한 연구소 등 비제조업체는 시제품 제작 공간,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 설치 불가

※ (마곡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중심단지로 입주 대상업체가 연구소 등 비제조업체가 대부분임에도 불구, 비제조업체는 부대시설 설치가 곤란

개선 비제조업체 부대시설 설치범위 기준을 마련,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설치가능 기업대상을 기존 제조업체에서 비제조업체까지 확대

→ 산업단지 비제조업체의 부대시설 설치 허용으로 조기 입주 활성화 지원

☞「산업단지 관리지침 고시」개정, '20.8.(완료)

③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 (국토부)

현황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만 설치 가능 → 화훼농가는 화훼 재배와 33㎡이하의 화분진열시설만 설치 가능

개선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도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시·군·구 당 1개소, 연면적 3,300㎡ 이하로 제한 → 화훼농가 판로 확대 기여 및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 '21.1.(완료)

(2)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① 동해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 허용 (산업부)

현황 해저광물채취를 위한 인공구조물(동해가스전 등)은 광물채취권 종료 후 1년 이내 철거 및 원상회복 의무화

* 아래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활용 허용
①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 채취 용도로 이전
② 계속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에 귀속

→ 인공구조물 철거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 발생

개선 동해가스전 재활용 관련 연구·검토 결과를 근거로 인공구조물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해상풍력 발전용 재활용 허용)
→ 인공구조물 철거비용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지원

※ (울산) 기존 규제 적용시 예상되었던 철거비용(약 1,500억원↑) 절감→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동해가스전 재활용 가능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 '21.12.

②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 허용 (환경부)

현황 껍데기 등 폐패각은 석회석과 성분이 유사함에도불구, 재활용 근거 규정 부재로 재활용 불가(폐기물로 처리)
→ 어업인에게 폐기물 매립비용 부담발생 및 폐패각 방치에 따른 어촌환경 훼손 우려

※ 폐패각 일반매립장 처리 비용 : 약 250천원/톤

개선 폐패각이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하여 허용
→ 폐자원의 활용성 제고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어업인의 비용 부담 해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8.

③ 화력발전소 연소잔재물을 비료로 활용 허용 (농진청)

현황 화력발전소 연료인 '목재 펠릿'의 연소 잔재물은 유기물이 풍부하여 비료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료 공정규격' 포함되지 않아 비료(토지개량제)로 활용 불가 → 화력발전소는 해당 연소 잔재물에 대한 별도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발생

개선 오염 순수 목재로 만든 '목재 펠릿'의 화력발전소 연소잔재물은 유기물이 풍부함을 고려, '비료 공정규격'에 포함 시켜 비료로 활용 가능토록 개선 → 유기성 폐자원 재활용 확대 및 양질의 비료공급 지원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 '20.12.(완료)

(3) 민생현장 규제 합리화

①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허용 (국토부)

현황 도시철도 지하역사시설은 건축법 제외대상인 토목구조물로 간주하여 건축물 대장 미보유, 입점 신청시 시설의 용도확인 곤란(약국·안경점·의원 등 편의시설 개설 애로) → 역사 내 약국·안경점 등 편의시설 입점 신청시 지자체별*, 업종별**로 행정처분 상이

* (서울) 건축물대장 요구 (대구) 건축물대장 미요구 (부산) 자체 건축물대장 생성

** 자유업종(편의점, 잡화점 등)은 허용, 신고업종인 비자유업종(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원 등)은 판단이 상이

개선 역사 내 시설의 용도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편의시설 개설 원칙적 허용 → 도시철도 지하역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의 통일적 행정처분 유도

☞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국토부 고시) 제정, '20.12.(완료)

② 전출입 시 별도의 변동신고 없이 보훈수당 자동 지급 (보훈처·행안부)

현황 다른 복지수당*과 달리 보훈수당은 타 지자체로 전출입시 반드시 '변동 신고'가 되어야 지급 가능 → 이사 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미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소급 지급도 불가)

* 양육수당, 보육료의 경우 전출입 시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어 자격조건이 유지(연속적인 수당 지급)

개선 행정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전출입 시 변동신고 없이도 보훈수당 지급토록 개선 → 신고처리 불편 해소 및 복지 공백 최소화

☞ '통합보훈정보시스템'(보훈처)과 '지자체 통합행정시스템'(행안부) 연계, '21.6.

③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 중 '부양가족' 허용범위 확대 (복지부)

현황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따라 19세 이상 자녀·손자녀 입소는 원칙적 불가 → 장애로 인해 자립능력이 없어 노인이 부양해야 하는자녀·손자녀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생

* (입소자격) 60세↑ 노인(배우자), 부양 책임지는 19세 미만 자녀·손자녀

개선 불가피하게 노인이 부양해야 하는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이 자녀·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입소 허용 →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대상 복지 확대

☞ 「노인복지법」 개정, '22.6.

(4) 주민불편 해소

①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 등 생산·판매 허용 (환경부)

현황 먹는샘물 표시사항*은 상표띠(라벨) 형태로 용기 표면 몸통에 부착 원칙(가시성 고려) → 먹는샘물 용기와 라벨의 재질이 서로 달라 재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분리작업 필요(재활용률 저조)

* 제품명, 수원지, 유통기한, 연락처 등

개선 상표띠를 분리하기 쉬운 구조 또는 부착 위치 변경* 등을 허용 → 용기와 라벨 관련 별도의 분리작업 불필요(재활용 활성화)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20.12.(완료)

②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허용 (행안부)

현황 천재지변으로 공유재산 사용제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나,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기간 연장만 가능(사용료 감면 불가)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사용권리 침해 발생

개선 지자체 귀책 사유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시에도 사용료 감면 가능토록 개선 → 공유재산 사용자의 사용권리 보장하여 현장애로 해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2.(완료)

③ 소금제조업(염전) 폐업(폐전)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해수부)

현황 소금제조업(염전) 폐업(폐전)을 허가제로 운영(처리기간 : 10일)
→ 신고제로 운영 중인 유사 업종 대비 처리기간 과다

※ 양식업의 경우 신고제로 즉시 처리

개선 소금제조업(염전) 폐업(폐전) 신고제로 전환(처리기간 : 즉시) → 사업 폐업 등에 따른 행정처리 부담 완화

☞「소금산업 진흥법」개정('21.12)

마. 향후 추진계획

이번 규제개혁의 효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자체 건의 활성화를 위해 국조실·행안부 공동으로 범정부 규제혁신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의 지자체 상시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발굴·건의 노력 및

중앙부처 검토·개선 노력을 평가 등 정책 환류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중심 규제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안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2개 분야·5대 부문*에 걸쳐 국민 현장밀착형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제안 과제는 국민투표 등을 통해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대상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이해도 증진이 기대된다.

* (분야) △경제(취업·일자리, 중기·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민생(복지, 생활 불편)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규칙) 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

집필자 문유진 서기관
Tel. 044-200-2431, yujin700@opm.go.kr

가. 추진 배경

정부는 그간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완화 등 국민불편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가중된 영세·중소기업 어려움 극복을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한 부담 경감방안에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 경과

그동안에도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공동이용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다소 부분적·산발적인 개선에 그쳤던 반면, 이번에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 시설·장비·기술 공동이용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규제를 정비하였다.

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국조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과제발굴 및 중소기업옴부즈만의 현장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조정을 거쳐 5개 분야 4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정비 착수	부처 검토	국조실 조정	과제 확정
’20.1월	’20.2월	’20.3~4월	’20.5월
• 검토대상 선정 및 부처 통지 • 중소기업 의견 수렴 (중기옴부즈만)	• 업종별 공유 가능사항 검토 • 중소기업 건의 과제 검토	• 부처별 검토 결과 종합 • 부처 미수용 과제 조정	• 과제 최종조율 • 안건 준비

다. 기대효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공유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나,다른 한편으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공유를 활성화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 또는 비용절감 효과가 가능하였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영세·중소기업의 영업과정에서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해 비용부담 완화

②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창업 기회 확대

③ 공유 과정(장비·연구·공공자원 등)에서 △대기업 - 중소기업간, △대학·연구기관 - 중소기업간, △정부 - 민간간의 상생 협력 촉진

라. 주요 정비사례

(1)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

① 주방공유 영업허용(식약처)

기존 한 영업소에 한 사업자만 신고·영업이 가능하여 주방 공유를 통한 비용절감 불가 → 주방 공유 실증 중 (’19.6월~)

개선 실증특례 결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공유시설운영업·이용업 신설

효과 음식점 등의 **창업비용 절감**(고속도로 휴게소 기준 1개 업소당 약 5천만 원 절감)

(2) 시설공유

①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의 타기업 생산시설 활용 허용(중기부 등)

기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제도 참여를 위해서는 직접 생산시설 구비 필요

개선 생산시설을 갖춘 다른 중소기업 등과 협업하여 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는 생산시설이 없어도 조달 참여 허용

효과 기술력이 있으면 생산시설이 없어도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의 조달 참여 기회 확대

② 축산물 가공업자의 검사실 공유대상 확대(식약처)

기존 축산물 가공업을 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품질 검사실 필요(또는 위탁검사)
개선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 다른 식·의약품 제조업자가 축산물 가공업 영업시 기존 검사실 공유 허용 추진
효과 품질검사를 위한 위탁검사비용 또는 검사실 설치 비용 절감

(3) 장비공유

①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확대(복지부)

기존 다수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MRI·CT 등)를 공동활용할 수 있으나 병상기준이 100~200 이상* → 의료취약지에서의 설치 또는 공동이용에 한계
개선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 추진
효과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와 활용 확대

② 항공기정비업 장비 임차 허용(국토부)

기존 항공기정비업 등록시 사무실·작업장은 임차가 가능하나 계측장비·작업공구 등은 임차 불가 → 고가의 계측장비(약 3천만 원~1억 원) 등 구입 부담
개선 항공기 정비장비에 대해서도 임차 허용 추진 ('20.12월까지 시행규칙
효과 항공정비업 초기 사업비용 부담 절감 및 창업 활성화

(4) 기술·인력 공유

① 연구기관·중소기업 공동 R&D 대상 확대(중기부)

기존 선도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이 기업부설연구소·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한정 → 일반 중소기업은 이용 곤란
개선 모든 중소기업이 연구기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요건 삭제
효과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없는 중소기업(약 84%)에 기술력 강화 기회 부여

② 문화재수리 원·하도급 업체간 기술인력 공유(문화재청)

기존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시 원도급자의 기술인력이 현장에 있음에도 하도급자도 별도로 기술인력 배치 필요 → 기술인력 중복
개선 기술인력 공유를 허용하고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의무 면제 추진
효과 문화재 하도급업체의 등록요건 완화로 인건비 절감 및 창업기회 확대

(5) 공공자원 개방·민간 활용

① 고품질 공공데이터 추가개방 확대(행안부)

기존	'15년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96개* 분야의 국가중점 데이터를 개방했으나 개방내용·범위를 공급기관이 판단 → 다양한 수요 반영 미흡
개선	민간·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고려하여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해 추가로 3개년('20~'22)에 걸쳐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6대 영역* 46개 분야 개방 추진
효과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

마. 향후 계획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관합동 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생불편 규제혁신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계층에 대한 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고 개선할 나갈 예정이다.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집필자 강윤숙 사무관
Tel. 044-200-2636, illfillyou@opm.go.kr

(1) 추진배경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의 규제 혁신은 주로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행태개선**(적극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정비**한다하더라도 자자체에서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 근거·위임 없이 **자치법규**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혁신의 **성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규칙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의 **조례 7.9만개, 규칙 2.4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집중 발굴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비규제(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도 동시에 정비하였다.

(2) 운영현황

정부는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법제처**(법제연구원)·**행정안전부**에서 **문제사례**를 **발굴**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거쳐 지자체의 정비 상황을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일단, 조사내용이 방대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조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규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례)** 조사완료('17.5~'18.12) → 정비중('19.1~, 83% 완료)
  - 법제처가 '15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확대하여 '17년까지 전체 지자체 조사 완료 및 정비 착수, 행안부는 '17~'18년간 민원다발 분야(과태료 등) 집중 조사
- **(규칙)** 조사완료('18.1~'20.5) → 정비예정('20.9~'21.6)

이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건**(조례 16,114건, 규칙 3,896건)을 **발굴**하였는데,

- 1개 법령 사항에 대해 243개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므로 다수의 동일·유사한 불합리한 조례·규칙이 발생
→ 유사한 조례·규칙을 하나로 볼 경우 정비 필요 자치법규는 약 2,100여건으로 추정

유형별로는 ①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57%)가 가장 많았으며, ②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23%), ③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20%) 순으로 많았다.

내용별 구분으로는 ① **불합리한 행정절차**(58%)가 가장 많았고, ②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굴된 **조례** 1.6만여건 중 **1.3만여건**(83%)은 현재 **정비**가 **완료**되었고 3천여건(17%)은 계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규칙**은 향후 **계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향후 계획

앞으로도 정부는 발굴된 조례·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정비현황 점검·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적 지원·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법제처)**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및 컨설팅 확대
- **(부처)** 법령상 자치법규 위임사항이 적기에 적법하게 신설·개정되도록 모니터링 강화

(4) 주요 사례

(가)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보증금·과태료·배상책임 등을 법령의 허용범위보다 **높게 부과**

법령 미근거 **공공시설 운영·공사시 보증금을 예치**

현황 법령에 근거 없이 **전통시장·노인회관 임차인**이나 **수도공사 대행업자***에게 **보증금** 등을 **예치**하도록 규정

* 지자체장의 업무인 수도 배수관·계량기의 설계·시공을 대행하는 자

- 전통시장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가 **상인회**와 **전통시장 운영계약 체결시 2개월치 사용료**를 미리 **보증금**으로 징수토록 규정 (△△시 등 **5개 지자체 조례**)
- 공유재산법령에 근거 없이 **노인회관** 일부(카페·식당 등)를 주민이 **임차**할 경우 **임대료**를 미리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 (○○광역시 **조례**)
- 수도법령에 근거 없이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 **보증금 1천만 원**을 군수에게 **예치**하도록 규정 (☆☆군 등 **4개 지자체 규칙**)

정비 **사용료·임대료 외에 부당한 보증금 예치 규정**을 **삭제***

* 정비완료 : ○○시 등 **3개 지자체 조례·규칙**

법령 미근거 **지자체의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

현황 **지자체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불구, **주민**이 **손해보험 가입**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사례 발생

- 공유재산법령상 **지자체장**이 **가입**해야 하는 **공유재산 손해보험**(화재보험 등, 월 **70여 만 원**)을 **위탁관리자**인 **주민**이 가입하도록 규정 (□□군 등 **37개 지자체 조례**)
- **문화·체육시설 이용시** 발생한 **과실 사고**에 대해 공유재산법령 근거없이 이용 **주민**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 (◇◇시 등 **89개 지자체 조례**)

정비 공유재산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지자체의 **관리·배상 책임**을 적법하게 **수정***

* 정비완료 : □□군 **37개 지자체 조례**

법령 일탈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초과한 과태료 부과

현황 **산림보호법·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부과

- 산림보호법령은 **산림근처**에서 **소각**한 자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 → **75만 원 이하**로 상향(◎◎**군 조례**)
- 옥외광고물법령은 **옥외광고사업자**가 **광고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 → **30만 원**으로 규정(△△시 등 **34개 지자체 조례**)
- 옥외광고물법령은 **옥외광고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허가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부과 →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구 **조례**)

정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과태료 금액·요건**을 **수정***

* 정비완료 : ◎◎군 등 **24개 지자체 조례**

법령 미반영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 납부시 잘못된 이자율 적용

현황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6%**에서 **은행공시 이자율('20년 기준 1.2~1.6%)**로 **개정**되었으나 **미반영**

- **공유재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연 4% 이자율** 적용(□□시 등 **6개 지자체 조례**)
- **지자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나누어 **연 3%**의 **이자율**로 납부토록 규정(△△**광역시 조례**)
- **과오납**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 3%**의 **이자 가산**(☆☆군 등 **4개 지자체 조례**)

정비 **3%** 또는 **4%** 고정으로 규정된 **공유재산 이자율**을 **은행공시이자율**로 **수정***

* 정비완료 : △△광역시 등 **7개 지자체 조례**

(나)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

법령보다 **과도**하게 **영업제한·세무조사**를 하거나 **규제완화 조치 미반영**

법령 미근거 포괄적 요건으로 공공시설 사용계약·등록 취소

현황 법령에 근거없이 포괄적 요건으로 전시관·도서관·어린이집 등의 계약·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

- 공유재산법령에 근거 없이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위탁운영**을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군 조례**)
- **작은도서관**(주거지역에 소규모로 설치되는 도서관으로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 지원) **등록**을 도서관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공공질서 유지나 독서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시 조례**)
- 영유아보육법령 근거 없이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는 요건으로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시 등 **5개 지자체 조례**)

정비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 외 취소요건**을 **삭제***하여 조례 정비

* 정비완료 : ☆☆군 등 **3개 지자체 조례**

법령 미근거 새로운 세무조사 요건 추가

현황 **세무조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과 달리, 법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세무조사 요건**을 규정한 사례 다수 발굴

- 지방세기본법은 지자체의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조사) 요건을 **탈세 제보·자료**가 있거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등**'의 **포괄적 요건**을 **추가**(□□시 등 **24개 지자체 규칙**)
- 지방세기본법은 **동일인**에 대한 **연 2회 이상 세무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탈루·세원 확정**으로 한정 → '**납기전 징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세원은 확정 되었으나 법인해산 등의 경우)'를 추가(△△구 등 **61개 지자체 규칙**)

정비 **법정사항 외**의 **세무조사 요건**을 **삭제***

* 정비예정 : □□시 등 **85개 지자체 규칙**

법령 일탈 법령기준보다 공공시설 설립·운영을 과도하게 제한

현황 **공공시설**의 **인력요건 및 시설기준, 공유재산 위탁계약 기간** 등을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과도**하게 **제한**

- 공유재산법령에는 **지자체 체육시설·매점·공원·시장·복지회관** 등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
  → 이보다 짧은 **3년 이내**로 규정(△△군 등 **130개 지자체 조례**)
- 사회복지사업법령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1인 이상**의 **상담전문가 장애인**을 두도록 규정 → 이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직원 1/4 이상**과 **센터장, 상담직원 전체**를 **장애인**으로 하도록 규정(○○**시 조례**)
- 도서관법령상 **작은도서관**은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추면 설립 할 수 있도록 명시 → **열람석 15석 이상, 매년 신규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강화(□□구 등 **8개 지자체 조례**)

정비 **법령**에 맞게 **요건·기준·기간**을 **수정***

* 정비완료 : ○○시 등 **52개 지자체 조례**

법령 미반영 **상위법령에서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자치법규에 미반영**

현황 법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자격,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묘 설치기간** 등이 **완화**되었으나 이를 **자치법규**에 **미반영**

- 공유재산법령 개정으로 **행정재산 사용·매각·교환**과 관련한 **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도 수행 가능 → 여전히 **법인으로만 제한**(○○시 등 **43개 지자체 조례**, □□군 등 **68개 지자체 규칙**)
- 가축분뇨법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나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이를 **미반영**(☆☆시 등 **9개 지자체 조례**)
- 장사법령 개정으로 **묘지**나 **봉안시설**의 **설치·사용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 → 여전히 **15년으로 제한**(◎◎군 등 **2개 지자체 조례**)

정비 **규제완화**된 법령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 정비완료 : ◎◎군 등 **18개 지자체 조례**

(다) 불합리한 행정절차

행정절차·행정위원회·민원서식을 **법령과 다르게** 운영·적용

법령 미근거 **지자체 관여·감독이 불필요함에도 보고·신고·인가 규정**

현황 주민자율기구 등 지자체의 관여나 감독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보고·신고·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례

- 주민의 **자원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음 → 법령 근거없이 **신설·변경·해산시 신고**하도록 규정(□□구 등 **15개 지자체 조례**)
- 하수도법령에 근거 없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매월 청소·수수료 징수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구 등 **6개 지자체 조례**)
- 농어촌보건특별법에 근거 없이 보건진료소를 지원하는 **주민자치조직**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립시** 지자체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군 등 **11개 자자체 조례**)

정비 법적 근거없이 규정한 **보고·신고·인가 절차** 규정을 **삭제***

* 정비완료 : □□구 등 **9개 지자체 조례**

법령 일탈 **법령규정보다 사전통지·이의제기·자료제출 기한을 축소**

현황 **세무조사 사전통지, 과태료 이의제기, 상인회 자료제출 기한**을 법령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사례

- 지방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시**에는 납세자에게 **15일 전**에 **통지** 필요 → 이보다 짧은 **7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 (☆☆군 **42개 지자체 규칙**)
-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은 **60일 이내**로 규정 → **30일**로 축소 (○○시 등 **266개 지자체 규칙**)
- 전통시장육성법령상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상인회**가 지자체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제출기한이 **20일 이내** → **10일**로 축소 (△△구 등 **16개 지자체 조례**)

정비 축소된 기한을 **법정 기한**으로 **확대***

* 정비완료 : ○○시 등 **198개 지자체 조례·규칙**

법령 일탈 법령규정보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한

현황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을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한적으로 규정한 사례

- 사회보장급여법령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지자체장**이 **상시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 (△△구 등 **8개 지자체 조례**)
- 양성평등기본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 위원회**의 4/10 **이상**을 **여성** 으로 구성해야 함 → 1/3 **이상**으로 축소 (☆☆군 등 **47개 지자체 조례**)
- 민원처리법령상 **민원조정위원회**(개별공무원에 맡기기 부적절한 민원 심의)의 **심의 대상**에 **복합민원**(복수 인허가가 연관되거나 경제적 비용이 큰 민원)이 포함 → 위원회별 자치법규에는 **제외** (○○시 등 **8개 지자체 규칙**)

정비 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을 수정*

* 정비완료 : ☆☆군 등 **23개 지자체 조례**

법령 미반영 변경된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민원서식 운용

현황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호주제 폐지** 등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서식**은 **이전**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별법에 별도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지자체의 각종 **민원서식**(조례·규칙 별지)은 여전히 **주민등록 번호 기재**를 요구 (○○시 등 **13개 지자체 조례**, △△시 등 **75개 지자체 규칙**)
- **호적법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제정으로 **호주·호적** 등의 용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 **민원서식**에서 해당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관련 사항을 **기입** 하도록 규정 (□□시 등 **249개 지자체 조례**, ☆☆군 등 **97개 지자체 규칙** (*1개 지자체에서 다수의 민원서식 오류 조례·규칙 발견)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구분**을 **6등급**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로만 구분 → 관련 민원서식에 미반영 (◎◎시 등 **22개 지자체 규칙**)

정비 변경된 제도·정책에 따라 **민원서식**의 **내용·용어**를 **정정***

* 정비완료 : ○○시 등 **297개 지자체 조례·규칙**

4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

집필자 박정욱 주무관
Tel. 044-200-2406, zsvei@opm.go.kr

가. 추진배경

인증제도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증명하는 절차 및 제도로 '6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90년 이후 기업 지원정책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인증제도가 신규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기업에게는 경쟁력 강화, 품질 우수제품의 시장진출을 지원하였으며,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선택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인증기준과 부처별로 정책실현이라는 명목하에 생겨난 유사·중복 인증 등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며, 기업활동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15여년간 기업의 인증애로 해소를 위해 수 차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인증제도 정비와 인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부 성과도 창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은 인증취득 및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번,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무총리에게 정부인증제도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즉,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특히 더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중 절반이 정부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애로를 호소해 왔고, 정부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나. 추진경과

정부는 먼저 국가기술표준원·조달청·중소기업중앙회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였고, 그 합동점검반을 통하여 중기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560개)에 대한 실태점검 및 기업애로를 직접 조사('20.6.11~7.15) 하였다.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은 인증제도에 대하여 동일제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거나, 인증 실효성이 낮고,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다양한 문제점에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복시험 폐지, 인증절차 개선, 비용부담 완화, 유효기간 확대 등 불합리한 사유로 부담을 초래한 과제(28개)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다만, 기업애로 해소 시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국제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건의과제(21개)와 이미 제도개선된 사항임에도 기업의 미인지로 건의된 애로(31개)에 대해서는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협단체와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인증개선 건의(중기중앙회)	➤	기업애로 조사(국표원·조달청 등)	➤	과제 검토·조정(국조실·부처)
• 정부인증 제도 관련 과도한 부담 호소		• 중기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560개) 의견수렴 및 **80개 기업애로 접수**		• 각 부처별 소관 과제 검토 **국조실 조정 → 28개 과제 개선 추진**

다. 주요 개선사례

정부는 첫째, 성능인증 공장심사 간소화, 특장차 인증기술검토 간소화 등 인증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8개)

주요 사례

▌성능인증 공장심사 간소화(중기부)

기존 성능인증받은 동일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하는 경우에도 신규인증과 동일한 공장심사 진행

개선 이미 성능인증 받은 제품의 규격만 추가되는 경우, **공장심사 면제**(신규인증시의 공장심사 내용은 확인) 또는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개선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고시, '21.6월)

▌특장차 인증 기술검토 간소화(국토부)

기존 특장차는 최초제작자 자동차의 제원이 일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기술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개선 기존의 기술검토 면제 조항*에 '원동기 최고출력', '연료소비율'도 추가하여 기술검토 간소화 추진

* 동일한 형식의 변속기·타이어·림의 변경이나 모델연도 등의 변경 시 기술검토 면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2월)

둘째, 중복인증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등 인증기준을 개선하였다.(4개 과제)

주요 사례

▮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인증규격 개정(산업부)

기존 용접철망이 기본형태인 '레귤러'와 변형된 '디자인'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선지름,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각각 인증을 받는 중복인증 개선 필요

개선 모양이 다르더라도 시험기준이 동일하므로 하나로 통합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KS개정 추진

* KS D 7017 개정 고시 개정('21.6월)

▮ 기계식주차장 종류에 혼합형 주차장 인정(국토부)

기존 승용차 및 SUV 등 차량이 점차 대형화 되고, 전기차 및 수소차 등 크기와 무게가 변화되고 있으나, 기계식주차장은 대형·중형으로만 등록하게 되어 있어 개선 필요

개선 차량의 대형화와 제원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종류에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21.12월)

셋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설계수수료 인하 등을 통하여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10개 과제)

주요 사례

▮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기간 확대(중기부)

기존 성능인증 유효기간도 짧은데, 유효기간 연장도 6개월 단위로 세분화하여 인증받는데 애로

개선 유효기간 연장시 6개월 단위 → 1년 단위로 확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개정('21.6월)

▮ 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행안부)

기존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 최초 심사비는 고시금액의 100%이고, 2회 심사시 50%, 3회 심사시 25%, 4회 이후 10% 부과

개선 개별모델의 설계심사 수수료 감면폭 확대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20.12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이 정부조달에서 인증획득을 요구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조달절차를 일부 개선하였다.(6개 과제)

주요 사례

▌우수조달제품을 위한 유사인증 획득기준 완화(조달청)

기존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유사한 임의인증을 다수 받아야 해 어려움 발생

*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마다 인증마크 표시, 다수 인증 받아야 가점 붙고 납품에 유리

개선 신인도 가점을 항목별 동일한 점수만 반영하여 인증 과다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신인도 항목 가점도 지속적으로 축소 검토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21.12월)

▌조달혁신시제품 지원 횟수 확대(조달청)

기존 혁신시제품 연간 지원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 인증취득 완료시 빠른 재신청 기회 부여 요청

개선 '19년 시범사업 후 '20년 상반기 2회로 확대. '21년부터 연 4회로 추가 확대 예정

*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에 반영('21.12월 시행)

라. 향후계획

앞으로 정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의 미인지로 반복 제기되는 인증관련 건의에 대해서는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협·단체와 간담회, 설명회 및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1차 설명회▐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2차 설명회▐

또한, 정부는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며, 인증제도 관련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공직사회 혁신

1 적극행정 추진

집필자 김용희 사무관
Tel. 044-200-2916, kyh2027@opm.go.kr

가.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1) 추진배경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였으며, 이에 기존의 규정과 관례를 뛰어넘어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 문재인 대통령 "유례없는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비상한 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20.3 국무회의)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하여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국민의 확실한 체감을 제고하는 한편,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규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히 현장의 문제에 대응하는 등 정책 추진을 지원하였다.

(2) 주요내용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은 3대 추진방향 8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

적극행정위원회를 적극행정 쟁점 해결의 중심축으로 적극 활용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더욱 강화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조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 등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최소 격월로 개최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여 각 부처가 긴급한 사안이나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도 면책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한 경우, 감사원(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에 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의 면책효력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가 다양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현재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중요 사안의 경우 이해관계자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운영의 공정성도 함께 높여나간다.

감사보고서의 경우, 감사원과 협의하여 감사원 감사보고서 개선방향과 같이 자체감사 보고서도 위법·부당사항, 처분사항 위주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면책사례 등을 함께 적시하도록 개선하여 감사를 적극행정의 부담이 아니라 지원이 되도록 전환한다.

사전컨설팅의 경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플랫폼(DB)에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사전컨설팅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컨설팅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극행정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지자체의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의 회신기한을 10일로 설정하는 한편, 기존의 유권해석보다 신속한 답변이 가능한 법제처의 행정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나) 국민체감형 적극행정 구현

국민이 적극행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관장 주도하에 對국민 취약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진행과정에서 사전컨설팅·면책 등 적극행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 체감까지 이어지도록 특별관리한다.

작년에 새롭게 구축된 적극행정 대표사이트('적극행정 온(on)')과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 등 유관 사이트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쉽게 적극행정을 이해하고 우수공무원 추천, 소극행정신고 등 적극행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도 확대한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가 긴요한 바,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경제5단체와 협업하여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전국 116곳에 설치하여 기업들이 어디서든 애로를 접수하고 적극행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소통센터에 접수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기업애로 빈발분야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지원한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국조실·행안부 협업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유발하는 소극행정을

특별점검(5~6월·하반기, 수시점검 병행)하고,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소극행정 징계 처분 시 인사조치를 의무화하여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인다. 또한,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처리결과를 각 기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소극행정을 기관 차원에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이 신고되는 경우도 각 기관 감사부서로 배정·처리토록 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적극행정 노력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승진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국민과 직접 만나는 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을 확산시켜 국민 체감을 더욱 확대한다.

(다)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

적극행정 국민 체감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실천 동기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작년 대비 2배 이상 선발하여 그 중 50% 이상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국외훈련 △성과급S)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부서 단위 포상제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면 우대 받는다'는 인식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킨다.

나. 추진성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의 위기 속에서 K-방역의 성과를 적극행정으로 뒷받침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승차·워크스루 진료, 전화상담·처방, 생활치료센터 도입, 공적마스크제도 도입, 진단키트 긴급승인,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기업인 예외적 출입국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규정상의 제약을 적극행정 제도로 극복하거나, 관련 절차를 단축 집행하고, 창의적·혁신적 시도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였다.

일선 현장의 적극행정 제도 활용도 본격화되었다. 중앙부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경우, '19년 18개 기관 42건에 불과했던 정책 심의 건수가 '20년 38개 기관 486건으로 11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사전컨설팅은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할 때 감사부담을 해소하는 제도로 활용되어 활용의사, 활용 후 만족도 등이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의 수용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20년 새롭게 도입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경우 1년간 34개 기관 대상 222건의 법령의견을 평균 5일만에 회신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였다.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었다. '19년 대비 전 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선발인원의 50% 이상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국외훈련 △성과급S)가 부여되었다. 또한, 정부시상 및 적극행정 유공포상이 신설되어 적극행정을 한 공직자에게 성과에 맞는 보상을 부여하였다.

국민참여로 열린 적극행정이 시작되었다. 상·하반기에 실시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 국민과 민간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국민이 직접 우수사례를 평가·선정하였고, 본선에서도 국민투표단 총 2,509명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였다. 적극행정 온라인 플랫폼 통합 개편 후 월평균 접속건수가 4,448건에서 10,178건으로 2.3배 증가하고, 국민추천 건수도 '19년 180건에서 '20년 625건으로 약 3.5배 증가하는 등 국민참여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이에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체감도 역시 노력도, 적정성, 개선 기대감 등 전 분야에서 '19년 대비 개선되었다.

다. 향후 계획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차가 되는 2021년에는 국민체감을 목표로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20년 코로나19 대응 시 적극행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1년에는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공급,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들을 전 기관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적극행정 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를 통해 면책을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안별 컨설팅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조정하고, 부처별 실적·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총리주재 회의체에서 점검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상시 전파하고 연말 적극행정 평가에도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장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적극행정 제도활용 등 적극적 조치 없이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부작위 하는 행위는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한 주요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사례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인센티브 강화, 면책지원, 국민참여 확대 등 적극행정 제도의 내실도 지속적으로 강화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도전적·창의적 기획, 집행 △절차 간소화·합리화 △현장중심 문제해결 △긴급사안은 선조치-후제도보완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 규제입증책임 전환

집필자 양신혜 사무관
Tel. 044-200-2407, shyang010@opm.go.kr

가. 개요

정부는 2019년 1월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때 제기된 기업인의 혁신적인 건의를 수용하여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한 것이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차관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의 체계 구축과 제도의 정착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0년에는 제도의 확산과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하였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행정규칙에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인 규제 정비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입증위원회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나. 추진현황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고 향후 전염병 등 위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를 집중 추진하였다. 국무조정실은 2020년 4월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부처별로 코로나19 과제 등을 포함한 중점과제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각 부처는 적극행정을 통해 우선 조치한 사항 중 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신속한 대응에 걸림이 되는 규제, 기업·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등 총 57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국민생활·경제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여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일제 검토·정비하는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약 1300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2020년에 검토하지 못한 규제 법령들에 대한 정비는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민관협의체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입증위원회에 건의자·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찬·반 의견이 균형있게 논의될 수 있었고, 입증위원회 회의가 형식적인 심의가 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간 접수되었던 경제단체·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소관 부처에서 '수용 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로 답변했던 과제를 입증위원회에서 재검토하였으며, 261건의 과제를 추가로 수용·개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규제입증책임의 전환은 공무원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건의자 및 민간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재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건의자들 역시 토론을 통해 고충과 애로를 상세히 전달할 수 있었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다. 향후계획

2021년에는 규제 관련 법령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고, 입증책임 제도를 공공기관 규정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도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규제혁신 및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5절 규제혁신 소통 확대

1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

집필자 정준우 서기관
Tel. 044-200-2917, wavelen2@opm.go.kr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매주 목요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목요대화는 우리 사회 갈등 해결과 미래 준비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모델이다. 신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관련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 및 D·N·A(데이터·네트워크·AI)를 주제로 목요대화를 개최하였다.

나. 바이오헬스 분야

(1) 제12차 목요대화 '미래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의 도약'

제12차 목요대화는 2020년 7월 16일에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주요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무총리는 "첨단재생의료가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나 고가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용만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기술대 학장)이 맡았다. 한용만 교수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파킨슨병 임상 치료 성공' 등의 사례를 들어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현황을 설명하고,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희귀·난치질환의 치료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첨단재생의료 선도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박소라 교수(인하대 재생의료전략연구소 센터장)이 맡았다. 박소라 교수는 고가의 첨단재생의료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조기술·인프라 등을 혁신하여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산업발전, 전문인력 양성, 환자 안전성 확보 등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를 나누었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15명

- **한용만**(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기술대학장), **박소라**(인하대 재생의료전략연구소 센터장), **박병주**(서울대 예방의학 교수), **김소윤**(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유승권**(한국줄기세포학회장), **이병건**(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장), **양윤선**(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장)
- **정춘숙**(국회의원), **박능후**(복지부 장관), **정승일**(산업부 차관), **이의경**(식약처장), **김성수**(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 제27차 목요대화 '줄기세포·유전자 치료 환자접근성 확대방안 모색'

제27차 목요대화는 2020년 12월 3일에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목요대화는 지난 제12차 목요대화의 후속조치로, 2020년 8월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화모습과 동시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소라 교수(인하대 재생의료전략연구소 센터장)는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위험성이 낮은 첨단재생의료를 허용하는 일본의 '자유진료' 제도 등 해외의 첨단재생의료제도를 소개하며, ①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확대 및 저소득층 치료비용 지원을 위한 공익펀드 조성, ②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한 제한적인 시술 허용, ③임상연구와 의약품 개발과정 연계 등 환자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정부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희귀·난치병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 철저한 심의는 물론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차례 목요대화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복지부는 2021년 1월 21일 「제1차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1~'25)」를 수립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8명

- **박소라**(인하대 의대 교수), **윤원수**(티앤알바이오팹 대표이사), **이동근**(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이병건**(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장), **정성철**(이화여대 의대 교수)
-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식약처장)

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

집필자 **류준호 사무관**
Tel. 044-200-2437, riswell@opm.go.kr

제24차 목요대화 'D·N·A 시대 변화와 갈등, 우리의 대응은?'

제24차 목요대화는 2020년 11월 12일에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데이터·네트워크·AI 관련 전문가 및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반산업인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부작용에 대해 전망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국무총리는 "인간을 위한,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D·N·A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존 산업과의 갈등, 개인정보보호 문제, 일자리 감소, 양극화와 차별" 등의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대전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First Mover로 전환기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종관 교수(성균관대 철학과)는 'D·N·A시대의 변화와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미래에 대한 논의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기계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일을 통해 가치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형태로 발전해야 하며, 권력자 주도의 데이터 편향성이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비판할 수 있는 민주사회 기본원리와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발제하였다.

네이버·카카오 등 업계에서는 정부의 분명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와 데이터 전문인력 육성을 요청하였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관련 교육의 필요성과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국무총리는 D·N·A 시대로의 전환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잉규제,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제도나 기준의 불확실성이 큰 분야는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D·N·A 산업과 같은 신산업에는 '先허용-後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목요대화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조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2월 10일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1~'23)」을 수립·발표하였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0년 12월 24일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9명

- **한성숙**(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카카오 대표이사), **이상직**(태평양 변호사), **이종관**(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차상균**(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
-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국무총리비서실장)

2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

집필자 박도연 사무관
Tel. 02-6050-3293, doyeonpark@korea.kr

가. 추진배경

규제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범 정부차원의 강력한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주재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규제의 대상인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를 추진하고 지역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회의체로 행정각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관련부처가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진솔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현장대화는 먼저 사전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 및 기관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제와 관련된 기업인, 기관 종사자, 연구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현장대화에서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국무총리, 관계부처 차관 등이 즉시 답변 가능한 사항은 설명드리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제1차, 제2차 현장대화, 2018년에는 제3차, 제4차 현장대화를 실시한데 이어 2020년에는 제5차 현장대화를 실시하였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개요

제5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는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대표기업인 삼보모터스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개최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내 일반 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된 대구 성서산업단지(삼보모터스)의 기획전시관 방문과 '제5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동식 협동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발표되었으며,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한화기계 등 국내 로봇 대기업 4곳 및 협력기업과 로봇 연구개발(R&D)분야의 기업인·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로봇 융·복합 신산업 시장 창출과 확산을 위한 상생 협력을 약속하였다.

(1) 일시·장소

• '20. 11. 28(토), 대구기계부품연구원(대강당), 성서산업단지(삼보모터스)

(2)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
• **(민간)** 의료R&D지구 입주기업협의회장, 삼보모터스 그룹 대표이사, 현대로보틱스(주) 대표이사 등 8명

▎이동식 협동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로봇시연 참관 ▎

현장대화 회의는 성서산업단지 내 삼보모터스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중의 하나로 노후 산업단지를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첨단산업단지로 혁신하는 '스마트그린산단'로 선정된 성서산업단지의 스마트그린화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현장대화에 참석한 입주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차관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삼보모터스 자율주행차 시승 ▎

▎제5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

3 신산업 주요분야 쟁점규제 릴레이 토론(4차로 회의)

가. 회의 개요

집필자 정대현 사무관
Tel. 044-200-2415, fiat2002@korea.kr

국무조정실은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신산업 규제 관련 핵심쟁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4차로 회의*)를 신설하였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총리실/민/관/학 4개 분야 참여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신산업 규제 이슈에 대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릴레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0월 13일 제1차 회의인 의료·국세 등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다양한 쟁점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아래 두 건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나. 의료·국세 등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집필자 류준호 사무관
Tel. 044-200-2437, riswell@opm.go.kr

제1차 4차로 회의는 2020년 10월 13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료·국세 데이터 활용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전자정부 인프라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제도적 요인으로 공공데이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 활용이 제약되어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개정되어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 산업과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먼저 공공의료 데이터와 관련하여 복지부가 2020년 9월 25일에 발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추가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국세 데이터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2020년 6월 30일에 발표한 '국세정보 공개 확대방안'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과 민간에서 느끼는 국세 데이터 활용 관련 장애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공공데이터 전반에 대해서는 비공개 공공데이터 중 산업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는 것과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개선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국무조정실장은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책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논의사항 중 공공의료 및 국세 데이터 관련 사안은 복지부·국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여 조속히 발표할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5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데이터 활용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021년 1월 28일에 발표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결합 발전방안 등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 참석자 : 국무조정실장 포함 13명

- **김병필**(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고학수**(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유소영**(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부장), **조인산**(에비드넷 대표), **이욱재**(KCB 미래사업부문장), **김도현**(베가스 대표이사), **김진경**(빅밸류 대표이사)
- **강도태**(복지부 2차관), **최영진**(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김정원**(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장수완**(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 **김진현**(국세청 기획조정관)

다.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집필자 김영호 사무관
Tel. 044-200-2666, kj335566@korea.kr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년 7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를 허용하였고('18.12), 그린벨트내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설치를 허용하였다('20.2).

하지만, 그린벨트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수소충전소 업계에서 허용 요청이 있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 **(택시공영 차고지 부대시설 범위)** 사무실,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대기실, **LPG 충전소**로 한정
- **(전세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 부대시설 범위)** 사무실,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대기실,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로 한정

'20.10.27.(화) 국무조정실장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회의에서는 관계부처(국토부, 산업부, 환경부)가 참석한 가운데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내 화물차 차고지 등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함으로써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21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4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집필자 박도연 사무관
Tel. 02-6050-3293, doyeonpark@korea.kr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추진단은 규제혁신에 있어 민과 관이 협력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 연구원장과 국무조정실장,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2019년 2월 신설하였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례적(반기별)으로 개최되는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는 경제계와 정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다.

나.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제3차 간담회는 2020년 7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조정실장이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으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공유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 쌍방향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1) 일시·장소

- '20. 7. 7(화),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

(2) 참석자

- **(정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옴부즈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 **(민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등

(3) 주요 내용

-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민관협업 추진계획
-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

다. 제4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제4차 간담회는 2020년 12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연구원 조재한 혁신성장정책실장의 'Next Normal 시대 GVC 개편 전망과 규제혁신 제언'을 바탕으로, 'GVC 허브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주요 규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1) 일시·장소

- '20. 12. 7(월),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

(2) 참석자

- **(정부)**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
- **(민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산업연구원 원장, 법제연구원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등

(3) 주요 내용

- 2020년 규제혁신 추진현황
-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정부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 및 규제개선 논의

5 기업·지자체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집필자 박도연 사무관
Tel. 02-6050-3293, doyeonpark@korea.kr

집필자 이영진 사무관
Tel. 02-6050-3393, caesar9@korea.kr

집필자 황혜정 사무관
Tel. 02-6050-3364, sister2@gg.go.kr

(1) 개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13년 9월 출범 이래 기업과 소상공인,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에서 애로로 작용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지자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창출,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규제혁신 추진성과 발표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에게 알려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다.

(2) 현장건의 규제혁신 실적 및 사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출범 이후('13.9~'20.12) 총 10,650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건의과제 중 7,389건을 처리 완료하고, 이 중 2,705건(36.6%)을 개선하였다.

(단위: 건)

계(누적)	일반민원 (이첩)	처 리 결 과			
		소계	개선(기시행)	중장기검토	불수용
10,650	3,261	7,389	2,705 (1,238)	903	3,781
		100%	36.6% (16.8%)	12.2%	51.2%

분야별로는 영업 382건(14.1%), 국민불편 287건(10.6%), 위생안전 219건(8.1%), 환경 236건(8.7%), 기술인증 167건(6.2%), 공장입지 162건(6.0%), 자금·금융 154건(5.7%), 재정·세제 145건(5.4%), 인력 139건(5.1%), 판로조달 134건(5.0%) 등을 개선하였다.

(단위: 건)

계	영업	국민 불편	위생 안전	환경	기술 인증	공장 입지	자금 금융	재정 세제	인력	판로 조달	창업	교육 의무	대중소 상생	기타
2,705	382	287	219	236	167	162	154	145	139	134	48	40	39	553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414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 332건, 산업부 226건, 식약처 202건, 고용부 196건, 금융위 133건, 중기부 132건, 복지부 124건 순으로 개선하였다.

(단위 : 건)

계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식약처	중기부	금융위	복지부	기타
2,705	414	332	226	202	196	133	132	124	946

2020년에는 총 1,385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801건을 처리 완료하고, 이 중 328건(40.9%)을 개선하였다.

(단위 : 건)

계	일반민원(이첩)	처 리 결 과			
		소계	개선(기시행)	중장기검토	불수용
1,385	584	801	328(124)	90	383
		100%	40.9% (15.5%)	11.2%	47.8%

① 계란이력제(농식품부)와 식용란표시기준(식약처)의 통합 운영

현행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에 따라 국민 먹거리인 계란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각자 다른 방법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이중관리로 인한 생산·유통과정의 비용발생이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원인으로 작용

* 계란이력번호(포장지, 12자리) : 축종(1) + 이력번호발급일(4) + 이력번호표시의무자(3) + 일련번호(4)
** 산란일자표시제(달걀껍데기, 10자리) : 산란일자(4) + 농장고유번호(5) + 사육방식(1)

개선 식약처와 농식품부와의 여러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계란이력번호를 포장지에 표기하는 대신 달걀껍데기에 표시정보를 일원화하여 이력시스템에 등록하여 중복규제 개선(단, 선별포장업체와 식용란수집판매상의 신고의무는 현행유지)「축산물이력법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 '21.12월)

☞ 계란 소비자에게는 안심먹거리 제공하는 동시에 생산자는 중복규제 탈피로 경영애로 해소로 계란시장가격의 안정화 도모

② 납세병마개 표시 제한 완화

현행 현재 주세 보전을 위해 출고되는 맥주 등의 용기에 납세증명 표지인 납세병마개에 상품명을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납세병마개에 상품명이 표시되다 보니 다품종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업체는 납세병마개 제조업체의 최소주문 수량과 관련하여 필요 수량 이상으로 병마개를 주문해야 하는 부담

개선 맥주·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병마개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납세병마개 표시사항 개선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고시」 및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 개정 (국세청, '21.7월)

☞ 맥주·탁주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병마개의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납세병마개 표시사항 간소화

③ 어린이집 현원감소에 따른 유휴공간의 활용기준 완화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지침에서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서는 다른 시설의 입지를 엄격히 금지하여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 건물의 유휴공간의 활용도 제한하고 있음*

* 2019년말 보육통계에 의하면 전국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80.9%에 불과

개선 보육목적 용도와 유사한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어린이집 유휴공간내 설치를 허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복지부, '20.9월)

☞ 어린이집을 설치한 건물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해결, 보육, 부모교육, 지역사회복지의 허브로 활용

④ 레미콘공장의 먼지저감 시설물 활용시 대기오염 배출부담 경감 인정

현행 아스콘(asphalt concrete)공장에서는 먼지방지시설을 활용하여 먼지를 회수하고 재이용하게 되는 경우 먼지저감 활동으로 산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담을 경감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스콘 제조시설과 공정이 매우 유사한 레미콘(ready-mixed concrete)공장의 경우 먼지저감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담이 큼

개선 먼지 발생량 저감 대상 시설을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시설 등)로 확대하여, 레미콘 제조시설도 아스콘과 마찬가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됨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개정 (환경부, '20.8월)

☞ 먼지 발생량 저감시설 인정기준이 개선으로 전국 레미콘 사업장(864개) 중 고시 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 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게 되어 레미콘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담이 크게 경감

⑤ 무정차 주행 영상촬영 시설물 점검기술 도입

현행 산업단지,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을 임시폐쇄 후 작업자가 투입되어 육안으로 점검하는데, 이는 정확한 점검데이터가 남지 않을뿐더러 작업자의 안전의 큰 위협을 미침

개선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점검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이 가능하도록 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개정 (국토부, '21.1월)

☞ 무정차 주행 및 고해상도·정밀영상 촬영 시스템을 도입을 통한 산업단지, 교량, 터널 등의 시설점검 정말도 향상과 산업 안전확보

⑥ 생산녹지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특례 적용 확대

현행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생산된 지역내 농수산물에 한해서만 가공·처리 시설의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

개선 건폐율 완화 대상 시설을 지역내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시설까지 확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부, '19.12월)

☞ 농·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특별·광역시 또는 시·군 생산 농수산물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써 인접 시·군의 생산 농수산물로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⑦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내 개발사업시 문화재청과의 협의대상 사업면적의 조정

현행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개발 사업시 사업면적이 2천㎡ 이상일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규정
→ 협의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개발사업 지연 및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짐

개선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하는 사업면적을 상향 조정 (2천㎡ → 4천㎡)

* 소규모 건설공사 시행자의 사업시행 편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위임 범위 확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문화재청, '20. 3월)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중·소규모 개발사업(4천㎡ 미만)의 경우 문화재청과의 협의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기업 및 지자체의 행정 효율 증대

⑧ 공중위생영업 승계시 선량한 영업 양수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 폐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가 종전의 공중위생영업자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 행정제재처분을 승계 받는 불이익이 발생*

*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관리법의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을 승계받은 선량한 양수인 등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

개선 종전의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선량한 양수인 등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영업자의 경우도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완료」 개정 (복지부, '19.12월)

☞ 선량한 공중위생영업 양수인이 알지 못한 채 승계된 종전 영업자의 행정재제 처분 효과를 차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병급 가능

현행 한부모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이더라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만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인 경우)의 병급이 제한됨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도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병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급대상도 만 24세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여가부, '20.10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정책 사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생계급여 한부모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⑩ 수출입물품 세관 검사시 관세사의 입회(검사준비) 폐지

현행 관세법에 따라 세관 공무원은 수출·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시 관세사가 검사준비 및 입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관세사는 물품검사 준비와 입회를 위해 인력과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관세사의 업무 효율 및 기업인력이 낭비되는 문제점 발생

개선 관세사의 입회 없이,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협조하에 검사 가능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20.12월)

☞ 물품검사 방법이 전국 세관에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관세사의 입회 및 검사 준비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관세 업무 효율 및 기업 경쟁력 강화

⑪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재질을 위조방지 기능이 포함된 PVC로 일원화하여 발급

현행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종이면허증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종이면허증은 쉽게 훼손되며 위·변조에 취약

* 자동차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재질을 PVC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어 위·변조 등 예방

개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도 품질향상과 민원편익을 위해 PVC로 일원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제 제37호 서식」 개정 (국토부, '20. 3월)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품질향상과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등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면허증 위·변조 등의 문제를 예방

⑫ 모바일을 통한 주류의 스마트오더(온라인 구매 후 오프라인 대면 수령) 서비스 허용

현행 고객이 모바일 앱이나 웹 페이지를 통해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주류에 적용할 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해당 되어 서비스 불가

개선 주류 소매업자가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자기의 영업장 안에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인도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주류의 온라인 구매 후 오프라인 대면 수령)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 (국세청, '20.4월)

☞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으로 수제맥주 판매업소의 판매채널 확대와 주류판매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의 경우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단은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최대한 직접 청취하기 위해 기업 현장 중심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핵심 주력업종인 IT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 장치산업(철강·비철금속·정유·석유화학), 소비재 및 기간산업(기계·조선·섬유·화장품) 등 총 3차에 걸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비롯해 업종별 13개 분야로 분류한 307개 협·단체와의 기업 현장소통인 '분야별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과제개선을 위한 의견 교류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기업 애로에 대한 일선 현장을 방문활동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대면 회의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비대면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내실있는 기업 건의를 돕고 관계부처와의 이해 괴리를 좁힘으로써 협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규제개선을 이끌도록 기여하였다.

주력업종 간담회와 분야별 간담회 외에도 추진단은 전국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한상공회의소(70여개 지역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산업단지공단·대한건설협회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있으며, 현장건의 규제혁신 신고전화(☏02-6050-3366)를 운영하여 기업과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주요 개선사례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가)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최근 국가 주요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진단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 철강·비철금속·정유·석유화학, 기계·조선·섬유·화장품 등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 애로를 목적으로 주력업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업종의 인허가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과정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참석한 관련 협회·단체와 기업인들은 개선 의견을 전달하고, 관련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해법을 논의하였다.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규제개선 간담회

수출규제와 화평법, 화관법등 환경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의 규제개선을 위해 반도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기업인들이 만나 IT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산업부와 환경부의 중복규제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절차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중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하고, 신성장분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의견도 전달되었다.

제1차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 5. 15(금),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

▸ **주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자**
- **(정부)** 규제조정실장,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주력업종 관련 산업부 담당국장, 환경부, 고용부 등 건의과제 소관부처 담당자
- **(단체·기업)**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반도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협·단체 소속 건의기업 등 20인 내외

▸ **주요내용**
- 화학물질 중복규제 완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간 단축, 선택근로제 개선 등
- 신성장분야 세액공제 확대 등 IT산업 경쟁력 지원방안 논의

철강·비철금속·정유·석유화학 등 장치산업 규제개선 간담회

최근 경기침체와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 철강업종과, 원유 재고 증가로 인한 유가하락과 석유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철강·비철금속·정유·석유화학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 참석한 기업들과 부처 관계자들은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완화, 제철소 가스배출 설비 적용 유연화 등 국내외 경쟁에서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 장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 6. 26(금),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

▸ **주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자**
- **(정부)** 규제조정실장,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주력업종 관련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등 건의과제 소관부처 담당자
- **(단체·기업)**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협·단체 소속 건의기업 등 10인 내외

▸ **주요내용**
- 국내외 경쟁에서 공정한 조세부담 환경을 조성 장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규제완화, 제철소 잔류가스 배출설비의 규제적용 대상 유연화

기계·조선·섬유·화장품 등 소비재 및 기간산업 규제개선 간담회

시장변화에 민감한 소비재 산업인 화장품 산업은 복잡한 화장품 심사절차와 승인기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선박 및 기계와 같은 기간산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주경쟁 심화, 무리한 수주로 인한 납기지연·채산성 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기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 규제담당 공무원들과 기계·조선·섬유·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업계의 규제애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3차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 12. 22(화),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

▸ **주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자**
- **(정부)** 규제조정실장,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주력업종 관련 식약처, 해수부, 방위사업청 등 건의과제 소관부처 담당자
- **(단체·기업)**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협·단체 소속 건의기업 등 15인 내외

▸ **주요내용**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함정 시운전보험제도 개선
- 건설기계 수급제도 개선,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확대 등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나) 분야별 규제개선 간담회

추진단은 반도체산업, 조선업, 철강, 석유 산업 등의 핵심 주력업종 이외에도 현장과의 적극 소통 및 업종별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업종별 13개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총 305개 주요 협·단체를 선정하여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였다.

13개 분야의 다양한 업종별 기업과 현장소통을 통하여, 산업 전반의 규제 상황을 파악하고,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핵심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신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규제혁신과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분야별 주요 협·단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

① 의약·바이오·화장품·식품(31개)
② 금융·보험·핀테크(6개)
③ 국토·건설·주택(21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35개)
⑤ 중소·소상공인(36개)
⑥ 공장·입지·산단·테크노파크(5개)
⑦ 농림·수산·해양(33개)
⑧ 모빌리티(13개)
⑨ 에너지·소재(52개)
⑩ 유통·물류·무역·통관(17개)
⑪ 사회·문화·복지(11개)
⑫ 환경(17개)
⑬ 기타(28개)

① 의약·바이오·화장품·식품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개인의료정보의 연구목적 활용 확대	인간대상 연구의 서면동의 면제 규정이 불명확하여 개인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기 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적절한 동의절차에 의해 수집되고 익명화 및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이용은 허용	생명윤리법 상 해석을 제공시에 IRB 심의 및 개별 연구대상자의 동의 확보 등 생명윤리법 관련 조항의 의무가 면제되도록 추진 다만, 최근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면제 규정에 불명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권해석지침」마련 ('20. 8월)	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대리신청 시 요건완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대리 신청시 환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하여 의식불명 환자의 신분증이 분실된 경우 진료기록 열람에 어려움 발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대리 신청시 환자 신분증 사본 불필요 하게 되어 대리 신청 절차 간소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1. 6월)	식약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활성화 건의	관광특구·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을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옥외영업(제한적 허용)	식약처장·지자체장이 따로 정하여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안전기준을 갖추어 옥외영업장으로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등 경제활성화 증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0. 12월)	식약처

② 금융·보험·핀테크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휴면신용카드 통지수단 확대	휴면신용카드로 전환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	휴면신용카드 통지수단으로 서면, 전화 외에 전자문서 등 새로운 고지수단 추가로 소비자의 편의 및 고지비용 부담 경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21.6월)	금융위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규제 개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징구 실무상 금융소비자의 신규계좌 개설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신규계좌 개설에 대한 사실상 제한	은행권 자율로 금융거래목적확인 증빙서류 제출없이 계좌개설과 과도한 금융거래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규제개선 방안 마련 권고 ('20. 6월)	금융위 금감원

③ 국토·건설·주택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산림조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수행을 위한 건설업 등록 허용	산림조합(중앙회)는 현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음	산림사업 내 건축공사의 경우로 범위를 한정, 산림조합(중앙회)의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하여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사업의 안정적 수행으로 산주·임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효율적 운영 가능 「산림자원법」 개정 ('21.6월)	행안부
도시개발사업지내 생활SOC 시설 지자체 무상귀속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형 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준공 토지를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매각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여도 해당 개발사업지 내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한 생활 SOC 시설의 설치 사용(재투자)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설치의 어려움이 있음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 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일부를 생활SOC 시설 설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도록 개정으로 생활 SOC 시설의 인근 지역 생활권 공동 사용으로 공공기관 사업시행자의 공유(공공)가치 실현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21.6월)	국토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내 입주업종 완화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내 입주가능업종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 5 '첨단업종'과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음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내 입주가능업종을 허용업종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여 입주허용하도록 완화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20.11월)	과기부
라디오 재난방송 실시기준 합리화 요청	TV는 프로그램 시청과 동시에 자막, 화면 분할 등으로 방송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재난방송 시행이 가능하나, 청취형 매체인 라디오는 TV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방송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관계부처,방송사,시청자 단체,전문가 등으로 '제도개선 연구반' 구성하고 관계부처·방송사·전문가·청취자 등의 의견을 수렴 「재난방송 실시기준」 개정 ('21.5월)	방통위

⑤ 중소·소상공인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법정출연금 요율 현실화	지역신보의 보증규모는 확대 중이나, 주요한 보증재원인 금융기관 출연금의 경우 법정출연금보다 협의를 통한 임의출연금의 비중이 더 큰 기형적인 형태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확대 경기둔화,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보증) 지원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20.12월)	중기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개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합추천 소상공인 수의계약 최대한도는 5천만 원인데, 수의계약 한도로 인해 공공기관은 추후 감사부담 우려로 수의계약 제도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 상황	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합추천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기업까지 포함하여 수의계약 한도 함께 상향(5천만 원 → 1억 원) 조정으로 협동조합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 기여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20. 6월)	중기부

⑥ 기타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화학물질관리법상 중복 자료 제출 등 개선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한 제출요구자료는 시행규칙에 의거한 통계조사·배출량조사와 실적보고등 제출요구자료 중복되어 산업계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	연구용역 및 의견 수렴을 거쳐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경우 중복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 실적보고로 제출하도록 개선하여 산업계 부담 완화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 시행규칙 개정 ('21.6월)	환경부
외국적선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	국내 무역항에서 외국적선에 국산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되지 않음	선용품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중이며, 관계기관(기재부, 관세청,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 후 법령 개정 예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21.12월)	산업부

(4) 지자체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단은 규제혁신에 대한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규제개혁위원장, 국무1차장 등이 직접 찾아가는 지자체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이하 '지역 현장간담회')을 개최하고 있다.

2020년에는 경기도 기초지자체를 비롯한 울산, 대구, 강원, 충북, 광주, 충남, 경북, 경남, 대전, 인천 등 총 11개 시도 지역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규제애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앞장섰다.

지역별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기업인·주민이 참석하여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를 현장에서 발언하고, 관계부처의 국·과장이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동시에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해 봄으로써 규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추진단은 지자체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과제해결을 독려하고 추진 시기를 앞당기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였으며, 나아가 'Follow-up(후속조치) 간담회'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역의 기업과 주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지자체의 규제개선 의지를 고무하였다.

지역 현장간담회 건의 주요 개선사례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조달청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대한 건의	조달청 검사기준 상 납품요구 누적금액이 품명별로 1억~3억 초과할 경우 실시 → 건설자재 시장물가 상승으로 조달청 검사 시기 조기 도래	검사 대상 품명별 최초기준금액이 증액 재조정되어 기업의 검사비용 부담 완화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개정('20.12)	조달청
화학물질 취급시설 준비기간 추가부여 및 처벌유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거나, 소규모 업체에 대한 준비 기간 추가 부여	코로나 지속 확산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고려, 중소기업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 연장 「정기검사 추진방안 알림」 개정 ('20.9월)	환경부
건축물 냉난방용 냉동제조 허가시설 규제 완화	폭발·중독의 위험이 없는 비가연성·비독성 가스를 이용한 건축물 냉·난방용 냉동제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	동일 건축물 내 설치되는 각각의 건축물 냉·난방용 냉동제조 시설 총량이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규모인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적용되지 않도록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 ('20.9월)	교육부
연구개발특구 도시공원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도시공원 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만 설치 허용하며,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공원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불가	연구개발특구 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지방 정주여건 개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1.6월)	국토부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로상작업구 관리 제도개선	스마트시티 도시화에 적합한 도로상의 맨홀 뚜껑 재질을 전파 투과가 가능한 비철강 재질을 사용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작업구 뚜껑 예시에 신소재(비철금속, 플라스틱류, 유리섬유류)를 추가함으로써 현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소재로 제작된 제품 사용 유도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 ('21.6월)	국토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범위 확대 개선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내국인 투숙 허용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영업 허용을 위해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를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관광진흥법」 개정 ('21.6월)	문체부
광산업집적화단지 내 연관 업종 입주 제한 완화	광주 광산업집적화단지에서 광융합조명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나 광산업 연관 일반 제조업종이 입주제한업종으로 지정, 단지 내 공장등록이 불가하므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내 입주업종 추가	광융합산업 관련 업종 및 이와 관련된 부분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특구 관리계획 변경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20.4월)	과기정통부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PVC로 일원화 발급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품질향상과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면허증을 PVC재질로 일원화하여 발급	2019년부터 적성검사제도 도입으로 면허증 발급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도 PVC재질의 면허증을 선호함에 따라 면허증 품질향상과 민원편익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3월)	국토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대리신청 시 요건 완화	실손의료보험 청구시 현행 직접 서류 제출이 요구되고 있는데, '청구인'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을 통한 제출서류의 지급 청구의 전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시 보험사가 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청구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심의중('20.7월)	금융위
미성년자 인감발급 인정 신분증 확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소지한 만 17세이상 미성년자는 본인 인감 발급 가능하도록 사무편람 개정	만17세이상 미성년자의 여권으로도 본인 인감 증명서 발급 가능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20.9월)	행안부

▌경기지역 1차(5권역) 순회간담회('20.6.4) ▌

▌경기지역 3차(1권역) 순회간담회('20.7.21) ▌

▌광주지역 간담회('20.10.29) ▌

03

규제개혁 법령·제도 운영

국민의 생각이 모여

규제 개혁을 이루다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140
제2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혁신 141
제3절 일몰규제 정비 161
제4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169
제5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171
제6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180

03

규제개혁 법령·제도 운영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1 입법 연혁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2월 28일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정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신설강화 규제 심사, 기존규제 정비 등 현재의 규제시스템 체계의 근간이 완성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13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21대 국회에 정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2 2020년 개정사항

정부는 규제 품질을 제고하고 그간 행정규제기본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20년 8월 제출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등록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요구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규제정보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규제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명문화하였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제2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혁신

집필자 민자영 사무관
Tel. 044-200-2634, jymin@korea.kr

1 규제개혁신문고 개요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국민건의 창구이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3대 분야 중 '민생불편'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국민소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에서 손쉽게 규제개선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각 부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등을 통한 규제건의도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일괄 접수해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3단계 검토과정)

규제개혁신문고 시스템의 핵심은 3단계 검토과정에 있다. '부처답변 → 소명 → 개선권고' 3단계 검토과정을 통해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규제건의가 사장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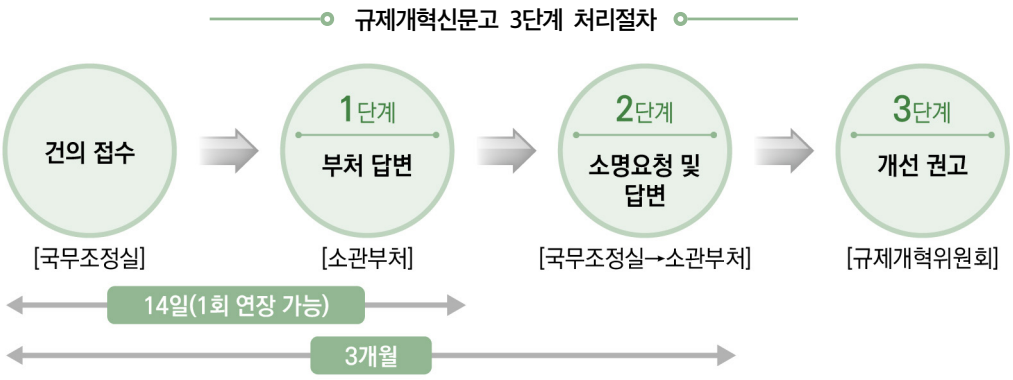

1단계 소관부처는 규제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건의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책임자 실명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1단계 국무조정실은 답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부처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3단계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처가 규제존치로 소명한 건의에 대하여 타당성 및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을 권고한다.

소명제도 소명제도는 소관부처가 규제건의를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소명통보를 받은 소관부처는 심층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소명하여야 하며 규제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강화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를 개편하여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제도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다.

구분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
① 국민 권리	규제의견 제출서 (소극적 권리)	⇨	규제정비 요청제 (정부 성실답변 의무 → 적극적 권리)
② 건의 창구	비전용·비독립 홈페이지	⇨	전용·독립 홈페이지 (www.sinmungo.go.kr)
③ 건의 경로	분산·다원화 (부처·지자체별 개별 접수)	⇨	통합·일원화 (부처·지자체 연계 → 접수창구 단일화)
④ 지자체 건의	전담창구 부재 (지자체 상시·즉시적 건의 불가)	⇨	전담창구 마련 (지자체 상시·즉시적 건의 가능)

❶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정비 요청제'를 도입하였다.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정부의 성실 답변·소명 의무를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 기반을 조성하였다.

❷ 종전에는 규제정보포털의 일부로 운영되었으나, 규제개혁신문고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민의 규제건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❸ 다원화된 국민 및 지자체 규제건의 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일원화하여 규제건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❹ 지자체 건의 → 규제개혁신문고 2020년 2월에는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내에 지자체 건의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지자체의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에 즉각적·상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 개편 화면

4 2020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2014년 3월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이후 2020년말까지 총 21,709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처리하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총 6,232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처리하였다.

2020년에는 총 1,750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건의를 접수·처리하였다.

2020년 규제건의 처리현황

규제 건의	처리	전부 수용	일부 수용	대안 제시	기시행	불수용	중장기 검토
1,750	1,750	171	131	1	232	1,128	87

또한, 소관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건의 중 19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건의로 판단하여 소관부처에 소명요청을 함으로써 소관부처가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2020년 규제건의 1,750건을 규제대상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 건의가 66.9%로 가장 많았고, ▲기업 건의 14% ▲자영업 건의 13% ▲기타 건의 6% 순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애로 등 민생분야 관련 건의가 약 80%를 차지한다.

수용된 규제건의 303건을 규제대상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 건의가 54.4%로 가장 많았고, ▲기업 건의 20.5% ▲자영업 건의 18.2% ▲기타 6.9% 순이었다.

5 주요 규제 개선 사례

가. 국민불편 분야

(1) 자가용 캠핑카대상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 (국토부)

기존 '자가용 승용차·승합차·화물차(2.5톤 미만)'는 차고지 의무가 없으나,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특수자동차'로 분류 → 차고지 의무 발생
- '자가용 화물차(2.5톤 이상)', '영업용차', '특수 자동차*' 등 대상 원칙적으로 차고지 확보 의무화(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목적)

* ① 견인용 ② 구난용 ③ 기타 특수용도형(캠핑카 포함)으로 구분

- 차고지 확보의무 대상차량은 신규등록·변경·이전등록시 차고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

문제점 '자가용 승용차·승합차·화물차(2.5톤 미만)'는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 용도 및 외형자체 변화는 없음에도 차고지 의무규제 적용
- 높아지는 캠핑 수요에 따라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추진 중인 캠핑카 튜닝·이용 활성화 정책과도 배치

개선 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승용차·승합차·화물차(2.5톤 미만))대상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 (다만, 총중량 기준 3.5톤 이하인 차량 대상)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20.10월, 완료)

☞ 튜닝한 자가용 캠핑카 차량소유주의 불편해소 및 국민 캠핑수요에 부응한 캠핑카 튜닝·이용 활성화 기대

(2)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 (식약처)

기존 식품은 원칙적으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만을 제품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하나, 현장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폐기대상으로 오인(→ 음식품 폐기물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개선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섭취 정보 제공 확대(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

* 유통기한 : 식품을 슈퍼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

** 소비기한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기한(일종의 식품의 수명, EU·미국·일본 등에서 이미 운영 중)

* 「식품표시광고법」 개정('20.12월)

☞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음식물 폐기물 감소

(3)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통지방법 확대 (교육부)

기존 읍·면·동의 장은 입학 전년도 12월 20일까지 관내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 필요
- 다른 고지서와 달리 취학통지서는 통장 통한 인편 또는 등기로만 발급 → 보호자와 아동의 거주지가 다른 조부모 가정 등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 국민 불편 초래

개선 지자체가 취학통지서를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온라인 방법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통지방법

확대 추진 (인편 또는 등기 + 온라인 발급·통지)

*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대상 통지방법 확대」 행정조치 추진 ('21.11월)

☞ 기술발달과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맞춤형 다양한 행정 편의제공 확대

※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규모('20년) : 약 45만명

(4)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예약 변경·취소시 위약금 부담 완화 (환경부)

기존 국립공원내 숙박시설 예약 변경·취소시 숙박 예정일 10일前부터 예약금의 10%~80% 수준*의 위약금 부과

*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하여 적용

- 위약금 미부과 조건을 '천재지변'으로 한정하여, 감염병을 포함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예약변경시에도 위약금 부과

개선 위약금 부과기준 및 금액부담을 완화하고(10일전, 최대 80% → 5일전, 최대 50% 부과) , 천재지변 이외 감염병을 포함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예약 변경·취소 시에도 위약금 미부과

* 「국립공원 수입징수규칙」 개정('20.8월, 완료)

☞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의 위약금 규정을 완화하여 국민 편익 증진

(5) 감정평가사 시험 '미성년자 응시제한' 규제 폐지 (국토부)

기존 전문자격사 분야인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 응시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규정 →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자체가 불가

* 최종 시험발표일 기준, 19세 미만

개선 전문업무 수행을 위한 감정평가사 등록은 성년 이후로 유지하되, 자격시험응시 자체가 금지되었던 미성년자에 대한 응시제한 규제폐지(「자격 취득」과 「업무 등록」구분)

* 「감정평가법」 개정('21.6월)

☞ 전문자격증 응시 자체를 금지해온 연령 차별 해소를 통해 자격 취득과 업무 등록이 분리되는 여타 전문자격증 자격시험에도 관련 제도개선 확산의 계기 마련

※ 감정평가사 등록현황('20년) : 4,216명

(6)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 범위 확대 추진 (농식품부)

기존 반려동물이 죽어서 허가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 반려동물 수요 등의 증가로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 이외에는 동물장묘시설 이용 불가

*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총 6종)

개선 동물장묘시설 이용대상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추진(다만, 멸종위기종 또는 야생동물 등은 제한)

* 「동물보호법」 개정 ('21.6월)

☞ 국내 반려문화 성숙에 따라 높아진 반려동물 사후처리 관련 동물장묘이용시설 수요에 대응

(7)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토록 개선 (행안부)

기존 방문 전입신고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 후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09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대부분 전입신고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국민불편 가중

개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신거주지 주민센터 → 전국 주민센터)

* 「주민등록법」 개정('21.11월)

☞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행정 편의성 제고

※ 전입신고 형태('19년) : 온라인 1,256,381건(21%), 주민센터 방문 4,682,728건(79%)

(8)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 대상 확대 (고용부)

기존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일부 비용(월세)을 정부가 지원

개선 농촌지역 농공단지 등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단독주택'도 정부지원 범위에 포함 (공동주택·오피스텔+ 단독주택)

* 「'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20.7월, 완료)

☞ 기숙사 임차지원 대상에 제한적으로 단독주택을 허용함으로써 농공단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

(9) 여권 수령 시 본인 확인 수단의 다양화 추진 (외교부)

기존 발급신청한 여권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본인 확인 수단'으로 신분증만을 규정 →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만 본인 여권 수령 가능

개선 여권 신청 시 이미 신분 확인을 거쳐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음을 고려, 신분증 外에 본인 확인 수단의 다양화 추진

*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21.12월)

☞ 본인임에도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여권 교부 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

나. 소상공인·자영업 애로 해소

(1)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류규제 폐지 (기재부)

기존 주류*는 음주에 따른 국민보건 및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상품의 제조·유통·판매·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
- 미림 등 조미용 주류도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 → 일반 주류와 동일한 규제** 일괄 적용

*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 등으로 주세(출고가10%) 및 교육세(주세액 10%) 과세대상

** 제조시 면허취득 및 시설요건, 주류도매업자가 전용차량을 통한 주류 유통, 온라인(통신) 판매금지 및 미성년자 구매불가 등

문제점 조미용 주류는 일반 주류와 달리 규제 필요성이 적고, 조미료와 동일 상품이나 주류에 해당 → 주류 규제 적용으로 다양한 현장 불편 초래
- 제조사는 주세가 포함된 제품가격 인하 곤란, 음식점은 다른 식사재와 달리 식품유통업자로부터 납품 불가,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 불가 등

개선 음주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없는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류 범위에서 제외(주류규제 폐지)

* 「주세법」 개정('20.12월)

☞ 조미용 주류제품의 가격인하 및 다양한 관련상품 출시가 가능해지고, 음식점 등 자영업자·일반 소비자의 조미용 주류 구매 불편 해소 기대

(2)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교육훈련 기준 합리화 (식약처)

기존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영업자는 인증 이후 매년 1회 정기 교육훈련 이수 의무 발생(불이행시 행정처분)

- 축산물안전관리인증 교육훈련 주기 산정기준이 식품안전관리인증과 달리 영업일자 기준으로 산정되어 영업자의 불편 가중

* (식품) 인증년도 기준 1년 내 vs. (축산물) 영업개시일 또는 인증일 기준 1년 내

개선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의 영업자 교육훈련 주기를 식품안전관리인증과 동일하게 연도기준으로 통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 2월)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

※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업체('20년 기준) : 13,720개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판단기준 합리화 (환경부)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은 음식물 폐기물 발생시 위탁처리 의무화(종량제 봉투 직접배출 금지)

* 다량배출사업장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직접 위탁처리(처리 복잡)
그 외 사업장 :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해 배출(처리 간편)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여부는 영업장 면적기준(200㎡↑) → 커피전문점 등 실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사례 발생(불합리한 기준 규제)

개선 실제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제대상 판단기준 합리화(사업장면적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21. 12월)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 완화

(4) 식품DIY키트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의 표시 완화 (식약처)

기존 식품첨가물은 과다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유통·판매시 첨가물별 사용기준*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

- 식품DIY키트**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은 조리에 필요한 양만 포장되어 있고 타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 포장에 첨가물 사용기준 표기 의무 일괄적용(과잉규제)

* (예시)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발색제, 보존제) 사용기준
아질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질산나트륨의 사용량은 아질산이온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식육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제외), 기타동물성가공식품(기타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함): 0.07g/kg
2. 어육소시지: 0.05g/kg
3. 명란젓, 연어알젓: 0.005g/kg

**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원재료를 포장·판매 식품

개선 DIY키트의 일부로 일정량 포함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 우려가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사용기준 표시의무 예외 적용

* 「식품표시 실무가이드(FAQ)」 반영('20. 7월, 완료)

☞ 과도한 표시규제 완화를 통한 DIY식품제조 시장 활력

(5) 어유(魚油)의 중금속 기준규격 합리화 (식약처)

기존 크릴 오일 등 어유의 중금속 국내 기준규격은 총 비소량 기준인 반면, 국제식품규격은 인체에 유해한 무기비소* 기준을 적용

* (예시) (국내) 총 비소(유기비소 + 무기비소) 1g이하 vs. (국제) 무기비소 1g이하

-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이 상이하여 해외 선진국에서 정상적으로 유통 중인 어유제품도 수입 및 유통·판매가 불가하게 되는 사례 발생

개선 어유의 중금속 국내 기준규격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개선(총 비소량 → 무기비소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21.2월)

☞ 글로벌추세에 맞춰 안전성 중심으로 규제기준 합리화를 통한 관련산업 활성화

(6) 공장건축물의 돌출 처마·차양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창고수준) (국토부)

기존 공장 건축물의 경우 1미터 초과하여 돌출 처마·차양에 대해 건축면적에 산입(→ 건폐율·용적률 포함)
- 반면, 창고 건축물의 경우 돌출 처마·차양은 6미터 초과 부분과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중 작은 면적만을 건축면적으로 산입(물품 입·출고 편의 고려)

개선 건축물 용도 특성상 물품 입·출고는 창고뿐만 아니라 공장도 필요함에 따라, 돌출된 처마·차양에 대해 창고와 같은 수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입하도록 규제 완화(유사용도 건축물간 규제형평성 제고)

*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0월, 완료)

☞ 제조기업들의 생산활동에 부수되는 상품 입·출고에 필수적인 처마·차양 설치관련 빈번했던 현장애로 해소

(7) 쉬프팅(shifting) 컨테이너의 일시양륙 신고절차 생략 (관세청)

기존 외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 위치를 옮기는 쉬프팅Shifting* 작업시 사전에 세관장 대상 신고가 의무화

- 물량이 많고, 작업시간 등이 촉박한 경우 신고절차 이행에 따른 하역 지연 발생 등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

* 컨테이너의 위치조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항만에 내려놓았다가 선박에 옮겨 싣는 작업(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3% 수준 차지)

개선 선박 안전 확보와 하역작업 효율성 유지를 위해 외국물품을 일시양륙 또는 적재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20.12월)

☞ 과도한 신고 절차를 생략하여 기업의 인력·시간 등 규제비용 절감

※ 신고절차 생략으로 연간 121억 원 상당의 직접 물류비 절감(관세청 추산)

(8)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관련 소매인 행정처분 완화 (기재부)

기존 편의점주 등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행위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 있는 경우(신분증 위·변조 등)에도 영업정지 처분 부과

개선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원인 있는 사유*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면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 6월, 완료)

☞ 귀책사유가 없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아온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의 현장애로 해소

※ 담배소매인 현황('19년) : 14.5만명

(9)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활동 제한 기간 단축 (고용부)

기존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취업이 가능 (불법체류 방지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한)

-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기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싶어도 최소 3개월 소요(인력공백 발생)

개선 중소기업 등의 현장에서 안정적·효율적인 인력운용 지원을 위해 재입국특례자의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 단축(3개월 → 1개월)

* 「외국인 고용법」 개정('21.6월)

☞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공백 기간을 단축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다. 현장 행정불합리 해소

(1) 학교복합화시설의 중복적 투자심사절차 일원화 (교육부·행안부)

기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시설* 포함된 학교 신·증축시 이중적 「타당성조사」및 「투자심사」절차 의무화

* 학교복합화시설 : 학교시설(교실, 체육관 등)과 주민시설(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

-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각각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 조사대상 및 외부전문기관: 500억↑ △교육부(한국교원대산학협력단) △행안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교육부와 행안부가 별도의 중앙투자심사* 각각 실시

* 심사대상: △(교육부) 100억↑ △(행안부) 광역 300억↑(기초 200억↑)

문제점 학교복합화시설을 포함한 학교인 경우 단일계획 下의 단일 사업으로 간주 → 동일대상에 대해 중복적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각각 실시

개선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함께 투입되는 해당 시설대상 부처의 중복적 타당성 조사·투자심사 절차 일원화(각각 실시(2회) → 통합 실시(1회))

*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이상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 개정('20.5월, 완료)
「총사업 500억이상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 개정('20.4월, 완료)

☞ 학교복합화시설을 포함한 학교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예산 절감 기대(← 중복적·이중적 행정절차 규제 해소)

(2) 폐교 재산의 무상 대부요건 완화 (교육부)

기존 폐고 재산을 다른 용도로 대부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가능

* 타용도 대부 요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3회 이상 매각 불발

-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 등으로 폐교재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규제가 공공목적으로 폐교활용시 걸림돌로 작용

개선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활용시에는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무상대부 요건 완화

* 「폐교활용법」 개정('21. 12월)

☞ 폐교재산 활용 접근성을 높여 지자체가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보에 용이

※ 전체 보유중인 폐교재산 총1,387교 중 미활용 폐교재산 409교(29.5%)

개선 도시(구) 및 농촌(군) 지역간 동일한 요금체계로 운영토록 개선

*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19.12월)

☞ 요금체계 단일화로 지역간 행정서비스 지원 형평성 제고

(3) 선박용 응급의약품 취급범위 확대 추진 (해수부)

기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내 선박에서 취급(비치·보관) 가능한 응급의약품의 범위가 통상의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현장 애로

* 국제기준에서 허용된 총 54개 응급의약품 중 국내기준은 16개만 반영

개선 국제노동기구(ILO) '선내 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 목록 반영하여, 선박용 응급의약품 취급범위 확대 추진(16개 → 54개 품목)

*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개정 ('21.6월)

☞ 선박내 비치할 응급의약품을 국제기준으로 높여 선원의 의료복지 증진

(4) 어촌·어항통합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추진 (환경부)

기존 '어촌'과 '어항*'의 개발을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 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어촌'과 '어항'개발을 통합**하여 추진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법적근거 미비

* 어항 및 어촌 : 어항은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며, 어항 배후 수산업 생활지역이 어촌

** 어촌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어촌개발사업과 어항 개발사업을 통합/연계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 중

개선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시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 추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2.12월)

☞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5)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변경허가 한시적 허용 (과기부)

기존 주파수 효율 개선을 위한 무선기기 디지털 전환정책('14.7월)에 따라 '19년부터 아날로그 간이무선국의 신규·변경 허가 불가
- 일부 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 이전시 마을 공지사항을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설치장소 변경허가가 불가 → 수해 등 당장의 재난상황 전파에 한계 및 주민 불편 초래

개선 마을회관 이전에 따른 무전기 설치장소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23년 12월 31일까지)

* 「간이무선국용 주파수 지정·관리지침」 개정('20.8월, 완료)

☞ 읍·면·동의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

(6) 보전산지 내 국립묘지시설 설치 허용 (산림청)

기존 산지관리법상 정식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은 보전산지*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국립묘지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

* 보전필요성 높은 임업용산지 및 공익용산지

개선 보전산지 내 국립묘지시설 설치 가능여부 등 행정 혼란을 막고,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립묘지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산지관리법」 개정('21.6.)

☞ 시설 대부분을 보전산지에 설치가 필요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라. 코로나19 사태 적극 대응

(1)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총회 비대면 전자투표 도입 (국토부)

기존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①현장투표 ②서면투표 ③대리인투표 방식만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면서, 조합원의 일정비율* 직접출석 의무화(부정투표예방)

* 일반사항 10%↑(창립총회·관리처분계획 등 주요사항 20%↑)

문제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정비법은 전자투표를 규정하지 않고 조합원 직접출석만을 의무화하여 총회 개최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발생

개선 총회 의결방식에 기존방식(①~③) 外 '전자투표 방식' 도입 및 조합원의 일정비율 직접출석 의무규제 폐지

* 「도시정비법」 개정('21.6월)

☞ 조합총회 의결권 확보와 조합원 참여가 용이해지고, 비대면통한 코로나19 감염증 지역확산 예방효과 기대

(2)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시 위생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약처)

기존 식품제조업체·음식점에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의 마스크 착용이 단순 권고사항으로 규정(위생모 착용만 의무규정)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식품을 포함한 공중위생 전반에 규제강화 필요성 확산

개선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업소 종사자에게 기존 위생모 착용 의무와 함께 위생마스크 착용 의무화(위생모 착용 + 마스크 착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0.10월, 완료)

☞ 식품분야 필요 규제의 강화를 통해 방역 등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

(3) 여객운수사업용 택시 및 버스의 운행연한(차령) 연장 (국토부)

기존 여객운수사업용 택시나 버스의 차령(운행연한)은 원칙적으로 최대 9년(다만,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2년 연장 가능)

개선 코로나 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택시 및 버스업계가 겪고 있는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가 임박한 운송사업용 택시·버스('18.9.1.~'21.6.30. 기간 중 만료) 대상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차령을 1년 추가 인정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령 개선 전후 비교(버스 기준)▐

구분	기본차령	연장가능 기간	비 고
종전	9년	2년	11년간 사용 가능
개선	9년 + 1년	2년	12년간 사용 가능 *'18.8.31 ~ '21.6.29 기본차령 만료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9월, 완료)

☞ 팬데믹 위기에서 택시·버스업계의 차령만료에 따른 차량 교체 비용부담을 완화(업계추산 버스 약 2.25조원, 택시 약 6,900억 원 차량 교체비용 절감)

(4)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우체국 택배계약 한시적 유지 (과기부)

기존 우체국 계약택배는 계약시의 최소물량 기준(최근 3개월간 월평균 발송물량 기준) 미충족시 계약해지 또는 요금인상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일부 중소업체는 최소물량 달성이 어려워 요금인상 등 부담 우려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물량감소 업체의 요금변경 및 계약해지를 한시적으로 보류하여 중소업체 피해 감소 지원

* 「계약택배요금 조정 한시적 유예안내」공문시행('20.3월, 완료)

☞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 중소업체 지원

※ 운영기간('20.3~9월) 중 계약업체 요금 미인상(52社) 및 계약해지 미적용(18社)

(5)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방법 개선(비대면 온라인) (국토부)

기존 부동산중개사는 대면 형태의 집합교육과 현장실습을 포함된 등록 전 '실무교육*', 등록 후 2년마다 '연수교육**' 이수가 의무화
- 국내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형태 교육(집합교육·현장실습)이 불가하여, 공인중개사 신규개업 등에 애로

* 실무교육(등록 전): 집합교육(16~17h)+현장실습(5~6h)+사이버교육(7~9h)

** 연수교육(등록 후): 집합교육(6~8h)+사이버교육(6~8h)

개선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대면 형태의 집합교육·현장실습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토록 개선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20.8월, 완료)

☞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등 애로 해소

※ 개업공인중개사 현황('20년) : 약 11만 명

(6) 항공 안전을 위한 항공기 정류료 면제 (국토부)

기존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공항 주기장에 세워둘 경우 목적에 관계없이 '정류료'(일종의 주차비)*를 공항공사에 납부 필요

* 최대이륙중량 560톤인 A380의 경우 하루 약 240만 원의 정류료 발생(인천공항 기준)

개선 항공안전차원의 선제적 예방조치(항공기 점검·정비)를 위해 항공기 운항을 자발적으로 중지시킨 항공운송사업자대상 항공기 정류료 면제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개정('20.11월, 완료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항공사 부담 최소화를 통해 항공안전확보를 위한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조치 유도

(7)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규제 시행시기 유예 등 (고용부)

기존 산재발생 빈도가 높은 전동식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조정자격자*'을 확인하고, 작업토록 규제 시행('21.1월~, 예정)

*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② 소형건설기계 조정교육 이수자

개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현장 교육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규제의 △ 시행시기 유예 △ 조정자격자 인정 확대
- (시행시기 유예) 6개월 연장('21.1월 → '21.7월)
- (조정자격자 확대) ①, ② + ③유경험자로서 사이버교육이수자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21.1월)

☞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규제 관련 사업장 현장부담 최소화 및 규제 현장수용성 제고

마. 행정 불합리 분야

(1) 아파트 경비원 경비 外 관리업무(주차관리, 청소, 택배보관 등) 허용 (경찰청·국토부)

기존 경비업자의 경비업무 外 업무에 경비원(아파트 경비원 포함)을 종사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 금지(「경비업법」)

문제점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外 주차관리, 청소, 택배보관 등 경비업무 外 업무 수행하는게 관행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도 경비업무 外 업무 수행을 금지토록 한 경비업법 적용*시 불법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해고, 아파트 관리업무 마비 등 예상되는 현장의 우려와 혼란 가중

* 법원 판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업자 대상 경비업법 적용 조치사항 하달(경찰청, '19.12월)

개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비업법 적용을 유예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外 관리업무 허용 명확화(또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시 등 부당행위 금지도 병행 규정)

* 「공동주택관리업자대상 경비업법 적용 계도기간(~'21.10월)」운영('20.11월, 완료)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0.9월, 완료) (※시행: '21.10월)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적용으로 인한 예상되었던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

(2)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규제 개선 (식약처)

기존 의료기기 광고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위탁: 의료기기산업협회)을 통한 사전심의가 의무화(의료기기법)

문제점 의료(병·의원)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제'가 사전검열에 해당,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현장에서 동일하게 제기

*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개선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주체를 식약처장(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민간자율심의기관으로 변경 추진(심의주체 변경: 행정기관 → 민간기구)

* 「의료기기법」 개정('20.12월)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운영관련 위헌성 문제점 제도 보완

참고 : 의료·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요약

• **헌법 위배(사전검열) 판단기준(헌재 판결근거)**
① 표현물 제출의무 ② 행정기관 심의 ③ 허가받지 않은 표현 금지 ④ 강제수단
⇒ 행정권이 자의로 개입가능한지 실질적 판단을 통해 상기 기준 모두 충족시 위헌

• **부처별 개선방향 : 사전광고 심의주체 변경(행정기관 → 민간기관)**

구분	기존	개선
의료 광고* (의료법)	복지부장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위탁)	민간자율심의기구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복지부장관에 신고한 소비자단체)
건강기능식품 광고** (건강기능식품법)	식약처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탁)	민간자율심의기구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식약처장에 등록한 단체)
의료기기 광고 (의료기기법)	식약처장 (의료기기산업협회 위탁)	**민간자율심의기구**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식약처장에 등록한 단체)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위헌판결('15) → 「의료법」 **개정완료**('18.3)
**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 : 위헌판결('18) → 「식품표시법(표시광고통합법)」 **개정완료**('18.3)

(3)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경남 거제시)

기존 기계식 주차장를 철거하는 경우 철거 이전 주차대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그 부지 또는 인근에 설치 필요
- 해당 건축물 대지의 공간 부족 및 인근 부설주차장 별도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등이 필요 (→ 오히려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 방치 초래)

개선 기계식주차장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별 주차대수(기존 2/3) 확보의무를 최대 1/2범위에서 완화

* 「거제시 주차장 조례」 개정('20.2월, 완료)

☞ 노후화 되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체 부설주차장 설치 활성화 유도

(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자격 완화 (국토부)

기존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해서는 사업용(여객, 화물, 건설기계) 자동차는 5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운행되는 비사업용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1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필요

개선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 없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관련 '이론 및 실기교육'(교통안전공단 실시)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 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월, 완료)

☞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업계 진입규제를 완화(→ 택시기사의 고령화 문제 해소)

※ 전국 개인택시 현황('20년) : 약 16만 대

(5) 새만금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제한 완화 (새만금청)

기존 새만금산업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위해 사용 가능한 발전시설로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만 허용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태양광 이외에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수소연료전지, 풍력 등) 설치가 허용되도록 개선

*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21.6월)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새만금산단 활성화 기여

(6) 시대에 맞지 않는 화재설비 수·발신기 '전화단자 설치기준' 폐지 (소방청)

기존 대부분의 4층 이상 건물·시설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전화단자)' 설치가 의무화(화재시 전화통화 목적)
- 핸드폰 등 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더 이상 사용빈도도 낮고, 불필요한 선로공사와 유지보수가 필요 → 낡은 설비규제가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

개선 통신기술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유지·관리상 불필요한 '전화단자 설치기준' 폐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기준」 개정('21.7월)

☞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작·설치비용 감소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 기대

6 향후 운영 계획

규제개혁신문고는 '경제반등·민생안정'을 목표로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정주해나갈 것이다.

범정부 온라인 국민건의 창구 일원화 기반을 마련한만큼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용한 규제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자체, 사업자단체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신문고의 인지도를 높이고 규제개혁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실질적인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선성과의 전략적 홍보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건의 수용률 및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합리적 건의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과의 전방위적 소통 및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선도하여 '국민이 만들어 가는 규제혁신' 창구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제3절 일몰규제 정비

집필자 이정호 사무관
Tel. 044-200-2414, turtleb@korea.kr

1 규제일몰제 개요

가. 개념

규제 일몰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고시 등)상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하거나 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로써,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유형

규제 일몰제는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효력상실형은 규제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재검토형은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서 신설·강화 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 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3항)

라.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마. 적용원칙 및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속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여야 하며, 기존 규제 역시 규제 목적이 한시적이거나, 규제시행 상황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완화 등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설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인 일몰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명백하거나 재검토의 여지가 없어 일몰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규제 등에 대하여는 일몰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2020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 심사결과

2020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된 총 28개 부처의 720건의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해 규제존속 및 일몰유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4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22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인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기한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단위: 건)

총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비규제*
		소계	일몰유지	일몰해제	소계	일몰유지	일몰해제	
720	4	122	92	30	556	363	193	38

* 과징금·과태료('17.11.28 법 개정으로 제외) 및 행정내부절차·기준 등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경우

2020년 일몰규제 심사는 '20년 규제개혁 추진방향(△4차산업혁명 기반강화, △국민생활불편 해소, △포용사회 기반확산)에 맞춰 ①규제 개선여부 및 ②재검토 기한 유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를 엄격 적용하여 부처에서 존속 필요성·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개선 하였으며,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재검토 규제 TF에 민간전문가가 다수(19명) 참여하였고, 재검토 실익이 없거나 기한 설정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한 해제를 검토하여 향후 일몰 규제 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3 주요 정비 사례

가. 진입규제 및 기업경영부담 완화

(1) 시설경비업* 인력요건 완화 (경찰청)

* 아파트와 같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도난·화재 등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

개선내용 시설경비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경비원 보유요건 완화

기존 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보유 필요

변경 경비원의 경우 10명 이상 보유 필요

기대효과 소규모 시설경비업 창업 증가 기대

(2) 숙박업소의 교육·실습목적의 청소년 고용 허용 (여가부)

개선내용 교육 및 실습 목적에 한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소의 청소년 고용 허용

기존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 고용 불가

변경 교육 및 실습 목적인 경우에는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 가능

기대효과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 내실화

(3)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방법 개선 (환경부)

개선내용 2개 이상 분리되는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한곳에만 할 수 있도록 허용

기존 2개 이상 분리되는 포장재의 경우에는 각 부분(몸체, 뚜껑, 라벨 등)마다 분리배출 표시

변경 몸체에만 분리배출 표시 가능

기대효과 분리배출되는 제품 생산 기업 부담 경감

(4)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폐지 (국토부)

* 바둑·포커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보드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게임

개선내용 1일 손실한도 제한 폐지

기존 1일 손실한도 10만 원 초과시 24시간 게임이용 제한

변경 손실한도 제한 폐지, 업계 자율로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기대효과 웹보드 게임산업 육성

(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담 완화 (국토부)

* 노후·불량 연립·단독주택 등이 밀접한 지역 주거개선 사업

개선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완화

기존 부담금 산출시 재건축·재개발 사업만 종전건축물 연면적 제외

변경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부담금 부과시 종전건축물 연면적 제외

기대효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자 부담 완화 및 사업 활성화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완화 (복지부)

개선내용 필수설비가 없는 경우에도 유사기능의 대체설비가 있거나 노동력만으로도 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인정

기존 필수설비가 없는 경우 동일기능의 대체설비가 있어야만 직접 생산 인정

변경 유사기능의 대체설비가 있거나 근로자 노동력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직접생산 인정

기대효과 영세한 장애인 사업장의 시설부담 완화

(7)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완화 (농림부)

개선내용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 물질도 유기농산물 생산 사용 허용

기존 퇴비, 퇴비화된 가축배설물만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 가능

변경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 물질도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 가능

기대효과 유기농산물 생산 농민 부담 완화

(8) 사업용자동차에 자사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전환 (행안부)

개선내용 사업용자동차에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 대신 신고를 하도록 완화

- 기존 사업용자동차에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허가 필요
- 변경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전환

기대효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홍보 편의 확대

(9) 경전철 교각 광고물 표시 허용 (행안부)

개선내용 경전철 교각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경전철 교각을 포함한 다리에는 광고물 표시 불허
- 변경 경전철 교각은 광고물 표시 허용

기대효과 경전철사업 운영부담 완화

나. 중기·소상공인 행정부담 경감

(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요건 합리화 (기재부)

개선내용 담배소매인이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면제

- 기존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시, 담배 판매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어도 소매인에게 영업정지 처분
- 변경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 소매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판매시 영업정지 처분 면제

기대효과 담배소매인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 예방

(2) 보세공장* 자체 설비를 이용한 잉여물품 원형변형작업 요건 완화 (관세청)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면제

개선내용 보세공장 자체설비를 이용해 원형변형시, 별도 승인의무 면제

기존 반도체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을 폐기·재활용하기 위해 원형을 변형(파쇄, 분쇄 등)하는 경우, 별도 승인 필요

변경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보세공장 자체설비를 이용해 원형변형시,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내역만 기록·보관

기대효과 첨단산업의 영업기밀 보호 및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 제고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시설검사 완화 (환경부)

개선내용 타법의 시설검사를 받은 경우, 세부검사가 면제되는 시설 확대

기존 전체사용량 대비 고형연료제품을 30%미만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타법(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시설검사 완료시, 세부검사 면제

변경 모든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해 타법의 시설검사 완료시, 세부검사 면제

기대효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검사비용 절감

(4)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개선 (환경부)

개선내용 도급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부분만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기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한 후, 도급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신고서 재제출

변경 도급신고서 재제출 없이, 변경된 내용만 신고

기대효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영업부담 완화

(5) 법률구조법인 등록 신청 및 변경 요건 완화 (법무부)

개선내용 법률구조법인 등록·변경 신청시 법인등기사항 증명관련 서류 제출 면제

기존 등록·변경신청시 등기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변경 법인등기사항 증명관련 서류 제출 면제

기대효과 법률구조법인(대한법률 구조공단 등) 행정부담 경감

다. 민생·국민불편 해소

(1) 원격평생교육 학습비 반환기준 합리화 (교육부)

개선내용 수강료 반환시 실제 수강한 부분만 공제

기존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수업시간 경과기간에 따라 반환기준 적용

변경 온라인 특성을 감안, 실제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

기대효과 온라인 특성을 감안한 반환기준 마련으로 합리성 제고

(2)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완화 (행안부)

* 행사 등의 홍보를 위해 가로등에 세로형태로 매다는 배너형태 광고물

개선내용 규격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기존 가로등 현수기 크기(가로 70cm, 세로 2m 이내)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

변경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기대효과 지자체 자율성 증진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

(3) 폐교재산 대부료 감액 (교육부)

개선내용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입은 경우 대부료 감액 허용

기존 귀농·귀촌 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대부료 감액 허용

변경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입은 경우도 대부료 감액 허용

기대효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피해를 입은 폐교재산 활용사업자 부담 경감

(4) 묘지 설치기간 경과 분묘 처리부담 완화 (복지부)

개선내용 설치기간 경과 분묘 중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방법 완화

기존 설치기간 경과 분묘 중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개 이상 일간신문 공고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와 1개 이상 일간신문 공고

변경 공고방법에 1개 이상 일간 및 1개 이상 인터넷 신문 공고 추가

기대효과 묘지관리업체의 무연고 분묘 관리 부담 완화

(5) 구내통신 국선단자함 설치기준 완화 (과기부)

개선내용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국선단자함과 종합유선설비 통합설치 허용

기존 건물마다 국선단자함(통신설비 수용함)과 TV장치함(방송설비 수용함) 각각 설치 필요

변경 소형건축물은 국선단자함에 종합유선방송설비를 수용, 통합설치 허용

기대효과 소형건축물의 구내 방송통신설비 설치비용 절감

4 향후 계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1년에도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규제 폐지·개선 등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2021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약 600여건으로 '20년과 마찬가지로 부처입증책임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폐지·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고, 일자리 창출 유도 및 민생 불편·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소관 일몰규제 법령 정비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규제 운영성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 증거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정비 추진을 통해 규제품질의 향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4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집필자 손민정 사무관
Tel. 044-200-2428, minjeong@opm.go.kr

1 개요

규제개혁 국제협력은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정책·수단에 대한 현황과 추진성과를 정확히 알려 한국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선진국 동향을 연구하고 각국의 규제개혁 정책 사례와 교훈을 공유하여 국내 규제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제협력의 주요 업무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를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 정책 현황 및 추진성과를 알리고 선진국의 규제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규제개혁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규제정책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하고, 다자 또는 양자 간 접촉을 통해 선진국과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가간 교류에 제약이 있었으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23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규제분야의 국가간 교류를 지속하였다.

2 제23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참석

제23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11월 16~20일 5일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2021 규제정책평가 보고서 초안 및 공유경제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OECD는 2020년 7월부터 진행된 규제정책평가 지표(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1 규제정책 평가보고서의 초안을 공개하였다. 2021 규제정책평가 보고서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평가, 사후평가, 규제감독, 국제규제협력의 5개 부문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규제정책 운영 현황을 조사하며, 최근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포함하여 신기술·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위험기반 규제 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각 국 대표단은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규제정책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Agile regulatory policy making)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정부규제에 대한 민간의 수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공유경제 등 신기술·신산업 발전에 대응하는 혁신적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동 논의에는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김정욱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한걸음 모델'을 소개하며, 공유경제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승차공유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이견 조정을 위한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출범 및 업계간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시장 안정기여금' 도입 등 갈등해결 노력을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영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캐나다는 교통 관련 규제개선 이니셔티브(Regulatory Modernization Initiative, RMI) 등을 규제정책 사례로 소개하였다.

제5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집필자 권회근 사무관
Tel. 044-200-2913, beatitud0@korea.kr

1 개요

가. 의의

규제비용관리제(Cost-In, Cost-Out)는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규제를 도입할 때, 피규제자에게 어떠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하도록 하고, 순비용이 발생하면 기존의 규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어 정비(폐지·완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신규로 도입되는 규제의 품질은 높이고 기존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비용관리제는 2년 간('14년7월~'16년6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총리 훈령 제정(「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16년7월)을 통해 28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중이다. 2018년 1월에는 규제비용관리제 종합평가 연구용역('17.9~12월) 결과에 따라 법제화는 곤란하지만 훈령·지침 등의 제도개선·보완을 통해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규제비용관리제 법안*(김종석의원안, '17.1.25)에 대하여는 법제화는 곤란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른 정부의견을 반영하여 '18.3.7 법안소위에서 폐기하였다. 최근 유사한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송언석의원안, '20.8.20)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다.

* 중요규제 신설·강화시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규제 정비

해외 사례

- **(영국)** 신설·강화규제가 기업·사회단체에 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기존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비용을 상쇄시키도록 하는 "One-In, One-Out" 제도 도입('11년), "One-In, Two-Out"('13년), "One-In, Three-Out"('16년) 방식으로 대체하였으나, 최근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BIT(Business Impact Target) 제도 도입·운영중('16년)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Two for One Rule" 도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17.1월)

나. 운영절차

(1) 적용대상

규제비용관리의 대상은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규제대상 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국가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는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을 제외하여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제외 요건

-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 **금융·외환시스템 위기**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범
-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규제
- 1년 이하의 효력상실형 일몰기한이 설정된 규제

(2) 운영절차

규제비용관리제는 기존의 규제심사과정에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 및 비용분석검증을 통한 비용적립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제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규제비용 증가분과 폐지·완화로 인한 규제비용 감소분은 부처별 계정(Account)에 적립(Banking)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대상 규제는 연간균등순비용 10억 원을 기준으로 표준절차와 간편절차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준절차 대상 규제는 규제연구센터의 비용편익분석 검증과 함께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간편절차 대상 규제는 규제연구센터의 비용편익분석 검증만 거치며,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은 생략한다.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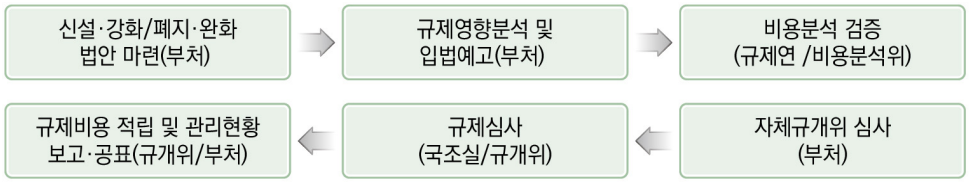

※ **반기별**로 부처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규개위 보고·공표 및 정부평가 반영**

(3) 운영관련 조직

(가) 규제연구센터

2014년 6월,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KDI와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규제연구센터는 비용편익분석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KDI와 한국행정연구원은 각각 경제부처와 사회부처의 비용편익분석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의 경우는 '18년 초기까지는 제도연구실이 규제연구센터에 포함되었으나 하반기부터 별도의 제도연구실로 분리되었다. 비용분석업무는 KDI의 경우는 분석평가실에서, KIPA(행정연구원)에서는 비용분석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규제연구센터 현황

구분	KDI 규제연구센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기 능	• 경제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 행정·사회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인 력	• 총 22명(소장 : 김정욱)	• 총 9명(소장 : 이민호)
조 직	• 2실(분석평가실, 제도연구실)	• 1팀 (비용분석팀)

(나) 비용분석위원회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비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비용분석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총 5명으로 위원장 1인(규제심사관리관)과 규제연구센터장 2인, 교수 등 민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의 경우 28회에 걸쳐 비용·편익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였다.

2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및 주요 사례

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2020년 28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929억 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다. 동 기간 중 신설·강화(Cost-In) 규제로 인해 총 820억 원의 규제비용이 증가되고, 폐지·완화(Cost-Out) 규제로 총 2,749억 원의 순비용 감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9년부터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차등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편익을 비용관리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면서 중소기업에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이다. 비용관리제와 연계하여 운영한 결과 총 2건의 규제 차등화 사례가 비용검증을 완료하여 Cost-Out 금액에 적립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28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으며, 순비용이 증가한 기관이 10개, 순비용 증감이 없는 기관이 9개로 나타났다. 감축 규모별로는 국토교통부(-979억 원), 방송통신위원회(-585억 원), 금융위원회(-476억 원) 등으로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고, 고용노동부 (233억 원), 공정거래위원회(96억 원), 교육부(30억 원)등 은 규제순비용이 증가하였다.

누적 순비용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4,07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3,964억 원)가 감축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등 15개 부처가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고, 고용노동부(627억 원), 교육부(136억 원), 보건복지부(129억 원) 등 8개 부처는 증가하였다.

2020년 규제비용관리제 기관별 운영현황

(단위: 백만 원/감축비용 누계순)

부처명		Cost-In 금액	Cost-Out 금액	규제비용 ('20)	규제비용 누계 ('16.7월~)
총계		**81,988**	**-274,900**	**-192,912**	**-1,046,251**
1	국토교통부	14,585	-112,523	-97,938	-406,999
2	농림축산식품부	1,624	0	1,624	-396,394
3	방송통신위원회	2,270	-60,765	-58,495	-96,110
4	산업통상자원부	32	-13,766	-13,734	-72,397
5	산림청	2,586	-4,935	-2,349	-50,218
6	금융위원회	20,280	-67,853	-47,573	-44,789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61	-95	566	-42,616
8	식품의약품안전처	1,390	-9,572	-8,182	-19,218
9	여성가족부	0	0	0	-9,793
10	관세청	0	-1,702	-1,702	-3,592
11	중소벤처기업부	0	0	0	-3,241
12	문화재청	199	0	199	-3,081
13	기획재정부	96	0	96	-2,637
14	특허청	0	0	0	-1,886
15	행정안전부	0	-254	-254	-1,491
16	경찰청	0	0	0	-
17	법무부	0	0	0	-
18	인사혁신처	0	0	0	-
19	소 방 청	0	0	0	-
20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0	-
21	국가보훈처	0	0	0	4
22	해양수산부	353	-1,218	-865	1,288
23	문화체육관광부	119	-29	90	3,357
24	환경부	582	-1,493	-911	4,898
25	공정거래위원회	9,625	0	9,625	9,350
26	보건복지부	997	-450	547	12,975
27	교육부	3,318	-245	3,073	13,653
28	고용노동부	23,271	0	23,271	62,686

나. 주요 사례

(1) Cost-In 주요 사례

▸Cost-In 규제 : 총 820억 원 증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기존 4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부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행에 필요한 비용

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부과 대상을 2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

효과 2~4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발주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과로 **연간 약 128.2억 원 비용 발생**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

2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부과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기존 ①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PF 대출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 것과 달리 채무보증에 대한 취급한도 부재

* 대출금, 리스자산, 카드 신용판매 등

② 여신전문금융사 부동산PF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부재

개정 ①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
②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부과

효과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축소로 인한 수익감소 및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증가로 **연간 79.7억 원 비용 발생**

▷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3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범위 축소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기존 교통영향평가를 旣 실시한 개발사업 지구의 경우 복합쇼핑몰, 초고층 건물 등 대형 교통유발 건축물 건축시 약식 교통영향평가 허용

개정 교통영향평가를 旣 실시한 개발사업 지구일지라도 대형 교통유발 건축물은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효과 정식 교통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대행비용 등 **연간 약 46.3억 원 비용 발생**
▷ 보다 적절한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4 육아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개선 의무 부과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기존 현행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마다 처우가 상이

개정 육아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의 경력·승급인정, 육아휴직 수당 등 처우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토록 사립학교 법인에게 의무 부과

효과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 증가로 인해 **연간 약 32.7억 원 비용 발생**
▷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

5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방송통신위원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기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 부재

개정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 부과

효과 금칙어 설정, 필터링 조치 등을 위한 SW 개발 및 운영관리비로 인해 **연간 약 22.7억 원 발생**
▷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및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의 신속·효과적 **차단**

6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예방법 시행규칙)

기존 ①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야만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허용
② 전염병 종류별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 방역시설 기준 적용

개정 ① ASF 1회 발생 및 물·토양 등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허용
② 사람·차량 출입 및 야생조수 침입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시설 기준 강화

효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연간 약 7.48억 원 발생**
▷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업 발전 및 공중위생 향상

(2) Cost-Out 주요 사례

▸ Cost-Out 규제 : **총 2,749억 원 감축**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조건 완화

(국토교통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서는 여객·화물 운송사업 등 운전종사경력 5~10년 필요

개정 '교통안전교육' 수료자에 대해 면허 양수를 위한 운전종사경력 조건 완화(단, 교육수료 후 3년 내에 면허를 양수하지 않은 경우 재교육 필요)

효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에 소요되는 기간 감소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기대수입 증가로 **연간 약 853.23억 원의 비용 절감**
▷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 해소** 및 **택시 이용 안전성 증진**

2 신용카드사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에 따른 편익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기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과도한 마케팅비용 발생으로 카드사의 경영 건전성 저해

개정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

효과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등 마케팅비용 절감에 따라 **연간 약 613억 원 비용 절감**
▷ 신용카드사의 **경영 건전성 제고**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요건 규정 및 업역확대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기존 국제적인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선박 연료로서 LNG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가스업과 구분된 LNG 벙커링 관련 규정 미비로 시장 활성화에 장애

개정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및 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업 등 LNG 벙커링 관련 업종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규정

효과 신규 업역확대에 따른 기대이익 발생으로 **연간 약 133.66억 원 비용 절감**

▷ **LNG 벙커링** 관련 규정 명확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

4 소규모 농가 달걀 선별포장 처리 의무 면제시 준수하여야 할 위생기준 및 선별포장의뢰서 작성의무(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처리되어야 함

개정 유기식품 인증을 받고 안전관리 인증업소로 인증받은, 사육 두수 1만마리 이하 업소의 경우 선별포장처리 의무를 면제하되,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하고 선별포장의뢰서를 작성할 의무 부과

효과 달걀의 위생처리 비용 및 선별포장의뢰서 작성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발생하지만, 선별포장처리 의무 면제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로 **연간 약 65.82억 원의 비용 절감**

▷ 위생은 확보하면서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 예외 확대를 통해 **소규모 농가의 불편 해소**

5 산림복지전문업의 사무실 요건 완화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해 별도 사무실을 요건으로 규정

개정 사무실 범위에 '주택'을 포함하도록 완화

효과 신규로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별도 사무실 공간을 임차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연간 약 31.52억 원 비용 절감**

▷ 사무실 부담없이 주택 등을 이용한 **소규모 창업 확대**

6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기존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도 일반 식품군과 같이 3개월 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실시

개정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6개월 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

효과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검사비용 감소로 **연간 약 10.87억 원 비용 절감**

▷ 주류 **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부담 경감**

제6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집필자 최학수 서기관
Tel. 044-200-2366, chs22@opm.go.kr

1 개요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존속기한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 대상 및 단위

규제등록제도에 의해 등록·관리되는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규제 중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이다.

행정규제의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등록제도 도입 이후부터 2015년 전면적인 제도 개편 이전까지 정부는 규제등록 시 '규제사무'를 하나의 등록단위로 하여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즉, '규제사무'별로 규제정보카드가 작성되고 하나의 규제정보카드를 한 건의 등록규제로 간주한 것이다. 이때 '규제사무'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개의 조(條)를 묶어서 하나의 '규제사무'로 정하였다.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규제사무'가 정해졌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며, 부처별 규제 수 및 총 규제 수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또한 주관적인 '규제사무'가 실제로 법령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이 한 번에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규제가 신설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부처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록체계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규제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우선 규제등록 단위를 '규제조문'으로 변경하여 등록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등록의 객관성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규제등록 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를 규제등록 시스템으로 전송받고, 각 부처 규제 담당자들이 해당 규제정보를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등록된 규제조문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특히, 규제정보포털은 수요자별 관심 분야에 대한 등록규제 조회가 쉽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생활규제 정보(필요한 조치 및 구비 서류, 절차, 관련 법령 등)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국민은 규제정보포털에서 음식점 창업 관련 규제를 '사전 준비 → 점포 준비 → 영업시설 등 설치 → 위생 관리 → 영업신고 및 허가 등 → 사업의 등록'과 같이 절차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04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국민의 생각이 모여

규제 개혁을 이루다

제1절 개요 184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87
제3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270
제4절 국토·해양 분야 315
제5절 농림·산림 분야 507
제6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536
제7절 노동·환경 분야 560
제8절 교육·문화 분야 638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667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725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741
제12절 규제영향분석 789

04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 1 절 개요

집필자 이정호 사무관
Tel. 044-200-2414, turtleb@korea.kr

1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본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 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동법 제11조)

예비심사 결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는 예비심사로 심사를 종결(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규개위에 상정하여 본심사를 실시한다.(동법 제12조) 위원회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는 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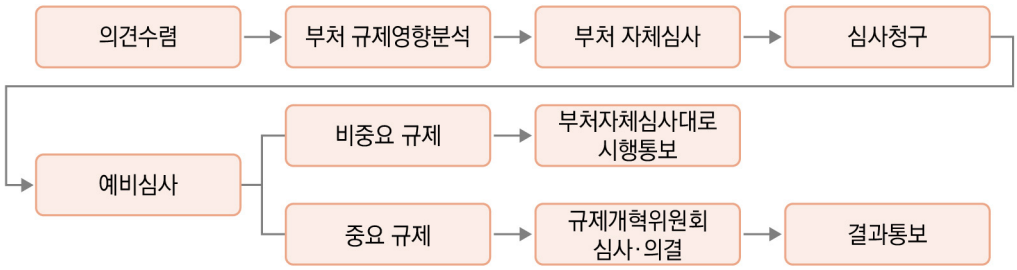

2 2020년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1,515건(중요규제 55건, 비중요규제 1,460건)을 심사하여 이 중 3건은 철회권고, 17건은 개선권고, 12건은 부대권고를 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를 개선하였다.

'20년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결과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20년도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 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기획재정부	14	24	24	0	0	0	0	0
금융위원회	36	118	109	9	0	2	6	1
금융감독원	9	12	12	0	0	0	0	0
공정거래위원회	10	31	23	8	0	2	0	6
국세청	1	1	1	0	0	0	0	0
관세청	2	4	4	0	0	0	0	0
산업통상자원부	38	72	72	0	0	0	0	0
중소벤처기업부	16	31	28	3	0	1	0	2
특허청	2	2	2	0	0	0	0	0
국토교통부	177	343	338	5	0	1	1	3
해양수산부	68	116	116	0	0	0	0	0
해양경찰청	5	10	10	0	0	0	0	0
농림축산식품부	26	45	43	2	0	1	0	1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19년도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 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산림청	15	31	31	0	0	0	0	0
농촌진흥청	2	3	3	0	0	0	0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38	37	1	0	0	1	0
방송통신위원회	9	11	8	3	0	1	2	0
원자력안전위원회	5	8	8	0	0	0	0	0
고용노동부	29	59	57	2	0	0	0	2
환경부	69	148	144	4	0	1	0	3
기상청	5	9	9	0	0	0	0	0
교육부	27	35	27	8	2	3	1	2
문화체육관광부	16	31	30	1	0	0	0	1
문화재청	5	7	7	0	0	0	0	0
보건복지부	31	57	56	1	0	0	1	0
식품의약품안전처	43	79	78	1	1	0	0	0
질병관리청	1	1	1	0	0	0	0	0
여성가족부	9	11	11	0	0	0	0	0
외교부	3	4	4	0	0	0	0	0
통일부	2	7	7	0	0	0	0	0
국 방 부	3	4	4	0	0	0	0	0
국가보훈처	14	44	44	0	0	0	0	0
국무조정실	1	1	1	0	0	0	0	0
행정안전부	28	66	62	4	0	4	0	0
법무부	5	12	10	2	0	0	0	2
인사혁신처	4	5	5	0	0	0	0	0
경찰청	5	6	5	1	0	1	0	0
소방청	11	20	20	0	0	0	0	0
국민권익위원회	5	9	9	0	0	0	0	0
계	770	1,515	1,460	55	3	17	12	23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집필자 / 이정호 사무관
Tel. 044-200-2414, turtleb@korea.kr

1 기획재정부

집필자 / 장이나 사무관
Tel. 044-200-2398, dlskjulia@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관세법 등 총 14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4건 중 2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02.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04.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7) 관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14)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5)
(8) 관세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1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9) 세무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1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0)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1)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3)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8)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14) 액상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24	신설 18, 강화 6 (비중요 24)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관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입국장 인도장 신청 및 승인방법 등 규정** 신설

-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취소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등으로 규정

심사결과 특허보세구역 등 타 보세판매장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동 규제는 승인 및 승인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세관 통제 및 이용객의 편의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여행기간 동안 면세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여행객의 불편이 해소됨에 따른 편익이 상당하여 적정하다는 점 및 유사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주세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 요건 추가** 강화

- 과실(과실즙은 제외)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는 경우에 한해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허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원액을 단순 병입하여 제조·판매하는 과실주 업체는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동 규제는 과도한 세수 감소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과실즙을 병입만 하여 제조하는 과실주 생산자는 현행과 같이 일반주류제조면허의 시설요건을 구비하여 면허를 발급받으면 생산 가능하여 적정하다는 점 및 과실주에 대한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제도는 아직 시행 전으로 동 규제 강화조치로 인한 기존업자의 권익 침해 여지는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신설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과다 보유 및 판매 기피행위 금지

심사결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인상 예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제는 마스크 등 매점매석행위로 인한 소비자 불편 및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이며, 최고가격 지정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의 다른 대안 대비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적정하다는 점 및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으로 설정하여 유사사례(통상 월평균 판매량의 110%) 대비 과도한 수준 아니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강화

- 고시 유효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고, 적용대상 물품을 확대

심사결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기존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제는 수술용마스크까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이며, 매점매석행위 적발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점 및 매점매석 점검체계를 통해 집행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대상사업** 강화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19.1.2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업으로 결정된 사업(「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계약 방식을 적용

심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무공동계약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제는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려는 취지이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제수준이 적정하다는 점 및 지방계약법령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40~49%) 의무화하고 있어 유사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유효기간 연장** 강화

-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0.6.30에서 2020.9.30.까지 연장

심사결과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시장상황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제는 마스크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이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의 유효기간을 단순 연장하는 사안으로 규제수준이 적정하다는 점 및 매점매석 점검체계를 통해 집행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관세법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제한** 신설

- 국민보건, 사회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을 제한하거나,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제

심사결과 폐기물, 오염물질 등 위해물품의 하역으로 인한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동 규제는 업체의 조속한 조치계획 수립 유도, 국민보건 위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며,

국민보건·사회안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수준이 적정하다는 점 및 이동중지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등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약, 국제법규에 따른 통관, 운송수단 제한** 강화

- 조약 및 국제법규 위반 물품에 대해서 통관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조약 및 국제법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출발 및 진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제

심사결과 조약·국제법규 위반물품 통관에 따른 WTO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 신뢰 저하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동 규제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국제법규에 대한 집행 근거를 명확히하려는 취지이며, 조약 및 국제법규 위반물품에 대한 통관·이동제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이 적정하다는 점 및 이동중지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등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휴대품 유치사유 추가 및 일시예치 제한** 강화

- 법령 위반·국민보건 위해 우려물품 등에 대하여도 세관장이 휴대품을 유치(여행자 휴대품 또는 운송수단 승무원의 휴대품이 수입통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통관을 보류하고 이를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중 변질·손상 우려 물품 등에 대하여는 휴대품 예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심사결과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로 운영 중인 유치사유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규제는 법 의무사항 위반·국민보건 위해 물품 등에 대해 유치하려는 취지이며, 관세법 제237조에서 일반 수출입물품이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가 강화된다거나 규제의 정도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및 현재 관세청은 자체규정(고시)에 따라 휴대품 유치·예치를 운용중이므로 집행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세사의 명의대여 및 알선 금지** 신설

- 보세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대여받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심사결과 무자격자에 의한 보세화물 취급 예방 및 알선행위 등을 통한 질서교란 행위 방지하는 것으로, 동 규제는 보세사 자격증 명의대여·알선 방지를 통해 보세화물의 엄격한 관리를 구현하여 수출입 통관질서 확립하려는 취지이며, 한국관세물류협회 등 유관 기관은 보세사 명의대여·알선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및 변호사 등 주요 자격증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전문자격증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합리화** 강화

- 거짓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운영인이 타인에게 그 특허를 명의대여한 사실이 사후에 적발될 경우, 무특허영업 적발될 경우, 전자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

심사결과 선량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동 규제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특허받은 사실·명의대여 사실 적발 시 그 시기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며, 관세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이행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다는 점 및 어장·수산 관계법령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특허 또는 면허를 제한하는 수산업법 등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관세사법 (신설 2)

심사내용 **관세사의 소개 및 알선 금지 등** 신설

- 관세사가 통관업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할 경우 벌칙 신설

심사결과 통관업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가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동 규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격증 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권고를 이행하려는 취지이며, 한국관세사회 등 관세사 업계도 명의대여 근절, 통관대행업무 소개·알선 금지 등을 통한 통관대리시장의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및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 금지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기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법 등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직퇴임 관세사 수임 제한** 신설

-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심사결과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동 규제는 관세사에 대한 신뢰 저하와 통관업에 대한 불신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도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점 및 관세청 등에서 5급이상 퇴직자는 매년 40명 내외로 중요규제 판단기준(1백만명 이상)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세무사법 (신설 2)

심사내용 **세무대리 업무 소개 및 알선 금지 등** 신설

- 세무사 등에게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행위, 세무사 자격증 등 대여·알선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신설

심사결과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한 납세자 등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동 규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격증 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권고를 이행하려는 취지이며,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 업계도 명의대여 근절,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 금지 등을 통한 세무대리시장의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및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 금지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기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법 등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 신설

-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 후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을 제한

심사결과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동 규제는 세무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도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점 및 국세청 등에서 5급 이상 퇴직자는 '19년 기준 148명으로 중요규제 판단기준(1백만명 이상)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우선출자 발행 대상 및 기준 등 세부사항** 신설

- 우선출자 발행요건으로 경영공시(경영의 투명성), 부채비율 200% 이하(재무상태)를 규정하고, 총액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에서 우선출자금 제외

심사결과 우선출자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발행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것으로, 동 규제는 우선출자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의 혼동을 막고 무분별한 우선출자 발행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신설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는 점 및 세부운영기준은 기존에 우선출자를 운영중인 농협·수협·새마을금고의 관련 법령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등 세부사항** 신설

- 이종연합회의 설립인가기준, 설립 절차, 인가 취소 시 공고 방법, 임직원의 겸직 기준 등 규정

심사결과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신설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규제는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한 사업 확대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며, 협동조합기본법 상 타 연합회(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관련 규정 준용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는 점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에서 연합회 관련 유사업무를 이미 수행 중으로 집행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국유재산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국세물납자 우선매수제** 신설

- 성실한 기업승계 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면서 요건 부여

심사결과 기존의 공개매각 방식에 추가적으로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 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동 규제는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성실한 기업승계를 뒷받침하려는 취지이며, 상속증여세법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등과 동일한 요건을 규정하여 적정하다는 점 및 캠코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동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거래정지 제도** 신설

- 거래정지 사유와 거래정지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등 규정

심사결과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들의 원활한 계약이행과 물품 품질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제는 투명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이며, 그간 다수공급자 계약을 이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했던 문제들을 법령화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점 및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등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및 이행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판단하여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하고 있어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외국환거래규정 (신설 4)

심사내용 **외국환 매매 관련 사무위탁** 신설

- 환전사무 위·수탁기관의 자격 등, 사무처리기준, 위·수탁 계약체결, 사무처리내역 보고, 검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등 규정

심사결과 거래내역 모니터링, 소비자 보호, 불법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수탁기관 자격을 설정하고 업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규제는 고객이 환전 신청, 대금의 수납과 같은 단순 사무를 위해서도 은행이나 환전영업자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이며,

환전사무 위·수탁과 관련한 관련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최소 사항만 정하고 있다는 점 및 규제 수준이 현재 존재하는 송금사무 위·수탁과 유사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급등(해외송금) 사무 위탁 등** 신설

- 송금사무 위·수탁기관의 자격 등, 사무처리기준, 위·수탁 계약체결, 사무처리내역 보고, 검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등 규정

심사결과 거래내역 모니터링, 소비자 보호, 불법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수탁기관 자격을 설정하고 업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규제는 송금 사무의 일부 위탁 가능 기관과 위·수탁 사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이며, 송금사무 위·수탁과 관련한 관련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최소 사항만 정하고 있다는 점 및 소액해외송금업자(핀테크) 등 관련 업계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외국환은행의 상법상회사 등에 대한 지급등 사무 일부의 위탁** 신설

- 사무처리기준 내용 추가, 계약 체결 시 보고내용 추가, 계약 변경·종료 시 보고의무 부여, 수탁사무에서 지정은행 적용송금 제외 등 규정

심사결과 현재 존재하는 은행의 상법상 회사 등에 대한 송금사무 위·수탁 관련 기존 조항의 구체화, 명확화하는 것으로, 동 규제는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보완하려는 취지이며, 송금사무 위·수탁과 그에 따른 업무 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어 적정하다는 점 및 추가되는 보고 의무와 지정은행 적용배제 제외의 내용 등이 시장진입 또는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급등(해외송금) 사무의 중개** 신설

- 위·수탁기관의 자격 등, 사무처리기준, 위·수탁 계약체결, 사무처리내역 보고, 검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등 규정

심사결과 국내 소액송금업자에게 송금 사무의 중개를 허용하는 것으로, 동 규제는 국내 송금업자가 소액송금업자에게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제공(송금 중개행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이며, 송금사무 중개와 관련한 관련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최소 사항만 정하고 있어 적정하다는 점 및 규제 수준이 현재 존재하는 송금사무 위·수탁과 유사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액상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신설 4)

심사내용 **액상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행위 지정 및 금지** 신설

- 액상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고 , 매점매석행위 기준 제시

심사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담뱃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제는 시장 질서 혼란 및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려는 취지이며, 매점매석행위 유형 및 판단기준은 과거 담뱃세 인상시 시행했던 매점매석고시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금융위원회

집필자 장이나 사무관
Tel. 044-200-2398, dlskjulia@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등 총 3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1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8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고, 6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하였으며, 11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6)	원안의결 11	신설 4, 강화 7 (비중요11)
(4)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5)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1)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9	신설 9 (비중요9)
(8)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0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0	강화 10 (비중요10)
(11) 보험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4)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2	신설 10, 강화 2 (비중요12)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5)
(14)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5)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01)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1)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0.07.03)	원안의결 7	신설 7 (중요 1, 비중요6)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9)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6)
(20)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본위원회 (2020.08.10)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부대권고 1	신설 6 (중요 2, 비중요4)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0.08.21)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5)
(2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8)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2)
(2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6)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2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1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28)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29)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1)
(3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외 4건	경제분과위 (2020.11.18)	부대권고 5	강화 5 (중요5)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3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계	-	개선권고 2, 부대권고 6 원안의결 110	신설 72, 강화 46 (중요 9, 비중요 109)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내부통제장치 강화를 전제로 한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면제** 강화

-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갖추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인정받을 것을 전제로 의무 면제

심사결과 공적연기금이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라도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규제대상이 3개 공적연기금으로 한정되고 있고 종전과 같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면제하되 내부통제장치를 전제로 면제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공적연기금은 현재도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규제부담이 크지 않아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감사인의 중대한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신설

-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위반 관련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품질관리기준 위반이 반복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그후에도 불이행시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회계법인의 중요 품질관리기준 위반이 반복될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감사품질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개선권고 후 중요한 품질관리 기준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우선 시정요구를 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미국 및 일본은 품질관리제도 미비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방회계법인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 신설

-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상장예정 포함)의 감사인 지정시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가

수도권 외 지역 소재)도 여타 수도권 소재 회계법인과 동일하게 소속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인 경우를 제외

심사결과 상장사에 대한 직권 지정 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사 위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회계법인도 여타 회계법인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규제대상인 지방회계법인 수가 미미하고 예외적으로 완화되었던 요건을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일부 사유에 한해 다른 회계법인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지방회계법인에 대한 예외적 완화조치 중 일부를 다른 수도권 소재 회계법인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금융투자업규정 (신설 4, 강화 7)

심사내용 **일반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범위 명확화** 강화

- 투자일임재산 운용시 허용되는 기관간 Repo거래가 매도·매수 전체가 아닌 매수거래로 한정됨을 명시

심사결과 금전의 차입과 실질이 같은 Repo 매도를 제외하고 Repo 매수만 허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미 대부분의 투자일임업자가 기관간 Repo매도로 운용하고 있지 않아 투자일임자의 운용 제약 정도가 미미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11일 발표)의 일환으로서 행정예고기간('19.3.29~5.8)중 특별한 이견은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용위험액 산정시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 반영** 신설

- 부동산신탁사의 NCR 총위험액 산정요소 중 '신용위험액' 범위에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을 추가

심사결과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하여 NCR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신탁사의 NCR 신용위험액 산정기준에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동 규제로 NCR이 소폭 상승하나

여전히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크게 상회하여 추가적인 부담 없이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운용사(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실시 의무 부과** 신설

-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위기상황분석(Stress-Test)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신설

심사결과 MMF 운용과정에 내재된 리스크(만기·유동성 변환, 레버리지확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관리·감독을 위해 MMF의 위기상황분석(Stress-Test)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 대상인 MMF는 소수의 대형 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존인력의 활용을 통해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국제기구 IOSCO는 MMF에 대해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권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겸직 가능한 프로그램매매의 정의 설정** 강화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업자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정의를 한국거래소 규정이 아닌 금융투자업규정에서 명확히 규정

심사결과 겸직에 따른 이해 상충을 충분히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의 정의를 금투업규정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미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추가 부담이 경미하여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비차익거래에 대해 겸직이 추가로 금지되어도, 겸직금지 대상거래의 실행업무를 별도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활용하여 시행 가능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펀드재산 운용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자문시 내부판단 과정 의무화** 강화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재산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문업자 뿐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게 외부 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심사결과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펀드재산 운용과정에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도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제3자 자문에도 현재 투자자문업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별도의 시스템 개발 및 인건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투자자문사의 자문에 대한 내부 판단 인프라를 모두 그대로 사용 가능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원금)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시 수익증권 추가매입 약정 금지** 신설

-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투자자가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하는 사전 약정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심사결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원본(원금) 범위 내에서만 손실을 부담하는 펀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와의 사전약정 체결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수익증권 추가 매입 약정은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원본(원금) 이내 손실 부담이라는 펀드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규제가 불가피하므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수익증권 추가 매입 약정만 금지하는 것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개선** 강화

- 장부가평가 법인MMF의 잔존만기에 대한 제한을 강화

심사결과 법인 MMF 중 가격 변동성 높은 MMF에 대해 장부가평가 방식이 아닌 시가평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변화된 리스크 여건을 감안하여 시가평가 여부에 따라 만기 제한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리스크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장부가평가 적용 법인 MMF의 경우에만 가중평균 만기 제한이 강화되는 것이고, 유예기간을 2년으로 부여하고 있어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미국의 경우 MMF 가중평균만기(WAM, 이자 등 포함) 의 60일 초과를 금지하고 있고, EU도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 가중평균만기를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등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가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된 리스크를 고려하여 일부는 완화, 일부만 강화하는 것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운용자산 분산 규제 개선** 강화

- MMF에 대한 증권 분산투자 규제의 동일인 판단시 유동화증권의 경우 실질 채무자인

기초자산 발행자를 반영

심사결과 기초자산 발행인이 동일한 경우 동일인이 발행한 것임을 분산규제에 반영하여 특정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이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분산투자규제의 기준 중 일부를 리스크에 부합하게 변경하는 것이고, 유예기간(시행일 : 20.10.1일)을 두고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되므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기존의 분산투자규제를 일부 보완하는 것이고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절차 개선** 신설

- 사전에 정한 시간 이내에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입수되도록 입수 체계에 대한 조항 신설
- 전산장애 등으로 기초자료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입수되는 경우에 대한 절차 규정

심사결과 펀드 기준가격을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절차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기존 절차를 유지하되, 마감시한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주요국들은 ①정해진 시간에 ②안정적으로 ③정확하게 기준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동산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 강화

- NCR의 영업용순자본 차감액 산정시 신탁계정대여금의 건전성에 따라 차감 비율을 차등 적용
- 실제 분양률 수준을 감안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구체화

심사결과 현재는 자산건전성 악화 여부와 상관없이 신탁계정대 총액의 일정 비율(16%)을 일률적으로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시 분양율 반영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의 실질을 반영하여 NCR을 산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실제 자산건전성을 고려하여 반영정도를 차등화하고 자산건전성 분류시 고려해야하는 분양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NCR 비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적기시정조치 기준(150% 미만)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피규제자에 별도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실자산 평가방법 적용 대상 확대** 강화

- 펀드의 부실자산 평가범위에 대출채권을 추가하여 증권에 대한 부실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

심사결과 대출채권은 금융투자상품인 채권과 성격이 유사하나 부실자산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운용사별로 자체기준에 따라 평가함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미 대출채권과 유사한 증권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부실자산 평가방법을 대출채권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현행 규제 개선사항으로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전산시스템 개편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은행업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기업의 시장성 차입 반영을 위해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개편** 강화

- 차입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함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선정시 시장성 차입이 포함되는 총차입금 기준을 도입

심사결과 그간 주채무계열의 자금조달 방식이 다변화되었으나, 현행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은 대출 중심의 신용공여로 한정되어, 회사채, CP 등의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에 시장성 차입 요소를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로 주채무계열사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나 사후관리에 별다른 변동이 없으며, 주채무계열 수는 현행과 비슷한 수준이고 주채권은행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18.10월 ~ 12월 중 금감원은 관련 기관과 함께 「주채무계열 제도 개편 실무TF」를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기간('19.12.20 ~ '20.1.29)중 특별한 이견은 없는 등 규제 수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보험업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공동재보험의 도입 및 재보험사의 적격요건** 신설

- 현행 재보험방식 외에 보험회사가 저축보험료 등 순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면, 출재비율만큼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비례식 공동재보험을 도입

- 공동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재보험사의 적격요건을 기존 재보험의 적격요건 준용

심사결과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금리위험 등의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동재보험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재보험을 비례식으로 허용하면서 거래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고의무 등을 제한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영국, 미국, 호주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주요국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의무사항** 신설

-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및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시 내용
- 산출업무규정 적정성 검토시 고려사항
- 중요지표산출과정에서의 이해상충가능성이 높은 경우 및 업무규정 준수여부 점검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의 유형을 구체화
- 기록 및 보존 대상 자료의 종류

심사결과 법 제정을 통해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업무규정 마련, 공시 및 기록·보관의무 등이 도입된 바,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EU의 Benchmark법을 참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견없는 사안으로 규제 준수에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입법예고('20.1.31~3.13)를 시행하였으며, 동 규제와 관련된 의견이 제정안에 반영(입법예고안에는 법률사무소, 법무조합만 해당하였으나, 이해관계자 의견에 따라 법무법인까지 포함)되어 이견 없는 상황이므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심의사항** 신설

- 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의결권 제한관련 사항을 규정
- 중요지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심사결과 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표 산출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심의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법 제정을 통해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업무규정 마련, 공시 및 기록·보관의무 등이 도입된 바,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EU의 Benchmark법을 참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견없는 사안으로 규제 준수에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요지표 산출기관 지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금융위가 조치명령을 발령할 수 있어(동 시행령 제14조) 행정적 집행가능성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요지표사용기관의 의무사항** 신설

- 중요지표사용기관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아래의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요지표설명서를 교부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 중요지표 산출 중단에 대비하여 중요지표사용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 규정

심사결과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를 체결하는 일반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서 배부 및 설명이 필요한 금융거래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통상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시에는 투자자에게 상품 관련 설명을 반드시 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요지표에 관한 설명만 추가하면 되므로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고, 중요지표 산출 중단에 대비한 필요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계획 마련은 피규제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조치이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신설

-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산출업무 중단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해당 산출기관에 대해 발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금융위원회가 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요지표 관련기관에 대해 발할 수 있는 조치명령권의 범위

심사결과 중요지표 산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거래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내용상 특별히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며, 이견없는 사안으로 규제 준수에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자본시장법령에서도 투자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 관련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9)

심사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 신설

- P2P금융업 영위에 필요한 등록요건 및 절차 규정

심사결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이 P2P금융업자로 등록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P2P금융업 영위 요건이 인허가가 아닌 등록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타 금융업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본시장법령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규제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등 관련 준수사항** 신설

- P2P금융업자 등록내역, 상담업무시간·방식,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할 사항 규정
- P2P금융업자의 자기계산으로 투자시 준수해야 할 사항 규정
-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규정 등 추가 준수사항

심사결과 이용자가 P2P금융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사항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대체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미 준수하고 있는 사항과 유사한 수준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업무범위의 제한** 신설

- 부수업무 제한·시정명령사유로 P2P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규정

- 내부관리업무(준법감시인 , 내부감사, 위험관리) 및 차입자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연계투자·연계대출계약 체결 등 업무, 연계대출계약 심사·승인·해지 업무 등

심사결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P2P금융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부수업무를 허용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제한하고, 등록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는 본질적 업무 위탁을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유사한 규제를 두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신설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자기계산 연계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지침, 임직원 업무수행시 준수절차 등
- 내부통제기준을 제정·변경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의무화

심사결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자의적 정할 수 없도록 필수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내부통제기준을 직접적으로 정하기 보다 필수 규정사항만 정하고, 건전성 제고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변경시 의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라우드펀딩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기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시행령에서 유사한 규제를 두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광고의 제한** 신설

- 광고시 금지되는 행위, 광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 다른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시 준수사항

심사결과 현재는 가이드라인에서 투자를 위한 표시·광고, 계약 체결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용자 보호를 위해 P2P금융업자가 광고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광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광고시 포함사항, 허위광고 금지 등을 현재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자가 광고시 준수해야 하는 유사한 규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투자관련 의무사항** 신설

- 고유재산과 투자자 재산 및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명확히 구분 회계처리
- 법률에서 정한 투자정보 제공방법을 구체화
- 투자자가 P2P금융업자에게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P2P금융업자 조치 마련 의무화
- 계약서 포함 사항, 차입자 이해확인 방법, 보관유지 대상 계약 관계서류 규정
- 예치·신탁 가능기관을 은행, 증권금융회사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으로 한정하고, 동 투자금등이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사유 규정 및 해당 사유 등의 공시의무 규정
- P2P금융업자 영업중단등에 대비한 위부기관 위탁 관련 처리절차 마련시 필수규정사항과 수탁 가능한 외부기관 규정
- 투자자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 양·수도를 위한 P2P금융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 P2P금융업자가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제공해야하는 자료,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요건 및 자료보관·관리의무 규정

심사결과 산업의 건전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P2P금융업자가 투자유치 및 대출행위시 준수해야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연계투자 관련 행위 및 투자금 등 관리의무, 중앙기록관리기관,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관련 의무 등을 부과한 것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투자자 철회에 대한 사항, 청약증거금의 예외적 양도허용사유·우선지급사유, 청약증거금등 관리기관, 중앙기록관리기관 등 유사한 규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등 대출관련 의무** 신설

- 대출시 P2P금융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및 차입자의 상환계획, 신용등급, 변제능력 등 규정
-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총 대출잔액의 7% 또는 70억 원 중 작은 금액 이내
- 투자자 유형별로 투자한도 설정
- 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규정

심사결과 P2P대출은 수수료를 제외한 대출이자가 모두 투자자의 수익인 반면, 기존 투자상품과는

달리 투자위험을 기본적으로 은행이 아닌 투자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장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차입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및 대출한도·투자한도 준수 관련 규제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므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상호저축은행법령에서 대출한도를, 자본시장법령에서는 크라우드펀등 관련 투자한도에 대해 각기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한** 신설

- 법률에서 정한 투자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등의 범위에 법인투자자 및 개인전문투자자를 추가
- 금융기관·법인·전문투자자 유형 및 상품별로 모집금액 대비 투자한도 규정
- P2P금융업자가 투자한도 등의 준수를 위해 취해야하는 조치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P2P대출 상품별로 투자가가 다수가 되도록 규정하여, P2P 플랫폼을 활용한 우회 대부업 행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를 허용하되, P2P금융업 취지를 유지하고 대부업 등의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금융기관등의 투자를 허용하되 P2P금융업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위 조치명령권 및 영업정지** 신설

- 금융위원회가 명령할 수 있는 조치로서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권고, 변상요구 등을 추가 규정하고, 그 사유로 형법 등의 법률 위반을 규정
- 위반행위 별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규정하고, 동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

심사결과 건전성 제고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므로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등의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므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자본시장법령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조치와 그 사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금융투자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환매조건부매매에 대한 현금성 자산 보유의무 신설** 신설

- (현금성자산의 범위) 처분에 제한이 없는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
- (의무 비율)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epo 매도 잔액 중 최고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현금성자산으로 지속적으로 보유

심사결과 Repo 매도자로 하여금 차환이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적절한 유동성을 갖추고, 기일물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Repo 거래시 시장 참여자가 자유롭게 만기구조(익일물·기일물 비중)를 택할 수 있도록 하되, 만기에 따라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고,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등을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평가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강화 2)

심사내용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 강화

- 휴면예금 정의 수정·범위 확대
- 휴면예금자산 권리자에 대한 통지의무 강화
- 금융회사에 휴면금융자산 관련 공시의무 부과

심사결과 휴면예금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발생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규제도입의 필요성 인정됨. 현행과 유사하게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를 참고하여 미거래기간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신규 추가되는 투자자예탁금의 미거래기간 기준은 예금 등 他 상품보다 긴 '10년'으로 설정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대고객 통지·공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미미한 반면, 고객이 잊고 있던 휴면금융자산을 반환해감으로써 얻는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휴면금융자산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되더라도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영구 보장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대상 기관을 상호금융권·저축은행업권에서 은행업권·보험업권·

여전업권까지 확대

심사결과 정책서민자금 공급 중단시 고금리 부담과 금융접근성 저하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정상적 생활이 곤란해지고 불법사금융 확대 등이 우려되는 바, 안정적인 서민자금 공급 필요성이 인정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20.5.1)을 거친 사안이며, 업권별 간담회 및 입법예고('20.2.21~4.1)를 거쳤고, 세부 출연기준(시행령 규정 사항) 외 법률안의 개정 방향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강화 10)

심사내용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 법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임원자격 결격기간이 형평성 있게 정해지도록 범죄행위별 결격기간을 조정

심사결과 법 위반 행위의 경중에 상응하여 임원 자격 결격기간이 설정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 인정됨. 형의 종류별 임원의 결격기간을 형의 경중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은 타법 사례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CEO의 금융전문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요구한 것도 선언적 의무에 불과하고, 외국의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제도와는 달리 금융당국에 의한 CEO 임명 사전승인 의무는 부과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사회의 구성 강화

-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일이 일시에 도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도래하도록 의무화
- 신규 이사후보의 추천시 이사회의 인적 구성이 금융, 법률,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함

심사결과 금융회사 실정에 익숙한 선임 사외이사가 신임 사외이사를 이끌어 경영진 견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인정됨. 사외이사의 순차적 선임의무의 경우 금융회사가 특정 이사회에서 모든 사외이사를 교체하지만 않으면 준수가능하므로 규제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의무의 경우에도 정형화된 경력 요건 등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후보자가 회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명시하기만 하면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부여되는 점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강화

-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참여를 금지
- 임추위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에 대표이사 참여를 금지하고 임추위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CEO의 이사회 내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됨. CEO의 임추위 참여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추천위 참여만을 금지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TF 운영('17.10~'18.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18.3월)를 통해 업권별 금융협회와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중('18.3.21~4.30) 특별한 이견 없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강화

-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동일하게 동일 금융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하지 못함
- 감사위원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임기를 2년 이상으로 보장
-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동일하게 "금융관련 전문성 요건" 적용
-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타위원회 겸직 제한

심사결과 동일인이 한 회사에서 감사직무를 장기간 수행할 경우, 경영진의 직무수행을 감시하는 감사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경영진과 유착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제수단을 설정하여,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감사위원 선임 및 임기제한 등과 관련한 규제는 소규모 금융회사들의 수범 부담을 고려하여 은행, 금융지주 및 자산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2금융권 회사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강화

-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 신설
- 상임 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내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

심사결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성 보장(法 §30①) 조항을 참고하여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 개정시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 금융회사의 수범 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고, 내부감사조직의 업무를 관할하는 상시 임원으로서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미등기임원인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하면 되도록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있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강화

-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
- 현재 공시되고 있는 보수지급 연차보고서 항목에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 선정기준과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을 추가
- 대규모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보고 의무화

심사결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보수는 경영진의 보수와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사외이사, 감사에 대한 독립적 보수체계 의무화는 현행 법률(§25⑥)에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보수체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고액 성과급자 보수 공시 확대는 현행 개별보수 공시 기준과 권역별 고액 성과급자 등을 참고하여 설정, 현재보다 공시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내부통제기준** 강화

-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에게 내부통제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부과

심사결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 준수실태를 점검토록 하여 준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건전 경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내부통제기준 위반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는 대신 내부통제기준 관리에 책임이 있는 CEO 및 준법감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등 피규제자의 수범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TF 운영('17.10~'18.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18.3월)를 통해 업권별 금융협회와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중('18.3.21~4.30) 특별한 이견 없었으며, 내부통제기준의 세부 내용은 금융회사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실패는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에게 귀결됨에 따라 이들의 선관주의 의무 준수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규제 강도 및 해외 사례에 비추어 적정성도 인정되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험관리기준** 강화

- 대표이사, 위험관리책임자,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임원에게 위험관리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부과

심사결과 대표이사, 위험관리책임자,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임원으로 하여금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를 점검토록 하여 준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투명 경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내부통제기준 위반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는 대신 위험관리기준 관리에 책임이 있는 CEO 등만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등 피규제자의 수범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감독기구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임직원의 위규행위(misconduct) 방지 수단 마련을 위한 Working Group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해외 사례에 비추어 적정성도 인정되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강화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심사결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도 금융회사의 업무건전성을 감시하는 핵심적 직무를 수행하므로, 비록 그 직책이 임원이 아니라 직원인 경우에도 선임 사실을 공시하여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회사들이 이미 모든 임원의 선임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직원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내역을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고, 동 규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방안('17.11월)」 제안 사항을 수용한 것이며, 규모가 영세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운용자산 5천억 원 미만의 투자일임·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주주 변경승인 등** 강화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등록업과 동일하게 대주주 변경 후 2주 이내에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심사결과 동 법 적용대상 금융업 중 등록업의 경우 대주주 변경시 금융위 사후보고가 원칙이나, '15.7월에 신설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경우 보고의무가 미비한 바, 2개 등록업에 대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규제 일관성 등을 위해 현행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별도의 제약 없이 대주주 변경이 가능하고 사후보고 서식이 단순하며 보고 기한도 2주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업권간 규제 차익을 제거하고 대주주 변동상황을 원활히 관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비례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보험업법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신설

- 보험회사가 산출·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외부 보험계리사 등을 통해 검증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적정성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정성을 보험업법상(§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검증 받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캐나다, 호주 등도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근거 보완** 강화

- 제재근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심사결과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 및 인적 제재요건을 합리화 및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은 그동안 미비되었던 제재근거를 추가·보완하는 것에 불과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관계기관 등과 사전협의, 입법예고('16.6.28~8.8)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계약 이전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강화

-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이전의 요지 등 공고뿐만 아니라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

심사결과 현행법상 보험계약 이전시 일간지 공고만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 이전사실을 개별 계약자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은 계약이전 사유 발생시 보험회사의 개별적 통지의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의(異議) 진술권의 실효적 보장 등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책목적에 비추어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공고 외에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집행상 행정적·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제에 대한 공동검사 근거** 강화

- 공제업 소관 중앙부처는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 요구 가능

심사결과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부실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무부처가 감독·검사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금융위와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은 공제기관의 주무부처가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전문인력 활용시 집행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설 10, 강화 2)

심사내용 **거래정보의 보고의무** 신설

- 거래정보 보고 의무자에게 거래정보를 TR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심사결과 '09년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국내에 도입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된 거래정보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기초로 규제 할 필요성이 인정됨.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TR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동 규제는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하여 이미 도입된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 신설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기관에 증거금 교환의무를 부과(단,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을 통한 거래 등은 제외)

심사결과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행정지도(행2017-11002호)로 운영되고 있는 증거금 교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 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행정지도로 도입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행정지도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해당 내용을 기초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G20 합의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법 체계 준수를 위해 증거금 교환의무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책적 적정성이 인정되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 신설

-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TR 선정제를 인가제로 변경하고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심사결과 '09년 G20 정상회의에서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 합의의 이행을 위해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된 TR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된 TR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TR 도입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하여 동 규제를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19.9.24.~10.14)중 특별한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원 및 내부통제규정** 신설

- TR 임원의 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TR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상충 방지 등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09년 G20 정상회의에서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 합의의 이행을 위해 TR 임원 자격 및 내부통제기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기초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TR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국제적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것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신설

- TR이 고유업무인 거래정보저장업 외에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고유업무와 겸영업무의 분리운영의무를 규정

심사결과 TR이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영역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일반사업위험의 증대 및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겸영 및 부수업무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TR의 겸업을 허용하되, 그 범위를 제한하고 고유업무인 거래정보저장업과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분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EU, 호주의 경우 TR이 고유업무(거래정보 수집·관리 등) 이외에 다른 업무 수행시 고유 업무와의 분리 운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부수업무 외의 겸업을 제한하면서도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는 경우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업무규정의 제·개정** 신설

- TR이 업무규정을 정할 때 필요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TR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부여

심사결과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TR 업무규정 관련 조항이 있으나 업무규정의 내용에 대해 정하지 않고 있어 업무규정의 중요사항에 대해 법률에 규정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이미 금융투자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TR의 업무규정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되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TR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합리적 규제로

평가되고,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TR 업무규정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거래정보의 제공 등** 신설

- TR에 거래정보를 감독기관 등에 제공하고 통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

심사결과 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된 TR의 거래정보의 제공 의무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기초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이미 금융투자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TR의 거래정보 관련 의무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 규제로 평가되고, 해외주요국에서는 TR의 거래정보·공시 및 보관에 관하여 대부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거래정보저장소 및 임직원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제재근거 마련** 강화

- 직무 관련정보의 이용금지 및 영업양도등의 승인의무를 TR에 부과하고, TR의 임직원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 등을 제한
- TR의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임원의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TR에 면직 등의 조치를 요구 가능
- TR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심사결과 국제기준 준수 및 TR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TR에 대한 관리·감독사항 및 검사권을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TR이 수행하는 기능상 거래정보의 집중이 불가피하므로 TR 및 그 임직원의 거래정보 오·남용 등을 방지하는 한편 TR 운영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TR 도입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하여 동 규제를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19.9.24.~10.14)중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공시 등** 신설

-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보상 체계 등을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심사결과 투자자가 '좋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도 자율규제를 통해 공시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법적 근거마련을 통해 공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고, 입법예고 기간중('18.3.9~4.18)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등록취소** 강화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경우 중대한 법 위반사항인 만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해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등록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나, 금융당국에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고, 금융위가 부패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것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등록 취소** 강화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해지되거나 해산한 경우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감독당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해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등록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됨. 펀드 등록·취소 등의 절차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위가 부패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등의 보고 의무** 신설

- 창업·벤처 PEF를 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는 펀드 운용현황을 금융위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각각 보고

심사결과 정책적 지원이 실효성있게 지속·발전되기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사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창업·벤처 PEF 운용현황 등이 금융위와 동일하게 보고될 필요성이 인정됨. 창업·벤처 PEF를 설립·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가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을 중기부에도 동일하게 보고하는 것으로서 부담이 거의 없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험자본에 대해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이 대폭 지원되는 데 반해 부과되는 의무는 미미한 점에 비추어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신설

- 고령투자자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를 강화
- 위험도가 높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정의 조항 신설 및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 펀드를 사실상 운용하는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심사결과 투자자의 특성, 금융상품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OEM펀드의 판매사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금번 규제는 투자자의 특성, 금융상품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투자자보호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해외 주요국(美,EU, 일본,홍콩 등)은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Complex product"로 정의하고,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특별히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투자권유시 설명의무 확인방법 제한** 강화

- 금융투자업자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설명의무 이행 확인 방법에서 서명, 기명날인, 녹취만 인정하고, 형식적 전달방법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E-mail, 우편, ARS 방식은 제외

심사결과 설명의무 확인 방법으로 E-mail, 우편, ARS 방식이 인정됨에 따라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금융투자업자가 임의로 처리할 우려가 있는 바, 설명의무 이행 확인방법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만 인정하여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기관 모니터링 결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판매 소요시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확인 양식 변경, 고객앞 교부 등의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기관의 규제부담이 크지 않아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투자자보호 강화** 신설

-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대상의 종류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시 위탁자(투자자)가 그 변경내용을 자필기재하도록 의무화
- 변경된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

심사결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금번 규제는 투자자가 운용방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필기재를 의무화하고, 계약체결시에 적용되고 있는 투자권유규제를 투자방법 변경 관련시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기존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추가 부담이 크지 않아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증권신고서 규제 강화** 강화

- 파생결합증권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초자산의 구성 및 수익구조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괄신고서 제출을 허용

심사결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원금손실가능비율이 큰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제한적으로 일괄신고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됨. 금번 규제는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한해 기존 일괄신고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감독당국의 신고서 수리 소요기간 증가로 인한 부담 등이 예상되나, 금융기관 모니터링 결과 기존의 개별신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강화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상향 조정(1억 원 → 3억 원 이상)

심사결과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최소투자금액도 3억 원이고,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규제체계 일원화

추진중이며, 현행 최소투자요건 규정시('15.10월)와 달리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도입('17.5월)으로, 공모펀드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간적접인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한 점도 감안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보험업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법률 및 의료리스크 사전검증 절차 마련, 보험협회 제3보험 신상품협의기구의 심사 강화** 신설

- 보험상품개발을 위해 기초서류 작성·변경시 준수사항으로 전문가의 심의절차 추가
- 제3보험 신상품개발시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 협의기구의 심사범위 및 기능 확대

심사결과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사의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보험회사가 운용중인 신상품 출시 이전에 리스크를 검증하는 내부통제절차를 일부 강화하는 것이고, 현행 보험협회의 제3보험 신상품 협의기구 활용 가능하고, 기존 규제를 일부 강화하는 것이고 규제부담이 크지 않아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경영지도비율** 강화

- '20년중 한시적으로 일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법인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영위 사업자대출(개인+법인)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심사결과 자금여력이 실물경제와 거리가 있는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어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 자금에 대한 규제는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주택임대업, 매매업의 경우 여타 일반업종 사업자대출과 달리 기본적으로 가계대출과 성격이 유사하여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야기하는 만큼 가계대출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부동산 관련 업종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기존 원화예대율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제공 제한** 신설

-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신용카드사의 금지행위 중 하나인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

심사결과 공정위의 경쟁영향평가결과 구체적인 규제방법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중 서울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및 일부 신용카드사는 금번 규제에 대해 반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 "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가맹점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보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에는 동의하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제한하여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개별 법인별로 일률적(0.5%)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카드사의 영업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대형법인 중심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것은 사실이나, 법인간 경제적 이익규모가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법인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현재 카드사가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이용액 대비 1% 이상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별 법인에 대한 0.5% 규제는 다소 과도할 소지가 있음. 규제도입의 주 목적인 '수수료 인하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카드사별 전체 법인회원 총액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규제의 중요 내용인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법령이 아닌 하위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금번 규제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임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의 주요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의미를 규정할 때 법인별로 규제하는 방식은 카드사의 영업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카드 이용액 대비 경제적 이익 비율 일정수준 초과 여부는 개별 법인이 아닌 카드사별 전체 법인회원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을 **개선권고**함.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7)

심사내용 **신용정보업 허가 요건 등** 신설

- 법률에서 신용정보를 이용한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존 신용정보업을 세분화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을 신설함에 따라 허가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外에 겸영·부수업무 규정

- 통신료·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CB업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거래 관련 정보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용정보주체의 이익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가명정보의 결합, 반출이 허용됨에 따라, 데이터 결합시 결합의뢰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이 준수해야하는 구체적 기준 마련

심사결과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면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량의 신용정보를 제공, 수집, 관리하여 국민들의 금융거래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용평점 등을 생성하는 신용정보업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전문인력의 보유, 금융회사에 준한 최대주주 자격심사 등이 불가피한점, 신용정보업자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신용정보업자 및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임과 동시에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가 설정 한점, 업무유형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진입요건 및 겸영·부수업무를 세분화하고, 데이터 결합기준도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간 균형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등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규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에 동의

심사내용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행위규칙** 신설

- 신용정보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신용정보수집의 방법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기관 및 방식, 기록보존의무 등
- 가명처리에 활용된 추가정보 보관 방법, 가명처리 행위규칙

심사결과 신용정보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산업 영위가 허용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신설되며, 금융회사 등이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예외적 동의없는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자의 행위규칙 등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됨. 신용정보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금융회사가 실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로써 사업자간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점과 신용업자 간담회, 금융회사 및 핀테크 사업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간담회, 핀테크 산업협회 서면의견조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시행령안을 마련 한 점을 감안하여 규제에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데이터전문기관** 신설

-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서버를 그 외의 직원과 서버와 분리하는 등 위험관리체계를 구축
-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일정한 자본금, 매출액 등을 갖춘 법인으로 함
-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후 3년으로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위험관리체계 및 지정기간, 지정 취소 사유 등 데이터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금지하자는 의견과 민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절충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지닌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인 만큼, 충분한 위험관리체계 및 조직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동 규제를 도입한 점, 직접적인 규제 대상자인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업 진입을 희망하는 핀테크 사업자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방안인 점, 범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의 부대의견 등을 반영한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기준의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보제공자의 동의 관련 의무사항** 신설

-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을 알리도록 함
- 금융회사는 정보활용제공동의서를 요약보고서로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범주화하여 알리도록 하고, 정보활용 동의등급 등을 같이 알리도록 하며 불이익한 조치를 축소고지 못하도록 함

심사결과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징구하는 정보활용제공 동의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주체 본인의 알고하는 동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요약 동의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요약동의서 징구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해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정보활용제공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거부권이 있고 동의거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알리도록 한점, 신용업자 간담회, 금융회사 및 핀테크 사업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간담회, 핀테크 산업협회 서면의견조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시행령안을 마련 한점에 비추어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용정보 활용 관련 의무사항** 신설

- 금융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정보보호 계획, 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1회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시 서면, 전자서면 또는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등을 알리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은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정지 또는 중단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은 필수고지사항, 정보활용 동의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정보활용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가독성 및 요약동의서 제공 여부 등을 감안하여 동의등급을 산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신규 도입되었으므로 정보주체 개인의 전송요구권 행사의 구체적 방식 및 알려야 하는 사항, 금융회사가 이에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달 할 때 전달방식 및 전달하지 못한 경우 처리절차 등을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됨. 신용업자 간담회, 금융회사 및 핀테크 사업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간담회, 핀테크 산업협회 서면의견조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시행령안을 마련 됨 점과 금융기관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을 위해 최소한의 주기(연 1회)에 대외기관이 아닌 각 회사별 신용정보보호관리인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설명 및 통지의무 등** 신설

- 금융회사가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거래를 체결한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금융권역별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 신용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알리도록 함
- 금융회사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불이익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 7일 전까지

서면 등으로 정보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도록 함

-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자동화된 금융거래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 등의 결정에 대해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정보주체의 정정또는 삭제 요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불인정됨을 명확히 함

심사결과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금융거래를 유도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신용업자 간담회, 금융회사 및 핀테크 사업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간담회, 핀테크 산업협회 서면의견조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한 점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하는 필요최소한의 내용을 명확한 절차를 통해 규정하였으며, 금융소비자인 개인신용정보주체가 금융거래로 인한 영향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효용이 큼 점을 감안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위의 조치명령권** 신설

-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 확립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해 경영이나 업무방법 개선 요구, 변상요구, 고발 또는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누설 등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 확립을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 경영이나 업무방법 개선 요구, 변상 요구, 고발 또는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량의 정보유출, 침해사고 발생, 천재지변 등 위기상황의 내용에 맞추어 다양한 조치명령을 하게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량의 정보유출, 침해사고, 천재지변 등 위기상황 발생시 다양한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신용업자 간담회, 금융회사 및 핀테크 사업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간담회, 핀테크 산업협회 서면의견조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한 점에 비추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신설

- 부수업무 미신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부수업무를 한 경우 →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의 접근매체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또는 신용정보제공자가 안전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 3개월간 영업 전부정지
- 질병·상해 등의 정보를 수집·조사·제3자 제공할 때 사전·개별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령상 목적 외의 경우로 해당 정보를 이용한 경우 →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심사결과 신용정보업자 및 개인신용정보관리업자는 다량의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칙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인정됨. 사안별 개인신용정보 침해 가능성, 신용정보업자의 건전성 훼손 우려 및 현행 규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기준인 점과 이해관계자 및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서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기준 마련 한 점 및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추가된 기준에 따라 처분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어려움 없는 점에 비추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9)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설 6)

심사내용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요건, 준수사항 등** 신설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설비요건 및 임원 겸직 승인기준 등 준수사항, 정보집합물 결합기준 등
- 신용정보업자의 겸영 및 부수업무

심사결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이 신용정보업자로 허가받아 건전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설비요건, 겸영·부수업무, 데이터 결합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해 설비요건, 데이터결합기준 등의 규제가 불가피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간 균형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업계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한 점에 비추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주주요건 변경승인 등** 신설

- 신용정보법령에서 위임한 대주주 요건 및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의 세부사항 규정
-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사항 등 규정

심사결과 신용정보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고 신용정보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 진입·변경 승인요건',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관련 조치사항을 구체적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신용정보업이 지니는 금융산업 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주주 요건 등을 타법 사례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점과 업계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 한 점 및 직접적인 규제대상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방안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된 점에 비추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용정보 활용 관련 의무사항** 신설

-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블록체인 등에 저장한 경우 암호화된 신용정보를 재식별(복호화)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개인신용정보와 연계된 정보를 저장한 경우 해당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
-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규정
-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요구시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및 보유기간을 특정
- 신용정보이용자등의 정보활용 동의등급 관련 준수사항 규정
- 유형별 손해배상 최소가입금액 규정

심사결과 신용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신규 도입된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면서 실질적인 개인정보 활용이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책임 보험료, 가명정보 보호조치 준수 비용 등에 연간 약 1.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된 점과 업계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하였을 감안하여 규제의 적절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준수사항** 신설

-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총 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 및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자에 대해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정보 생성을 금지

- 개인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 규정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을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 등으로 규정

심사결과 개인신용정보가 오·남용 우려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신용정보 이용업체 등이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규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의 경우 동의없는 활용으로 인해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규제가 불가피한 점과 업계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한 점과 개정 신용정보법령에 따라 확대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에 비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오·남용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데이터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 데이터 전문기관이 갖추어야할 물적·인적요건을 세부적 규정
  - 자본금 50억 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정보 관련 매출액 합계 2억 원 이상(영리법인의 경우)
  - 데이터·보안 전문인력과 법률 전문인력 보유, 임원의 적격성 검증
  -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업무공간, 사무장비를 갖추도록 규정
  -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재정능력 충족(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200% 이내 등)
  -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비 등

심사결과 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결합 처리를 위해 충분한 위험관리체계 및 데이터 처리 역량을 갖춘 기업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데이터전문기관은 신뢰성 있고 정보보호에 충실한 기관이어야 하므로 충분한 위험관리체계 및 조직구조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피한 점과 업계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한 점 및 자유로운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되 그 절차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충분한 정보보호체계를 갖춘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설명 및 통지 의무 등** 신설

- 법령외에 금융회사등의 사전 통지의무사항 추가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대상 거래의 종류를 금융회사등이 대출거래, 지급보증 등의 거래로 인하여 채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 규정

심사결과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한 사항에 대해 보다 손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건전한 금융거래를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직접적인 규제 대상자인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업 진입을 희망하는 핀테크 사업자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였고,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명확히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0)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신설 6)

심사내용 **감독대상의 지정등** 신설

-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요건 규정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 금융업의 인허가등으로 금융그룹감독 대상으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금융그룹의 건전성 사전심사

심사결과 우리나라의 '非지주 금융그룹'은 비중과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개별회사·금융지주 중심의 금융감독으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현재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행정지도)을 통해 '18. 7월부터 간접적으로 규율중에 있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규제대상을 모범규준과 같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금융회사로 구성된 복합금융그룹으로 규정한 점과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주요국에서 정착된 '국제규범으로 99년 Joint Forum의 감독원칙 공개 이후 미·유럽·일본등에서 도입되어 운영되는 점 및 모범규준 제정, 2차례의 개정 및 지난 2년간의 모범규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정안을 마련한 점에 비추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표회사의 선정 및 업무** 신설

-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등을 총괄 수행토록하고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심사결과 금융그룹은 원칙적으로 다수의 금융회사가 있는 것을 전제하므로 금융그룹 전체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가 필요하다는 규제 필요성은 인정되. 수직적 지배구조가 형성된 금융지주에서도 지주와 은행 간 갈등 발생 감안시, 대표회사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장치 없이 회사 간 협의에 기반한 금융그룹 감독체계는 법 제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정당한 이유' 등의 면책사유가 행정기관의 해석에 과도하게 따를 경우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므로,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상당하므로 대표회사와 소속회사의 업무 등 의무 및 그의 해태에 따른 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조항(제8조, 제9조, 제25조 및 별표)에 대해 2년의 일몰 설정을 **개선권고**하고, 제25조 및 별표의 면책사유인 '정당한 이유'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의하여 보완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신설

-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여 소속 금융사간 협의를 통해 금융그룹 차원의 공통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준수
- 재무적 위험 등 통합위험의 점검·관리를 위해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체계 마련하여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금융그룹 위험관리기준을 마련·준수

심사결과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금융그룹 차원의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체계 및 위험관리체계 규율 보완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그룹의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모호할 개연성이 높아 대상을 특정화할 필요가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위한 제10조제1항4호, 제12조제1항 4호에서 말한 '금융그룹의 고객'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므로 하위규정에서 범주화, 특정화 할 것을 **부대권고**하고, 그룹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은 소속 회사간 협의를 통해 마련되는 것이므로 경영간섭의 가능성이 약하다는 금융위 의견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그룹 차원의 건전성 확보** 신설

- 자기자본 충실의무, 적정한 유동성 유지의무 등 경영 건전성 확보의무를 일반적·선언적으로 규정
- 금융그룹의 적절한 자기자본 유지 및 자본적정성의 정기적 평가·점검 의무

심사결과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위험관리의무를 금융그룹에 부여하고 예기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본적정성 점검·평가 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점검·평가 등을 통한 관리가 불가피하고, 모범규준상 제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20년 하반기에 모범규준에 따른 모의평가도 예정되어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으며 Joint Forum 감독원칙 등은 권역별 규제차익, 위험전이,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강조되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 관리 등** 신설

- 금융그룹은 소속회사간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
- 금융그룹은 금융·비금융계열사의 이해상충 및 비금융계열사 등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그룹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동반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관리해야 함
- 금융지주와 유사하게 소속 금융회사간 금융거래정보 등 공유,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허용

심사결과 신용정보법 예외사항으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간 고객정보가 공유가 허용되는 만큼 고객정보관리인 선임 등 엄격한 고객정보 관리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됨. 다수의 금융업을 포함하는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금융업간 규제차이를 해당 금융회사 간 거래 등으로 우회하여 금융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형태의 위험전이도 발생이 가능한 만큼 소속 금융회사간 고객정보 공유 등이 허용하면서 고객정보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Joint Forum의 금융그룹 감독원칙 등에서 그룹위험관리체계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범규준과 비슷한 내용으로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모범규준 제정, 2차례의 개정 및 지난 2년간의 모범규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정안을 마련하 점에 비추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그룹 위험의 평가·감독·검사 등** 신설

-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준수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회사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및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규정
- 금융그룹은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위험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감독

-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하여 단계별로 위험관리 조치 실시

심사결과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유지, 내부통제·위험관리 체계 확립 등 동 법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평가 및 단계별 위험관리조치, 금융회사등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범규준 제정 준비 과정에서 실무 TF를 운영하였으며('18.2월~3월) 법안의 국회논의에 대비하여 법안 하위규정 제정 실무 TF를 운영('19.9월~10월)하였으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등 에서 경영지도 등 유사한 규제 사항을 규정이 있는 점과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그룹 관련 주요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주기적으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점에 비추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신설 5)

심사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 신설

- P2P금융업 영위에 필요한 등록요건 및 절차 규정(인력·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세부요건, 재무·사회적신용 요건)
- P2P금융업자의 대주주로서 갖추어야할 충분한 출자능력, 금융거래질서 준수 의무 등을 규정
- P2P금융업자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준수 규정

심사결과 최근 P2P금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 등록요건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취약업체들이 진입하여 업계 부실 및 신인도 저하,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가 P2P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업계 간담회('19.10.17일)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기간('20.3.31~4.30)중 금융위는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 수렴 및 반영하였고, P2P금융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본시장법령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인적·물적 및 대주주 요건 등이 유사한 수준으로 타 금융업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심사내용 **정보공시, 자기계산 연계투자, 광고 등 관련 준수사항** 신설

- P2P금융업자가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임직원수, 전문가 재직 내역, 대출잔액 및 연체율, 경영건전성 우려사항 등을 명시하는 한편 상품 유형, 공시기간 및 주기를 규정
- P2P금융업자의 자기계산으로 투자시 준수해야 할 사항 규정
- 불건전영업행위 구체화
- 제한대상인 담보대출(금융기관 대출채권 및 P2P금융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 담보부대출 등) 및 차입자(대부업자 등)를 규정하고, 특수관계인 투자 계약 금지
- 광고 포함사항 및 절차 등을 구체화

심사결과 소비자 보호 및 P2P금융업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공시의무,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의무 등을 부과하고 투자자 이익제공 및 수령 기준, P2P금융업자의 상품 광고시 유의사항 등을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업계 간담회('19.10.17일)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기간('20.3.31~4.30)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 수렴 및 반영하였고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다른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고 P2P금융업자가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과 동일하여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신속한 대출실행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대체로 반영하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심사내용 **겸영업무 및 업무위탁시 준수사항** 신설

- 대출 중개·주선 업무시 대부업자에 대한 중개·주선 금지, 차입자로부터 대가 수취 금지,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규정
- 위탁업무 범위, 기록유지 등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포함사항, 업무위탁 운영기준의 제정 및 업무위탁 관련 보고 의무 부과

심사결과 P2P금융업자에게 대출 중개·주선 업무 및 업무위탁을 허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업계 간담회('19.10.17일)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기간('20.3.31~4.30)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 수렴 및 반영하였으며, 대부업법,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도 유사한 규제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정성을 갖춘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심사내용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등** 신설

- 연계대출·투자계약 체결·해지 관련 처리절차·방법, 차입자 정보 확인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등
-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 2주내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의무 부과
- 준법감시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업무의 겸직을 금지
- 준법감시인 임면시 7영업일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의무,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 관련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심사결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자의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업계 간담회('19.10.17일)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된 점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유사한 규제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 및 제정·변경 보고,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등을 규정하는 것은 P2P금융업의 건전성 제고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심사내용 **투자관련 의무사항** 신설

- 투자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투자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리 공시해야 하는 투자상품에 대한 공시기간(최대 72시간 이내)을 규정
- 저축은행의 경우 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 BIS비율이 최근 2개년도 연속 10% 이상인 경우에만 예치기관으로 지정 가능
- 존속기간 만료, 해산, 법원의 명령·판결 등 투자금 우선지급 사유를 규정
- 투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한 경우 계좌개설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투자금 등 관리과정에서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
-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공제등의 최소금액 규정 및 폐업 등 영업 존속곤란 시에도 보험·공제 가입·준비금 적립 의무 부과
- 시행령 위임 범위내에서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설정

심사결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업계 간담회('19.10.17일)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기간('20.3.31~4.30)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 수렴 및

반영하였으며, 투자한도는 현재 가이드라인의 P2P업체당 투자한도 수준 및 유사한 크라우드펀딩의 총 투자한도 규모 등을 고려하는 등 투자자앞 정보제공 의무, 투자금 보호를 위한 예치기관, 우선 지급사유, 손해배상책임, 투자한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규제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1건)

심사내용 **부동산PF 관련 규제 강화** 신설

- 채무보증에 대한 정의 신설
-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에 부동산PF 채무보증을 추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 등을 신설
-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 신설

심사결과 경기 민감업종인 부동산업의 업황 부진시 여전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PF 관련 대출·채무보증 한도 제한, 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19.12월) 마련시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보험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는 부동산PF 채무보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PF 채무보증에 제한이 없는 금융투자업(증권사)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중있는 등 부동산PF 관련 채무보증, 대출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예방하고 여전사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3) 금융투자업규정 (신설1, 강화 1)

심사내용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 설정** 신설

-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
- 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00%로 제한

심사결과 경기 민감업종인 부동산업의 업황 부진시 개별 증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채무보증비율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투자업 CEO 간담회(금융위, '20.1월)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규정 입법예고('20.5.11~5.22)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였으며, 보험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는 부동산PF 채무보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중으로 부동산 채무보증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됨.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 강화**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의 예외로 인정되는 항목에서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외
- 금감원장이 부동산 유형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등을 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모험자본 공급 촉진이라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 대출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부동산대출에 쏠림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시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투자업 CEO 간담회(금융위, '20.1월)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규정 입법예고('20.5.11~5.22)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였으며,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등 특정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고 부동산 대출에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상호금융업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위험관리 강화 등** 신설

심사결과 상호금융업권도 타 수신금융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상호금융업권으로의 불건전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금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기간('20.7.3.~8.12.)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호금융업권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조합의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여신업무 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 대책 마련 관련 의무는 은행, 저축은행 등 타 수신금융업권에도 법규로 규정하고

있어, 타 업권 대비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신협 및 신협중앙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신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신협 및 중앙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

심사결과 신협 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정보주체의 정보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예방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신협중앙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기간('20.7.3.~8.12.)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협 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고객의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고, 신협 등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며, 저축은행, 여전사 등 타 금융업법령에도 금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하고 있으므로, 타 업권 대비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6) 보험업감독규정 (강화 2)

심사내용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대상에 보험안내자료 중 상품설명서 추가** 강화

- 보험업법에서 보험이해도 평가대상이 확대 된 것을 반영하여,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로 수정
- 보험업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보험안내자료”를 “상품설명서”로 구체화

심사결과 보험이해도 평가대상인 보험안내자료를 상품설명서로 구체화함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를 수행하는 보험개발원과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행정예고('20.9.1 ~ 10.12) 중에도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보험소비자 이해도 평가대상인 보험안내자료를 상품설명서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에 따른 편익은 큰 반면 규제부담은 크지 않아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였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조사협의회 지정기관에 신용정보원을 추가** 강화

- 보험조사협의회 지정기관에 신용정보원을 추가

심사결과 민영보험 정보를 보유한 신용정보원을 보험조사협의회에 참여시킴으로써 공·민영보험간 다양한 자료공유 등을 통한 보험사기 방지 대책수립 및 효율적 조사업무 등에 기여가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필요성이 인정됨. 보험조사협의회 실무협의('20.6.30)에서 구성기관 추가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행정예고('20.9.1 ~ 10.12) 중에도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민영보험 정보를 관리하는 신용정보원을 보험조사협의회 지정기관에 추가하는 경우 보험사기 방지 및 효율적 조사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7) 보험업감독규정 (신설1, 강화1)

심사내용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부가방식 개선** 강화

-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의 50% 이상을 최소 15개월간 보험료적립금에 적립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함

심사결과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시납 저축성 보험에 대해 월납 저축성 보험과 같이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되어 이를 규제하는 것으로 규제필요성이 인정됨. 생명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만기가 통상 3~5년이며, 책임준비금 적립기간(계약체결비용 분급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사업비 규모를 늘려 소비자혜택(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 적립기간을 최소 15개월로 설정되어 일시납 저축성 보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정의 명확화 및 상품설계 제한** 신설

- 변액보험은 소비자의 과도한 위험부담 방지를 위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개발하지 않도록 함
- 보험료 납입기간중에는 해약환급금을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약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이(각 시점별 기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100%와 표준형 상품의 환급률 중 큰 비율을 초과하는 구조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지 못하도록 제한

심사결과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함에 따라 이를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한 가입자가 늘고 있는데, 다수의 계약자가 보험을 중도해지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해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함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개발을 일부 제한하는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금감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기간('20.7.9.~8.21.)중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설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보험회사에서 무(저)해지보험 상품을 개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고 보험료를 인하 가능하여 규제에 따른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28) 은행업감독규정 (강화 2)

심사내용 **은행 주주의 보고사항 조정** 강화

- 은행주식 4% 초과 보유 동일인 등의 보고대상에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제외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

심사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주주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은행 지분 보유한도가 달라지므로 관련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감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규정변경 예고기간('20.6.16.~7.17.)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주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한도 준수 여부 감독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고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심사내용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예정된 금액까지 공시** 강화

-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을 '제공된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함하도록 개정

심사결과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과 동시에 은행의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를 예방할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해당 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므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시장에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등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29)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신설 2)

심사내용 **산출업무규정 필수기재사항 및 금융위 승인대상 중요사항** 강화

- 비상사태 발생시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등으로 일반투자자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등을 산출업무규정에 반영하도록 함
- 일반 투자자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금융거래를 도울 수 있도록 중요지표가 사용되는 금융계약,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 중요지표의 잠재적인 한계 등을 중요지표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함
- 개정시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 "중요 산출업무"의 범위를 지정하고, 중요 산출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변경을 사전 공시할 경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지표 산출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산출업무규정, 중요지표설명서, 중요사항 변경시 공지사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금감원 등과 10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감독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0.7.9.~8.21.)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여타 감독규정 등에서도 투자자 보호, 관리·감독 방안 등을 마련되어 있고. 중요지표 산출의 절차적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사후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심사내용 **중요지표 설명서 등이 필요한 금융상품 및 검사, 감독** 강화

- 중요지표 설명서가 필요한 금융상품을 대출, 적금, 어음, 종합투자계좌 등으로 구체화
- 검사의 방법·절차 등을 명시하고 업무정지의 기준을 제시

심사결과 금융상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지표 설명서 등이 필요한 금융상품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는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금감원 등과 10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감독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0.7.9.~8.21.)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는 검사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을 구체화되어

있으며, 설명서가 필요한 금융상품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불가피성이 인정됨.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농·수협은행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상향 조정 및 출연금 선납근거 신설** 강화

- 농협·수협은행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상향 조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선납 근거 규정 신설

심사결과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농림수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농림수산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원 확충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서도 금융기관의 기금 출연근거 및 선납근거를 마련되어 있으며, 농·수협은행에 대한 출연요율 상향 조정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로, 농협·수협이 여타 시중은행과 동일한 출연요율(0.36%)을 부담하도록 농·신보 출연요율이 책정되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함.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3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원리금 변제시 대부업자의 계약서류 원본 반환의무 신설** 신설

- 대부업법 자체에 채무자는 물론, 보증인과 대리인까지 계약서류 원본에 대한 반환을 청구
- 채무자 등의 요청시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원본을 반환

심사결과 대부업권의 경우 계약소멸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커 채무자 보호 차원에서 대부업자의 계약서류 반환의무를 도입 하는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입법예고기간('20.6.29.~8.10.)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미 민법상 청구권의 근거가 있는바, 이를 실효적으로 준수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심사내용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 제한 등 민사적 효력 제한** 신설

- 불법사금융 이득을 상사법정이율(현재 6%)로 제한
-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 무(無)자료대출 효력을 불인정

심사결과 대부계약서 작성관행을 정착시켜 차주가 쉽게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법적 다툼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등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불법사금융업자와 채무자 간의 민사계약상 효력에 관한 것으로 비용, 집행가능성 상의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20.6.29.~8.10.) 중 제출된 관련 의견은 없었으며, 불법사금융에 최고금리(현재 24%)를 적용함에 따른 불법영업 유인이 지속되므로 수취이자 제한이 필요하나, 상법 등 현행 법체계나, 과잉금지 원칙 등을 감안하여 필요최소한의 이자율까지는 인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만큼 법정이자 산정 시 상거래 행위의 경우 상사법정이율(현재 6%)이 활용되므로 불법사금융도 상거래 행위로 보아 상사법정이율까지만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대안으로 판단됨.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규제로 원안의결됨**

(3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외 4건 (강화 5건)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 5)**

-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 강화
- 가계, 기업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주택(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신규 적용
- 규제지역 소재 가계 주담대 취급시 실거주요건 강화
-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취급시 LTV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 차감 의무 명확화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시가 적용 기준

심사결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와 괴리된 과도한 부동산가격 상승 및 부채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부동산 기대심리 안정 등을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로 주택구입용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존재하나, 주택시장 안정의 효과는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향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당위성이 큰 것으로 보임. 세계 주요국에서도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등에 따라 이례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부동산대책이 마련되었으며, 동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차례의 간담회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책을 마련한 바 있음, 현재 행정지도로 이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금융위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계획이었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LTV 하향 조정은 저소득자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할 위험이 있으나 실물경기와 괴리된 과도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여 국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저소득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는 등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행정지도로 1년 가까이 시행 중인 부동산 대책을 완화 또는 중단하는 경우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안정성, 일관성 등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동의를 하되, 추진내용을 모니터링하기로 부대권고**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설 3)

심사내용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의 정의 및 요건** 신설

-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투자자 수에 관계없이 공개적 청약권유가 허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를 신설
- 증권 발행 전·후 보고 의무, 발행가능 증권 종류, 발행절차, 자료 보관, 거래 제한 등 요건을 부과
- 보고 의무 미이행시 정정 명령, 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밖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등의 조치권한을 명시

심사결과 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제도를 신설하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20.3.9 ~ '20.4.20)중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미국은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자본조달, 공시 및 등록 규제 개선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잡스법(JOBS Act)'을 '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등 투자자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금모집 전·후 보고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였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심사내용 **소액공모 관련 의무강화** 신설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소액공모의 한도를 현행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이하 및 30억 초과 ~ 100억 원 이하로 이원화하여 확대
- 소액공모 한도 확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

심사결과 소액공모 한도 확대에 따라 투자자보호, 발행인의 책임강화 등을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20.3.9 ~ '20.4.20)중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에서도 중요서류 확인·검토 의무, 손해배상책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는 등 소액공모 한도 확대에 따라 자금 조달 규모별로 차등하여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심사내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 신설

- BDC를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립·운영하도록 하되,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의무화
-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최장 존속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설정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BDC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보유하도록 함
- 소형 BDC 난립방지 등을 위해 BDC 최소 설립규모(5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 위임)를 설정
- 증권사, 벤처캐피탈의 BDC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집합투자업(자산운용사)에 비해 완화된 인가요건을 적용할 계획
- BDC 순자산의 일정비율(100% 이내 범위에서 시행령 위임)까지 차입을 허용
- 주된 투자대상기업, 안전자산, 여유자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산운용 규제를 도입

심사결과 BDC 제도 도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되 시장규율 유지 등을 위해 BDC 설립요건, 자산운용

규제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행정예고기간('20.3.9 ~ '20.4.20)중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미국의 BDC는 미국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1940)에 등록된 투자회사(폐쇄형 펀드)로서 비상장기업 투자외에 경영지원까지 수행하고 있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모펀드에 비해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3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상호금융업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위험관리 강화 등** 신설

-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 기준의 규정 근거 마련

심사결과 상호금융업권도 타 수신금융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상호금융업권으로의 불건전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금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기간('20.7.3.~8.12.)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상 명확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여신업무 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 대책 마련 관련 의무는 은행, 저축은행 등 타 수신금융업권에도 법규로 규정하고 있어, 타 업권 대비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었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강화** 강화

- 다수의 자사 子펀드가 母펀드 기준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子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母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규정. 다만,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idle money)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재간접구조가 필요한 경우는 적용 제외
- 펀드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 운용사가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재산 운용, 자사펀드간 상호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
- 사모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존 보고사항인 파생상품 매매 현황에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을 추가하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함

심사결과 사모펀드의 규제회피,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방지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20.7.1~'20.8.10) 중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사모펀드에 대한 母펀드 투자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 지배력 판단기준 등을 참조하여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母펀드 투자기준은 사모펀드에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운용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조인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사모펀드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에 따라 규제적용 범위·수준을 달리하는 등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기준 변경** 강화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안 제118조의 6)

  → 판단시점을 매 월말(현행 회계연도말), 미달시 6개월의 유예기간(현행 1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감독을 강화는 사항"을 신설하며,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함

심사결과 등록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 달리 재무건전성 규제 및 경영건전성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등록유지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여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것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6월) 마련 과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금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부실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 지속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타 금융투자중개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적용시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등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었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됨**

3 금융감독원

집필자 장이나 사무관
Tel. 044-200-2398, dlskjulia@opm.go.kr

집필자 김범서 전문위원
Tel. 044-200-2413, bsk20@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 9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감독원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08.2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7)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8)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12	신설 12 (비중요 12)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의 신용위험액 산정** 신설

-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Net Capital Ratio) 계산시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도록 함

심사결과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계약기간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차입금 상환 등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신용위험액으로 산정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조기경보제도 및 여신감리제도에 관한 기준** 신설

- 조기경보 판정대상, 경보지표, 조치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여신감리 조직 및 인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함

심사결과 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 및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기경보 및 여신감리제도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내규 등으로 이미 마련·운용하고 있는 기준을 세칙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부담이 크지 않고, 주요국 규제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규제, 정보공개의무, 내부통제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업무보고서 서식 등을 마련** 신설

- 연체채권 판단기준, 연체율 산정방법, 부적격 담보자산 등 건전성규제 구체화

- 정보공개 방식, 상품 유형별 정보 공개범위 구체화
- 내부통제기준이 필요한 개별업무 유형 및 포함사항 구체화
- 업무, 경영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식 마련

심사결과 동 규제는 투자자 보호, 시장규율 확립 등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아울러, 'P2P대출 가이드라인'('17.2.27일 시행), 여타 법령 등과 비교하여 규제 수준 및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시가 적용 기준 마련** 신설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를 산정하기 위해 시가 산정방식 기준 명확화

심사결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가능금액 산정 등을 위해 시가 적용 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기관들이 내규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시가 산정 기준을 세칙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시가 적용 기준 마련** 신설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를 산정하기 위해 시가 산정방식 기준 명확화

심사결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가능금액 산정 등을 위해 시가 적용 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기관들이 내규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시가 산정 기준을 세칙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시가 적용 기준 마련** 신설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를 산정하기 위해 시가 산정방식 기준 명확화

심사결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가능금액 산정 등을 위해 시가 적용 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기관들이 내규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시가 산정 기준을 세칙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시가 적용 기준 마련** 신설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를 산정하기 위해 시가 산정방식 기준 명확화

심사결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가능금액 산정 등을 위해 시가 적용 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기관들이 내규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시가 산정 기준을 세칙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시가 적용 기준 마련** 신설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를 산정하기 위해 시가 산정방식 기준 명확화

심사결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가능금액 산정 등을 위해 시가 적용 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기관들이 내규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시가 산정 기준을 세칙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공시 규제 개선** 신설

-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공시 대상기간을 확대(당분기말 → 직전분기말, 당분기말)하고, 공시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설명”을 함께 제공하도록 개선

심사결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공시를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은행들의 규제부담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공정거래위원회

집필자 현대경 사무관
Tel. 044-200-2442, hyun422678@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0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1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2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0.01.1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1)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1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3)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0.04.24)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2)
(4)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9	강화 6, 신설 3 (비중요9)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예비심사 (2020.08.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0.09.11)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1, 비중요1)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23)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2)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위원회 (2020.11.27)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중요2)
(1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본위원회 (2020.12.18)	개선권고 1 원안의결 7	신설 8 (중요2, 비중요6)
계	-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9	신설 13 강화 18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요건 강화** 강화

- 신용등급 우수업체 대금지급 보증 면제 폐지
- 직불합의 면제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한 경우로 제한

심사결과 신용등급 우수업체의 대금지급 보증 면제사유 폐지는 상호보증제도의 형평성과 건설산업기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직불합의, 상생결재시스템 사용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직불합의 면제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직불합의를 지급보증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확대** 강화

-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산정 근거 점포와 점포 예정지 간 거리' 추가
-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및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정보' 추가

심사결과 가맹본부의 점포와 점포예정지 간 거리, 가맹점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및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정보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제공 추가로 인한 규제 부담이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강화

- 즉시 해지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 유출, 행정처분 시정조치 불이행' 삭제
- 공중의 건강·안전상 위해 관련 '행정청의 처분을 기다리기에 급박한 경우' 추가
- 법령 위반 등으로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추가

심사결과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남용을 방지하고 가맹점주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가맹본부의 즉시 해지사유 축소 및 일부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즉시 해지사유가 축소되더라도 일반해지 절차(2개월 소요)를 통한 계약해지 수단이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강화** 강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판단기준 (신설)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영점 설치 목적으로 거절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가맹점사업자에게 차별적 거절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비용 회수를 위한 충분한 기간 미 경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유형(추가)	• 영업개시부터 1년간 평균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비해 낮음에도 중도해지시 가맹본부가 기대이익상실에 따른 위약금 부과행위

심사결과 동 규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안정적 사업경영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을 신뢰하여 창업한 가맹점주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손실이 지속됨에도 영업위약금 부담으로 영업을 지속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폐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과 협회의 자율규약으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 폐업시 위약금 감경 및 면제'하는 현실태를 감안할 경우 규제 부담이 과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지주회사·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강화

-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자회사가 속하는 지주회사,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은 경우는 제외

심사결과 동 규제는 지주·자회사의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을 통한 경영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 등 규제 비용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크며, 신규 출자에만 적용되고 지분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강화

- 그동안 면제된 공시대상집단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와의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심사결과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수단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기존에도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상품·용역 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이행하고 있고, 연 1회 공시로 부담이 과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4)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공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의 중요정보 항목 표시의무** 강화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종사 준수사항 및 송·수신 거리 이탈 시 추락할 위험 등 중요정보 표시의무 신설

심사결과 드론 조종자의 법 위반 및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6, 신설3)

심사내용 **기업결합 신고대상 확대(기업결합 신고대상에 거래금액 기준 추가)** 강화

-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상이고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품·용역 판매, 연구시설·인력 등 상당한 수준으로 보유·활용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 부과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법률안으로 다국적기업 등의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쟁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바 있고 규제내용이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 상향** 강화

-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상향
  (상장회사 : 20% → 30%, 비상장회사 : 40% → 50%)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법률안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심사시 원안 의결한 바 있고 규제내용이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준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지정일 당시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법률안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보유한 순환출자 및 이에 의한 가공자본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심사시 원안 의결한 바 있고 규제내용이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강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를 제외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법률안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고객자금을 기업집단의 지배력 유지·확장에 이용하여 경제력 집중의 고착화 및 시장경쟁기반 훼손의 우려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심사시 원안 의결한 바 있고 규제내용이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신설** 신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하여 계열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법률안으로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 감시를 통한 거래형태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심사시 원안 의결한 바 있고 규제내용이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 강화** 신설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①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해외계열사의 주주 구성·순환출자 현황 및 ②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법률안으로 해외계열사 주주 및 출자 현황 등의 공시를 통해 자율적인 시장 감시기능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심사시 원안 의결한 바 있고 규제내용이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금지 신설** 강화

-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공동행위 유형'으로 추가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법률안으로 시장의 경쟁성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매개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심사시 원안 의결한 바 있고 규제내용이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강화

- '총수일가가 지분을 30%이상 소유한 상장사 및 20%이상 소유한 비상장사'에서 '상장사·비상장사 구분없이 20%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가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회사'를 공시대상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확대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법률안으로 내부거래로 인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심사시 원안 의결한 바 있고 규제내용이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신설

- 일정한 거래분야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자료요구 및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근거규정 신설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법률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자료제출 등)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심사시 원안 의결한 바 있고 규제내용이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 정보제공 확대** 강화

-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확대(자동차용품 관련 첨가·촉매제 검사합격증번호, 식품 실제 내용물 용량 및 안전 주의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추가)
-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확대(배송비용(도서·산간 지역 추가비용) 추가)

심사결과 전자상거래상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에 대한 충실한 사전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이며, 현행 오프라인 거래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금 조정협의 요건 확대** 강화

- (대상범위) '연간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경과기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규정 삭제

심사결과 중기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협의권 확대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여 권리 보호와 건전한 하도급 거래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으로 상생협력법 등 타법사례가 있고 원사업자의 수용의무가 없어 규제 부담이 적으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벌점 부과기준 강화** 강화

- 벌점 경감사유인 ①교육이수, ②표창수상, ③전자입찰비율 항목 삭제

심사결과 하도급 관련 벌점 경감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벌점경감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 수급사업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항목(자발적 피해구제 등)을 신설하는 등 규제의 부담이 적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제공 금지** 강화

- 공급업자의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한 대리점에 거래정지,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금지

심사결과 공급업자에 비해 열악한 대리점의 단체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사업법」에 적용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의의결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 상당한 기한 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심사결과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제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에 적용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강화

- (협의권자 확대) '수급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 (신청사유 확대) '공급원가 및 공급원가 외의 비용 변동' 외에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목적물 등의 물량변경 등 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던 사유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및 공급원가 외의 비용의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비율보다 낮은 경우(약정CR)' 추가

심사결과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권자에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기중앙회를 추가하는 한편,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온 약정CR을 대금조정 협의 신청범위에 포함하되 약정CR의 모호한 개정 문구를 명확화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강화

-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조합 또는 중앙회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등 행위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 제한, 거래정지 등 보복조치 금지

심사결과 중기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로 추가함에 따라 중기중앙회의 대금조정 신청 등 행위에 대해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법의 일관성 확보 및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원안의결**

(1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8)

심사내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적용범위** 신설

-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에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매출액이 1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중개거래금액)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심사결과 최근 비대면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상 공정거래를 정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거래를 규율하는 것으로 EU·일본 등 입법사례가 있고 신산업 육성과 소규모 사업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소기업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신설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중개 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중개거래 계약서 작성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심사결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및 필수 기재사항 명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온라인상 약관 동의를 통한 계약체결을 허용하는 등 규제의 부담이 적어 **원안의결**

심사내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계약내용 변경 및 제한 등의 사전통지** 신설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중개계약 내용의 변경, 중개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중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사전통지

사전통지 사유	사전통지일
중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 15일 이전
서비스 일부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이전
중개 계약 해지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

심사결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중개서비스의 계약변경·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약관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비용부담이 적고 타법 사례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신설

- 중개서비스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 등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손해 전가, 불이익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심사결과 온라인 플랫폼상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입점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규제의 부담보다 편익이 크며 공정거래법 등 타법 사례도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신설

- 중개서비스업자는 분쟁 조정신청, 법 위반 신고 등 행위로 중개계약 조건 변경, 중개거래 기회 제한,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심사결과 동 규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한 것으로 일반법적 성격의 공정거래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추가 비용부담이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서면실태조사 근거 신설** 신설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 공표

심사결과 동 규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자료제출 요구 등)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타법 사례가 많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법 위반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신설

- '계약서 교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행위위반에 대해 법 위반행위 중지,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 명령

심사결과 입점업체에 대한 효과적 피해구제를 위해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보복조치 금지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등 타법 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심사결과 동의의결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등 타법 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국세청

집필자 장이나 사무관
Tel. 044-200-2398, dlskjulia@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예비심사 (2020.12.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주류 판매 시 경품 한도 기준 변경 강화

- 주류 제조·수입업자는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5%를 한도로 소비자에게 경품 제공 가능

심사결과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탁주 제조·수입업자가 '21.1.1.부터는 사실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맥주·탁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현재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도 현행 규정 유지 시 경품한도에 대해 일선 기업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주류와 성격이 유사한 담배는 제조·수입업자가 담배판매 촉진을 위해 소매인에게 경품 등 일체의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품 한도를 설정하는 규제는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6 관세청

집필자 장이나 사무관
Tel. 044-200-2398, dlskjulia@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총 2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계	-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수입물품 국내 유통이력 신고** 강화

- '20.7.31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유통이력 대상물품 24개 재지정

심사결과 유통이력관리제 32개 품목 중 30개의 지정기간이 '20.7.31 만료 예정이나, 이 중 24개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됨. 심사대상 품목(재지정 24개)은 관계부처 수요조사('19.10.14~10.25) 결과 제출된 신청의견을 바탕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20.4.28)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신고방법이 간편하고 신고내용도 필수사항에만 국한되어 있어 규제 준수에 따르는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단순한 품목 조정사항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별다른 집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설 3)

심사내용 **부두직통관 검사 시 통관절차 신설** 신설

- 컨테이너 물품의 검사를 위한 부두운영사의 화물 이송 및 검사준비 사항 규정

심사결과 신속한 검사를 위해 검사장소 지정, 이송, 컨테이너 화물 개장검사를 위한 준비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지정장치장 수용능력 초과로 인한 부두운영사의 컨테이너화물 보관 부담 증가 및 수입업체(화주)의 운송비용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점 및 검사로 인해 가중되는 업무부담 및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또는 협조 의무 신설** 신설

- 장치장소 관리인에 검사 협조 의무(검사 준비, 물품 확인 등) 부과
- 검사자가 검사 실시 후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협조 사항을 화물부서에 통보하는 규정 신설

심사결과 수입화주는 세관검사를 위해 수입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 수입화주-창고(장치장소) 관리인 간 세관검사 준비에 관한 계약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 세관검사 시 장치장소 관리인이 검사준비, 물품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여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됨.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장치장소 관리인이 세관 검사준비 등을 하는 것이 검사의 신속성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 및 검사자가 검사 실시 후 협조사항을 화물담당부서에 통보하는 것은 세관검사 협조사항을 우수 세정협조자 포상 등 혜택 부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잔존유에 대한 반출신고 시기 규정 신설** 신설

- 항공기 잔존유를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심사결과 잔존유는 반복 수입되어 우범성이 낮음에도 건별로 사전 수입신고하는 등 통관절차 불편하여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됨.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항공업계 지원 필요하다는 점, 잔존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통해 신속한 자격전환 승인 및 국내출항 스케줄 지연 방지로 항공업계 부담 해소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3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1 산업통상자원부

집필자 장이나 사무관
Tel. 044-200-2398, dlskjulia@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 총 3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7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6)	원안의결 14	신설 14 (비중요14)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1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3)
(6)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9)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ㅜ정조치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1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2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16)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2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18)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2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1)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0.10.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3)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4)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5)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7)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8)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29)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기준 및 심사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 조정 조치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2)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3)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5)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1)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4)
(36)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7)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69	신설 55, 강화 14 (비중요 69)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정량미달공급목적의 LPG충전사업자 영업시설 설치, 개조행위 규정** 신설

- 정량미달공급을 목적으로 LPG 충전기의 유량계·펌프·회로기판·온도측정장치·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LPG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규정

심사결과 제재사유의 명확화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 '설치 및 개조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석유류에 적용되는 정량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행위 규정과 유사한 수준이고, 개조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부품 위주로 규정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LPG배관망공급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인원 및 자격기준** 신설

- LPG 배관망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선임인원을 규정
- 수요자 시설에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안전점검원 겸직을 허용하고, 겸직비율은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비율에 따라 차등화

심사결과 도시가스 공급불가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규정으로, 선임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LPG 일반집단공급사업체계를 바탕으로, 매설배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과 같이 배관을 관리하는 안전점검원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여 높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관리원의 겸직을 허용하여 규제부담을 완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LPG매설배관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자 신설

-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①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②지하보도, ③지하차도, ④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규정

심사결과 사업소 외 배관이 위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 과정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위험성을 파악할 방안 마련하는 것으로, 굴착공사시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사수행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굴착공사 중 지하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대규모 공사만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마스크 필터용부직포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신설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체는 수급 관련 정보 신고(익일 12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출고 등에 관한 조정명령 가능토록 규정

심사결과 원자재(필터) 가격이 폭등하는 등 수급사정도 악화되고 있으며 원자재의 국외유출 등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재료 중 하나인 멜트블로운 부직포(MB 필터)의 공급이 원활히 할 필요성이 인정됨. 마스크의 국내 유통물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규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4)

심사내용 **LPG 집단공급사업의 허가·공급 관련 규정 정비** 신설

- LPG 집단공급사업자의 변경허가·변경신고, 허가 기준, 공급규정 기재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구체화

심사결과 법에서 신규 도입되는 LPG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LPG 배관망공급사업 허가기준·변경허가 대상 및 공급규정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내실있는 공급규정을 작성하게 함에 따라 LPG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LPG 일반집단공급사업의 기준 및 사업형태가 유사한 도시가스사업의 기준과 유사하게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위반시 행정처분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규제준수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LPG 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신설

- LPG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신설
- LPG 일반집단공급의 시설기준 중 가스공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배관의 종류 및 설치 위치를 구체화
- LPG 일반집단공급의 시설·기술기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모니터링 의무 부여

심사결과 법 개정에 따라 LPG 배관망공급사업의 시설 및 기술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용과 시설안전확보를 위해 설치 및 기술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를 준용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량공급의무 위반검사 기준 및 절차** 신설

- LPG 충전시 준수해야 할 허용오차를 1.5%로 규정
- 검사가 필요한 경우, LPG 충전소 영업장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 간이검사→정식검사 순으로 실시, 검사 후 검사용 LPG 용기의 잔류가스 회수, 충전기 봉인상태 및 他 부속 추가설치여부 확인
- 허용오차 범위 內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부적합' 판정시 해당 충전기 사용 중지 및 재검정 등의 조치 수행

심사결과 법 개정에 따라 LPG 충전사업자의 정량미달 공급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검사 절차·방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술규제영향분석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규제안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량미달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 ①LPG 사업자등의 정량미달공급행위 및 정량미달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행위, ②LPG 수출입업자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기준 마련

심사결과 법 개정에 따라 정량미달행위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경과실과 그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처분기준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령에 따른 주유소 행정처분과 비교시 규제 체계 및 처벌 수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신설** 신설

-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유할 것
- 사용시설점검원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이되, 예외요건 해당되는 경우 완화된 기준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가스안전시공업(1종, 2종) 등록자일 것

심사결과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리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대행자의 자격기준은 개정안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사계획의 승인·신고 대상 및 절차** 신설

-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대상,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규정

- 공사계획 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공사의 종류 추가

심사결과 법 개정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신고 관련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공사계획 수립이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형태가 유사한 도시가스사업의 기준을 준용하여 마련하였고, 규제수준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공감리대상, 감리기준 및 시공 관련 절차** 신설

- 시공내용의 사전통보가 필요한 가스공급·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종류, 시공내용 사전통보 절차 및 사전통보 내용 규정
- 5년동안 보존해야 하는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범위 확대
- 시공감리의 대상 및 기준 규정

심사결과 법 개정에 따라 시공감리 및 시공내용 통보의무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보존대상 시공 기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LPG 시설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를 준용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발생하는 감리비는 대부분 국가(50%) 및 지자체(40%)에서 부담하며 사업자 부담분은 전체 비용발생분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LPG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대상 범위·절차** 신설

- LPG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정밀안전진단 대상범위 및 시기, 안전성평가 대상범위 및 시기 규정

심사결과 법 개정에 따라 LPG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검사대상범위 및 시기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제도를 운용중이고, 대상시설 및 진단주기 등이 개정안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LPG 배관 매설상황 확인 및 협의 대상, 절차** 신설

- LPG 충전사업자의 매설상황 확인대상 사업, 굴착공사자가 배관매설여부 확인을 위해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할 때 통보내용에 포함될 사항, 굴착계획을 통지받은 LPG 충전사업자 및 LPG 배관망공급사업자의 회신기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 및 재통보, 협의서 작성이 필요한 굴착공사의 종류, 합동 순회점검이 필요한 굴착공사의 종류, 합동 순회점검 기간 및 방법 규정

심사결과 법 개정에 따라 LPG 배관 매설여부 확인 및 협의 등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굴착공사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사수행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은 공급형태가 유사한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절차(매설배관 확인, 협의 및 순회점검)를 준용하였고, 세부 절차 및 규제수준도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LPG 배관 손상방지 및 안전조치 사항** 신설

- LPG 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LPG 배관에 대한 손상방지조치, LPG 배관 도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규정

심사결과 굴착공사로 인한 LPG 매설배관 손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자 등이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굴착공사시 공사자 및 가스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세부 안전조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사수행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의 배관손상방지기준 및 안전조치 내용을 준용하였으며, 세부 절차 및 규제수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및 내용** 신설

-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배관 범위, 가스안전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심사결과 가스안전영향 평가서 작성 대상 범위 및 평가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굴착공사시 공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가스안전영향평가서 관련 준수사항 및 제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사수행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의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 배관의 범위 및 평가서 작성요령 관련 내용을 준용하였으며, 세부 절차 및 규제수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교육 대상 추가** 신설

- 전문교육 대상자에 안전점검원을 추가하여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씩 교육의무 부과
- 특별교육 대상자에 사용시설점검원을 추가하여 신규종사 시 1회의 교육의무를 부과
- 양성교육 대상자에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를 추가

심사결과 신규 추가되는 안전관리자 유형을 안전교육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LPG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장기적으로 가스사고 예방 등 국민의 안전보호 및 편의 증진할 필요성이 인정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안전점검원, 사용시설점검원,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에게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시 동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교육이수부담 일부 완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LPG 배관망공급사업자의 보험금액 강화** 신설

- LPG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재산피해 보험금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

심사결과 LPG 배관망공급사업의 의무가입 보험금액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LPG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의무가입 보험금액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인구 50만명 미만인 시·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10억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벌크로리 공급범위 확대에 따른 공급방법 강화** 신설

- 벌크로리로 저장탱크에 공급 시, 탱크주밸브(충전박스 내 존재)를 이용하여 측면충전하도록 규정
- 다만, 저장탱크 설치 장소에 접근이 불가한 지역은 벌크로리 호스커플링으로 충전할 수 있으나, 충전보조원 1명 이상 동행
- 충전시에는 저장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도록 충전

심사결과 벌크로리로 저장탱크에 LPG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판매자의 준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한 충전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여 벌크로리를 이용한 LPG 충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품질검사 주기** 신설

-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액화석유가스냉열이용자의 도시가스 품질검사 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규정

심사결과 법 개정으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품질검사 실시 주기를 정하는 것으로,, 사업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가스의 품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는 LNG를 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검사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그 外 사업의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냉열에너지 발생시 LNG의 기화작업이 필요하므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검사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대상 추가** 신설

- ESS 설비는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용전검사로 갈음하지 않고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ESS 설비의 경우 저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여 설계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화재 위험성이 높은 ESS 설비에만 한정하여 저압-고압 구분없이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히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고,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고압 ESS 설비에 대해서는 현재도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소 설치 및 변경허가시 시설 전기술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강화

- ESS 변경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대상을 현행 ESS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PCS)에서 공조시설로 확대
- 공사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에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을 추가

심사결과 공조시설의 임의 개·보수 방지를 위해 공조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전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공조장치는 ESS의 부대설비임을 감안하여 인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게 될 경우 차후 정기검사에서 설계 미흡 등으로 인한 시설개선명령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감소하므로 피규제자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주기 강화** 강화

- 현행 4년 1회의 정기검사 주기를 일반인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설치하거나 이차전지 용량 1MWh 이상인 시설은 1년 1회, 이외 시설은 2년 1회로 강화

심사결과 ESS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전반적으로 단축하고, 요주의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ESS 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위험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등화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규제수준으로 판단되고, 타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큰 일부 설비에 한해 2년 주기로 검사하고 있고, 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검사 강화로 인한 사고 방지의 편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 신설

- 사업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하는 경우 '산림청과의 사전협의 결과를 제출할 것'을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추가

심사결과 국유림 지역에서 풍력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입지관련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입지관련 불확실성을 미리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 인정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및 매몰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 피규제자에게도 유리하고, 他 대안(국유림 일시사용 허가 先 취득 등) 대비 사업 초기단계에 큰 비용 및 시간소요 없이 입지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예측 및 회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잠정조치 담보 관련 동의서 제출 및 담보반환기한 연장** 신설

- 잠정조치 신청시, 담보의 사용용도(피신청인 손해배상에 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 잠정조치 시행 후 최종 비침해 판정으로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소송 청구시 담보를 반환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심사결과 조사결과 최종 비침해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를 잠정조치 시행으로 피신청인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합리적인 잠정조치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 도입의 필요성 인정됨. 신청인-피신청인 간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히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렵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 TRIPs)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시설기준 등 신설** 신설

-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의 정의 신설
- 이동식 LP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신설

심사결과 원활한 전환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을 구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 및 기술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충전사업 중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과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사업'의 시설·기술기준을 준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규제수준이

유사하고, 기술규제영향평가('20.2.4) 결과 '육상' 및 '이동식 LNG' 충전사업임을 감안하여 유사성이 높은 타 충전사업의 기술기준을 적절히 준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 신설

-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하천 종류별 기준심도 이하도 설치를 허용, 안전성평가에서 제시한 유지관리 방법을 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상부 하상의 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최초 매설심도 변화에 따른 유지관리 조치를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일부 완화되는 조치에 상응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설배관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배관 이설을 줄이되,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모니터링 의무 등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됨. 규제완화 조치에 수반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관련 세부사항** 신설

-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의 종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규정

심사결과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스 중독사고 방지라는 규제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 일산화탄소 감지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가스중독사고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산업용 보일러, 옥외 설치 보일러 등)에는 안전장치 설치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감지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인명피해예방기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신설 2)

심사내용 **전략물자 자가판정 제한대상 추가** 신설

- 전략물자 판정시 원자력전용물품은 전문판정방식만을 허용

심사결과 당초 원자력 전용물품에 대해서도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전문판정과 자가판정을 모두 허용하였으나 판정오류 방지를 위해 전문판정만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자력 전용물품 자가판정의 실익이 적어,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원자력전용물품은 핵물질 등 핵개발에 직접 기여하는 품목으로 판정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업 및 국가에 미치는 파장이 커 자가판정 대상으로는 부적절하여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수출허가의 90% 이상이 현재도 자가판정이 제한되는 '기술'에 해당하며, 동 규제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자가판정이 제한되는 물품은 전체 원자력 전용품목의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가판정에 따른 사전교육 및 판정관련 자료 등록** 신설

- 전략물자 자가판정을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종류, 물품등의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 규정

심사결과 자가판정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종류 및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법 개정으로 자가판정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전교육 이수 및 관련 기록 시스템 등재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사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업이 자가판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내용으로만 구성하고 있고, 등록해야 하는 자료들은 모두 기업이 자가판정을 수행할 때 사용했던 자료들로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등의 부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품목 추가**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품목에 '야외운동기구'를 추가

심사결과 제품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품질 운동기구 설치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 품목인 실내용 헬스기구의 경우 이미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출시전 시험·검사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받고 있고,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제조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강화 1)

심사내용 **유효기간 연장** 강화

- "'20.6.30일"에서 "'20.8.5일로 연장

심사결과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 발생 당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20.3.6)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였고, 마스크 1인당 구매 수량 및 수출 허용이 확대됨에 따라 마스크 생산확대를 위한 원자재 공급능력을 유지할 필요성 인정됨. 동 규제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고시의 유효기간만을 단순 연장하는 건으로, 집행가능성 등 고려시 규제 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관련 세부사항** 신설

-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서 판매해야 하는 가스용품의 종류,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의 종류, 안전장치의 설치기준 등 규정

심사결과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가스중독사고 방지라는 규제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 일산화탄소 감지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할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가스중독사고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산업용 보일러, 옥외 설치 보일러 등)에는 안전장치 설치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감지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인명피해예방기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외국인 투자시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검토 추가** 신설

-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사항에 외국인 투자로 인한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 유출 가능성 높은 경우를 추가

심사결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외국기업이 국내 투자시 투자목적을 명확히 확인함으로서 기술 탈취형 투자를 사전 차단하고 경제안보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외국인투자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한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능에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기술유출 가능성을 추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집행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및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등 신설** 신설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벙커링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 용량의 저장시설을 구비할 것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자본금 요건을 준수할 것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는 자가 아래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할 것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심사결과 법률에서 위임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사업자의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 수급실적 및 현황 보고 등을 통해 시장현황 파악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됨.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해 사업개시년도 판매계획량(기등록자의 경우 전년도 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타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요건 중 1급지의 시설 및 자본금 기준을 준용하였다는 점에서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증발가스 및 잔존천연가스의 처분** 신설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증발가스를 처분할 때 준수해야 할 처분 방법 및 절차 및 예외적으로 수입·공급받은 가스의 제3자 처분이 허용되는 사유 및 처분방법·절차 규정

심사결과 증발가스의 처분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처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발가스 처분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는 등 타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천연가스 처분 방법으로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뿐만 아니라 '교환'까지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 규정

심사결과 신설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등록요건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사업수행 제한을 위해 등록요건을 미달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할 필요성이 인정됨. 위반행위별로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비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과 동일하여 타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신설

-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규정

심사결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공급시설에 적용될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공급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동일형태의 사업(액화도시가스 선박충전사업)에 적용된 가스공급시설 및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별다른 집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계획** 신설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시 제출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관련 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규정

심사결과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이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출하는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계획이 내실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을 제출하는 他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법 제11조 및 제39조의2)되어 있어, 공사계획 내용 확인이 용이하므로 집행가능성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 (신설 4)

심사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 명확화** 신설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기존 고시의 멜트블로운(MB) 뿐만 아니라 스펀본드(SB)가 결합된 SMS 필터를 명확히 포함

심사결과 기존 고시 유효기간이 오는 8월 5일 종료되므로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마스크의 국내 유통물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마스크 필터용부직포에 대한 신고의무** 신설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체는 수급 관련 정보 신고(익일 12시까지),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 가능

심사결과 기존 고시 유효기간이 오는 8월 5일 종료되므로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마스크의 국내 유통물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규정하였으며, 경과 규정을 두는 등 규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마스크 필터용부직포에 대한 조정명령** 신설

- 산자부장관은 생산·판매업자에게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에 관하여 조정명령 가능

심사결과 기존 고시 유효기간이 오는 8월 5일 종료되므로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마스크의 국내 유통물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마스크 필터용부직포에 대한 수출제한** 신설

- 기존 원칙적 수출금지에서 직전 2개월 업체별 평균 생산량의 최대 15% 내 출 허용

심사결과 기존 고시 유효기간이 오는 8월 5일 종료되므로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마스크의 국내 유통물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 및 공급의무 이행 관리** 강화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의 장 등은 신재생설비 설치·이용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30년 40%까지 확대

심사결과 공공건물(연면적 1천㎡ 이상)의 신·증·개축 시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설비설치 의무 부과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방향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상향 조정 필요가 있으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물은 신·증·재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토록 하였으며, 동 개정안에서도 인증에서 요구하는 유사한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정하였다는 점, 법률에서 정한 설치의무 공공기관이 신재생설비 설치 및 이용현황을 점검·제출토록 한 바 규제강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연도별 의무비율 상향** 강화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21~22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각각 1%p 상향

심사결과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신에너지전환 정책,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호주, 스웨덴, 영국 등 34개 국가('19년 기준)가 RPS제도를 시행 중이며 대부분 20%이상의 의무비율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 법상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전기사업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신설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

심사결과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사전고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발전사업 입지 지역에 공급되는 일간신문 등에 고지하고, 이를 관할 지자체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환경영향, 지역민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3천킬로와트 이상 연료전지 사업에 한정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사업개시 전 산지중간복구명령에 대한 이행 의무화** 신설

- 산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는 산림청의 중간복구명령을 받는 경우 전력거래 전까지 산지중간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부장관이 발전사업 정지명령 가능

심사결과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한 사업정지 명령의 방법·절차, 유예사유 등의 세부절차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는 것으로, 태양광·풍력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풍력발전 설치 시의 순차복구 특성 반영하고 풍수해, 태풍, 한파 등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였고, 산림청은 산지관리법을 통해 발전사업자에 1년 1회 이상 현장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중간복구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발전사업허가와 연계하여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설 2)

심사내용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개정 (부속서 72 전동보드 개정)** 신설

- 사용자가 배터리 교체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그림 및 문구로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에 안내토록 의무화
- 「전기 자전거 안전기준」의 배터리 안전요건과 동일하게, 전동보드용 배터리의 안전관리를 'KC 62133-2(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기준)'로 별도 관리

심사결과 전동보드 장착 배터리를 현행 전기자전거 배터리 안전관리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동보드용 배터리를 별도 KC 인증 대상 제품으로 안전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동보드와 유사품목이라 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또한 유사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특별히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볼 수 없고, 미국·유럽·캐나다 등에서도 제품의 전기적/물리적 안전성을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개정(부속서 73 야외 운동기구 신설) 신설

- 구조적 안정성, 신체끼임 방지, 무게와 저항 요건, 발판, 구동부품, 손잡이 등 부속품 요건, 목재 및 목공품, 금속, 고무 및 합성수지 재질에 대한 안전요건 규정

심사결과 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시험을 통하여 제품 안전성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였을 때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헬스기구(실내용)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제2조에 따라 부속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포함하여 관리한다는 점, 동 안전기준은 유럽, 미국의 기술기준을 기반으로 제정하였으므로, 각 안전요건 및 관련 시험, 검사, 인증과 관련된 규정이 국제기준과 부합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력변환장치의 KC 인증도입시기 단축 강화

- 100kW 초과 1MW 이하 PCS의 KC인증 도입시기를 '21.12.1에서 '20.10.로 단축

심사결과 ESS 화재사고 현황 파악 결과('20.2), 사고 28건중 23건이 100kW 초과 1MW 이하 PCS를 사용한 ESS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 보호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100kW 초과 1MW 이하 PCS의 KC인증 도입시기 단축('21.12.1 → '20.10) 필요성이 인정됨. '20.1월 1MW급 시험설비가 기 구축되어 시험물량(35개 모델 예상)에 대해 사전적으로 시험·인증 진행 중으로 시행에 문제 없을 것이라는 점, 미국·유럽 등 해외 역시 국내 안전기준(K 62477-1)과 동일한 국제표준(IEC 62477-1)의 운용을 통한 ESS용 PCS의 안전관리를 시행 중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전기용품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수지형(휴대용) 송풍기 안전기준 제정** 신설

- 일반요구사항 및 4개 표시사항(눈 보호용 안경 착용 등) 추가
- 훈련, 준비, 작동, 유지보수 및 보관에 관한 사항 기재
- 직권전동기의 전압시험만 적용
- 보호장치, 손잡이 및 어깨 연결 장치에 관해 규정
- 충격 에너지(1.0±0.05)J로 3회 타격 시험
- 고무 절연체는 일반 경고무 피복 유연성 코드 사용 및 PVC 절연체는 일반 PVC 피복 유연성 코드 사용

심사결과 수지형 정원 송풍기 및 진공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중이나,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정원 송풍기는 전기팬(KC60335-2-80), 정원 진공기는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청소기(KC60335-2-2)의 안전기준을 준용 중으로 국제표준(IEC60335-2-100)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의 도입 필요성 인정되며, 유사 품목에 대한 전압시험, 타격시험 등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국제표준(IEC 60335-2-100)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유럽 및 미국 등 해외에서도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및 진공기의 안전기준으로 국제표준(IEC 60335-2-100)을 적용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의 안전기준 일부 개정** 신설

- 비비탄총에 발사 방해물을 부착하여 출시할 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하도록 하고, 부착 위치 표시를 의무화
- '정상적인 발사'의 판단 기준이 없어, 발사시험 수행 조건과 판단 기준 제시

심사결과 국내 안전기준보다 높은 운동에너지(0.5~1.5J)로 제작된 해외 비비탄총에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하여 출시하는 경우 관리 규정이 없어, 안전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당초, 발사방해물 부착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였으나, 최소침해 원칙에 따라 "발사방해물을 부착할 경우 견고히 부착하도록" 한 것으로 적정한 규제로 판단된다는 점, 서바이벌 게임업체 등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고시개정 후 6개월 후로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전기용품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실내용 고압수은등의 제조·판매 금지** 신설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대상 제품의 제조·사용·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심사결과 '20년부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국내 발효됐으므로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안전기준(KC 62035)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128개국 서명, 120개국이 비준하여 수은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사용·판매 등을 관리 중이라는 점, 저렴하고 효율 높은 조명램프(LED램프)의 출시로 고압수은램프의 시장 점유율이 0%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 등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가스를 이용한 냉방설비의 설계기준 마련** 신설

- 가스냉방설비에 대해 흡수식 냉동기 및 냉온수기, 가스히트펌프로 나눠 설계기준 마련

심사결과 現 고시에서 비전기식 냉방방식 中 축냉식의 설계기준만 제시하고 가스냉방방식 등은 설계기준이 미비한 상태로, 업계와 시장상황을 반영해 가스냉방설비의 설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하절기 전력수요의 피크 저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성 인정됨. 가스냉방설비의 설계기준은 기 운영중인 KS표준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인용함으로써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전기용품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일반조명용 직선형광램프의 수은함량 제한 등** 신설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대상 제품 종류별 수은함량을 제한하는 안전기준 신설
- 인용 안전기준·표준 변경, 안전기준 제외대상 램프 추가 등

심사결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과 안전기준 개정('14) 시 누락된 규정의 보완을 위해 안전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128개국 서명, 120개국이 비준하여 수은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사용·판매 등을 관리 중이라는 점, 저렴하고 효율 높은 조명램프(LED램프)의 출시로 최근 2년('18~'19)간 형광램프(일반조명용 직선형광램프

포함) 신규 인증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열사용기자재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에 추가 신설

-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열사용기자재'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에 추가

심사결과 고령·농촌 등 취약계층의 설치·시공에 대한 낮은 안전의식에 따라 비전문가 시공 등 부실시공 발생하여 겨울철 주요 화재원인인 가정용 화목보일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됨.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특정열사용기자재에 포함시켜 시공업자 등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규제라는 점, 지자체에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등록업무에 '가정용 화목보일러' 관련 시공업자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집행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전기용품안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강화

- 오존 농도 누적 가능성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제품 및 사용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안전기준 신설

심사결과 관련 안전기준에서 오존농도가 기준치(0.05ppm)를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제품 사용환경에 따라 오존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오존 누적 가능성 및 주의사항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됨. 단순 표기사항 추가로, 이에 따른 설비 및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아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문위원회,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 규제 관련 이견이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사업의 사업준비기간을 4년으로 지정 강화

- 현재 가동중인 연료전지 발전소의 평균 준비기간(약 30개월)을 감안, 4년의 명확한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부여

심사결과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대부분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 준비기간대로 허가가 발급되고 기간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사업 준비기간 제시를 통해 향후 사업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잠재적 사업자의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를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도 발전사업 허가 신청시 사업자가 신청한대로 1~2년의 준비기간을 부여중이라는 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로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규정준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연료전지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기준에 연료전지 주기기사의공급의향서 제출 명시 신설

-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발전사업 허가 심사항목인 “적기 준공가능성” 평가의 심사 기준을 강화

심사결과 주기기社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 허가를 발급 받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정부 정책(수소경제 활성화,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 등) 수립 및 관련 산업 생태계의 투자 결정에 높은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등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허가 신청前 공급가능성을 사업자가 사전에 확인하여, 사업 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 및 사회적 낭비의 발생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이고, 현재도 일부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심사기준인 “발전소 적기준공”을 입증하고자 공급의향서를 첨부서류로 제출 중이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기준 및 심사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기준 및 심사기준(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제정 신설

- ‘1 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심사기준 제정

심사결과 인증기준 부재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시장출시에 장애가 되는 것을 해결하고 신속하게 인증하기 위해 先심사기준 마련, 後고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본 제정안은 모든 제품이 아닌 적합성 인증 신청 제품(㈜STX중공업의 CHP-SO-1K 모델)에만 적용되는 기준으고, 해당 기준에 따라 제품이 이미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신설

-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등급을 '안전기준준수'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품시험 의무 부과

심사결과 천(면)마스크는 타 가정용 섬유제품과 달리 피부뿐만 아니라 호흡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해물질 안전기준 충족을 시험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공급자 스스로 제품시험한 후 제품을 판매 가능한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해 정부가 인증·확인하는 "안전인증 대상" 및 "안전확인 대상"에 비해 공급자 부담이 적다는 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신청 전에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집행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 조정 조치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생산업자 신고의무 부과, 판매업자 신고의무 부과, 조정명령 조치** 신설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일일 생산량·구매량·판매량 등 신고의무 부과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판매업자에게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명령 가능

심사결과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 재유행 및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내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예상치 못한 수급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식약처 마스크 고시 제정(12.12) 추진과 함께 마스크 핵심 원부자재인 마스크 필터용(MB) 부직포 고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고시 내용은 유지하는 내용으로 재제정하는 것이라는 점,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마스크 원재료 수급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집행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산업기술보호지침 (신설 1)

심사내용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신설

-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별 구체적 지침 마련

심사결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관리책임자 역할, 전문인력 이직관리 방법 등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혼란 발생을 방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등을 시행 중이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유출방지지침'('03.3~)과 '영업비밀보호지침'('15.1~)을 제정, 시행하는 중으로 유사사례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대상 확대** 강화

- 열수송관 비파괴검사의 대상을 현행 용접이음 개소 10%이상에서 전체개소로 확대

심사결과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사고('18.12월)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민 불안감 증대된 바, 사전에 용접부위 결함 등을 발견,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됨. 수압시험은 주입한 물의 누수여부를 육안 확인하는 것으로 정확성이 낮으나, 비파괴검사는 방사선 또는 초음파 투과결과 1mm 이하 미세결함 및 용접 내부결함 검출 가능하다는 점, 도시가스 배관, 가압송수장치(스프링클러, 소화전 배관) 등 유사시설물도 유사한 용접부 비파괴검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누설검사의 합격기준 신설** 신설

- 집단에너지사업(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열수송관 누설검사의 방법별 합격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열수송관 누수 및 파열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누설검사합부 판정 기준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사업자 혼란 야기하고 있어, 열수송관 누설검사의 합격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전에 열수송관의 손상을 발견, 안전사고 및 열공급 중단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됨. 열수송관 누설검사 합격기준을 집단에너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집행가능성 충분하다는 점, 도시가스 배관도 유사한 누출검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월간 수급보고 법적 근거 보완** 신설

- 월간 수급보고 대상을 그 밖의 석유제품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으로 변경하여 원유, 휘발·등·경·중유의 월간 수급보고 법적 근거를 마련

심사결과 석유정제업자 등이 임의 제출하는 월간 수급보고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급보고 오류 시 제재 불가하여, 수급보고 자료의 다양한 정책적 활용을 위해 규제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됨. 석유산업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의 수급통계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그간 임의로 월간 수급보고를 관리해온 한국석유공사의 수급보고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므로 집행에 문제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전기냉장고·전기냉방기(에어컨)·창 세트·텔레비전수상기(TV)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상향** 강화

- (전기냉장고)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R)을 강화하여 1등급 제품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개선
- (전기냉방기) 해외 저효율 에어컨 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상향
- (창 세트)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R)을 강화하여 1등급 제품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개선
- (텔레비전수상기)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R)을 강화하여 1등급 제품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개선

심사결과 '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연구용역('18년)' 결과, 일부 품목의 기술수준 상향으로 1등급 제품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효율제품에 대한 변별력 약화 문제가 제기된 바,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발전과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현실적 규제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관리 기준 조정 필요가 인정됨. 효율관리기자재 등급 분포와 기술 향상 속도, 달성 가능한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현재 신고된 모델 중 상위 10%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도출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점, 효율관리기자재의 신고·접수업무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시행령 제51조) 집행 가능성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냉장고·전기냉방기(에어컨)·텔레비전수상기(TV)의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제시** 강화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텔레비전수상기의 3년·6년 뒤의 목표소비효율기준 제시

심사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는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부재한 바, 업계의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유도 및 예측가능성 부여를 위해 목표소비효율 기준에 대한 사전 제시 필요성이 인정됨. 전체 모델에 대한 효율 상승 시나리오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효율 상승에 따른 국가, 소비자, 제조사 관점의 수용성을 분석한 결과로 도출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점,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주요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에너지라벨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냉장고·텔레비전수상기(TV)의 소비전력량 산출방식 변경** 강화

- (전기냉장고) 소비전력량 산출 시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한 보정계수(1.6배) 도입
- (텔레비전수상기) 소비전력량 산출 시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한 보정계수(1.3배) 도입

심사결과 '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연구용역('18년)' 결과, 일부 품목에서 시험측정 시 소비전력량과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소비전력량의 괴리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된 바,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발전과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현실적 규제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소비전력량 산출방식 변경 필요성이 인정됨. 150가구에 대한 실증시험을 통해 라벨에 표시되는 에너지 관련 정보와 실제 사용되는 에너지 관련 데이터에 대한 실제 정량적 데이터 확인하여 개선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점, 해당기자재의 제조·수입업체 의견수렴 및 결과 반영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냉방기(에어컨)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효율라벨 표시방법 명확화** 신설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에어컨 라벨에 '냉방효율' 표시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 정비

심사결과 '효율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연구용역('18년)' 결과, 냉방기의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대상에 '냉방효율(단위전력소비당 냉방능력)'이 누락되어 허위표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곤란하다는 문제 제기된 바, 전기냉방기의 냉방효율 측정항목에 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라

벨 표시를 의무화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확인이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됨. 효율관리기자재의 신고·접수업무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시행령 제51조) 집행 가능성 충분하다는 점,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주요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에너지라벨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에너지특화기업 심사평가 항목 및 점수 요건 등 기준과 취소절차** 신설

- 기술인력, 특허, 부채비율 등 지정요건 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평가항목, 점수요건 등 기준 규정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취소 사유를 열거

심사결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지정요건 기준과 지정취소 등 지정신청 관련 세부 규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정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세부 기준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요건을 구성하는 평가항목과 점수기준은 유사목적의 평가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적정한 기업은 충분히 요건 만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지정취소를 요건 불충족,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강화 1)

심사내용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강화

- 전문인력 자격요건 중 기능사의 실무경력 요건 강화
- 전문인력 자격요건 중 전문학사, 고등학교 졸업자의 실무경력 요건 상향

심사결과 자격증·학위 취득 소요연수가 짧은 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아 역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어,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전문학사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실무경력 요건 강화하여 형평성 및 전문성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디자인 전문회사 난립 방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회사 신고조건인 전문인력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적정하고, 전력기술인 등 타법사례에서도 산업기사의 실무경력 요건을 기사에 비해 2~3년 상향, 전문학사의 실무경력 요건을 일반학사에 비해 2~3년 상향하고 있어 타법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적 요건 조정 강화

- 지원대상, 기술적 세부사항 및 에너지 소비효율을 현실화하고, 차량 구분을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

심사결과 현행 규정에서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사항 관련 요건은 최근 친환경차의 기술수준이 미반영된 바, 친환경차의 요건을 현행화하여 세제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친환경차 기술수준에 맞게 기준을 현행화하고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타법과의 체계를 일치시키는 최소 범위 개정으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미국 및 영국 등 해외에서도 배터리 용량 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등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었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중소벤처기업부

집필자 박보경 사무관
Tel. 044-200-2421, bokyeong0225@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총 1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1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3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06.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06.05)	원안의결 9	신설 9 (비중요9)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0)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심사 (2020.10.28)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중요3)
(12)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13)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4)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5)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0	신설 29, 강화 2 (중요 3, 비중요 28)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설

-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청문회 실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취급·처리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번호의 처리근거 마련

심사결과 장애인 기업 확인을 통해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허위·위장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청문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를 수행하려면 개인정보 취급·처리권한이 필요한 점, 개인정보 처리권한 신설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보다,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아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부터 받는 기대 수혜(자금 우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가 큰 점, 타법에서도 조사 및 관련 후속조치를 위하여 본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요건** 신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요건을 규정(① 휴면조합이 아닐 것, ②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2년이 경과할 것, ③ 공동사업 수행 근거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관한 정관과 규약을 구비할 것)

심사결과 조합의 공동사업 제도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특정인의 이익 추구가 아닌 조합원 전체 이익 증대 및 소비자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규제의 목적(공동사업 활성화 및 공정한 시장 조성)과 수단(조합의 세부 요건)이 적정한 비례관계를 갖추고 있는 점, 피규제자인 중소기업 관련협회(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강화

- 41개 제품(음식물처리기류 등)의 확인기준을 강화(또는 신설)

심사결과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품별 환경변화,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확인기준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필수설비 지정 해지 등 피규제자(사업자)의 건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제조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규제순응도를 제고한 점, 피규제자(사업자)에게 개정사항을 별도 통지한 후 공청회를 통해 피규제자(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 상향 강화

- 금융회사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할 연 비율을 1천분의 0.2 → 1천분의 0.4로 상향

심사결과 경기둔화, 매출부진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상공인·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서 금융회사 출연금 인상이 필요한 점, 인상된 출연요율로 한시적 운영('22.12.31까지) 후 운용효율성이 달성(운용배수 8배 이상)되지 않는 경우 출연요율을 원위치(0.02%)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 점, 지역신보 출연요율을 0.04%로 상향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0.225%)·기술보증기금(0.135%)의 출연요율보다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조건부인수계약의 요건** 신설

-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후속투자의 가치평가에 연동하여 지분투자를 받는 방식)'이라는 투자 형태를 신설하면서 계약의 요건을 정함(① 투자금액의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을 것, ② 투자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후속투자의 기업가치 평가에 연동하여 지분량을 확정받을 것, ③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는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④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후, 회사의 자본변동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계약(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발행계약 및 본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

심사결과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우므로 방식으로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의 체결·이행에 최소한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엑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 규정하였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을 완화한 점, 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시 법인 출자 한도 축소** 신설

- 창업기획자가 법인과 상호출자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법인 출자금액이 조합 결성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한도를 49% → 30%로 축소

심사결과 개인투자조합은 그 본연의 제도 취지에 따라 개인투자자 위주의 펀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법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자(엑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20%에서 30%로 제한 비율을 상향한 점, 개인투자조합 중 법인의 출자비율이 30% 미만인 조합 비중이 79%이며 결성액 기준 93.3%임을 미루어볼 때 준수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9)

심사내용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요건** 신설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8가지 요건 규정

심사결과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자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결격요건 설정이 필요한 점,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법」 제37조에 규정된 창업투자회사 임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하여 결격요건을 규정한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의 요건** 신설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자본금 및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창업기획자의 부채비율이 자본금 또는 출연금 등 납입된 출자금 총액의 2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심사결과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본금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창업기획자의 과도한 부채를 제한(납입된 출자금 총액의 200% 미만)하여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벤처투자조합의 주된 결성주체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20억 원으로, 통상적인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을 고려할 때 창업기획자의 자본금 요건은 낮은 수준인 점, 이해관계인의 별도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신설

- 일반 유흥주점업 및 사행산업 등에 투자하는 행위 등 10가지 행위 제한

심사결과 창업기획자의 업무가 초기창업자에 대한 보육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조합 결성 등 투자의 기능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 제한이 필요한 점, 「벤처투자법」으로 통합되기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주된 결성주체)의 행위 제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창업기획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창업기획자의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신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률을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 가장 많고,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자 등 창업기획자 대주주의 범위 규정
- 개인인 경우, 법인·단체인 경우, 은행·금융지주회사인 경우로 나누어 창업기획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 창업기획자 대주주가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심사결과 창업기획자의 업무가 벤처투자조합 결성 등 투자의 기능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등과 그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는 대주주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신설

-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는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 50퍼센트 미만으로 경영건전성 유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이 금지되는 창업기획자 주요주주 범위 설정(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지분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사람,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심사결과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잠식률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경영건전성의 기준과 주요주주의 범위가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창업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신설

- 창업투자회사 대주주등이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심사결과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령상 제한을 통해 대주주등의 부당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타법에서도 대주주가 경영·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신설

- 납입자본금, 차입금 비율, 전문인력, 설비 및 장비 기준 설정

심사결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다수의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출자자 보호 및 조합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그 요건을 일반 벤처투자조합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기업성장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 등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신설 1)

심사내용 **온누리상품권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한 지원중단 기준 및 가맹점의 재등록 유예기간 신설** 신설

- 가맹점 지원중단의 처분기준 및 등록 제한 기간 설정

심사결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이 행해지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중단 기준 및 등록취소 후 재등록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점, 타법과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없는 점, 이해관계자의 별도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제한요건** 신설

- ① 상생협력을 위해 체결한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해 초래한 경우, ② 참여기업이 기술침해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를 5년간 제한

심사결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집행에 행정적·재정적 어려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별도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창업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확인신청 제한기간**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 확인을 받아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 확인 신청을 제한

심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한 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1년간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점, 창업기업 확인의 경우 관련 내용을 전자 시스템으로 등록·처리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전문개인투자자 보고의무** 신설

- 전문개인투자자가 정기보고를 통해 투자실적 관련 사항을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전문개인투자자는 3년간 1억 원의 투자실적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투자실적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 3)

심사내용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신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심사결과 비밀유지계약은 미이행 시 소송에서 계약서 상 사항이 법적 효력을 갖고 비밀관리성 입증에 도움이 되는 등 서면발급 의무보다 수탁기업 기술보호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술자료의 모호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기술자료의 정의 규정에 비밀관리성을 추가하였으며 비밀유지계약의 경우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비밀관리성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점, 미이행 시 서면발급과 달리 소송에서 배상 등 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서면 추가발급** 신설

-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부당한 사용·공개 행위 금지 및 해당 행위 고지에 따른 수탁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서면발급 의무에 따른 서면발급 시 기재 필요사항 확대

심사결과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 서면발급은 이중규제일 개연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서면발급 의무규정(제25조제2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규정(안 제43조제2항제3호)도 삭제하되,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공개 행위 금지 및 해당 행위 고지에 따른 불이익 부과금지 규정은 유지하도록 **중요 규제로 개선권고**

심사내용 **비밀유지계약 체결 이행여부에 대한 자료조사** 신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심사결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사항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조사시효 설정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부처가 수용하여 7년의 조사시효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신설 3)

심사내용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유한회사 조건** 신설

-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유한(책임)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제한

심사결과 외부 출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주체인 유한회사의 자산운용 건전성 및 조합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점, 「금융지주회사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도 비은행지주회사와 금융투자업자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벤처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임직원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벤처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벤처투자조합,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의 금융기관 및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재처분 기준과 비교하여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모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신설

- 공모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전산설비, 업무공간, 보안설비 등 요건 신설

심사결과 공모벤처투자조합은 50인 이상 다수의 출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출자자 보호 및 조합운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전산, 보안설비 및 사무공간 기준이 필요한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갖춰야 할 물적시설 요건과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의 규제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심사결과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창업투자회사 및 해당 회사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기관의 임직원 제재처분 기준을 참고하여 본 규제의 수준을 조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및 임직원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심사결과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기관의 임직원 제재처분 기준을 참고하여 본 규제의 수준을 조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신설 3)

심사내용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신설

- 창업기획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 사내이사 또는 소속직원 중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하여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거래 진행

심사결과 개인투자조합에 비해 규모가 큰 벤처투자조합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창업기획자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사내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지정함에 따른 추가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에서도 창업투자회사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신설

-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심사결과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기관의 임직원 제재처분 기준을 참고하여 동 규제의 수준을 조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법행위의 승계** 신설

- 창업기획자의 실질적 지배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창업기획자의 위법사실을 변경 후의 창업기획자가 승계한 것으로 간주

심사결과 창업기획자가 지배관계를 변경함으로써 편법적인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양수인에게 양도나 합병 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설 1)

심사내용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보고 신설

-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기보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을 중기부에 보고하고 발행내용 등을 비치·공시할 의무 부과

심사결과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종류주식의 예외적 허용이므로 도입 취지에 맞는 운영 유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행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이 필요한 점, 본점·지점에 비치·공시하는 서류는 보고사항 관련 서류 전부가 아닌 발행수량, 1주당 의결권 수 등 외부 공개에 무리가 없는 필수사항을 기재한 별도 서류로 최소침해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특허청

집필자 양다희 사무관
Tel. 044-200-2441, ydh4423@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실용신안법 등 총 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 실용신안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요건 신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인력요건으로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책임연구원 포함 2명 이상 상시 고용하도록 정함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시설요건으로 전용 업무공간을 갖추고,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보유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증가하는 특허기술 조사·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육성할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에 대해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인력요건은 현재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IP R&D 과제 수행기관 모집 시 적용하는 인력기준과 유사한 기준인 점, 시설요건의 경우 사무실 및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1대로 충족이 가능하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에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실용신안법 (신설 1)

심사내용 **소발명권의 존속기간** 신설

- 소발명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함

심사결과 기존 실용신안권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소발명권'을 신설하며 완화된 등록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권리 인정에 따른 사익과 일반 공중이 이를 활용하지 못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간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존속기간을 새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규제로 인정됨. 다출원인, 중기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상품 개발에 소요된 자본 회수에 필요한 기간 및 제품의 평균적 수명 주기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을 정한 점에 비추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4절 국토·해양 분야

1 국토교통부

집필자 김희재 사무관
Tel. 044-200-2420, kimheejae08@opm.go.kr

집필자 고명수 사무관
Tel. 044-200-2423, jjyy00@opm.go.kr

집필자 곽혁용 사무관
Tel. 044-200-2424, jhsun0213@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총 177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4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43건 중 1건은 개선권고, 1건은 부대권고하였고, 34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1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3)	원안의결 9	신설 7, 강화 2 (비중요 9)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3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31)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31)	원안의결 7	신설 6, 강화 1 (비중요 7)
(1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07)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1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9)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1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4)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8)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6)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0)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0)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3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7)	원안의결 6	강화 6 (비중요 6)
(36)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03.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03.27)	원안의결 10	신설 10 (비중요 10)
(3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9)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본심사 (2020.03.30)	원안의결 2 부대권고 1	강화 3 (중요 2, 비중요 1)
(4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03)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4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3) 항공기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분과위 (2020.04.1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45)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04.1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6)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04.10)	원안의결 12	신설 12 (비중요 12)
(4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10)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4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04.1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3)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0.04.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6)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7)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0)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1)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62)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1)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6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6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7)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0.05.0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8)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7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8)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 1 (비중요 3)
(73)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4)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2)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75)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7)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8)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9)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8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5)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9)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88)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03)	원안의결 1	강화1 (비중요 1)
(8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1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90)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1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9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10)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9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24)	원안의결 1	강화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3)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4)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본심사 (2020.08.14)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9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2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9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2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97)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08.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8)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08.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9)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0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01)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3)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4)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6)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10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본심사 (2020.09.11)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08)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9) 철도차량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0)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11)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2	신설2 (비중요 2)
(11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1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11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4 (비중요 5)
(11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9)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2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1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3)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16)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1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5) 실내건축의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2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29)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1)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2)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3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37)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3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1)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4)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4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7)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비중요 6)
(149)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0)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2)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3)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5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6)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5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58)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59)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6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8)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16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6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5)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8)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6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7)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68)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9)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1) 한옥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73)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4)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7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6)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부대권고 1,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41	신설 203, 강화 140 (중요 4, 비중요 339)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신설 3)

심사내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취소기준 및 등록명부 제외기준** 신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서류 등을 작성한 경우 지정 결정 취소 및 등록명부 제외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안전점검 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한 피규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수행기관이 발주청의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공자 안전점검 실시방법 규정** 신설

- 시공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 등에게 통보
- 안전점검 수행기관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발주청 등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신청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안전점검 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 간의 계약 체결에 대한 단순 행정 절차인 점, 제도 시행 초기에 시공자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7일 이내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등 유사입법례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규정한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적정성 검토 대상 규정** 신설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 적정성 검토 대상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 건설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정보망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
  -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자가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 통보를 받은 시공자나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 검토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까지 적용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안전점검 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건설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크지 않은 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등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강화 1)

심사내용 사업비 주요항목 증감시 조성원가 재산정 의무화 강화

- 사업시행자의 조성원가가 최초 산정 후 3% 이상 증감한 경우, 재산정 의무화

심사결과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택지 공급 시 변경된 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택지개발사업의 주요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통해 본 개정안을 마련한 점,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자의 행정적 부담을 감안하여 재산정 의무화 대상을 한정(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하여 규정한 점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교통사업자별 제공하여야 할 탑승보조서비스의 내용 신설 신설

- 교통수단(버스, 철도, 항공기, 선박) 및 여객시설(터미널, 역사, 공항, 항만)별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발권지원,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 승하차 지원, 좌석안내, 편의시설 이용 및 이동지원 등 탑승보조서비스 내용신설

심사결과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에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이용 관련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탑승보조서비스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탑승보조서비스 내용 신설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EU, 미국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편의 서비스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비용(32.3억 원)도 연간 100억 원 미만이고,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대상 추가** 신설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으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으로 취득시까지로 확대

심사결과 정합성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 외국인의 국내 소유 부동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외국인이 건축물 신축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단순 행정 절차로, 규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7, 강화 2)

심사내용 **감항성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대상 확대** 강화

- 감항성*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모두 그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고대상자 범위 확대

  * 감항성(airworthiness) : 항공기나 그 관련 부품이 비행 조건 하에서 정상적인 성능과 안전성 및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함

심사결과 항공기 안전향상을 위해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장 등에 대한 예방조치인 감항성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및 관리대상의 확대를 위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본 규제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발생되는 규제비용이 없으며, 타법 사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기 종류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 신설

-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를 비행기, 헬리콥터, 경량 비행기, 경량 헬리콥터로 한정하고 정비분야 범위도 전자·전기·계기 분야로 한정

심사결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으로 국내 자격증명 제도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와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 및 경량항공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규제내용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 조문을 마련하여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 강화** 신설

- 항공전문의사 신규 지정요건 중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 인정 범위를 최근 1년 이내 이수한 것으로 한정하고, 이수해야 할 교육과목에 정신계질환 판정 및 상담기법(신규교육 시 4시간, 보수교육 시 3시간) 추가

심사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항공승무원과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 신체 적합성을 판정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본 규제내용은 유럽항공안전청 및 미국연방항공청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유럽의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비용분석 결과 규제비용(연간 11백만 원)이 연간 100억 원 미만이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기 취급업자의 항공안전장애 보고의무** 강화

- 항공안전장애 의무보고 대상에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수하물의 하역, 항공기 탑재관리 및 동력지원, 항공기 입·출항에 필요한 유도사업을 하는 항공기 취급업자 추가

심사결과 증가하는 항공기 취급업 관련 항공안전장애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관련 내용 보고를 의무화 할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내용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한정의 응시자격 기준 강화** 신설

-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위한 한정심사 응시요건 중 정비실무경력 기준을 기존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

심사결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으로 국내 자격증명 제도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와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 및 경량항공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규제내용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추가** 신설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중 '경미한 사항 위반행위'에 음주검사의무 미수행 포함

심사결과 비행안전을 위해 항공사의 소속직원 대상 자체 음주검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불이행 시 제재기준을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규제내용을 운항기술기준 미준수 시 제재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규정하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본 규제에 반영한 점,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종사자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기준**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 등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세부기준 신설

심사결과 사고 예방 및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 등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기준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기준**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 등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세부기준 신설

심사결과 사고 예방 및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 등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기준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이견이 없으며,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기준**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였거나, 조종자 증명 효력 정지기간 중 비행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위반행위 적발시 조종자 증명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세부기준 신설

심사결과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였거나, 조종자 증명 효력 정지기간 중 비행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위반행위 적발시 조종자 증명 취소 및 효력정지 세부기준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기준과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으로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도입** 강화

- 부실이 발생한 감정평가 분야(최근 3년 이내 타당성조사 결과 부실이 발생한 분야, 무작위추출 표본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례의 다수 발생 분야 등)에 대해 우선추출방식 표본조사 실시

심사결과 감정평가는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평가, 담보대출을 위한 담보 평가 등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임에도 부실감정평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정평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現「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도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규정되어 있는 등 타법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며, 추출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 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분양 광고 포함사항 추가** 강화

- 건축물의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여부) 추가

심사결과 제한된 정보로 인한 수분양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분양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전문가, 지자체 및 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후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분양사업자에게 별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으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분양계약서 포함사항 추가** 강화

- 건축물의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분양받은 호실이 위치한 층의 건축평면도) 추가

심사결과 수분양자 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분양계약서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분양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전문가, 지자체 및 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후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분양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작성된 건축허가 도면 중 일부를 분양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신설 6)

심사내용 **주주총회 결의사항 추가** 신설

-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에 관한 사항 중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계약의 종류(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처분계약 또는 변경체결, 자산관리회사와의 업무 위탁계약 및 변경체결 등)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중요한 계약의 체결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개정('19.8.9)된바,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관련 업계와 사전 공청회를 통해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본 규제수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된 있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동산투자회사 이사의 주요 직무 규정** 신설

-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리츠 이사의 주요 직무(자산관리회사, 일반사무 위탁기관,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 금전 분배 및 주식 배당에 관한 사항 등) 규정

심사결과 리츠의 자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 경쟁도 증가추세로 보수지급 또는 주식 배당 등과 같이 투자자의 이익과 연관성이 있는 주요 직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업계와 사전 공청회를 통해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본 규제수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투자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된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일반청약 예외사항 추가** 신설

- 국민연금공단이 75% 이상 소유한 부동산펀드, 국민연금공단 및 기관투자자가 75% 이상 소유한 부동산펀드가 100% 소유한 부동산펀드 등 리츠의 일반청약 의무 예외사항 추가

심사결과 리츠의 공모 의무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 중 투자구조가 유사한 제25호와 비교시 형평에 맞지 않고,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업계와 사전 공청회를 통해 본 규제가 마련된 점, 일반 국민의 해당 리츠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투자 사례가 없고 다른 유형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국토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바,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제한되는 권리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전의 대출 대상 및 방법** 신설

- (대상) 부동산개발사업법인, 민자도로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개발법인
- (방법) ▲정관에서 대출에 대해 규정 ▲담보권 설정 또는 지급보증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수단 마련 ▲대출 한도는 리츠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로 유지 등

심사결과 일반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리츠의 금전 대출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관련 업계와 사전 공청회를 통해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본 규제수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집합투자업자의 금전 대여 대상 및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된 점, 규제의 부담 대비 리츠가 여신업으로 오용될 우려를 차단하고, 대출금 미회수 등으로 인한 자산의 부실화 예방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산관리회사의 위탁업무 범위 규정** 신설

- ▲리츠의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 ▲리츠 자산의 투자·운용 ▲일반사무위탁기관,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선정 ▲보고서 또는 공시내용의 작성 등

심사결과 현행 규정상 일반사무위탁회사의 업무 범위는 정하고 있으나, 자산관리회사가 그 책임하에 직접 수행하는 업무 범위 규정이 자산관리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나 적용될 수 있는 벌칙 규정 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업계와 사전 공청회를 통해 본 규제가 마련된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산관리회사 등의 의무적 보고사항 확대** 신설

- ▲「상법」에 따른 특별결의를 한 경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한 사항 변경하는 경우 ▲합병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계획과 결과 등

심사결과 보고 주체를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정관의 변경, 합병·해산 및 공모 사항 등 의무적 보고사항을 확대하여 리츠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업계와 사전 공청회를 통해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본 규제수준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된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6, 강화1)

심사내용 **기술자 등록의무 규정** 신설

-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장관에게 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함(FMS에 등록)

심사결과 본 규제는 무자격자의 안전점검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FMS에 기 등록한 기술자에게 추가적인 등록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수정·보완제출 기한** 신설

-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적정 판단 시 수정·보완 제출기한(정밀안전점검 : 2개월 이내, 정밀안전진단 : 3개월 이내) 설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작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결과보고서 수정·보완 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출기한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결과보고서 작성준수 위반자 명단공표 방법 및 내용** 신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준수 위반자 명단공표 방법 및 포함 내용 규정
  - 위반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명단공표 직전 연도부터 과거 2년간 지적된 위반사항 FMS에 1년간 게시

심사결과 본 규제는 최근 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부실작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게재 기준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사항 추가 및 보수·보강조치, 위험표지 설치 대상 등 규정** 신설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및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등)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발생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및 위험표지판 설치

심사결과 본 규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부분 공공기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 신설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 규정
  - 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 원 이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결과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0만 원 이하
  - 부과·징수 절차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준용

심사결과 본 규제는 시설물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시정명령 미이행 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책임기술자 자격기준 강화** 신설

-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자 하는 건축사 요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 추가

심사결과 본 규제는 시설물의 부실점검 등이 지속 적발됨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경과규정을 두어 소급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영업정지 요건 강화** 강화

-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관련 영업정지 기준 적용 범위를 기존 책임기술자에서 기술자(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로 확대

심사결과 본 규제는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점검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입법 미비를 해소하는 개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감정평가업자의 고용인의 신고절차 등 신설** 신설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사·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절차 규정

심사결과 부실감정평가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정평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직원 등 감정평가업자의 고용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본 규제수준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시 신고절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된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신고 절차에 따른 비용은 미미하나 부실 감정평가를 예방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고용인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감정평가 시장 질서 확립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부동산투자회사 신용평가 대상 및 절차, 공시의무 규정** 신설

- (대상)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
- (의무) ▲신용평가기관이 신용평가방법을 정하거나, 리츠가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한국거래소, 리츠협회 등에 제출 ▲리츠 등이 투자자 정보 제공을 위해 분기별로 작성·공시해야 하는 투자보고서 내용으로 신용평가 결과 추가

심사결과 본 규제는 일반 국민의 리츠 투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받고 이를 공시토록 하는 취지로, 관련 업계와 사전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점, 신용평가 대상을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상장리츠로 한정하였고, 예외사항을 두어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반면, 일반 국민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비대칭성 해소, 투자 여부 결정비용 감소 및 시장의 투명성 확보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스마트혁신사업·실증사업 신청 절차 및 반려요건, 승인기준** 신설

- (신청절차)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혁신성, 자금 조달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안전성 입증자료 및 지자체의 의견 등을 첨부
- (반려요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한 경우 반려 가능
- (승인기준) 규제개선 효과 등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과 사업자의 사업 수행역량, 사업 시행에 따른 예상 민원 및 해소 방안 등을 고려

심사결과 본 규제는 스마트혁신사업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사업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규정한 점,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신청절차· 반려요건 등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스마트혁신사업·실증사업 조치 및 취소 규정** 신설

- 관할 지자체장의 시정조치·감독 요청, 일부취소, 안전성 검증·보완을 위한 시험 검사 등의 권한 근거 마련
- 시정명령조치 기간을 구체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거나 허용이 곤란한 사업을 우선 허용해주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사업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규정한 점, 유사입법인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등의 규정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스마트혁신사업·실증사업 관리·감독 규정 신설

- 스마트혁신사업자가 사업 시행기간(기본 4년, 연장 2년 범위 내) 만료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

심사결과 본 규제는 본 규제는 스마트혁신사업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사업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규정한 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등에 규정된 규정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스마트혁신사업·실증사업 책임보험 기준 신설

- 스마트혁신사업자가 사업 시행기간(기본 4년, 연장 2년 범위 내) 만료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

심사결과 본 규제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 시행하는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배상 수단을 미리 마련하는 취지로, 혁신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지원할 예정인 점, 유사입법인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등의 규정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 변경 강화

-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관련 자격 및 학력을 갖춘 자에서 관련 전문분야 기술등급을 부여받은 자로 변경

심사결과 본 규제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및 학력 요건을 경력 위주의 자격요건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자격증 및 학력 기준을 삭제하여 경력 위주의 기술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요건으로서의 교육 이수 의무** 신설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요건으로서 ①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②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체험·교통사고 대응요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대해 실시하는 이론·실기교육 이수 의무 신설

심사결과 개인택시 업계에 청장년층의 진출을 촉진하고 택시의 교통안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양수관련 운전경력 요건 완화 및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기존 조문과 대비하여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를 위한 운전경력 요건은 완화하되 경력 유지에 필요한 교육 이수를 최소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 신설** 신설

- 자동차가 2개월을 경과하여 무단방치 시 강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15일 경과 시 강제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처리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 등 예상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위한 방치기간을 신설하기 위한 취지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차량의 방치여부 판단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점,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아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운항증명과정에서 사업 면허취소 등이 가능한 중대한 결함 사유** 신설

-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과정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정지가 가능한 “중대한 결함”의 세부내용으로 재무능력 및 안전요건 기준 신설

심사결과 본 규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의 재무능력 악화로 인해 우려되는 안전투자 소홀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운항 능력을 갖춘 건실한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재무능력 및 안전요건 등의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취지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및 운항증명 검사기준 중 핵심적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중대한 결함 사유로 설정하였고,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성능인정신청 반려 요건 추가** 강화

- 기존에 인정받아 유효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동일한 구조의 경우 인정신청 반려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용·반영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본 규제가 마련된 점, 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피규제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 발생 우려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강화 2)

심사내용 **말뚝공사비 산정기준 변경** 강화

-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말뚝공사비 추가

심사결과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분양가상한제 취지를 고려하여, 말뚝 공사비를 기본형건축비에서 제외하고, 실제 소요비용이 포함되도록 택지 가산비로 인정하여 분양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본 규제가 마련된 점, 경과조치 등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한 점, 분양가 인하로 입주자 등 개별 국민의 편익 및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주거안정 등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택지가산비 반영 제외** 강화

-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중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

심사결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03헌가20)의 취지를 고려하여, 택지 가산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토록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본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학교용지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분양시장을 형성하는 등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도시개발 업무지침 (강화 1)

심사내용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 변경** 강화

-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 변경(감정가격 → 조성원가)

심사결과 본 규제는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의 생활보상적 취지를 고려하여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서비스 및 관련정보 제공의무와 서비스의 내용** 신설

- 공항·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교통약자에 대한 정보 및 도움의 내용, 휠체어 탑승설비 등 보조기구 우선처리, 기내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기준 마련

심사결과 항공교통은 발권, 공항이용 및 탑승 등 이용절차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복잡하여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본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본 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법령에 포함시켜 제도화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아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통약자의 도움 제공을 위한 교육 훈련 의무** 신설

- 교통약자 도움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대상에 고객 안내·서비스 상담업무 담당 직원, 예약·발권 업무 담당 직원, 객실승무원을 포함하고, 교통약자 유형별 응대 방법,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사용방법 등 교육 훈련 방법을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항공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교통약자 관련 인식 개선 및 지식

숙지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로,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예상되는 규제비용(연간 1,237백만 원)이 연간 100억 원 미만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돼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신설

-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제고하여 운항증명 과정에서 성실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법 개정의 목적 및 취지 고려 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규제수단으로 판단되고,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캠핑용 자동차의 캠핑설비 안전기준** 신설

- 캠핑용 자동차의 안전향상을 위해 1인당 1,700mm×500mm 또는 8,500㎠ 이상의 취침공간과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취침시설을 구비를 의무화하고, 450mm×550mm 이상의 비상시 탈출 공간확보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캠핑용 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캠핑설비의 안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캠핑용 자동차 제작 및 튜닝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캠핑용 자동차 제작 및 튜닝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기존 튜닝 등 운영사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점,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캠핑용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기준** 신설

- 캠핑용 자동차를 야외캠핑에 적합한 구조로 취침시설 외 ①취사시설, ②세면시설, ③개수대, ④탁자(탈부착 가능한 경우 포함), ⑤화장실(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있는 경우 포함)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 정의

심사결과 본 규제는 승합차 외 다양한 차종이 캠핑카로 활용 및 제작될 수 있도록 캠핑용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로, 해외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자동차검사기준 및 부적합판정 기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제동장치 설치 여부 추가 신설

- 자동차검사 항목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추가하고, 검사결과 해당 장치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 자동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장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검사기준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중기영향평가 검토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어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이 필요한 변경사항 신설

- ①검사진로 위치 또는 형태, ②검사업무범위의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서 제외되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규정

심사결과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정정비사업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 신설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변경지정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사업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고 추가적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신설

- 지정정비사업자가 변경지정 신청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정지 및 취소 세부기준 신설

심사결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및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이 필요한 변경사항** 신설

- ①검사진로 위치 또는 형태(통합형 또는 분리형 등*) 및 ②검사업무범위의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서 제외되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규정

심사결과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정정비사업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 신설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변경지정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사업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고 추가적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신설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변경지정 신청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정지 및 취소 세부기준* 신설

  * 변경지정 신청을 아니한 경우: (1차)업무정지 30일, (2차)업무정지 90일, (3차)지정취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차)업무정지 10일, (2차)업무정지 30일, (3차)업무정지 90일

심사결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및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절차 등 게시의무 규정** 신설

- 집합건물의 대지가 표준지인 경우, 관리단 등에게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에 대한 게시 의무 마련

심사결과 표준지 가격 조사·평가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전 권리구제를 위해 의견청취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에 대한 게시는 관리단의 설립 취지 및 수행 업무 고려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도입에 따른 비용도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자금조달계획 등 제출 대상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강화

- 非 규제지역 내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실제 거래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거래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이상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출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대상 기준을 설정한 점, 과조치 등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한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제출** 강화

-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실제 거래가격 9억 원 초과의 주택거래 ▲(서류) 자금조달 관련 증빙 제출서류 규정

심사결과 주택거래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이상 거래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증빙이 곤란할 경우 제출 면제 등 완화 규정을 함께 마련한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사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주택시장의 안정화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자동문 수동개방 버튼 설치세부기준** 신설

- 자동문 수동개방 버튼 설치 위치 기준 마련

심사결과 본 규제는 화재 발생시 재실자의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동개방 버튼의 설치 위치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권익위 개선권고의 후속조치로서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본 규제수준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스위치의 설치 위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신설 1, 강화2)

심사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의무 강화** 신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의무 위반횟수 기준 강화(청렴의무 3회 이상 위반시 교체 → 1회 이상 위반시 교체)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금품 수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청렴의무 실행력 담보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형법 등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술지원 기술인의 현장점검 업무 강화** 신설

- 정기 점검시, 책임기술인에 결과를 중간보고하도록 기술지원 기술인의 현장점검 보고체계 강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정기 점검의 중간 보고체계를 추가하여 점검 및 결과보고를 더욱 내실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기술지원 기술인의 보고서 작성에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계 안전관리 의무 규정** 강화

-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 반입·사용되지 못하도록 수시 지도·감독 의무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계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 등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단열재 표면정보 표시사항 규정 강화

- 건축물 외벽 마감 재료 단열재의 표면정보 표시사항 구체화
  - (내용) 제조업자, 제품명, 밀도(단위 K), 난연성능, 로트번호(생산일자 등)
  - (규격) 공급 최소 포장단위별로 1회 이상, 글자 크기 2.0cm 이상
  - (방법) 반영구적 방법으로 인쇄, 등사, 낙인, 날인의 방법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로 인한 화재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단열재를 포함한 외벽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KS D 3504(철근 기준) 등에 규정된 표시사항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기준 강화 강화

-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 측정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처분 기준 강화(최대 90일 사업정지 → 최대 180일 사업정지)

심사결과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대형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바, 운송사업자의 소속 운수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음주 관리·감독을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해관계인 간 이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및 절차 강화

- 등화장치 세부 시험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국제기준 조화,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신설에

따른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 마련,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시험 방법 마련, 안전장치의 세부 시험방법·절차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국제기준 국내 도입

심사결과 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표준화된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본 규제는 국제표준인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기구 표준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유사업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2, 강화 1)

심사내용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구난동의서 수령 의무** 신설

-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구난작업 전에 차량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이 명시된 구난 동의서를 받도록 의무 강화

심사결과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차량의 견인 방지 및 요금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난작업 전 차량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 및 중기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 시 준수요건 추가** 강화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양도·양수 신고 시 해당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첨부토록 의무화

심사결과 위·수탁 차주의 동의 없이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해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편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 전부 양도에 따른 위·수탁 차주의 예상치 못한 피해 예방 및 위·수탁 차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도·양수 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제강화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아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톤급 상향 대폐차의 기간 제한** 신설

-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는 직전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

심사결과 증톤을 위한 대폐차가 지나치게 빈번히 이루어질 경우 화물운송시장의 공급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의 대폐차 기간 제한 규정을 국토부 고시가 아닌 상위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상위법 취지 고려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강화** 신설

- 유가보조금 수급요건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추가

심사결과 유가보조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유가보조금 수급요건으로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상위법 취지 고려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규제자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411,368대) 사업자로 그 수가 100만명 미만인 점,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기간 확대** 신설

-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 해당 행위에 가담 또는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기간 확대

  * (기존) 1회 가담 : 6개월, 2회 이상 : 1년 → (변경) 1회 가담 : 1년, 2회 이상 : 5년

심사결과 대다수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주유업자의 공모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바, 주유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가재정 낭비를 줄이고 유가보조금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규제자는 유류구매카드 거래주유소(10,673개소) 사업자로 그 수가 100만명 미만인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영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설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심사결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과 자동차 전산망과의 연계를 통해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미준수 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필요성이 인정됨.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규제자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등(약 35,000업체)으로 그 수가 100만명 미만인 점,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처분기준 강화** 강화

- 적재된 화물에 대한 낙하방지조치 의무 미준수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강화*

  * 3차 이상 위반시 : (기존) 위반차량 운행정지 90일 → (변경) 위반차량 감차 조치

심사결과 운송사업 위·수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화물운송시장 특성상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은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만 작용하는 한계가 있어, 운송사업자의 의무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감차 처분 규정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규제자는 화물운송사업자(약 46만명)로 그 수는 100만명 미만이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강화 6)

심사내용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추가** 강화

-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에 전문가의 안전성 확인을 받는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추가

심사결과 본 규제는 가설구조물 설치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모든 가설구조물이 아닌 전문가의 안전성 확인을 받는 고위험 가설구조물로 한정하여 필요 최소수준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점검기관의 공사중지 요건 확대** 강화

- 점검기관의 장(국토부 장관, 지자체장, 발주청)이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 품질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

심사결과 본 규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기존 법률에 기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피해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제재(공사중지)가 가능하므로 최소침해성이 인정되는 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게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품질관리대상 주요 건설자재 등 대상 품목 확대** 강화

- 형강, 구조·기초용 강관, 고장력볼트, 용접봉, 긴장용 케이블을 에 대한 공급자 및 사용자의 품질관리 의무 부여

심사결과 본 규제는 불량 건설자재 사용을 차단하여 건설공사 안전 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제도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94년부터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일본에서도 주요 건축 자재 품목을 지정하여 품질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대상 확대** 강화

- 브래킷 비계, 높이10m이상 외부작업용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한 가설구조물, 현장에서 제작·조립·설치하는 복합 가설구조물(3종) 추가

심사결과 본 규제는 전문가의 안전성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위험 가설구조물을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실제 발생한 대형 사고의 문제점 및 현재 기술상황 등을 분석하여 고위험 가설구조물로 제한하여 추가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시 배제되는 관계전문가 범위 규정** 강화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하는 전문가(기술사) 중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된 자는 배제

심사결과 본 규제는 안전성 확인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건설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유사입법인「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회사를 정밀안전검사 수행기관에서 배제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구조물 붕괴사고 시 건설업자 벌점 신설** 강화

-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중 중대한 건설사고(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등)가 발생한 경우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에게 벌점 부과

심사결과 본 규제는 중대 사고 유발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다른 벌점 사유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상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신설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신설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1.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2.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특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1.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6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2.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1.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2.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2.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초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

비고: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되, 그 건축물등의 연면적 또는 세대를 합산한 것을 선임대상의 연면적 또는 세대로 본다.

심사결과 본 규제는 새롭게 제정된 「기계설비법」의 위임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소방안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전기사업법」의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기준 등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기계설비법 시행령 (신설 10)

심사내용 기계설비기술자 및 유지관리자의 자격 범위 신설

-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관련 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자격을 취득한 자, 학력·교육 등의 기준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책임 : 기계설비 총괄하는 자로 담당자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아 분석·관리 수행, 보조 : 책임자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아 점검 결과 기록 등 보고업무 수행)

심사결과 본 규제는 기계설비 관련 기술자의 체계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수행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및 「전기사업법」의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등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신설

-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별표 4]에 따른 교육시설 및 인력, 교육 장비 보유,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적절성,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절성) 마련

심사결과 본 규제는 기계설비산업 분야 진흥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건축서비스법」, 「엔지니어링산업법」등에 규정된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공사 신설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 규정

구분	대상 건축물 등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목욕장, 물놀이형 시설 및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이상인 건축물
	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축물
	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m^2 이상인 건축물
2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기계설비 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전기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규정된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규정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의무 대상** 신설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의무 대상(연면적 1만m2 이상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 공동주택 등)

심사결과 본 규제는 체계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등에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등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 보존의무** 신설

- 기계설비의 성능점검기록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효율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일본 등 해외에서 설비기기 내구연수를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해임기준** 신설

-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선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 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해임

심사결과 본 규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전문적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참여 유도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소방시설법」, 「전기사업법」등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및 위반시 조치사항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 신설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방법 및 내용 규정
  - 교육과정·대상·시기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가. 신규교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최근 이수한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교육과목

교육과목	교육 내용
실무 Ⅰ	기계설비 일반, 기계설비 운영계획, 유지관리점검, 관련 법령
실무 Ⅱ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자동제어설비, 기타 설비

  -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 21시간 이상,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 병행 가능

심사결과 본 규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소방시설법」, 「전기사업법」등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교육방법 등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요건** 신설

-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요건 규정(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별표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요건</th></tr>
<tr><td>1. 자본금</td><td colspan="3">1억 원 이상</td></tr>
<tr><td>2. 기술인력</td><td colspan="3">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상 1명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상 1명
다.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상 2명</td></tr>
<tr><td rowspan="9">3. 장비</td><td colspan="3">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td></tr>
<tr><td>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td><td>나. 초음파유량계</td><td>다. 디지털압력계</td></tr>
<tr><td>라. 데이터기록계</td><td>마. 연소가스분석기</td><td>바. 건습구온도계</td></tr>
<tr><td>사. 표준온도계</td><td>아. 적외선온도계</td><td>자. 디지털풍속계</td></tr>
<tr><td>차. 디지털풍압계</td><td>카. 교류전력측정계</td><td>타. 조도계</td></tr>
<tr><td>파. 회전계(R.P.M측정기)</td><td>하. 초음파두께측정기</td><td>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td></tr>
<tr><td>너. 이산화탄소(CO_2) 측정기</td><td>더. 일산화탄소(CO) 측정기</td><td>러. 미세먼지측정기</td></tr>
<tr><td>머. 누수탐지기</td><td>버. 배관 내시경카메라</td><td>서. 수질분석기</td></tr>
</table>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영위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 진흥법」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위 표 제3호 각 목의 장비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심사결과 본 규제는 성능점검업자는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소방시설법」,「전기사업법」등에 규정된 점검업 등록기준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사항** 신설

-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기술인력 등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사항으로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소방시설법」,「전기사업법」등에 규정된 변경등록 사항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신설

-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규정

[별표 8]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처분의 4분의 1씩 줄이거나 늘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나.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2호	등록취소		
다.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2조 제2항제3호	등록취소		
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2조 제2항제4호	등록취소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5호	등록취소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6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22조 제2항제7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심사결과 본 규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전기사업법」등에 규정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 범위 확대** 신설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수립대상을 확대(사업면적 100만㎡ 또는 인구 2만 이상 → 사업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 이상)

심사결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회피를 위한 쪼개기식 개발을 줄이고, 현재의 통행 패턴·발생량에 맞춰 기준을 현행화하여 중·소규모의 연접 개발 증가로 교통인프라 개선 없이 교통량이 증가하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전문기관의 용역 및 과학적 분석을 거쳐 본 규제가 마련되었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의 수는 약 20명으로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기관 등의 전자출결시스템 이용한 출결관리 의무** 신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중 조종교육에 관한 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교관·교육생 출결관리를 위한 전자출결시스템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출결 요청을 하고, 출결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의무부과

심사결과 위치기반 출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교육생, 교관)의 출결 관련 허위기재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비행경력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비행경력 정보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의 수는 약 28,000명으로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강화 3)

심사내용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의무기간 강화** 강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우선 공급 대상의 거주의무기간 강화(1년 이상 → 2년 이상)

심사결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청약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및 해외 일시거주 후 귀국자,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이 다수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한 결과, 무주택 실수요자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동의하되, 향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강화

-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대상자	재당첨 제한 주택
적용 대상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이전기관 특공 주택 등 당첨자	• 공공분양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 •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 •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
기간	현행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85㎡ 이하 당첨 5년, 85㎡ 초과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85㎡ 이하 당첨 3년, 85㎡ 초과 1년	
	개선	• 현행 + •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10년, 청약과열지역 당첨 7년 (평형 무관)**	

심사결과 주택시장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분양가 상한제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향후 10년간 재당첨 권리가 제한(청약과열지역은 7년간 제한)되므로 규제수준의 정도가 부당하다고 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한 결과,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주택당첨기회의 공정한 배분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급질서 교란자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강화** 강화

-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기간 강화

	공급질서 교란자의 입주자 자격 제한 기간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기타
현 행	10년	5년	3년
개 정	**10년**	**10년**	**10년**

심사결과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청약 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기간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 중 본 규제에 대한 찬성 의견만 제출되고 이견은 제기되지 않은 점, 공급질서 교란자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여 필요 최소수준으로 규정하고 경과조치를 통해 규제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건축법 시행령 (신설 2, 강화1)

심사내용 **굴착공사 및 옹벽 등 공사시 감리원 상주 의무화** 신설

- 굴착(10m 이상) 및 옹벽(5m 이상) 등의 공사시 공사기간 동안 1명 이상의 건축·토목 분야 건축사보 배치 의무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굴착 및 옹벽공사 등 고위험 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굴착공사 안전강화대책 자문회의('18.9월) 및 전문가 TF회의('18.10월)를 통해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건축법」에 규정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대상 공사 기준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규정** 신설

-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유형(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공개공지 및 편의시설 훼손 행위 등)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수용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행위 등의 제한 규정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강화** 강화

-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방법(정기조사 : 전년도 말까지의 전체 위반건축물에 대해 매년 실시, 수시조사 : 신규 현황 파악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축법령 등을 위반한 건축물의 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건축허가 등의 취소, 시정명령 등 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위반건축물에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하여 필요 최소수준으로 규정한 점, 유사입법인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실태점검 방법 등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교통약자 서비스에 대한 교육의 대상 확대 신설

-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승무원 및 『선원법』 제64조 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고용한 자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의무부과

심사결과 교통수단 승무원 등이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을 담보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 고려 시 철도·항공 외에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교통수단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 수는 약 74,000명으로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항공기 기술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수송급 항공기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

- 수송급 항공기에 대한 엔진 파손 하중, 비행승무원이 사용하기 위해 장착된 시스템과 장비기준, 받음각 시스템, 과냉각 대형 강설 조건에 대한 기술기준 추가

심사결과 항공기 기술기준을 미국(국제)기준과 조화시켜 항공기 수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항공기 기술기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내 항공기가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기술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것으로서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강화

- ▲지자체로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상한을 상향(15%→20%) ▲구역 특성에 따라 추가 부여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5%p→10%p)

심사결과 임대주택 상한비율 범위 상향을 통해 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유도하고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본 규제로 인해 각 재개발 사업장에서 일반분양을 임대주택으로 대체하여 입은 손실액을 계산한 결과 연간 약 740억 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중요 규제**로 검토되었으나, 본 규제는 일률적인 규제 강화가 아닌 지자체가 지역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 제도 시행전에 이미 사업성을 평가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던 단지들은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침해 최소화 수단을 마련한 점, 서민층 주택안정 기여라는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바, **원안의결**

(45)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건축물관리계획 조정안 및 수선 등 조치결과 보고 방법** 신설

- 건축물관리계획 조정안 및 수선·변경·증설, 보수·보강 등의 조치 결과보고 방법 등 규정
  - (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절차)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주요부분의 범위 및 정보체계 입력기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는 수선·변경·증설 대상인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주요구조부 또는 화재 및 피난안전설비 등'으로 규정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입력기간을 조치 완료 후 30일 이내로 규정
  - (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방법)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보수·보강 시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생애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으로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물 해체·개선계획서 세부규정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변경 제한** 신설

-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작업계획, 구조안전계획, 해체물 처리 및 안전관리대책 등의 내용 포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관련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취지로,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물 철거 시 해체공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신설 12)

심사내용 **건축물관리정보 기록, 보관, 유지, 등록 의무** 신설

- 건축물관리점검 또는 보수·보강공사 등을 한 경우 기록·보관·유지·등록해야 할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주요 도면 등)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체계적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 관련 정보를 기록, 보관토록 하는 것과 비교하여 규제주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수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신설

- (대상) 「건축법」상 특수구조건축물,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
- (기준) ① 외관조사 실시, ② 특수구조 및 구조 변경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점검계획 수립, ③ 균열 및 손상 등 관찰
- (방법)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부고시)로 위임

심사결과 본 규제는 특수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시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하여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 특수 구조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건축법」에서 특수건축물인 경우 구조안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결과보고** 신설

- (대상) 지진·화재 등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내용) 안전진단 개요, 자료수집 및 분석결과, 현장조사 및 시험결과, 건축물 상태평가 결과, 안전성 평가결과, 종합평가결과, 보수·보강방법 등
- (제출) 안전진단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제출

심사결과 본 규제는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진단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안전진단 결과보고 등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기준 및 대상, 결과보고 사항 규정** 신설

-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대상(건축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추가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요건 규정([별표 1])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기관

가. 기술인력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나. 장비: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각도 측정용]

② 안전진단 기관

구분	요건
가. 자본금	1억 이상일 것
나.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다.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水準)·각도·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절차(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점검기관 명부작성 및 관리 → 시·군·구청장이 지정)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결과 보고사항(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도시가스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안전진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체계적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전문성 및 건축물관리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규정된 지정 요건 등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점검책임자 자격기준 및 건축물 관리 교육의무 규정** 신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자 자격기준 및 교육의무 규정

• (자격)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자격기준([별표 2])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자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 (교육)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건축물관리 교육

구분	점검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 시간	교육 방법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점검책임자	일반교육(최초)	35시간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점검자	일반교육(최초)	7시간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갱신)	7시간	
안전진단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일반교육(최초) - 기초교육 - 심화교육	70시간 - 기초35시간 - 심화35시간	
		보수교육(갱신)	14시간	

※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 실시
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점검 등의 책임기술자 자격기준 및 교육의무 등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물의 사용제한 및 보수, 보강 조치 등의 이행 규정** 신설

- 관리자가 건축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을 해야 하는 경우
  - 주요구조부의 강도 또는 강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 주요구조부에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된 경우
  -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리자가 건축물의 보수·보강 등을 해야 하는 중대한 결함 사항
  - 주요구조부의 강도 또는 강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 주요구조부에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된 경우
  -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의 보수·보강 등의 이행 규정
  - (계획수립)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계획 수립 및 보고
  - (조치착수)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착수
  - (조치완료) 보수·보강 조치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축물의 중대한 결함을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중대한 결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 보수·보강조치 이행에 관한 규정 등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상** 신설

-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추출방식으로 대상 선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서 조사에 대해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영업정지 기준** 신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영업정지 기준

위반행위	1차 영업정지 기간	2차 영업정지 기간	3차 영업정지 기간
1.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개월	4개월	4개월
나.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3개월
다.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개월	3개월	3개월
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1개월	1개월	1개월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건축물관리점검이 거짓으로 실시되었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개월	4개월	4개월
3.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4개월	4개월	4개월

※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결과 본 규제는 책임감 있는 건축물관리점검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정지 기준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규정** 신설

- 화재취약요인(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주차장 구조)에 해당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 시설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으로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기존에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한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기존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규정** 신설

-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건축법」 제14조 제1항 1호 및 3호에 따른 건축물,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체공사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 「건축물관리법」이 건축물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나, 본 규제는 해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물로서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토록 하는 것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교체** 신설

-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교체 기준 규정
  - (해체계획서 검토자격) 기술사에게 검토시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으로 직무범위를 등록한 기술사
  -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추가 검토하는 대상
    - ☞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②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③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방법*)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 작성·관리 → 시·군·구청장이 지정
    *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대상) 해체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건축물
    - ☞ 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해체신고 대상 제외)
      ② 해체신고 대상으로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감리자 교체 및 1년 이내로 지정 제한하는 경우
    - ☞ ① 감리자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고의·중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 거부 또는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④ 그 밖에 업무 수행 부적합으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체공사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공사 감리자 지정 규정 및「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교체기준 등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고발생 보고의무 대상 피해 규모 등 규정** 신설

- ① 건축물 붕괴·전도 등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사망자(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5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 관리자가 지체없이 안전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축물 사고 발생 시 적정 보수·보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점, 유사입법인「시설물안전법」에서 시설물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도면정보 개방** 신설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주거용도 사용층 제외)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심사결과 본 규제는 공중의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건축물의 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대하려는 취지로,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거 층의 정보를 제외하고 보안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 점, 사생활보호의 권익 침해보다 내부 평면정보 활용을 통하여 얻게 되는 공중의 안전 확보 등 사회적 편익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제외) 요건 및 절차** 신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려는 공동주택의 요건(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 규정

심사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의 관리를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이하)의 경우,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등을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입주자 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입주자등 동의비율에 대해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수리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점(2차례), 「공동주택관리법」상 외부회계감사 제외요건 등의 최대 동의기준이 2/3이고, 「집합건물법」에서도 공용부분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3/4에서 2/3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별 대표자 자격제한 기준 강화** 강화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인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결격기간 설정(퇴직한 경우에는 남은 임기,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심사결과 동별대표자가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속 체납으로 당연퇴임한 경우, 결격기간을 설정하여 다른 결격사유와 형평을 맞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관리비 연속체납으로 당연퇴임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바, 당사자의 출마제한은 결격사유간 형평성을 맞추고, 동별 대표자로서의 책임감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당연퇴임된 자에게 타 결격사유와 동일한 기간의 제한이 부과되는 것으로 준수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별 대표자 중임자 선출기준 강화** 강화

- 동별 대표자 선거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 후보자 또는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중임자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동별 대표자 선거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 후보자가 없는 경우만 허용하던 중임자 출마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입대의의 조속한 구성을 통한 입주민의 권익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2회의 선출공고간 기간을 단기(2개월)로 설정하고, 3회차 선출공고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 것은 중임자 출마허용의 편법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적용례를 두어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거 관련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강화** 강화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①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 ②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의결

심사결과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우편송달·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에 참여 비용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권 보호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공용부분 하자담보 책임종료 의결을 위해 필요한 전체 입주자 4/5 이상의 서면동의는 유사입법례에서도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교통약자 서비스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신설

- 항공 객실 승무원·철도 여객 승무원·저상버스 등의 승무원·선박 여객관리선원에게 실시하여야 할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

심사결과 교통약자 서비스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지식 숙지를 통해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본 규제안이 마련된 점,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규제비용이 연간 119.52백만 원으로 연간 100억 원 미만이고, 피규제자 수는 약 9만명으로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 절차 및 조건 신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연구·시범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절차 규정

심사결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범운행을 통한 연구·개발은 필수적으로서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상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특례 절차가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위해 시험운행지구 내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아

운행하려는 자로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책임보험가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기준** 신설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세부기준

심사결과 시범운행지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시범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비수단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본 규제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의 연구·시범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35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기한 축소** 강화

- 주택관리업자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이수 기한(1년 이내 → 3개월 내) 축소

심사결과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단기간 내 교육실시로 주택관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직무교육을 위해 배치·채용된 경우 3개월 내 이수토록 규정하는「산업안전보건법」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본 규제 시행 후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사람부터 적용토록 경과조치를 두어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강화

- 현재 각 동의 연면적이 1만㎡ 이상인 숙박시설의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 내 숙박시설의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로 적용 기준 강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 문제를 보완하고,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환경 훼손 우려 및 사업비가 큰 대규모 숙박시설에만 적용되는 점, 미국·독일·영국·캐나다·스웨덴 등에서 총 건축비용의 0.2%~2% 범위에서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3)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기준 및 절차 신설

- 철도보안검색장비 종류별(엑스선 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등) 성능인증을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의 처리 방안 및 성능인증서 재발급 신청절차 규정

심사결과 법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성능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철도보안검색장비 국내 제작 및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철도보안검색장비 제작 및 수입업체(48개)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 기준 및 절차 신설

-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성능점검시험을 요청할 수 있고, 성능검사 결과 부적합 시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보완토록 하고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 결과가 미흡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

심사결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장비에 대한 인증 취소 등 조치가 필요한바, 성능점검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철도보안검색장비 제작 및 수입업체(48개)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 대상 규정 강화

- 타워크레인을 형식신고 대상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

심사결과 본 규제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타워크레인의 유통·사용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본 규제 시행 이후 제작·조립·수입되는 타워크레인에 적용되는 점, 타워크레인의 제작자가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형식신고에 비해 비용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기계부품 인증 대상 추가 신설

- 타워크레인의 주요부품(타워크레인의 마스트·지브)을 건설기계부품 인증대상으로 추가

심사결과 본 규제는 불량부품 배제를 위해 주요부품의 성능 및 안정성을 검증할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사용연수가 오래되거나 수입산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부품인증제도가 적합한 점, 유사입법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자동차부품 인증 및 검증된 대체부품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교육기관 지정요건 강화 강화

- 종합교육기관의 전임강사 보유 기준(전임강사 확충(+1명), 전담직원 축소(-1명), 총원 현행(5명) 유지) 변경

심사결과 본 규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인력 배분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총원은 유지토록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 교육기관 전문성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건설 경쟁력이 강화되는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6) 건축물관리점검 지침 (신설 2)

심사내용 노후 건축물 구조점검 항목 구체화 신설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최초 정기점검 시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구조점검 항목(주요 구조부, 건물 기울기, 부동침하 기울기, 부재변형,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강재부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유사입법인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과 동일한 수준인 점, 구조 안전점검 비용 대비 부실점검으로 인한 사고위험 축소 및 건축물 노후화 속도 지연으로 확보되는 국민 안전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신설

- 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안전진단 실시과정의 안전관리, 안전진단의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 정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안전진단 결과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하는 취지로, 유사입법인「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동일한 수준인 점, 안전진단을 통하여 사고발생 위험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7)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화재안전성능보강 품질기준 및 보강공법 규정** 신설

- (품질기준) 공법별로 사용 가능한 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및 재료의 품질기준(KS표시,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 규정
- (보강공법) 건축물 구조형식(필로티, 일반)에 따른 보강공법 제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

구 분		비 고
1층 필로티 건축물	1층 필로티주차장 천장 보강	기본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0.8m)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암면 2.5m)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난연마감+불연재료 띠) 옥상 드렌쳐 설비	택1 필수
일반 건축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난연마감+불연재료 띠)	택1 필수

심사결과 본 규제는 안전관리 대책은 부재한 기존 건축물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유사입법인「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한 점, 비용검증 결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피해액 약 20억)와 같은 사고 예방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조합원 모집공고 포함사항 및 추가 안내 신설

-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시 모집공고에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 사업계획승인·착공·입주예정일 등 해당 주택사업의 주요내용을 포함

심사결과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조합가입 전에 충분히 알림으로써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모집공고에 사업 주요내용 등 본 규제와 동일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입주자격 등 규정 신설

- 가정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영유아보육법」상 인가증명자료를 제출한 자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정한 임차인 선정 순위에 따라 임대할 세대를 공급 등

심사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서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 자격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대사업자와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의 알권리 강화 및 임대운영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운영 관련 사항과 유사하게 규정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신설

- 주택 공급 목적의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하는 대상을 30호(세대) 이상으로 정함

심사결과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등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주택법」에서도 30호를 기준으로 규제차등화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0)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체약국자동차에 대한 운행표 발급 제한 사유 신설** 신설

- 체약국자동차에 대한 운행표 발급을 제한(위반일로부터 1년간 발급 제한 또는 운행표 회수)할 수 있는 사유 신설

심사결과 오폐수 방류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의 안전한 주행환경을 위협하는 체약국자동차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상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않고, 피규제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으로서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국내에서 운행하고자 하는 자(약 4,000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1)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 밖 20미터내 행위 중 신고하여야 할 사항** 신설

-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노면전차의 기반시설·철도시설 보호 및 안전 운행을 위하여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신고토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관제업무 종사자 경력 삭제** 강화

-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게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 삭제

심사결과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평가를 이수한 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성 함양을 통해 현장 작업자의 안전사고 및 열차 운행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본 규제 시행일 이전 철도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1,687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전문기관 지정 가능 기관·단체의 범위 축소** 강화

-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범위에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삭제

심사결과 철도안전 전문인력은 철도의 안전확보라는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관련 교육 및 자격 관리 사무를 비영리법인·단체에 한정하여 담당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 수는 현재까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안전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사례가 1건에 불과하여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2)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신고 대상 무인비행장치의 범위 확대** 강화

- 무인비행동력장치(드론) 신고 대상을 자체무게(연료 무게 제외) 12kg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연료 무게 포함) 2kg 초과로 확대

심사결과 신고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사실상의 “드론 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드론 관리체계의 개선 및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온 드론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드론의 분류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신고 의무 대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해외사례와 비교 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 수는 현행 규정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 등록한 드론 10,712개로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3)

심사내용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추가** 강화

- 건설기계 장치 중 해체금지 대상에 과부하방지장치 추가

심사결과 본 규제는 타워크레인 등의 과하중 작업을 사전에 방지하는 취지로, 「안전검사 고시」에서는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게 봉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규제강화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는 반면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와 사고 예방이라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제작자 등의 사후관리 의무 규정** 신설

- 타워크레인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토록하고 부품의 교체 주기 및 소비자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수입된 타워크레인의 주요부품에 대한 원활한 공급 및 불량부품 사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시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적용례를 두어 규칙 시행 이후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토록 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규격 규정** 신설

-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규격을 기존의 정격하중(3톤 미만) 이외에 지브 길이, 모멘트, 설치 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여 구체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기존 일반 타워크레인과 규격에 큰 차이가 없는 소형 크레인의 원격 조작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합한 규격을 신설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규제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은 미미한 반면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이라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강화 및 실기시험 기록·보관 의무** 신설

-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취득시 실기시험을 도입하고 교육기관은 실기시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무선 리모콘을 이용한 원격조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형 크레인의 조종자격 기준을 실무 위주로 강화하려는 취지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실무중심의 교육제도 운영이 현장 활용성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여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인 점, 규제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은 미미한 반면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이라는 사회적 편익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정지 처분기준 강화** 강화

- 건설기계 조종사의 음주조정 기준
  (▲면허정지 : 혈중알콜농도 0.03~0.08% ▲면허취소 : 0.08% 이상)을 강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음주운전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취지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운전 기준과 유사한 점, 규제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은 미미한 반면 건설현장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라는 사회적 편익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전매행위제한 특례 적용기준 강화** 신설

-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현행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 삭제
- 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PFV의 과반 지분(50%초과)을 확보한 경우로 강화

심사결과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계열사 간 편법전매 등 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른 공급가 이하 전매비율은 전체 공급 필지수의 약 10%이며, PFV 전매 악용사례도 2건 정도로 일반적으로 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본 규제의 시행 전에 공고가 실시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경과규정을 두어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이론교육 추가** 신설

- 응시자별(일반응시자, 타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철도차량 운전관련 업무종사자, 철도관련업무경력자, 버스 운전 경력자)·차량 종류별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 및 시간을 규정

심사결과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자격으로서 이론교육의 중요성이 큰바, 교육훈련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이론교육을 법제화·의무화하여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이론교육 폐지 전 실시하던 교육내용 및 해외사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운전교육 훈련 이수자(연평균 1,771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과목 추가** 신설

-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통과하여야 하는 기능시험 과목에 “비상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심사결과 철도차량별 기기취급방법·작동원리·조작방식 등이 다르므로 비상시 조치도 달라질 수 있는바,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 취득자도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할 경우 비상시 조치에 관한 시험을 통과토록 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실기시험 응시자(직전 3년간 연평균 1,390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기준 강화** 신설

-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운전면허취소 등 제재처분 기준강화 및 정비

심사결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제재처분 수준의 차등 적용을 통해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철도 운전업무종사자의 경각심 제고를 통해 안전 운전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위반행위별 제재수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철도 운전업무종사(22,750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무수습 기준** 신설

-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의 실무수습 이수 기준 신설

심사결과 일반인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에 비해 철도 운전업무 경력자에 대한 실무수습은 상당히 축소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바, 경력이 있더라도 다른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기능의 숙지 및 체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의 실무수습을 이수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의무화 폐지 전 실시하던 실무수습 내용과 비교 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본 규제 도입으로 인한 순규제비용이 760백만 원으로 100억 원 미만이고, 피규제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직전 3년간 연평균 1,103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전매행위제한 특례 적용기준 강화** 강화

-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현행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 삭제
- 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PFV의 과반 지분(50%초과)을 확보한 경우로 강화

심사결과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계열사 간 편법전매 등 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른 공급가 이하 전매비율은 전체 공급 필지수의 약 10%이며, PFV 전매 악용사례도 2건

정도로 일반적으로 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본 규제의 시행 전에 공고가 실시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경과규정을 두어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7)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신설 2)

심사내용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기준** 신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체허가시 제출해야하는 해체계획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건축물 개요 등 사전준비단계, 해체공법선정 및 건축물 보강계획, 해체공사 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재해강도가 높은 해체공사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항목(구조안전계획, 처리계획, 안전관리대책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안전사고 방지 목적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점, 관계기관 TF 운영 및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체공사 감리업무 규정** 신설

- (일반사항) 감리대가 기준 및 감리원의 교육 이수 의무 규정
- (공사단계별)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 시 감리자가 검토·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

  * (공사시행 전) 해체계획 검토, 현지여건 조사
    (공사시행) 공정관리, 시공확인, 안전점검표 확인, 사진촬영 및 보관, 부지정리
    (안전 및 환경관리) / (보고 등) 해체작업의 시정요청, 공사완료 확인 등

심사결과 본 규제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유도하는 취지로, 감리대가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보다 50% 인상한 것으로 해체공사감리자의 법적책임이 타 공사대비 큰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인 점, 「건축법」,「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 감리 관련 유사법령에서 시행중인 내용을 준용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8) 골재채취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골재사용자 의무 규정 적용대상 추가** 신설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 따른 골재 사용자로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업자를 추가

심사결과 본 규제는 「골재채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량 재료 사용을 제재할 수 없었던 모르타르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점,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시 적법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불법·불량 골재의 사용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공공임대주택 사전설명 대상 규정 신설

-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주거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심사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입주 전에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전까지 해당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설명하고 임차인에게 확인받는 과정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입주민에 대한 주택 사전점검은 사업자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며, 본 규제 도입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자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인력 및 장비 기준 변경 강화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보유하여야 할 인력 기준을 완화하면서 성능점검책임자의 요건을 변경하고, 친환경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성능·상태점검자가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신고 요건을 변경할 필요성과 친환경 자동차의 성능점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충실한 성능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력 및 장비 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본 규제도입으로 인해 10년간 총 841.87백만 원의 규제비용이 발생하나 연간 2,505.15백만 원의 순편익이 발생하여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시간 초과시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지연 시간을 초과하여 승객을 항공기에 머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신설

심사결과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성실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86개)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2, 신설 1)

심사내용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가능 사유 추가** 강화

-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이 없는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및 경량항공기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지 않아 경량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

심사결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지정취소 가능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전문교육기관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항공인력 양성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6개)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 대상 무인비행장치의 범위 확대** 강화

- 사업용·비사업용 구분 없이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드론을 비행하려는 자는 조종자 증명을 발급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드론 조종자격 취득 대상을 확대하여 소형 드론 이용자의 경우도 교육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수칙 및 조종기능을 숙지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드론의 분류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조종자 증명 발급대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해외사례와 비교 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신설

- 항공안전투자 내역 및 실적·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과 안전투자 공시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

심사결과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전투자의 범위·항목 및 공시 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항공안전 관련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항공교통사업자(23개)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3)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캠퍼 튜닝승인 기준** 신설

- 캠퍼의 정의 및 캠퍼 관련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승인 세부기준 신설

심사결과 캠퍼를 활용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캠핑 및 튜닝 산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튜닝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기술규제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 점,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 수도 캠핑카 관련 법령 시행 이후 튜닝 승인대수가 955대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4) 건축법 시행령 (강화 3)

심사내용 **구조·피난 안전 확보대상 가설건축물 확대** 강화

-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외에 2층 이상의 가설점포, 야외전시시설 등 사용자가 많은 용도의 가설건축물도 구조안전 및 피난·방화기준(법 제48조, 49조)을 적용토록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구조·피난 안전 확보대상 가설건축물을 확대함으로서 안전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미국 소방관련 규격에서 가설건축물의 소화기, 장비 등 방화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설건축물에 방화기준을 적용하는 점, 피규제자에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비용에 비해 생명과 재산 보존 등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화구획 설치대상 확대** 강화

- 방화구획 설치 완화대상에서 설비배관 등의 설치공간을 제외함으로써 방화구획 관통부에 내화충전구조를 설치토록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배관 등이 설치된 설비공간을 통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는 사고를 방지하는 취지로,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원칙대로 적용하더라도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점, 경과규정을 두어 규제 적용을 소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후조리원 화재안전기준 강화** 강화

- 산후조리원 내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의 경계벽을 내화구조인 벽체로 하도록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피난약자(임산부, 영유아)의 화재안전 제고하는 취지로, 다른 피난약자 시설인 의료시설·노인요양시설도 동일한 배연설비 및 내화구조 경계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경과규정을 두어 규제 적용을 소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5)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안전기준 추가** 강화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해 과속방지턱 및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의무 부과

심사결과 대형주차장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이 연간 1.8백만 원으로 100억 원 미만인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추가 강화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자 등이 부착하여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의 내용에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심사결과 기계식주차장의 형식과 주차 가능한 차량의 종류(중량 등)를 안내·게시하여 주차장 관리자 및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주차장 관리 및 이용에 주의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본 규제 도입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비용은 미미하여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 요건 규정 강화

- 민관공동출자법인 스마트도시사업시행자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출자시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의 합계가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민간의 혁신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적정지분 참여를 통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스마트도시 국가시범사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및 SPC·재정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점,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의 민관공동출자법인 공공부문 출자비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7) 주택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주택조합 자료 제출 세부규정 신설

-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토지의 사용권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심사결과 본 규제로 주택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통한 조합원의 권리보호가 기대되며, 제출자료의 종류를 명시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예측 및 준수 가능성이 높아진 점, 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는 만큼 부담은 미미한 반면, 지자체의 지도·감독 강화에 의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라는 기대편익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8) 주택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표시광고물 사본제출 의무** 신설

- 사업주체가 교통, 학교, 공원, 생활편의 시설 등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표시광고물의 사본을 지자체(시·군·구)에 제출

심사결과 사업주체가 주택판매를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인지하고 청약한 수분양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본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입무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광범위한 분양광고가 이루어지므로 우선 허용하고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사본을 제출토록하여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여 피규제자의 사업추진에 자율성을 제고한 점, 피규제자의 부담은 미미한 반면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9)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건축물 해체감리공사 지정** 신설

- 사고위험이 높은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는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 해체공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모든 해체 공사가 아닌 사고위험이 높은 해체공사에 한하여 상주감리 의무를 부여한 점,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에서 특수구조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별도 검토, 상주감리자 지정 등 추가적 조치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감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교통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범위 확대** 신설

-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공공 주도 개발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

심사결과 공공 주도 개발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행로 설계 시 보행자 안전의 우선적 고려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단지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강화 1)

심사내용 **감리자 공정관리 기준 및 중점품질관리 대상 추가** 강화

- 감리자가 전체 공사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5개 공사)에 대해 공사 지연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토록 하여 품질관리를 강화

심사결과 주택건설공사 주요공정에 대한 공사기간 관리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사 지연에 따른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행정예고 기간('20.4.3.~4.24.) 동안 한국주택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규제자가 수용가능한 적정수준으로 규제안을 수정한 점, 경과규정을 도입하여 이미 착수한 공사에 대해 기존 규정을 적용토록 한 점, 감리자의 업무부담은 다소 증가되나 하자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토지수용사용요건 강화** 강화

- 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으로,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물류시설법』에 규정

심사결과 사업시행자가 물류터미널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필요한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행정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본 규제는 『국토계획법』 상 토지수용요건과 동일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강화 2)

심사내용 **부실점검 평가대상 예외조항 삭제** 강화

- 기존 평가대상 예외사유인 건설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예외조항에서 제외

심사결과 본 규제는 기술심의·자문을 거친 점검·진단의 부실점검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관련 업계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된 점, 규제 적용대상이 전체 점검·진단 평가 건수 중 약 5% 미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실점검 평가기준 강화** 강화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세분화 및 강화

| 기존 |

구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부실	심의점수 50점 미만	심의점수 60점 미만
시정	심의점수 50점~59점	심의점수 60~69점
적정	심의점수 60점 이상	심의점수 70점 이상

⇒

| 개정안 |

구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매우 불량	심의점수 50점 미만 또는 중요항목 3개이상 과락	심의점수 60점 미만 또는 중요항목 3개이상 과락
불량	심의점수 50~54점 또는 중요항목 2개 과락	심의점수 60~64점 또는 중요항목 2개 과락
미흡	심의점수 55~59점 또는 중요항목 1개 과락	심의점수 65~69점 또는 중요항목 1개 과락
적정	심의점수 60점 이상	심의점수 70점 이상

심사결과 본 규제는 시설물의 주요 부재에 대한 부실점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관련 업계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된 점, 현행 기준을 그 명칭만 변경하거나 현행 점수 범위를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규제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및 절차** 강화

- 국제기준과 조화 가능한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장착 자동차의 조향성능시험 방법 및 절차 마련

심사결과 개정된 자동차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표준화된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기준과 조화시킬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표준 시험방법 등을 국제기준(UN)과 조화되도록 규정하여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고,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성능시험대행자 및 자기인증 요건을 갖춘 자동차 제작사(9개)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규칙 (강화 2, 신설3)

심사내용 **전복보호구조 설치시 안전구조 적용 대상 확대** 강화

- 전복보호구조 설치시 시험방법 및 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6,000kg 초과 굴착기에서 모든 굴착기로 확대

심사결과 본 규제는 굴착기 전복보호구조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관련 업계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된 점,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보호구조물(ROPS)에 대해 종합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시행 이후 신규 제작·조립, 수입되는 굴착기부터 적용토록 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소연료전지 사용시 안전기준 적용대상 확대 및 수소농도 기준 신설** 강화

- 모든 건설기계의 조종사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일 것

심사결과 본 규제는 물리적 폭발(고압) 및 화학적 폭발(누출·발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수소연료전지 장착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관련 업계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된 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수소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시행 이후 신규 제작·조립 및 수입되는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부터 적용토록 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신설

- 타워크레인에 ① 속도제한장치, ② 정격하중 경고 및 확인장치, ③ 이상경고장치, ④ 풍속계, ⑤ 영상장치(무인 타워크레인 한정) 설치 의무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관련 업계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된 점, 국가표준(KS)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장치에 대해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시행 이후 신규 제작·조립, 수입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토록 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기존 구조 및 장치 설치기준 규정** 신설

- 타워크레인의 기존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와이어로프, 웨이트, 유압 상승장치, 선회장치, 트롤리 주행장치, 트롤리 바스켓, 마스트 쉼 발판, 이름판 등) 추가

심사결과 본 규제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관련 업계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된 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他 법령, 국가표준(KS)에서 타워크레인 구조 및 장치 설치기준에 대해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시행 이후 신규 제작·조립, 수입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토록 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트럭식 건설기계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신설

- (설치대상)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트럭식 건설기계
- (안전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임의규정), 차로이탈경고장치(강행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고속으로 도로주행이 가능한 트럭식 건설기계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관련 업계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된 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등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시행 이후 시행 이후 신규 제작·조립, 수입되는 트럭식 건설기계부터 적용토록 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 확대** 강화

- (공공공사) 現) 3억 원 이상의 공사 → 改) 1억 원 이상의 공사
- (민간공사) 現) 100억 원 이상의 공사 → 改) 50억 원 이상의 공사

심사결과 본 규제는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로, 관련 업계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된 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기공사 등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본 규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 또한, 수혜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편익이 예상되는 점,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건설산업 활성화 등 사회적 편익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강화 2)

심사내용 **감리원 추가 배치 규정** 강화

- 영업정지 처분이나 부실벌점(1.0이상)을 받은 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마감공사기간 동안 규모별로 건축분야 감리원 1~3명 추가 의무 배치

심사결과 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전력이 있어 행정처분 또는 벌점을 받은 업체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마감공사 동안 현장에 감리자를 추가 배치토록 하여 시공상태 확인 및 검측 등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공동주택에서의 하자는 주로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므로 건축분야 감리원만 추가 투입하도록 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제수단을 마련한 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적용시점을 유예한 점,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내용을 반영·수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리원 기본자격요건 및 평가 기준 강화** 강화

- (기본요건)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 경력을 3년 이상 → 5년 이상, 분야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 경력 1년 이상으로 기본자격요건 신설
- (평가대상) 평가대상 분야별감리원(해당 회사소속으로 등록)을 주택건설규모에 따라 최대 6명까지 확대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마감공정 등의 하자 시 다수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택건설공사를 감리·감독할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감리원 선별이 중요하므로

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시점을 유예한 점, 이해관계인 및 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규제 수준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8)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항목 추가** 강화

-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보증범위에 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성능상태 점검항목 중 냉각·연료장치 및 변속기 등을 보증범위에 추가

심사결과 보증범위에 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을 추가하여 친환경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요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점검항목 중 보증이 필요한 항목을 정비하여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 등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의 수는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건설기계 대여대금 이행보증 금액 조정** 강화

- (보증금액) 現) 대여대금의 10% → 改) 대여대금의 5%
- (요구시기) 대여대금 지급보증 후 이행보증 요구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건설기계 대여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행보증금액을 하향하더라도 건설사업자의 실질적인 규제 부담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은 없는 반면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연간 약 3억 원 절감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사대금지급보증 기준 및 방법 규정** 강화

- 민간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방법 및 절차 규정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보증해야 하는 공사대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도급금액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월) × 4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도급금액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월)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심사결과 본 규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민간공사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관련 협회 등의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금액 산출 방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0) 주택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주택조합 총회의결 의무사항 추가** 신설

-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무적 총회 의결사항에 추가

심사결과 조합장 등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고 조합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총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경우 '정비사업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포함하는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추가되는 비용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조합원들이 얻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택조합 실적보고 세부규정** 강화

- 주택조합사업 추진 시 인·허가, 계약체결 현황,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심사결과 본 규제는 사업실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사업추진의 투명성(각종인허가, 주요계약체결현황, 공사진행현황)과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수익 및 비용, 자금차입)를 위한 최소한의 항목 위주로 규제한 점, 규제부담 대비 자체 감시 효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편익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1) 주택법 시행령 (신설 4, 강화 1)

심사내용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자본금 기준** 신설

-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억 원,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을 갖춘 자가 주택조합업무 대행 수행

심사결과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해 일정규모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업무대행자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주택사업 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피규제자 중 중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 개정안의 자본금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자본금 규정이 있어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주택조합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의 자본금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유사사례의 기준 대비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별도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택조합 발기인 자격기준** 신설

- 주택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책임감을 가지고 조합원 모집 등 조합사업 추진

심사결과 발기인의 책임감 있는 주택조합사업 추진 및 조합원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본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특별한 비용발생은 없으나 모집주체인 발기인에 대해 조합원의 신뢰도 제고에 따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편익이 발생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택조합원 모집 광고 준수사항** 신설

- (항목)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광고에 조합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함

- (금지행위) 모집광고 금지행위로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정함
- (방법) 모집광고한 날부터 7일 이내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주택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게재

심사결과 조합원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명칭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여부를 오인하지 않도록 금지행위를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조합원 모집 주체에게 특별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거짓·과장의 광고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 편익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합사업 공개자료 추가** 강화

-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공개자료 범위에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및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추가

심사결과 조합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공개자료 범위에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및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을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법령에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 갈등 비용을 감소시키는 편익 발생이 예상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택조합 해산 방법 및 절차** 신설

- (시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 되는 날 또는 조합원 모집신고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개최
- (정족수)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2/3이상 찬성시 해산, 20/100이상은 직접 출석해야 함(그 외 서면동의 가능)

심사결과 주택조합사업의 장기 지연 시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해산절차 등을 마련하여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하여 조합 구성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 내 분쟁을 예방 하여 분쟁·갈등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준수사항 추가 강화

- (일반적인 광고) 유사한 중개사무소 명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의무 사항으로 추가
- (인터넷 광고)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건축물의 층수 및 사용승인날짜 등을 명시토록 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호
- (부당한 광고) 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②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를 추가

심사결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소비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정한 점, 공인중개사가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과도하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해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되는 편익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일본의 「택지건물거래업법」 및 「부동산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 명시사항 과 부당한 광고유형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3)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강화 1)

심사내용 건설공사 공동수급자 안전책임 강화 강화

- 공동도급이 주계약자관리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품질 및 시공상황을 확인토록 하여 필요 시 재시공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과 책임 부여
- 공동도급 유형별(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분담 책임 범위를 기존 계약이행뿐 아니라 안전·품질 확보 책임까지 확대

심사결과 본 규제는 책임 전가 등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는 취지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재부)」에서 공동계약 유형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대·분담 책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4) 주택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강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에서 4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강화

심사결과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택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매제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입법예고 기간('20.5.22.~7.1.) 동안 경기도·경상북도 등 지자체와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등에서 이견을 제기하여 **중요 규제**로 검토되었으나, 동 규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안전점검 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한 피규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수행기관이 발주청의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만큼, **원안의결**

(9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하도급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의무** 신설

- 공동도급인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 시 첨부서류'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추가

심사결과 본 규제는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재하도급 금지 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관리하려는 취지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해 건설업계와 수차례 협의('19.2.15, 2.20)를 거쳐 합의된 문안을 도출한 점, 본 규제 시행 이후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또는 도급계약 체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금직접 지급대상 공사 확대** 강화

- 임금직접지급 제외대상 공사 기준을 '5천만 원 미만'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임금직접지급 대상 공사 확대

심사결과 본 규제는 임금체불 방지 및 건설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임금직접지급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노사민정 협의체, 관계부처 회의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된 점, 본 규제 시행 이후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또는 도급계약 체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요건 규정 신설

- 전문공사·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함이 원칙이나, 신기술·특허 등의 공법이 수반되는 전문공사·종합공사는 일부에 한해 하도급을 허용하되 현행 기준에 맞게 허용범위를 제한

심사결과 본 규제는 하도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5조의7)」에서 본 규제와 유사하게 재하도급 인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산업혁신위원회 및 노사정 선언을 통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불법외국인력 고용시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 규정 강화

- 불법외국인력 고용행위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1회시 : 1개월, 2회 이상시 : 2개월)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성실한 하도급사의 권익보호 및 건설산업현장의 근로여건 개선하려는 취지로, 기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최소 행정처분 기준을 따른 점,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 및 건설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19.2.15., 2.20.) 등을 통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7)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신설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기준을 규정하고, 부존재·허위 표시·광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세부 유형을 제시

심사결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존재·허위·거짓·기만·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본 규제는 공인중개사협회, 중개플랫폼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점, 국내 유사 입법례(부동산개발업법령, 표시광고법령 등) 및 해외 입법례(일본 등)을 참고한 점, 행정예고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용·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8)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신설

-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의무 사항으로 추가하고, 인터넷 광고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

심사결과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및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공인중개사협회, 중개플랫폼사업자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점, 국내 유사 입법례(부동산개발업법령, 표시광고법령 등) 및 해외 입법례(일본 등)을 참고한 점, 행정예고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용·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9)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범위 축소** 강화

- 교통영향평가 실시한 사업지구 내 대형건축물을 약식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토록 의무 강화

심사결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광역적이고 심도 있는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교통혼잡 유발효과가 큰 백화점·대형쇼핑몰·터미널 등의 건축허가 신청 시 정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본 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기계식주차장치 내 안전장치 등의 설치기준 추가** 강화

- 차량 운반기의 안전기준 강화, 주차장치 수동정지장치의 출입구 내부 및 기계실 설치 확대, 운반기 내 움직임 감지장치 및 조명시설 설치기준 등 강화

심사결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및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와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의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연구용역 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본 규제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연간 13.3억 원으로 예상되나 편익은 매년 14.6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점, 피규제자 수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계식주차장의 구조물 설치기준 추가** 강화

- 안전울타리 등 경계시설 설치기준 신설, 보수·점검자를 위한 구조물 기준 강화 및 지하방식 주차장치의 배수장치 설치 의무화 등

심사결과 기계식주차장 내의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악한 작업공간을 개선하고 발빠짐 사고·추락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물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연구용역 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본 규제도입으로 인해 연간 약 5억 원의 규제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매년 약 5.6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점, 피규제자 수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1)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기구류에 대한 기술기준** 강화

- 기구류에 사용되는 탑승자 고정용 하네스, 구피 강도요건 및 바스켓에 조종자용 안전벨트 부착 등 기술기준 신설

심사결과 관광용으로 사용되는 열기구는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가 중대할 수 있으므로 안전장치의 강도, 손잡이·안전벨트 설치 등 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2) 건축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현장관리인 업무규정**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업무 범위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범위의 입법 미비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현장관리인의 업무의 범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규제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점, 현장관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어 업무의 혼선 및 현장의 업무 범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단 적합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3) 건축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제한** 강화

-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요건 중 '신기술'과 '역량 있는 건축사'의 적용 범위를 규정
  - (신기술) 신기술의 요건을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모든 신기술에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기둥·벽·보·바닥판 등)에 적용·설계하는 경우로 한정
  - (건축사 역량) 건축사의 기준을「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 공모전 입상에서 당선으로 강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시공 전문성 미흡이 우려되는 건축주 직접 시공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20년부터 설계공모 대상이 확대되어 본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준의 건축사 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본 규제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4) 건축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다중이용업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적용기준 강화** 강화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서 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가 모든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 강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백화점, 전시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난연 이상의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비용검증 결과 내부마감재료 강화 비용 대비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통한 재산·인명 피해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결함사실 통보 방법 및 절차** 신설

-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결함사실이 공개된 자동차가 대여중인 경우 자동차제작사로부터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량의 임차인에게 우편, 전자메일 또는 문자메세지로 시정조치 계획의 내용 등을 통보토록 의무 부여

심사결과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대여중인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여사업용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개정안 마련시 해외 적용사례, 국내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 본 규제도입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을 초과(편익비용 : 약 44억 원, 규제비용 최대 32.7백만 원)하고, 피규제자 수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6)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안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안전투자공시 항목 추가** 강화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에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해야하는 투자항목을 추가 규정

심사결과 투명한 항공안전 관리 및 안전투자 유도를 위해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되, 모든 공시의무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투자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용역·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21개사)로 그 수가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투자공시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 신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항공교통사업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안전투자 내역을 산출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출 및 투자 항목별 산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용역·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21개사)로 그 수가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7) 건축기술진흥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건설공사 부실 측정 벌점제도 강화** 강화

- (벌점대상 확대) 벌점 부과 대상 건축설계 기준 확대(총 용역비 1억 5천만 원 이상인 설계 → 모든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산정방식 변경) 부과된 벌점을 점검현장 수로 나누는 현행 누계평균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

벌점 산정 방식 비교

현행 누계평균방식					
2년 동안 각 반기별 벌점 합을 **점검현장 수로 나눈 값을** 연평균					
[A사 벌점부과 현황]					
구 분	上	下	上	下	합계
벌 점	20	5	2	4	**31**
현장수	10	5	8	12	**35**
평균벌점	2	1	0.25	0.3	**3.55**
- A사 누계벌점 = **1.775**(3.55/2)					

개정 합산방식					
2년 동안 각 반기별 벌점 합을 **전부 합산**하여 연평균					
[A사 벌점부과 현황]					
구 분	上	下	上	下	합계
벌 점	20	5	2	4	**31**
현장수	10	5	8	12	**35**
합산벌점	20	5	2	4	**31**
- A사 누계벌점 = **15.5**(31/2)					

심사결과 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및 경감규정 등으로 건설사업자 등의 벌점 부담을 완화한 점, 측정기준을 명확화하여 벌점대상 부실의 통제 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점, 벌점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법령에서도 벌점 산정방식으로 합산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 규제로 판단되나,

- 합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벌점과 연동된 입찰참가제한 등으로 인해 대형 사업자의 경영상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에 따라 중요 규제로 분류하였으며 부실벌점경감기준에 일몰규정을 설정하여 벌점부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경감규정의 적정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개선 권고**하고, 향후 벌점제도와 연동된 불이익 기준을 적정하게 조정할 것을 **부대 권고**

(108) 건축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공작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확대** 강화

-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에 규정된 공작물의 구조안전확인 높이를 기존 13m에서 8m로 강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도될 가능성이 큰 소규모 공작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건축물 하중기준(ASCE7-16)에서 공작물에 해당하는 Nonbuilding Structure의 구조안전확인(내진설계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비용검증 결과 구조안전확인 비용 대비 공작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재해피해 예방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9) 철도차량기술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변경** 강화

- 국제표준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지보수성, 신뢰성·가용성 요구조건 적용 확대 및 열차제어장치(차상신호장치)의 제작, 유지보수, 운영 등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적합성평가 의무화

심사결과 철도차량 인증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철도사고 감소 및 안전향상을 위해 국제표준에 따른 기술기준 개정·보완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본 규제가 마련되어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규제도입으로 연간 23.45백만 원의 규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비용이 연간 100억 원 미만인 점, 피규제자는 철도차량 제작사(3개)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0) 건축법 시행령 (강화 3)

심사내용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강화

-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첨탑을 추가하고, 첨탑을 포함한 유사시설(장식탑, 기념탑)의 신고기준 높이를 4m로 일원화·강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도될 가능성이 큰 소규모 공작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허가·신고 대상인 옥외광고물의 높이·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비용 검증 결과 축조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 대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재해피해 예방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다중생활시설 지역별 기준 적용** 강화

- 다중생활시설을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에 적합하도록 한 것을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및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최소 실면적 등)에 적합하도록 강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국토부 고시의 최소기준 이외에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다중생활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다중주택 최저주거기준」에서 입주민 수에 따른 방 크기·채광·환기시설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지자체 건축기준 마련 이후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다중주택 규모 확대** 강화

- 다중주택의 주택용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330㎡ → 660 ㎡)하면서, 동 주택이 필로티구조로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토록 구조요건을 완화하되, 지자체가 정한 개별 실면적· 창 규모 등에 적합하도록 단서 신설

심사결과 본 규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입주 수요 및 임대료가 변동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로, 「다중주택 최저주거기준」에서 입주민 수에 따른 방 크기·채광·환기시설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개별 실면적·창 규모 등에 제한되는바 유사 사례를 고려할 때 필요최소 수준으로 설정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1)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신설

- 단지 내 도로의 종류와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로 규정

심사결과 전국의 1,997만9천 가구 중 50.6%인 1,011만 2천 가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차도·보도·자전거 도로에 대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이 마련된 점, 해외 및 국내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단지내도로에서의 중대한 사고의 범위**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단지 내 도로에서의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규정

심사결과 아파트 단지 도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 미적용(음주운전 제외)으로 과속 및 교통약자 대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이 마련된 점, 해외 및 국내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자(85,245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고,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의 세부 안전기준** 강화

- 후방보행자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접근경고음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세부설치 기준 등을 강화

심사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장치성능에 대한 명확한 검증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자동차 제작사(25개)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 기존 자동차의 고전원 전기장치 및 구동 축전지 안전성 기준이 전기 이륜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안전기준 신설

심사결과 전기 이륜자동차의 고전원 전기장치 및 구동 축전지 결함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성 검증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국내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이륜자동차 제작사(23개)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기준 및 방법의 신설** 신설

- 자동차검사 항목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적합 여부 검사를 신설하고,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에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추가

심사결과 어린이의 차량 내 방치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적합여부를 자동차 검사를 통해 확인토록 하는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기술규제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확대** 강화

- 모든 내압용기를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포함토록 규제 강화

심사결과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기존 LPG 가스용기 외 용기 안전성이 더 낮은 수소 및 천연가스(CNG) 내압용기도 포함하여 내압용기 정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기존 LPG 가스용기 대한 규제사항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자동차 전문정비업 등록업체(29,276개사)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동차 튜닝시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확대** 강화

- 액화석유가스(LPG)를 제외한 모든 내압용기 튜닝 시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도록 규제 강화

심사결과 수소 내압용기를 사용한 튜닝 시 내압용기의 안전한 장착을 위해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내압용기 파열사고 방지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기존 LPG 가스용기 대한 규제사항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 수도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의 범위** 신설

- 철도사고(충돌·탈선·사상 등)·운행장애(무정차통과, 지연운행)의 의미 명확화를 위해 구체적 범위를 신설(안 제1조의3, 제1조의4, 별표 1의2, 별표 1의3)

심사결과 철도사고 위험요인의 사전관리 등 예방적 방식의 안전관리로 전환 및 인적오류 감소 등을 위한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연구용역 및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하여 규제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규제자 수도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철도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세부내용** 강화

-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주체에 철도운영자와 계약에 따라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를 추가하고, 사업주는 철도운영자등과 동일하게 안전교육을 분기별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전체 철도종사자의 24%를 차지하는 위탁업체 소속 철도종사자에게도 철도운영기관 철도종사자와 동일 수준의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연구용역 및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하여 규제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대상 및 교육의 내용** 신설

-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대상을 안전관련 중요직무 수행자로 규정하고, 철도종사자 직무분야별 교육시간, 내용, 방법 및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심사결과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직무교육을 제도화하고, 직무교육내용·시간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철도종사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국내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된 점,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철도운영기관(23개사) 및 철도종사자(약 5만명)으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고 대상인 철도차량의 고장, 결함 및 기능장애의 세부내용** 신설

- 철도차량·용품의 제작 및 정비단계에서 발생한 고장, 결함 및 기능장애, 철도차량의 부품결함 등을 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온·오프라인 보고의무 신설

심사결과 철도차량·용품 결함은 제작자, 정비자 등이 가장 먼저 인지한다는 점에서 사전 사고위험 요인관리를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연구용역 및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종사자(약 53,000명)으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4)

심사내용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처분의 투명성 강화

심사결과 행정처분시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이 방지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공항운송사업자(10개사) 및 항공종사자(13,740명)으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가용 조종사과정 실기교육시간에서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 인정기준 삭제** 강화

- 기장으로서 비행시간을 자가용조종사 과정 실기교육시간 인정 기준에서 삭제

심사결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항공종사자 자격)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경험요건 중 단독비행 시간(10시간) 기준을 국제표준에 일치시키기 위해 그간 국내에서 인정되어 왔던 기장으로서 비행시간을 삭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조종관련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피교육자(2,156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교육기관의 항공정비사과정 지정기준 중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강화

- 전문교육기관의 항공정비사 과정 지정기준 중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마련

심사결과 항공정비사 양성경로를 헬리콥터 및 항공전자·전기·계기 분야 등으로 다변화하여 교육훈련의 품질을 제고하고, 항공사업 현장에 필요한 양질의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규제비용이 연간 76.23백만 원으로 연간 100억 원 미만인 점, 피규제자는 항공전문교육기관 정비분야 피교육자(5,550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운송사업자가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항공운송사업자가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경미한 사항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재분류

심사결과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탑승객 등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항공운송사업자 (10개社)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운항기술기준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 및 중요한 사항** 강화

- 운항기술기준·운영기준·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 중요한 사항 신설 및 일부 항목 삭제·재분류

심사결과 심각한 항공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착륙, 활주로 침범, 무단이륙 등의 운항기술기준 위반사항이 경미한 위반사항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사고예방 및 항공안전을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항공운송사업자(10개社) 및 항공종사자(13,740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강화 1)

심사내용 **자재공급원 승인 및 거부·취소 규정 강화** 강화

-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공급원 승인 시 사전점검 실시대상의 골재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레미콘 제조업체의 배합비 조작 등을 확인한 경우 승인 거부·취소가 가능하도록 승인 거부·취소 사유를 신설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설현장으로 반입되는 레미콘·아스콘 품질을 확보하고 불량자재 납품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공공공사)의 골재 품질시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비용 검증 결과 골재품질시험 수수료 비용 대비 레미콘 등의 품질 확보를 통한 하자발생 저감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법인 거래 신고 사항 확대** 신설

-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상법법인인 경우 주택 거래 신고 시 관련 정보(등기현황, 주택취득목적 등)를 추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현행 신고 사항(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부동산 정보 등)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불법·투기행위 조사에 한계 존재하는 만큼, 법인에 대한 기초정보를 확보하여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법인의 종류와 매매 대상을 한정하여 규제 대상을 최소화한 점, 거래 당사자와 신고 대행자인 공인 중개사의 절차적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법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택거래 관련 불법·부당행위 예방과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시장 형성이라는 편익이 기대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강화

- ①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전부에 대해 제출토록 하고 ②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액에 관계없이 제출 의무화

심사결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과 법인의 주택 매수 과정에서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본 규제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 시행 이후 이상거래 비율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 질서 확립에 효과적인 정보로 볼 수 있는 점, 서류 작성·발급 방법이 비교적 간이하여 본 규제의 절차적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확보로 부당 행위 근절 및 투기 수요 억제 등 '주택 시장 안정화' 라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성능기준** 신설

-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향후 상용화될 레벨3 자율차에 의무적으로 부착되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성능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국제기준 수준의 과도하지 않은 기준 신설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소유자 사고발생 시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의 개발 촉진 및 수출입 진흥을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 규제도입으로 인해 매년 약 24.4억 원의 규제비용이 발생되는 반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시 소액 소송비용 감소로 매년 약 40.7억 원의 편익이 예상되어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점, 피규제자는 자동차 제작사(28개)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9) 주택법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항목 신설** 신설

- 사업주체는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 작성 시, 세대별 입주예정자가 조치 요청한 하자 내용과 하자유형별 (중대·일반) 분류,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을 포함하도록 함

심사결과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입주 전까지 하자보수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 항목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본 규제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20.6.23.~8.3.) 동안 주택건설협회에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치계획서 관련 표준양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한 점, 공동주택 품질 향상, 입주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예방,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 사용검사권자(시·군·구청장)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함 또한, 중대·일반 하자의 분류 및 조치방법·조치일정은 동일 또는 유사한 하자들을 유형별로 통합하여 작성토록 하여 사업주체의 작성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신설** 신설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
-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하도록 함

심사결과 사용검사 및 입주까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입주예정자의 편의를 확보하며,

사전방문이 사업주체 또는 사용검사권자에 따라 다르게 실시되지 않고, 일관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사전방문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피규제자인 사업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점검 현황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제시한 점, 규제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기준을 제시하여 비례원칙을 준수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선정 신설** 신설

- 사용검사권자가 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최소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단지 여건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심사결과 품질점검단의 세대 전유부분 점검 시 일부 세대 점검으로 전체 단지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점검세대 수를 정하여 사용검사권자가 사전에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점검 시행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이해관계인 및 중기부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을 완화한 점, 구체적인 기준은 단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점, 공동주택 품질 향상, 입주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예방,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항목 신설** 신설

- 사용검사권자가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공동 주택의 공사현황 등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목록을 5가지로 규정

심사결과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 항목을 정하여 사용검사권자가 공사 관계자 등에게 요청하여 품질점검단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검 내실화 및 원활한 점검 시행 등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사용검사권자가 공사 관계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부담을 최소화한 점,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0) 주택법 시행령 (신설 7)

심사내용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신설** 신설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심사결과 입주 후 하자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법률의 취지가 입주전 하자 확인 및 보수를 통해 장기간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조치계획 수립일자 및 조치기한, 조치완료 기한준수의 예외사유를 적절히 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입주 이후 하자로 인한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간 분쟁발생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준수가능성을 제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 확인 요청시 제출항목 및 기한 신설** 신설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하자 여부 확인을 사용검사권자(시·군·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 및 제출 기한을 규정

심사결과 자료제출에 대한 사용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체의 하자여부 확인 요청권과 대비하여 입주자 권익 보호 및 하자여부 확인에 대한 절차적 명확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기간 및 자료제출 항목을 적정수준으로 정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 자료제출 항목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체의 하자여부 확인이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간 분쟁발생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 통보 절차 신설** 신설

-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입주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인도일(입주예정일)에 알리도록 하고, 조치 완료시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의 조치현황을 입주예정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한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권리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권리 및 공동주택 품질 향상, 입주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예방,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전자서면을 허용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하자의 범위 및 기준 신설** 신설

- 입주자가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유·공용부분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로 규정

심사결과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중대한 하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법률에서 정한대로 사용검사 전까지 이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완료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 하자에 비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그 범위를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로 정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공동주택 품질 향상,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 예방, 입주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감소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신설** 신설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규정

심사결과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적정 수준을 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점을 고려, 동일하게 설정하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품질점검 대상이 되는 세대 규모를 명확히 하여 품질점검으로 이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간 분쟁발생 비용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신설** 신설

-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의 보수공사 등의 조치명령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규정

심사결과 사업주체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할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입주 후 장기간의 하자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천재지변 등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나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조치완료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부담 경감 및 준공·입주 지연을 방지하도록 한 점,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의 보수공사 등의 조치명령을 사업주체가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입주후 하자로 인한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간 분쟁발생

비용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시 제출항목 및 기한 신설 신설

-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 및 제출 자료의 항목을 규정

심사결과 이의신청 지연으로 인해 보수공사 등을 위한 공사기간 부족을 방지하고 제출자료의 항목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체의 업무부담 최소화 및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이의신청 제출 자료를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감리자의 의견 등으로 최소화하여 사업주체의 업무부담과 사용검사권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방법 및 판정기준 신설

- 현 병력(조현병, 치매, 뇌 질환 등) 문진, 신체계측(신장, 체중), 혈압, 혈당, 시기능(시각, 시야각),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을 검사항목에 추가하고, 각 항목별 판정기준 신설

심사결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컴퓨터 조작 검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취지를 살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강화 1)

심사내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강화

- 2년 이내에 이뤄지는 GB 해제 관리계획과 시설물 등의 설치 계획 면적의 합계가 30만㎡를 초과할 때 중도위 심의 의무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심의 주체 변경으로 인한 심의 정도 등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자체로 GB 해제를 불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점, 본

규제 시행 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3) 건설기계관리법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미수검 건설기계 검사명령 도입 및 미이행시 등록말소 의무화** 강화

-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최고 → 명령)하고, 시·도지사의 건설기계등록 직권말소 의무 사유에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정비명령 미이행을 추가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설기계 수검률 및 검사·정비 명령 등의 이행률 제고를 통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유사입법인「자동차관리법」제37조에서 정기검사 미시행 자동차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정기검사 명령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 본 규제 시행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기계 사용·운영 제한 강화** 강화

-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정기검사 등 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 신설
-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검사증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검사유효기간이 도과된 건설기계 사용·운행을 금지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설기계를 실제로 사용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안전확보 책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유사입법인「자동차관리법」제37조제2항에서 시장 등이 검사명령 등과 함께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운행중지 명령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등을 명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관련 행정제재·벌칙은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사대행자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 강화** 강화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사업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건설기계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건설기계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 제1호부터 제11호 이외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심사결과 본 규제는 검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불명확한 부정·부실검사 사유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유사입법인「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에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금품수수, 명의대여 등 사업정지·지정취소 사유는 건설기계 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의무위반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변조 및 부정사용 금지 규정 신설

-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등록번호표, 차대표기 및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금지

심사결과 본 규제는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건설기계등록증 등의 불법 위·변조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유사입법인「자동차관리법」제78조에서 자동차등록증 등의 위·변조를 금지하고 있는 점, 건설기계 소유자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건설기계등록 등을 하고 등록한 사항 등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 외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 금지행위 추가 신설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Ⅲ의 입주자(을) 금지행위에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갑)이 해당 임대차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매입임대주택의 최소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자 금지행위를 강화하고, 위반 시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신설된 금지행위는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필요최소 수준으로 판단되고 재계약이 거부되더라도 소득요건 등 입주자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재입주가 가능하므로 최소침해성이 인정되는 점,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악취, 폭언·폭행 등을 금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주거환경 및 입주자 주거안정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5) 실내건축의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휴게음식점 등의 실내건축 세부기준 마련** 신설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하 '기준') 적용대상에 거실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한 휴게음식점 등을 추가하고, 휴게음식점 등의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구획공간, 구조, 면적, 내부 마감재료 등 거실 내부 칸막이벽에 대한 기준 신설

심사결과 본 규제는 휴게음식점 등의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실내건축 형태를 허용하려는 취지로, 기존 법령상 요건을 준용하는 등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범위 내에서 설정된 점, 휴게음식점 등의 사업자는 기준 충족 시 법 위반행위(불법 증·개축) 없이 거실 내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범위** 강화

-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면서, 건축 연면적을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의 수는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르도록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적정 수준의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려는 취지로, 유사시설인 공동구판장의 설치기준으로 연면적 제한 기준(1,000㎡) 및 학교·어린이집 등의 설치 개소수 배치계획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신용평가 대상**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하도록 하면서, 평가 제외 대상의 요건(①부채비율 100% 미만, ②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이상, ③권리를 보유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을 규정

심사결과 신용평가 대상인 상장리츠 중 자산의 안정적 운영 등이 가능한 경우는 신용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리츠사의 자산운용 상 자율성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상장리츠의 평균 부채비율(122.3%), 평균 임대차계약기간(10.85년), 각종 신용평가사들의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방법론 (BBB~BB사이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산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적절히 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본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재무 안정성이 높은 업체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제고되고, 영업활동의 자유가 신장되므로 그에 따른 사회적 편익 발생이 예상되는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보의 공시 대상** 신설

- 금융사고·부실자산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금액기준을 제시하여 수시공시의 대상을 구체화하되,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지 않은 사항은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

심사결과 금융사고 및 부실채권의 발생 및 기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수시공시 대상을 구체화하여, 투자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법령인 「금융투자업규정」의 공시규정을 참고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자본의 2% 이상의 금융사고, 부실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점, 부동산투자회사 상장회사의 거래소 신고기준 등과 유사한 기준을 마련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및 준수 가능성을 제고한 점, 旣 구축되어 운영 중인 국토부 홈페이지 등(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 reits.molit.go.kr)도 활용 가능하므로 수시공시에 따른 업계의 별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처분기준 강화** 강화

- 운송사업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심사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시 행정처분 강화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23만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처분기준 강화** 강화

- 운송가맹사업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심사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시 행정처분 강화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16개)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9) 기계설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 강화** 강화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도 등급에 따라 10년(특급), 7년(고급), 4년(중급)의 기계설비유지관리 실무경력을 갖춰야만 유지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유지관리자의 전문성과 적용대상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설비검사원의 자격 취득요건 중 하나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공조냉동·용접 등 유지관리자 관련 분야 건설기술인 중 약 83%가 등급별 실무경력 기준을 이미 충족하여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열차이용자에 열차탑승권 제한 및 마스크 착용의무 부과** 강화

-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방역지침(마스크착용, 기침예절준수 등) 미준수 행위금지 추가

심사결과 열차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일반여객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의무와 제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연관 법령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1)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드론 소유자의 공항 내 비행권 제한** 신설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않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않고 드론을 공항이나 비행장에 무단 진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

심사결과 공항보안 향상 및 항공기 이착륙시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의 공항 무단침입을 위반행위로 금지하는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 수도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2)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무인비행장치 사업자 및 국가기관 등의 보험가입 확대** 신설

- 항공기 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요건에 무인비행장치(드론)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재물손괴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건당 최소 2천만 원)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 신설

심사결과 현행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을 따르고 있으나, 타인의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인비행장치(드론)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재물손괴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건당 최소 2천만 원)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보장을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위수탁 계약서 상 항목 명확화 및 제재방안 마련** 신설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수탁 차주에게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외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조문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심사결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차주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당금전을 요구하여 계약 당사자 간 갈등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운송업계의 경영 건전화를 위해 당사자 간 금전지급에 관한 사항의 계약서 기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약 23만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

-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중 통행안전 계획·안전모니터링 계획·비상시 긴급조치 계획·타워크레인 운영 및 임대업체 선정계획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의 세부 내용을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타 건설기계에 비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타워크레인 운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대피로 확보 및 대피훈련 등 사고 대처에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의 내용은 건축허가 및 공사착수 전까지 인허가기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므로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 신설

- 시공사가 이행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 사항을 추가하여 특정 건설기계(높이 10미터 이상의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 등의 작업절차 및 건설기계의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점검토록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정기안전점검의 사전예방조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시공상태의 적정성·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기안전점검 항목과 비교 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시행 후 입찰공고·허가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토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관리비 항목** 강화

-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시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으로 인한 계획수립 부실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현행 안전수립계획 작성비용도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의 내용은 건축허가 및 공사 착수 전까지 인허가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 (대상)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설공사 중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장의 건설공사 및 연면적 5,000㎡ 이상 창고의 건설공사
- (수립기준) 건설공사의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절차)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착공 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심사결과 본 규제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의 내용은 기존에도 건축허가 및 공사착수 전까지 인허가기관·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는 점, 본 규제 시행 후의 입찰공고 건설공사부터 적용토록 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자 자격요건** 신설

- 타워크레인 사용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진단기관에 소속된 자가 아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중 검사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안전점검책임기술인 감독하에 점검하도록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정기점검을 내실화하려는 취지로, 이미 시행 중인 정기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사대행자 중 검사원 요건(학력·경력)이 기존 점검자(건설기술인) 요건과 유사한바, 비용·인력수급 등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본 규제 시행 후의 입찰공고 건설공사부터 적용토록 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강화 3)

심사내용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 등** 강화

- ①임대인이 소송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委의 조정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②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상황에 대해 불응 또는 허위로 보고하는 등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지자체장이 임대사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

심사결과 소송이나 분쟁조정委의 조정에도 불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임대사업 상황을 3회 이상 불응 또는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력 확보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직권말소 사유를 명확히 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과 규제 순응을 제고한 점, 지자체의 직권말소 가능한 경우를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최소침해성도 확보한 점, 「저작권법」, 「난민법」 등에서도 3회 이상 의무위반 또는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재하도록 규정하는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시 임대의무기간 기산점** 강화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점을 '임대개시일'로 함

심사결과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유형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제한*을 변경일부터 적용받게 되는 만큼,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임대주택

변경시 기산고려하여 임대개시일로 하여야, 공공지원에 따른 융자 등 혜택은 장기적으로 누리되 다른 사업자보다 제한은 짧은 기간만 부담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되는 점,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시 받을 혜택과 제한 간의 실익을 비교하여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규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은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점** 강화

-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점을 명확화(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등록일,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심사결과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는 보증 가입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는 이에 맞춰 가입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한 만큼, 법적 체계·안정성이 확보되는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7)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항공기사용사업 범위의 확대** 신설

- 「항공안전법」제48조에 따른 비행훈련 업무를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여 항공기 사용사업 범위에 신규 포함

심사결과 교육생 보호 및 항공안전 관리 제고를 위해「항공안전법」제48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을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비용이 연간 29.87백만 원으로 연간 100억 원 미만인 점, 피규제자는 전문교육기관 중 신규 항공기 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 업체(2개)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인비행장치 사업자 및 국가기관 등의 보험가입 확대** 신설

-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재물손괴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건당 최소 2천만 원)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 신설

심사결과 현행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을 따르고 있으나, 타인의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인비행장치(드론)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재물손괴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건당 최소 2천만 원)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보장을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운전 및 휴식의무 부과 강화

- 2시간 연속 운전 후 15분 휴식하도록 규정하고, 주행 및 휴식 환경(휴게소 위치, 도로 정체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시간까지 연장 운행 후 30분 이상 휴식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과로 및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적정 휴식 시간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 수도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세부적인 소음대책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기준 등 강화

- 공항시설관리자 등의 전기료 지원 대상에 노유자 시설을 추가하고, 지원 금액은 하절기(6~9월) 기간 중 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별로 지원하도록 기준강화

심사결과 소음대책지역 내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료 지원대상에서 노유자 시설(노인회관, 유치원 등)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노유자 시설의 전기료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공항시설관리자 및 항공운송사업자(23개社)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 확대** 강화

-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료 일부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에 노유자 시설을 추가

심사결과 소음대책지역 내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료 지원대상에서 노유자 시설(노인회관, 유치원 등)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노유자 시설의 전기료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공항시설관리자 및 항공운송사업자(23개社)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1)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설 2)

심사내용 **사업시행자 자격** 신설

- 수소도시 건설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수소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수소도시 조성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 참여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스마트도시법」제12조제1항은 국가·지자체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본 규제가 포함된 제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시행자 자격준수사항** 신설

- 수소도시건설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사업

시행자는 수소도시 건설사업 종료 시 실시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수소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계획을 승인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려는 취지로, 「스마트도시법」제14조는 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스마트도시법」제16조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소도시 건설사업 종료 시 실시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소도시건설 실시계획의 내용은 사업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이행 여부 점검은 최소한의 관리·감독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한정면허 발급 대상 확대 강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대상에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추가 규정

심사결과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사업체계를 국토부가 관리 중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일원화하여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 중인 사업체(54개社)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운임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확대 강화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자를 국토부 운임·요금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추가

심사결과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사업체계를 국토부가 관리 중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일원화하여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 중인 사업체(54개社)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4)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신설 2)

심사내용 **산업단지 지정계획 유예 연장의 예외** 신설

- 지정권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는 다음 연도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1회에 한하여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되, 사업시행자 변경, 주요유치업종 변경 등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지정계획 재수립 절차를 거치도록 함

심사결과 재수립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외사유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본 규제는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절차 재수립에 따른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므로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준공산단 지가상승액 산정방법** 신설

-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지가산정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은 개발계획 변경고시 또는 실시계획 승인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지가 산정 기준 부재를 해소하여 사업시행자의 혼란 및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산업집적법」제43조의2제1항은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 산정에 필요한 지가산정 기준을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모호성을 제거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요건 강화** 신설

- 기존 모든 건설업에 적용되는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외에 토목건축공사업에 추가로 적용되는 새로운 등록기준(실적 등)을 추가

심사결과 본 규제는 향후 폐지될 토건업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토건업 폐지 전까지 차별성·경쟁력을 확보한 업체만 존치되도록 진입장벽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업종별 평균 영위 연수와 업체당 연평균실적을 고려하여 연평균 실적 기준은 필요최소 기준으로 판단되는 점, 영업정지·등록말소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받는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신설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 20)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제조업소 등을 추가하여,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건축 금지

  ※ 적용시기는 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및 연접 시군은 동 시행령안 공포 후 3년 후, 3년 외 지역 중 공장 밀집도·증가율 모두 상위 50% 이내는 5년 후, 그 외 지역은 7년 후로 차등 적용

심사결과 본 규제는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도시기본계획이 지정한 구역 내 모든 필지를 용도지역이나 지구로 구분하여 해당필지의 허용가능용도, 밀도, 건물의 규모 등을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기업 유치가 필요한 지자체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장입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본 규제 도입에도 기업들의 공장입지 확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7)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가중 및 감경'의 정도와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부기준을 강화

심사결과 행정처분 집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73개社)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강화 2)

심사내용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 신설** 신설

- 정비인력 산출 시 고려할 사항으로 계획·비계획정비 소요인력, 위탁정비 수행여부, 정비사 교육훈련 소요량, 휴직·공상 발생대비 예비인력 등 8개 요소 신설

심사결과 적정 정비인력 확보는 항공안전을 위한 기본적 원칙이나, 항공사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적정인력 판단기준 부재 등으로 항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10개社)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기 운영자 등에 대한 지형지물 데이터 관리의무 부과** 신설

- 지상접근경고장치를 항공기에 장착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지상 지형지물 정보 현행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의무 신설

심사결과 지상접근경고장치에서 사용되는 지형지물 데이터가 최신 자료가 아닐 경우 장애물과 충돌 사고 등이 발생될 수 있어 항공기 안전운항 및 비행기 사고예방을 위해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70개社)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의 준수사항** 신설

- 공중에서 물건 낙하 등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안전확보를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모별 운영규칙을 명확히하고, 무인자유기구 운영절차를 위반하여 조종하는 경우 해당 조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심사결과 현행 항공안전법령에는 무인자유기구에 부착된 물건이 낙하하는 등 국민피해 발생시 처분 근거가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므로 국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시 경력제한요건 강화** 강화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은 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감독하에 수행하도록 기준 강화

심사결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조약 체결국으로서 국제표준 준수와 관제사를 양성함에 있어 인증된 교관이 교육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항공안전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필수적이므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항공교통관제과정 교육생(매년 90명)으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기의 국내운항 시 운항규정 포함 사항 확대** 강화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될 사항”에 운항 적합성 평가를 국외공항을 운항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국내공항 운항 시에도 운항 적합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공항별 구조 및 소방등급과 운항적합성 평가는 비상상황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인 점을 감안할 때, 취항공항의 국내·외 여부에 관계없이 준수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국내 항공운송사업자(11개社)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비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적정 예비엔진 수량판단 기준 추가** 신설

- 항공사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비엔진 확보수량 판단기준 신설

심사결과 비행 중 엔진고장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 고장이므로 항공기 엔진의 안정적 정비품질 유지를 통해 엔진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항공운송사업자(11개社)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9)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외국 자격증명 전환절차 강화** 강화

- 기존 응시생 편의를 위해 외국 임시자격증명서로도 국내자격을 전환 발급해 주던 것을 임시자격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하되 정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만 국내 자격증명을 교부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무자격 조종사의 항공기 운항은 비행기 추락사고 등 대형사고 유발 위험이 있으므로 외국 조종사 자격증에 대한 자격증명 진위여부 확인절차 강화를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고,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외국 자격증명 전환 신청자(연간 약 700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0)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신설 2)

심사내용 **상주감리 내실화** 신설

- 공사감리자가 추락·화재·붕괴위험이 있는 공정의 시공 전에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허가제 도입. 다만,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제출(시공자)로 감리자 확인 대체
- 공사감리자에게 작업허가제 준수여부 확인과 함께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 금지 여부를 확인·검토토록 의무 부여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추락·화재·붕괴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공공공사의 경우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소작업 등 위험공종에 대한 작업 허가제를 이미 적용 중인 점,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기준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상주감리 내실화** 신설

- 비상주감리의 현장방문 시기(6가지)를 명시하고, 지하굴착 및 옹벽 등 위험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축사보를 배치토록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현장방문 시기는 서울시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공사에 적용하는 「건축공사감리 계약조건」제7조제3항과 유사한 점, 지하굴착 공사 등에 대한 건축사보 배치의무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6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관리기준** 신설

- 국토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실태점검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2개월의 제재 부과

심사결과 측량기기를 통해 얻은 측량성과는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국민의 안전·재산권에 직결되는 만큼, 측량성과의 품질 확보 및 부실측량 방지를 위해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건설기술인이 국토부 장관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는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2)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료 감면 한시제외** 강화

- 과적·적재불량 적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한시 제외(연 2회 위반 시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

심사결과 사업용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행위는 도로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경찰청·도로관리청의 법규 위반사항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3)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항공기 탑승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확인의무 부과** 신설

- 항공기 이용고객이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수속을 희망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의 생체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승객의 고유식별정보 제공 및 수집처리, 생체정보 대조 등 본인일치 여부 확인의무 부과

심사결과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보안검색은 항공기 납치·폭파 등 비행기를 이용한 각종 테러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탑승자 신원 확인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탑승자 및 일반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항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운송사업자에 생체정보의 보호 및 파기의무 부과** 신설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생체정보의 관리계획 수립, 암호화기술을 적용한 저장·전송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한 시설을 마련토록 하고, 생체정보 활용 후 파기의무 부과

심사결과 『항공보안법』 개정('20.6.9)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탑승객의 생체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탑승객의 생체정보의 불법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 이용주체인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생체정보의 보호 및 파기의무 부과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도입으로 예상되는 규제비용이 연간 169.31백만 원으로 연간 100억 원 미만인 점, 피규제자는 공항시설관리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23개社)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 (신설 1)

심사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칙** 신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 등에게 보고토록 의무부여,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등은 부실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후 부실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위험공정 작업 전에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허가제 도입. 다만,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정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제출(시공자)로 확인 대체

심사결과 본 규제는 건설현장 사고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추락사고 위험 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제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부 내부지침)에 따라 이미 적용 중인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로자 위험방지 높이 기준(2m)을 작업허가제 대상 공정의 높이 기준으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비금속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및 검사항목·기준** 강화

-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에 '비금속관로탐지기' 포함하고, △검사주기(3년) △검사항목(케이블, 송수신장치 등 이상유무) △성능기준(정밀도) 등 금속관로탐지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심사결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하시설물 측량을 위해 비금속관로탐지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성능검사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입법예고 기간('20.4.13~5.25) 동안 국토정보지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성능검사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일을 유예(6개월 → 18개월)한 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경우 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하는 기기의 검사주기를 1~2년으로 정하고 있어, 3년을 주기로 한 본 규제는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한 점, 기존 성능검사 대상인 금속관로탐지기와 성능검사 기준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6) 공동주택관리법 (강화 1)

심사내용 **부정행위 금지 강화(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강화

-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可

심사결과 주택관리업 등록증과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이를 취득한 업체 또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명의를 대여해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이며 청렴성 확보 차원에서 대여·알선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말산업 육성법」은

국가자격증인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대상 및 기준 신설** 신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대상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 규정하고, 입고·보관·분류 등 물류 과정별 성능 및 시설의 구조적 성능, 창고관리 시스템 등의 총괄 평가를 위한 인증기준 신설

심사결과 낙후된 물류창고 시설로 인한 물류센터 근로자 및 택배기사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물류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창고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중인 사업자(7,266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의무 부과** 신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을 위한 자체평가서, 물류센터 설계도면, 각 분야 설계설명서 등 각종 부가 서류 제출 의무 신설

심사결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증신청기업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문서화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예상되는 규제비용이 연간 326.84백만 원으로 연간 100억 원 미만인 점, 피규제자는 창고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중인 사업자(7,266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스마트물류센터 재심사 비용납부 의무 부과** 신설

-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이 재심사 요청시 재심사 비용 추가 납부 의무 신설

심사결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인증심사 탈락 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적으로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예상되는 규제비용이 연간 1.63백만 원으로 연간 100억 원 미만인 점, 피규제자는 창고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중인 사업자(7,266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실태조사 의무 부과** 신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증 물류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

심사결과 IT·IoT가 결합된 스마트물류센터는 기술 발전에 따른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지속적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므로 주기적 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예상되는 규제비용이 연간 272.52백만 원으로 연간 100억 원 미만인 점, 피규제자는 창고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중인 사업자(7,266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8)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매매업자의 성능점검내용 고지위반 행정처분 강화** 강화

- 매매업자가 중고차 성능상태를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 할 경우 행정처분 강화

  * (현행) 1차 : 사업정지 30일, 2차 : 사업정지 90일, 3차 : 등록취소
    (변경) 1차 : 사업정지 30일, 2차 : 등록취소

심사결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793건 중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이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미합의된 377건(47.5%)의 대부분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관련 사항이므로 중고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능점검 내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중고차 매매업체(5,964개社)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매매계약 해지시 매매업자의 매매금액 미반환 처벌을 위한 행정처분 신설** 신설

-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의 해지 이후 매매금액 반환 의무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1차 : 사업정지 30일, 2차 : 사업정지 90일, 3차 : 등록취소)

심사결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793건 중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이 17건(2.1%)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중고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해지에 따른 차량반납시 매매금액 미반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중고차 매매업체(5,964개社)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9)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직무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 신설** 신설

- 직무교육 담당자 자격기준을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교육훈련기관 교수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철도운영자 등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직무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으로 규정

심사결과 철도교통 특성상 업무 분야별 직무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업무능력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여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예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 직무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직무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교육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는 직무교육 담당자 자격기준을 적용받는 철도운영기관(23개社)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강화** 강화

-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사유 강화(관련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 →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심사결과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운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만큼, 신뢰성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시·도별로 자체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한 全 시·도(17개)의 관리규약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동 시행령 개정시 통일된 조치가 가능한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신설 2)

심사내용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자격요건 구비 의무 부과** 신설

- 교통안전교육 대상을 택시운전자격을 보유(개인택시 면허 양수 필수요건)하고, 교육수료 후 3년 이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승계·양수등을 하려는 자로 규정

심사결과 실운전 경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운전자의 개인 택시운송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업 양수·승계 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교통안전교육 대상으로 규정하는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규제자 수도 매년 약 6,000명으로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 대상자에 교통안전교육 방법 및 이수기준 충족의무 부과** 신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의 이수기준으로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으로 규정

심사결과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 5~10년 이상 조건만 충족해도 면허 양수가 가능하여 이로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가 우려되므로, 안전운전 능력 및 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강화 1)

심사내용 **소량생산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기술검토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 신설

-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작자 스스로 확인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소량생산차 안전도 확인방법은 현행의 안전기준과 많은 부분에서 상이하므로 기술검토 신청 시 성능시험대행자의 신속한 검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신설

- 소량생산자동차의 기준대수 변경(100대→ 3년간 300대) 및 대상 명확화

심사결과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도의 취지가 수제자동차, 항공기겸용차 등 현행 자기인증제도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차종 생산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수량기준 뿐만아니라, 적용대상 차종까지 명확히 규정하여 소량생산자동차 시장의 다양성을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소량생산차 인정여부 및 운행필요 조건 검토 의무부과** 신설

-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소량생산자동차의 인정여부 및 운행에 필요한 조건 등의 검토의무 부과

심사결과 소량생산자동차 인정여부 및 필요조건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안전성 높은 소량생산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성 높은 성능시험대행자의 검토를 거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량생산차 인정시 조건 부과** 신설

-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한 인정 확인서 발급시 운행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는 단서 조문 신설

심사결과 소량생산자동차 관련 규제완화로 생산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에는 기존 안전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량 안전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의 세부기준 근거 마련** 강화

- 현재 이륜자동차의 튜닝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자동차와 같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이륜자동차 튜닝을 위한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심사결과 튜닝 주체인 이륜자동차 소유자(일반인)는 이륜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올바른 튜닝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내압용기 검사책임자 및 검사원 자격제한 요건 신설** 신설

-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책임자와 검사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화하여 검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강화

심사결과 현재 내압용기 검사 자격에 검사책임자와 검사원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고 직무도

내압용기 재검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검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검사원의 전문성과 검사품질을 보장하고 양질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내압용기 재검사 시 인력구성 제한 신설

-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시 검사책임자와 검사원을 1개조로 구성하도록 하여 검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강화

심사결과 1인 검사로 야기될 수 있는 실수 및 검사오류, 사고 등을 예방하고 양질의 검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결함 추정 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 결함 추정 요건을 반복적인 화재 발생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

심사결과 결함 추정 요건을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 화재 또는 인명피해 발생 등 차량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여 설계·제조 등 자동차제작 공정의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하고, 상당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차량결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5)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강화 3)

심사내용 **마감재료 난연성능 평가기준 강화** 강화

- 균열, 용융 등 시험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복합자재에 사용할 수 있는 강판의 종류를 확대하면서, 난연 등급에만 규정되어 있는 복합자재용 강판의 구체적인 기준을 불연·준불연에도 적용

심사결과 본 규제는 마감재료 제조업체와 시험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고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점, KS등 국가표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마감재료 성능시험체 및 시험횟수 기준 강화** 강화

- 시험체 규격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 앞면·뒷면·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토록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정확한 방화성능을 갖춘 건축물 마감재료가 용도에 맞게 건축물 시공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시험체 규격 등은 국제표준화기구 및 한국산업표준 규정(KS F ISO 5660-1 등)을 준용한 점, 시험횟수 추가 비용 및 제조업체의 생산비용 증분이 예상되나 재산피해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제로 판단됨**

- 또한, 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규제 이외에 상주감리의 감독강화 등 현장관리 강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으로 한정되며, 일반적으로 현장당 1명인 상주감리가 여러 공정이 단기간 동시 진행되는 마감재료의 모든 시공에 대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의 적합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험성적서 표기사항 의무화** 강화

- 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에 시험 대상품·시험규격·시험결과 등을 명시토록 하고,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장치 등을 하도록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성능확인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조달품질원시험 분석 규칙」등에 규정된 시험성적서 서식에서 시험대상품·시험규격·시험 결과 등 표기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시험성적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시험기관이 직접 기재토록 하는 것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강화 1)

심사내용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기준 강화** 강화

- 제품의 성능시험(시험기관)과 제조·품질관리능력 평가를 모두 합격한 자재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토록 기준 강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마감재료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 확인·관리를 동반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마감재료에도 도입하려는 취지로, 마감재료 제조업체는 성능시험에 합격한 재료를 공급할 의무가 있고, 품질인정제도 도입과 관계없이 재료의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 점, 비용 검증 결과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통한 재산·인명 피해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7) 건축법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성능인정 적용 범위** 신설

- 「건축법」제68조제4항에 따라 인정받은 새로운 건축설비 기술·제품을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현행 기술기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신기술·신제품의 현장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적용 범위를 신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분야로 규정하여 건축 관련 기술개발 활성화에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되는 점, 건축설비 제조업체 등이 개발한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결합건축 허용 기준** 신설

-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거리 기준을 서로 간 100m(2개 대지 결합)에서 500m(3개 대지 이상 결합)까지 확대하면서, 결합건축 적용대상을 ①빈집·빈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광장·주차장·놀이터 등을 설치하거나, ②마을회관·어린이집·공동작업장 등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무분별한 결합건축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상시설 등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결합건축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 등을 방지하는 점, ,건축주 등은 본 규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확대된 결합건축을 통해 대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별건축구역 제안 동의 요건** 신설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이외의 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서 민간법인·학교법인 등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점, 동의요건을 충족한 자는 기존에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에게 허용되지 않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8)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강화** 강화

-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심사결과 범정부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본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매년 약 7백만 원으로 100억 원 미만인 점, 피규제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설치·관리자(131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9)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강화** 강화

-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고, 세부사항은 지자체에서 별도 정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범정부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본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매년 약 1.2억 원으로 100억 원 미만인 점, 피규제자는 노외주차장 설치·관리자(11.517명)로 그 수가 연간 100만명 미만이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 수송용 차량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금지 강화

- '19년 공급기준 고시 이후 최대적재량 9톤 미만의 자동차수송용 차량의 20대 허가가 완료되고, '20년은 同 차량에 대한 신규 허가가 필요없음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신규허가를 금지

심사결과 전문연구기관의 수급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내용으로 화물운송시장 내 차량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 및 차주 수익감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1)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우수 양성기관의 조건 신설

- 한옥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격·교수요원 요건·교육과정·시설기준 등을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는 양성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로, 유사입법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본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성기관의 인력·시설요건 및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교수요원 요건·교육과정 기준 등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강화 2)

심사내용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강화

-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內 주민공동시설의 범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함으로써, 돌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

심사결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수업 감소 등으로 돌봄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주택단지 내 돌봄센터 확충을 통해 아동·부모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만큼, 주민공동시설 중 하나로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비례적 타당성 확보한 점,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변화가 없는 만큼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각종 사회적 편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택단지 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강화

-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주차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권한 확대

심사결과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전국적인 주차난의 심화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별로 그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주차장 설치기준을 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본 규제는 주택단지 내 주차장 설치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만 확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규제도입에 따른 비용(연간 97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피규제자인 건설사업자들이 분양가에 반영하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점, 전국적으로 차량 보유증가에 따른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본 규제 도입으로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 제고, 입주자간 분쟁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3)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강화 1)

심사내용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안전영향평가 필수항목** 강화

-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항목 중 지반 및 지질 현황의 현장조사 결과에 개정안 별표 12에 규정된 현장조사 항목 및 수량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

[별표 12] (신 설)

항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최소수량
현장 시험	시추조사	○	○	지하굴착공사 : 3공 터널공사 : 100m 당 1공
	표준관입시험	○	○	시추공별 풍화암까지 1m간격
	공내지하수위측정	○	○	모든 시추공
	현장투수시험	○	○	지층별 1회
	현장수압시험	○	○	지층별 1회
	공내전단시험	○	○	지층별 1회
	공내재하시험	○	○	지층별 1회
	양수시험	○	△	사업별 1회
	지하수유향유속시험	○	△	사업별 1회
	순간충격시험	○	△	사업별 1회
물리 탐사	GPR(지표투과레이더탐사)	○ (택 1)	△	대상사업 및 지반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
	전기비저항탐사		△	
	탄성파탐사		△	

○: 필수항목, △: 선택항목

심사결과 본 규제는 지반 굴착공사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취지로, 규제 수준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된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과 유사한 점, 기존 지침에서 지반 및 지질현황 작성 시 시추조사·투수시험·지하물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4)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일부개정안 (신설1, 강화 1)

심사내용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 및 홍보의무 부과** 신설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소지 감소를 위한 안내 및 홍보의무 부과

심사결과 부지불식간에 반입금지 물품을 지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비행기 이용고객의 불편을 예방하고, 반입금지 물품의 공항 내 반입을 감소시켜 항공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해외사례와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확대** 강화

-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일부 품목을 확대 규정

심사결과 공항시설 및 항공기 등을 이용한 테러 등 각종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확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반영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별도의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신설

- 11층 이상의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구조공간·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헬리포트·구조공간·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화재사고에 대비한 옥상 내 헬리포트·대피공간 등의 피난 공간 활용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자동개폐장치는 건축물 관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옥상의 피난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공포후 3개월 후에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6) 건축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신설

- 옥상광장 의무설치 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중 옥상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은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

심사결과 본 규제는 화재사고에 대비한 옥상 내 헬리포트·대피공간 등의 피난 공간 활용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자동개폐장치는 건축물 관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옥상의 피난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공포후 3개월 후에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역류방지댐퍼 성능기준 마련 강화

- 자동역류방지 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동역류방지 댐퍼 성능 확보를 통해 세대 간 연기나 냄새의 역류를 방지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친 점, 단체표준 적합 여부의 시험을 위해 제품당 1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댐퍼 성능향상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 절감 및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확보 등의 편익이 발생하는 점,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한국설비기술협회(KARSE)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는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해양수산부

집필자 양다희 사무관
Tel. 044-200-2441, ydh4423@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해운법 시행령 등 총 6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1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1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4)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31)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3)
(6)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7)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8) 전기추진 선박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0.03.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9)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0)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15)	원안의결 7	신설 1, 강화 6 (비중요7)
(11)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2)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4)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5)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9)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4)
(16) 2019년7월~2020년 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9)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20)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07.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1)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07.0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2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0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23)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07.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4)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0.07.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5)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07.1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26)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08.1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2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14)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5)
(28) 해기사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0.08.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9)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0) 항만시설·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08.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2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32)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2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34)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5)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6)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7)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8)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9) (국립수산과학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1)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6)
(4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5)
(44)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5)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6)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47)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8)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9)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51)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5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4)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55)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6) 선박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57)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5)
(60)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1)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2)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63)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6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5)
(67)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8)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116	신설 79, 강화 37 (비중요 116)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원양어업자 등의 조업 제한** 신설

-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등) 3년의 범위 내에서 어획량, 조업일수, 조업구역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심사결과 원양어업자가 자원보존 관리조치,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일정한 경우 조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규제자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그 구체적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조업 제한의 상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조업 제한 시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해운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부정수급 유류공급업체 제재기준 강화** 강화

- 석유판매업자 등이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해운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기간 등 제재기준 강화

심사결과 유류세 보조금은 선박에서 실제 급유 현장 검증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기간 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점과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신설

-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3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점검하며, 연 1회에 한해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혜택이 취지와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인증기업이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기점검 주기의 경우, 유사법률인 「물류정책기본법」상 우수물류기업인증제도도 3년을 주기로 정기점검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 점과 수시점검의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점 및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강화

-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경력, 전문교육 이수와 관련된 요건을 추가함

심사결과 낚시어선 사고 원인 중 정비 불량과 운항 부주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낚시어선 운항 안전을 위해 관련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기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요건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둔 점과 시행 후 1년 이내 신고 시 선장의 경력 요건은 1/2 수준으로 완화되어 적용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강화

-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구명등을 갖추도록 함

심사결과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구명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어 규제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동 규정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점과 야간영업 낚시어선 1척당 평균 규제비용이 271,950원으로 추산되어(내구연한 4년) 부담이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해운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운임 및 요금 공표 기간 변경** 강화

- 「해운법」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운임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 기간을 기존 운임 발효 예정일 5일 전에서 운임 및 요금 적용 예정일 15일 전으로 변경

  *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 국내 항과 외국 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

심사결과 해상화물 운송계약은 주로 한-중, 한-일 등 한국을 중심으로 근해항로에서 많이 이뤄지며 화물 운송은 약 2주일 전 계약이 체결되어. 화주들이 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선사별 운임 및 요금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운임 적용 5일 전은 충분하지 않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었고. 대형국제해운선사에서 주로 거래하는 중국, 미국 등에서도 운임공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중·한미 항만 간 운임에 대해 발효 30일 전 공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 점과 「해운법」에 공정한 경쟁이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큰 경우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용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신설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며, 유효기간 종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함
- 안전성 검사를 받을 때 선체, 기관, 설비 등에 대해 일정한 준비를 하도록 함

심사결과 법률 개정에 따라 매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검사 시기, 유효기간,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어 안전성 검사를 매년 받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1년을 정한 것은 검사 시기 설정이 과도하지 않고, 검사 준비사항도 검사를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반영하여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기준 등** 신설

- 야간영업을 목적으로 출항하는 낚시어선은 출항 신고 시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경우 안전요원을 승선시켜야 함(다만,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
-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요건을 선장 이외의 자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낚시어선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함

심사결과 법률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이 승선해야 하며, 해당 안전요원의 승선기준 및 자격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어 규제한 것으로 부칙에서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에 대해 1년의 경과규정을 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낚시터로 안내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선상낚시에 비해 승선 시간이 짧고 어선에서 낚시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덜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낚시어선업자의 신고, 안전운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낚시어선업 신고 없이 낚시어선업을 지속하는 경우 영업 폐쇄
- 낚시어선업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신설
- 낚시어선업의 영업 구역을 위반하거나 낚시어선업자 등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경우 행정처분 강화

심사결과 낚시어선 사고 원인 중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이와 관련된 사항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가 있는 점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 법률에서 영업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의의무 태만, 음주 및 약물복용의 경우 운항 부주의 및 안전사고와 직결되므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유사법과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수산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대게류, 붉은 대게류 통발사용금지 신설

- 죽변항에서 감포항 인근 해역에서 근해·연안 통발 어업을 할 때 대게류·붉은 대게류 통발 사용 금지

심사결과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연안·근해통발어업에 대해 죽변항에서 감포항 인근 해역에서의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통발어업인이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을 사용하며 대게가 아닌 다른 어획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단속·처벌을 회피함에 따라 해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 규제 신설 필요성이 인정됨. 대게류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해당 어종 포획에 사용되는 어구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미 죽변항에서 감포항 인근 해역에서 대게 어획이 금지된 점, 해당 어구 사용 금지에 따른 추가적 비용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 기간 확대 강화

-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재허가 제한 기간을 1년 → 2년으로 강화
-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거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허가 제한 기간을 10개월 → 2년으로 강화
- 그 밖에 수산업법,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재허가 제한 기간을 10개월 → 1년 6개월로 강화

심사결과 어업 질서 유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어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음. 허가취소 전까지 경고·영업정지 처분을 거치고, 2년 이내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다음 단계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중대하고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인 점,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도 동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전기추진 선박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전기추진 선박기준** 신설

- 전기 추진 선박에 적용되는 시설기준(주요설비 설치기준, 안전장치 기준, 정기검사 항목 등)을 신설함

심사결과 전기추진선박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국산업표준(KS)와 선급기준(KR, DNV-GL) 등을 준용하여 마련하였던 잠정기준을 전문가집단의 사전 의견조회를 통한 보완을 거쳐 제정하는 점, 별도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반영하여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표시장치 형식승인 시험기준** 신설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표시장치의 형식승인 시험기준(환경시험, 접속시험, 성능시험 등)을 신설함

심사결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1.1.30. 이후 건조 또는 수입되는 선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선박용 물건은 형식승인 시험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정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성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인정됨 한국형 e-Nav 구축사업 기간 중 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 실증을 통해 개발한 점, 기존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의 자문과 항해통신업계 대상 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신설 1, 강화 6)

심사내용 **어선 안전관리(위치보고) 관련 행정처분 강화** 강화

- 출어한 연근해 어선이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60일 정지, (2차) 90일 정지, (3차) 어업 등 면허·허가 취소로 강화
- 거짓으로 위치보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90일 정지, (2차) 어업 등 면허·허가 취소로 강화

심사결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선이 피랍·나포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적시 대응이 어렵고 어선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 강화하고 불법 조업 어선이 위치를 숨기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임의 조작하는 경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인정됨. 출어 중인 어선이 통신기가 고장 나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 알려 다른 어선이 위치보고를 대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준수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점, 영향평가에서 제출된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혼획의 관리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신설

-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해진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로 정함
-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 중 혼획의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로 정함
- 혼획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로 정함
- 혼획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교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로 정함

심사결과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혼획의 관리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부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필요성이 인정됨. 예외적으로 혼획이 허용된 업종에 대하여 허용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어업의 특성상 혼획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만든 기준인 점, 본 규칙의 다른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업구역 및 조업 금지구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강화

- 근해어업의 조업 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60일 정지, (2차) 90일 정지, (3차) 어업 등 면허·허가 취소로 강화
- 어업의 종류별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60일 정지, (2차) 90일 정지, (3차) 어업 등 면허·허가 취소로 강화

심사결과 현행 제재 처분 하에서도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을 행하는 어선들로 인해 수산자원 남획 및 조업 구역 분쟁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현행 규정은 불법 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로 인한 비용보다 높아 제재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입법예고 이후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업금지구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일부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구 사용량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강화

- 어업별 종류별 어구 사용량을 위반한 경우 정지 기간을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로 강화
- 어구 사용량이 기준의 2배를 초과한 경우 30일, 3배를 초과한 경우 60일을 처분기준에 각각 더하여 처분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어구 과다사용으로 인한 수산 자원남획, 선박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해당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당초 개정안에서 3차 위반 시 어업 등 면허·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3차 위반 시 90일 정지로 처분을 일부 완화한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 보기 어려워 적정성이 인정되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TAC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 강화 및 신설** 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자원 조사·평가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업 등 정지 기간을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로 강화
-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한 자에 대한 어업 등 정지 기간을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로 신설

심사결과 TAC 할당량 배분·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어획량 등 정확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여 어획물 등의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TAC 참여 업종에서 할당량을 배분받지 않고 포획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TAC 운영을 위해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포획금지 어종 추가 및 행정처분 기간 강화** 강화

- 대게의 암컷,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거나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를 포획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30일 정지, (2차) 60일 정지, (3차) 어업 등 면허·허가 취소로 강화
-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30일 정지, (2차) 60일 정지, (3차) 어업 등 면허·허가 취소로 강화

심사결과 산란기 대게 등 암컷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산란기 대게 등 암컷 포획을 방지함에 있어 효과가 낮으며, 민꽃게 암컷 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고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금지 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어획량 추세를 고려할 때 해당 수산자원의 보호 적정성이 인정되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조조업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강화

- 근해어업·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척수 등을 위반한 경우 (1차) 30일 정지, (2차) 해기사 면허 취소
- 대형트롤어업에 한해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한 경우 (1차) 60일 정지, (2차) 90일 정지, (3차) 어업 등 면허·허가 취소
-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타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60일 정지, (2차) 어업 등 면허·허가 취소로 강화

심사결과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오징어 자원의 고갈위험이 있고, 연안어업인의 대책 요구가 지속되는 바 불법 공조조업 및 128도 이동조업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형트롤어업 128도 이동조업의 경우 이와 유사한 조업 구역 위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초 개정안에서 일부 기준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신규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시간** 신설

- 신규 낚시어선업자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는 낚시어선업자는 영업개시 전 21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심사결과 신규 낚시어선업자와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의 경우 경험 부족·부주의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강화된 교육 필요가 있는 규제로 해당 교육을 받는 경우 매년 받아야 하는 기존 교육 면제 규정이 있어 이중으로 교육을 받는 부담을 완화한 점, 교육 일정은 3일이지만 사유가 있어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 시작 후 6개월 이내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신설

- 강도다리 연쇄구균증 불활화백신, 넙치 스쿠티카증·활주세균증불활화복합백신에 대한 검정기준 신설

심사결과 해당 의약품은 제조 조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숙주의 안전성,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정이 필요하여 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검정 수수료는 강도다리 연쇄구균증 불활화백신은 175,000원, 넙치 스쿠티카증·활주세균증 불활화복합백신은 401,000원으로 피규제비용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신설

- 신기술 인증 표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받은 제품이거나, 그 포장·용기 및 홍보물이어야 함
-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 기존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에 신기술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 '확인'을 받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규제로 신기술 인증 표시 사용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타법에서도 유사하게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점,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위한 제출서류도 유사하게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항만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전용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요건 및 임대료 신고의무 신설

- 항만개발사업에서 비관리청 전용목적으로 조성한 토지·항만시설의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
- 비관리청이 전용목적의 토지·항만시설에 대한 임대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료 신고의무를 신설함

심사결과 비관리청 전용목적 토지·항만시설을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임대 후 개발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이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항만이용자 등의 편익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어 임대를 할 경우에도 과도한 임대료를 설정하는 경우 항만이용자에게 임대료 상승에 따른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임대료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영향평가에서도 제출된 의견이 없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항만법 시행령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 서류 및 단계별 승인 신청 시기 강화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토지의 매도청구 제도는 토지 조성 후 지가상승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실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매도청구를 허용하기 위해 사업실시계획을 제출할 때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매도청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항만법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관련 규정 등 타법 사례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인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가비귀속 항만시설 중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강화

-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 대상에서 승인대상으로 변경함

심사결과 사업비가 큰 사업의 경우 개발 도중 자금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어 항만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금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제조시설 공사와 같이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통상 자금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므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신설

-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로써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국가에 기부채납하지 않고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정함

심사결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인 경우, 국가가 관리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비관리청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관리청이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투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를 인정하고 개발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사유를 정한 것과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기한 및 절차** 신설

-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함

심사결과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지는 유휴 상태가 되며, 다른 기업등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처분 기한을 규정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 법령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입주계약해지자가 자유무역지역 내 소유하는 토지, 공장, 건축물 등을 처분하여야 하는 기간을 6개월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이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2020년7월~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신설 1)

심사내용 **총허용어획량 계획에 전남 잠수기 어업 추가** 신설

- '20.7.1.부터 '21.6.30.까지 총허용어획량계획에 전남 잠수기어업에 의한 키조개 어획량 802톤을 추가함

심사결과 키조개 자원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평가 결과 자원상태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감소 추세로 유지되고 있어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할당된 어획량은 국립수산과학원의 '20/21년 어기 예상적정어획량을 반영한 점, 피규제자 측인 전남 잠수기 어업인의 총허용어획량 참여 요청에 따라 마련한 규정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선수금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경고에서 (1차) 시정명령, (2차) 공사중지로 강화

심사결과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선수금을 지급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승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 시 제재처분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고,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는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책임자 자격요건** 신설

-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은 기술자격 요건 및 교육·실무경력 요건을 만족하는 책임기술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일반 항만의 경우「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서 안전점검 책임자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마리나항만 시설물의 안전점검 책임자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하여 책임 있는 안전점검이 이뤄지게 할 필요가 있고,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의 안전점검 책임자 요건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며, 타 규제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신설

- 친환경농어업 관련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신설

심사결과 법 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원에서 담당하던 교육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도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고,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인력, 조직, 규정, 장비 등 교육훈련기관이 갖춰야할 요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 신설

-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심사결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며 부적합한 기관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사후관리 규정이 필요하였고.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타법 사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시정요구 기준** 신설

- 경영관리대상조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합의 기준 신설

심사결과 현행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은 수협중앙회에서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법 개정으로 경영관리대상조합 중 부실조합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에 한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 조합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신설

- 육상 등 내수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규모, 시설 및 장비)을 신설함

심사결과 육상 등 내수 양식업을 허가어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식수산물, 시설기준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신고제 하에서 어업인들이 허가어업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며 허가제로 전환하며, 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대부분의 양식장이 만족시키는 수준의 기준이므로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양식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신설

- 육상등 내수양식업 중 왕우렁이 양식업의 제한 및 조건으로 왕우렁이 생태계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폭우·태풍 등으로 왕우렁이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중 유출된 왕우렁이와 알을 수거·제거할 것을 규정함

심사결과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있는 왕우렁이를 친환경농법에 활용하고 있어, 왕우렁이 또는 알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한 및 조건을 붙일 필요성이 인정됨.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왕우렁이 유출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침 등을 통해 차단망·포집망 등을 이미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은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면허의 심사평가 항목** 신설

- 면허 기간 내 어장휴식 이행 여부, 어장청소 이행 여부를 면허의 심사·평가 항목으로 추가함

심사결과 양식어장환경을 평가하여 어장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법령에 명시된 어장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양식업자에 대한 면허를 제한하여 양식업 질서를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심사·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항목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양식면허 보유자 또는 취득희망자 대상으로 환경평가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아 적정한 것으로 보았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대상** 신설

- 생사료 사용량이 많은 양식품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장,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역 또는 수역에 있는 양식장에 대해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할 수 있도록 정함

심사결과 어린 물고기, 부수 어획물 등으로 만든 생사료를 수산물 양식에 사용함에 따라 미성어 남획으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도록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배합사료로 사육하는 어업경영체의 경우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사업'에 따라 사료비용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점과 생육환경 상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으로 의무 면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기상특보시 어선의 위치보고 추가** 신설

- 풍랑특보 시 매 12시간 간격, 태풍특보 시 매4시간 간격으로 조업 또는 항행중인 어선은 전 해역에서 위치를 통지(보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기상특보 시 어선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상특보 시 어선의 위치보고 규정을 마련하여 사고 시 신속 대응 가능성을 높이는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현재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위치보고 대상이 되는 어선인 점, 사고발생률이 높은 풍랑특보, 태풍특보에 대해서 의무를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잠정기준 적용 신설

- 해수부 장관이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선박시설잠정기준을 마련한 경우 이를 선박검사에 적용할 수 있으며, 선박검사 대행기관의 경우 잠정기준을 접수한 경우 이에 따라 선박검사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 신기술이 적용된 선박·선박용 물건에 대한 안전·검사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이 신설될 때까지 상용화 및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타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시 출항 제한 강화 강화

- 동절기(11.1.부터 다음 해 3.31.까지) 풍랑주의보 발효시 30톤 미만 어선의 출항 금지

심사결과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11.1.~다음해 3.31.) 풍랑주의보 발효 시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인정되며, 해당 규정은 어선의 복원성, 인명피해 발생률을 감안하여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출항제한 규정을 강화하면서도 원거리 상시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고 선박 간 6마일 이내를 유지하며 선단조업하는 조건 하에서 출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등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구명조끼 착용 요건 강화 강화

-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함

심사결과 기상특보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사고 시 구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구명조끼를 작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타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어선의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 지정 유효기간** 강화

-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

심사결과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 업(단)체는 일정한 지정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해당 업(단)체의 일반사항을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해당 업(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업(단)체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갱신을 위해서는 업(단)체의 최신 정보를 첨부한 서류만을 제출하면 되는 점,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입선박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 선박 건조일 기준으로 배출기준을 적용하던 규정을 선박 수입일자 및 기관 교체일자를 기준으로 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25.1.1. 이후 도입하는 선박의 디젤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 기준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30.1.1. 이후 도입하는 선박의 디젤기관은 기준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심사결과 '00~'05년 건조, 수입 선박이 기존 기준으로 배출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해당 선박에 대해서도 배출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항만 및 인근 해역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강화된 기준 적용 시기를 늦춰 이해관계자 이견을 해소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양식장 관리 관련 행정처분** 강화

- 양식장 관리 관련 법 위반 시 정지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양식업 면허·허가 취소로 행정처분 기준 변경

심사결과 양식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양식업의 정지는 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에 있어 실효성이 낮아 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1·2차 위반 시 경고 후, 재차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면허·허가를 취소하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산물 유통·판매 관련 행정처분 신설 및 강화** 신설

- 불법 양식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경우,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양식업 면허·허가 취소
-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처리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양식업 면허·허가 취소

심사결과 불법 양식수산물 및 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양식수산물이 유통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처분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상특보 시 출항 등의 제한 위반 관련 행정처분 신설** 신설

- 기상특보 시 출항 제한을 위반한 경우, 어업, 어획물 운반업의 정지기간을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로 정함

심사결과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 전복·침몰사고의 비율이 높아, 어선 사고 방지 및 사고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제한 및 안전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위해 출항 제한 및 안전조치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양식업 허가 및 승계 관련 행정처분** 강화

- 양식업 허가 및 승계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허가 취소로 행정처분 기준 변경

심사결과 양식업 허가 및 승계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양식업 정지기간을 부여했었으나, 양식업의 특성상 해당 처분은 실효성이 낮아 처분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1·2차 위반 시 경고 후, 재차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양식장 등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규정 위반 관련 행정처분** 강화

- 양식장 등 관리를 위한 외국과의 협정, 국제법규 위반 시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면허·허가 취소로 강화
- 행정관청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감독을 방해할 경우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면허·허가 취소로 강화

심사결과 수산업 관련 외국과의 협정 및 국제법규를 위반하거나, 행정관청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는 어업정지 기간을 부여했으나, 해당 처분의 실효성이 낮아 처분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해기사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신설 1)

심사내용 **현장실습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현장실습 모니터링, 상담 및 교육 의무** 신설

- 현장승선실습 시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실습생에게 2주간 적응기간을 부여하고, 해기사 실습생에 대한 부당행위 모니터링 및 실습생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상담, 선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현장승선실습 시 해기사 실습생의 사고 및 해기사 실습생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해기사 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사례에서 실습생 보호를 위한 실습기관의 준수사항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강화 1)

심사내용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일부개정** 강화

- 「해사안전법」제41조를 위반하여 음주운항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감면 조항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심사결과 음주운항을 방지하고,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음주운항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해양사고관련자의 징계처분 효과가 감면 조항이 적용되어 저하되지 않도록 감면 배제 규정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정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항만시설·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신설

- 항만 내 여객선에 반입 및 위탁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정함

심사결과 항만 내 선박에서 보안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법한 폭발물 및 무기류의 반입을 금지하며, 구체적인 위해물품을 정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의 규제로 과도하지 않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강화

- 3개 어종(삼치, 감성돔, 살오징어)의 포획금지 기간 신설·강화
- 9개 어종(감성돔, 대구, 넙치, 문치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 청어, 대문어, 살오징어)의 포획금지 체장, 체중 신설·강화

심사결과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서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포획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설정이 필요.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완화하였으며,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적용 대상 수산자원은 자원감소가 심각한 어종을 중심으로 설정된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설정** 신설

- 여수 연도 근해에서 4.1.부터 8.31.까지, 진도 관매도 근해에서 7.1.부터 9.30.까지 근해안강망 조업 금지

심사결과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지역은 갈치 산란장으로 치어를 주로 어획하고 있음. 근해안강망 어업은 특성상 혼획이 불가피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해당 구역에서 일정 기간 근해안강망 조업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강화 1)

심사내용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 범위 확대** 강화

- 기존 수입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위험물 점검을 수출 컨테이너까지 실시하도록 위험물 점검 대상 확대

심사결과 국내외 항만에서 위험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수출 컨테이너 등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정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미국 등 타국가에서도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의 교육훈련 기준** 강화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심사결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으로 활동하기 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해양오염사고 방지 및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교육 이수 의무는 기존에도 존재했고, 임명·채용 사후에 받던 교육을 임명·채용 사전에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피규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에 부족한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상풍력발전소 설치행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규정 신설** 신설

- 기존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던 5만kw~10만k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역이용협의와 달리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풍력발전소 인근의 어민과 발전사업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선원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신설

-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선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미지급할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연이자의 이자율을 20%로 설정함

심사결과 선원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위 법인 「선원법」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신설하며 지연이자율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지연이자율을 명확히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한 사례로 타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을 20%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 보기 어려워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불선박소유자 명단공개 내용, 기간** 신설

- 임금을 체불한 선박소유자의 성명·나이·상호, 3년간 체불액 등을 명단공개일로부터 3년간 공개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선원에 대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명단공개 내용 및 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시 명단공개 내용, 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과도하다 보기 어려우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강화

- '20.9.30.자로 유통이력 신고 대상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뱀장어를 '20.10.1.부터 '21.7.31.까지 유통이력 신고 대상 물품으로 재지정

심사결과 '20.9.30.자로 유통이력 신고 대상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뱀장어의 경우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빈도가 높아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재지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통이력 신고방법이 간편하고 신고내용도 필수사항에 국한하고 있으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방역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대상 확대 강화

- 살처분 등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전염병으로 5종의 전염병을 추가 지정함

심사결과 동 규정에서 방역대상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가한 5종의 수산생물전염병은 높은 폐사율 등으로 인해 해당 전염병 발생 시 어업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방역조치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정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전염력이 높은 수산생물전염병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에 따라 살처분 비용 및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수산자원관리법 (신설 1)

심사내용 어선검색제 신설

- 항·포구 입항 및 계류 중인 어선에 대해 불법 수산자원 포획·채취 신고가 있는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이 어선에 승선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불법조업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대부분의 어획물이 모이는 항·포구 내 어선에 대한 검사 권한을 부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원양산업발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관세법」등 타법에서도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선박에 출입하여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추가 강화

- 국외로 반출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산자원 목록에 해양수산생명자원 134종 추가 지정

심사결과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이 무분별하게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수산자원 목록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평가 및 등급부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적·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1, 2등급으로 결정된 종을 목록에 추가하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국립수산과학원)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신설 1)

심사내용 함량검사 의무 및 함량기준 신설

- 수산용 동물용 의약외품인 소독제의 함량검사를 의무화하고, 함량기준, 시료 제공 및 보관 사항, 시험약 등의 제조·관리 등과 관련된 기준 신설

심사결과 수산용 동물용 의약외품인 소독제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함량시험 기준 및 시험제품의 관리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해당 규제는 동물용 소독제 함량검사 및 시료 제공·관리사항과 유사한 수준에서 정하여 타법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현재 수산용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체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을 겸하여 유사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추가적인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설정** 신설

- 참문어 포획금지 기간을 5.16.~6.3.으로 신설함

심사결과 참문어의 경우 '11년 어획량 급감 이후 어획량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및 연안 산란장 파괴로 자원량 감소가 예상되어 참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여 산란기 어미 참문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서 참문어의 산란기에 맞춰 금어기 신설 필요 의견이 제시된 점, 낚시객 등의 레저대상 어종으로 남획이 이뤄져 어업인이 포획금지 규정 신설 요구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신설 1)

심사내용 **부두에서의 이중접안 금지** 신설

- 마산항 내 접안부두에서 이중접안 금지

심사결과 마산항의 구조적 특성상 선박이 이중접안할 경우 다른 입·출항 선박과 충돌위험이 존재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이중접안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와 사유가 있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중접안을 허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6)

심사내용 **고립처분의 절차 및 기준, 매립처분의 기준** 신설

- 매립·고립 처분 시 오염도 기준 및 매립·고립의 방법, 절차 규정

심사결과 매립의 경우 향후 부지 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오염도 기준 및 매립 방법·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고, 고립의 경우 해양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염도 기준 및 고립 방법·절차를 규정하였고,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지중저장 방법 및 관리** 신설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이 가능한 해저지질구조를 해저면으로부터 800m이상 심도에 형성된 공극이 많은 암석층, 가스·원유 등의 광물 채굴을 완료하고 남는 저류층의 빈 공간 등으로 정함

심사결과 이산화탄소 스트림이 누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해양지중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EU에서는 지표면에서 800m 이상 지중에 저장하도록 하고 있는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어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계획서** 신설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을 받은 자가 제출, 승인받아야 하는 정화계획서의 내용을 정함

심사결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사업은 오염원인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정화사업을 하도록 정하며, 오염원인자가 추진하는 경우 해역관리청에서 검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정화·처리하는지 여부를 해역관리청에서 확인하기 위해 정화계획서에 이와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인정됨. 타법에서 정화책임자가 제출하는 오염토양정화계획서의 내용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진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준설물질의 활용기간** 신설

- 준설물질의 활용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처리기간 내 준설물질 처리가 곤란한 경우 1개월 범위 내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심사결과 준설물질을 장기간 방치 할 경우 주변 미관 훼손, 오염 유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처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 준설물질을 처리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일반적인 어장정비사업의 경우 준설 이후 준설물질 살포 완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므로 이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점,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개월 범위 내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기관 지정기준** 신설

-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및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장비 요건 신설

심사결과 현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조사는 별도 자격기준 없이 엔지니어링 업체, 민간 분석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며 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해짐. 해당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요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신설

- 전문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심사결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매립 및 고립 가능 폐기물 범위 축소** 강화

- 매립·고립 가능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 폐패각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로 정함

심사결과 공유수면 매립재의 경우 향후 토지 이용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성, 토양오염 및 매립부지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고립 물질을 경우 해양환경 오염 및 수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립재 규정 간 차이를 해소하며, 기존 매립재 중 매립재로 사용이 부적절한 폐기물은 제외하여 정한 점,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립처분의 허가 신청 서류** 신설

- 고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고립처분 계획서,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고립의 경우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립계획서 및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 사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출 서류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다는 점,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 절차** 신설

-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 시 허가신청서에 이산화탄소 스트림 격리 계획서와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의 경우 관로 매설, 시설물 설치 및 이산화탄소 누출 등에 따른 해양오염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서류 작성·제출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기술능력 기준 강화** 강화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경우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함

심사결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의 경우 장비 고장으로 실제 장비 가동률이 43%에 불과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계 고장에 따른 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능력 기준 강화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업체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술능력 기준을 3년간 적용 유예하도록 한 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준설공사업도 건설기계 분야 기술자를 채용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출입검사 및 보고 사항** 강화

-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폐기물해양배출자에 대하여 보고·검사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폐기물해양배출자에 대해 출입검사·보고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됨. 규정한 출입검사·보고 사항이 법에 따른 의무준수 여부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정한 점, 동 규제에 대해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신설 1)

심사내용 비개방정밀검사의 시기 및 절차 신설

- 어선 고속기관의 비개방정밀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사항 신설

심사결과 기존 기관개방검사에 따른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비개방정밀검사를 통해 기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 기관개방검사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검사 절차 및 방법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검사기관과 어업인 단체로 구성된 어선기관개방검사 적합성검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기존 개방검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개방정밀검사를 도입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인 점, 기존 개방검사 대신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어업인의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불법, 비보고, 비규제 행위로 행정제재처분 받은 선박 및 고위험 선박 정보 공개 강화

- 조업감시시스템에 고위험군 선박 중 불법·비보고·비규제 행위로 행정제재를 받은 선박(IUU 선박) 관련 정보, 고위험군 선박 관련 정보 공개

심사결과 국제사회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고, 국내 원양어업자의 IUU어업 근절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동 규정 필요성이 인정됨. EU 및 대만 등 국가에서도 IUU선박과 업체 명단, 위반 사항, 처벌 내용 등 IUU 어업 관련 사항 공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동 규제에 대해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신설

-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에 안전에 관한 기본방침, 원양어업 주체별 안전 관련 업무 범위·책임, 선박운용에 관한 사항, 비상대책 수립 사항, 안전관리지침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심사결과 「원양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을 작성·보고·비치하여야 함. 안전관리지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동 규정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원양어선 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신설

- 원양어업자는 경력 기준과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함

심사결과 원양어선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기 위해 해당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교육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해운법」,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및 인원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하거나 완화된 수준으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동 규정에 대해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선박소방설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휴대식소화기등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강화

- 기존에는 국제항해선박(제1종선, 제3종선) 비치 소화기에 대해서만 수압시험 규정이 있었으나, 국내항해선박(제2종선, 제4종선) 비치 소화기에 대해서도 10년을 넘지 않는 주기로 수압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선박 화재사고 발생 시 초기 화재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불량·노후 소화기를 적기에 교체·수리할 수 있도록 주기적 검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에서도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개정에 따라 10년 주기로 검사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개당 5만 원으로 중요규제에 판단기준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신설

-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시기, 장소, 규격 및 방법 등 기준 신설

심사결과 선박 항행 시 양식장·어장 표지의 식별성을 향상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다른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각 시·도별 기준을 통일하여 정하며 각 시·도 기준 중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점, 새로 표지시설 설치 명령을 받는 양식장·어장부터 적용하여 기존 규정에 따라 표지시설을 설치한 양식장·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영흥수도 일부구간에서의 항행속력 제한** 신설

- 영흥수도 일부 구간(영흥대교와 송전해월선 사이)을 항행하는 선박의 속력을 12노트 이하로 제한

심사결과 동 규정에서 항행 속력을 제한한 구간(영흥대교와 송전해월선 사이)은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큰 수역으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속력 제한 규정 신설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 사례에서도 통상 항행 최고속력 제한이 7~12노트인 점, 연구용역을 통해 영흥수도 해당 구간에서 안전성 정량평가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항행 최고속력을 12노트로 정한 점을 고려하여 동 규제는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비용도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족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선내 미신고 위험물 보고 의무** 신설

-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운송화물 중 미신고 또는 잘못 신고된 위험물을 식별한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미신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화주의 위험물 위장 신고 방지를 위해 선박소유자 및 선장이 미신고 위험물 식별 시 보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정에 대해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도 항공운송사업자가 화물 중 미신고 또는 잘못 신고된 위험물 발견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컨테이너 수납 위험물 검사 대상 확대** 강화

- 사고 이력이 있는 위험물 및 고위험, 민감 위험물을 컨테이너 수납검사 대상으로 추가함

심사결과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물이면서도 검사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던 위험물을 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 및 항만 안전 제고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에서 컨테이너 수납검사 대상으로 추가한 위험물은 과거 화재·폭발이 발생했던 산화성물질과 독성·전염성물질,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고위험성으로 분류된 위험화물인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의 99%를 차지하는 5.1급 위험물의 경우 대부분 화주가 이미 검사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1)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재지정) 기준** 신설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재지정) 기준 중 장비 및 시설 세부요건 신설

심사결과 기탁등록보존기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기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자원별(해양동물·해양식물·해양미생물) 생명자원 연구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현재 운영 중인 21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수산식품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신설

-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체제를 구비하고,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에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도록 함

심사결과 수산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재개발전문기관 및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지정취소

심사결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대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다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경우 (1차) 경고, (2차) 지정취소

심사결과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법령에 제시된 요건을 준수하게 하도록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다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면제 대상 및 단말기 등록·변경·말소** 신설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설치 면제 대상을 정함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설치·변경·말소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심사결과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최적 항로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박에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법률에서 정하며, 설치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면제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단말기 설치 선박의 식별 및 각 선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단말기 등록·변경·말소 절차 필요성이 있음.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해당 단말기 구입 비용 일부를 보급사업('19~'22년)을 통해 지원 중인 점,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선설비 설치 면제 대상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동 규제가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4) 선박구명설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선원 외의 자가 13인 이상 승선하는 선박의 구명설비 비치요건 강화

- 선원 이외의 자(여객, 임시승선자)가 총 13인 이상 승선하는 선박은 여객선 수준(제1종선, 제2종선)의 구명설비 비치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준 강화

심사결과 여객이 아닌 임시승선자가 다수 승선하는 카페리 화물선 등 선박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객선과 동등한 수준으로 구명설비 비치 기준 강화 필요성이 인정됨. 국제적으로 통상 선원 제외 승선자가 12명을 초과하는 경우 여객선으로 분류하여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5)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정전기에 의한 발화위험 방지를 위한 요건 강화

- 인화성액체물질을 운송할 경우 대전방지용 작업복 및 작업화에 추가하여 대전방지용 장갑, 정전기 방지용 이동형 펌프, 정전기 방지용 작업 망치·스패너를 갖추도록 함

심사결과 인화성액체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은 정전기에 의한 발화위험이 있어, 안전을 위해 정전기, 스파크를 일으키기 쉬운 장비를 정전기 방지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정 적용대상 선박 중 대부분은 화주의 Major Inspection 수검 대상으로 이미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정전기 방지 장비를 사용 중이므로 추가되는 부담이 적은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6) 선박설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선원 외의 자가 13인이상 승선하는 화물선의 탈출설비 등 요건 강화

- 선원 외의 자가 13인 이상 승선하는 제3종선(여객선 이외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제4종선(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 제3종선 이외의 선박)은 총톤수 500톤 이상 여객선과 동일하게 탈출설비를 갖추도록 함

심사결과 여객이 아닌 임시승선자가 다수 승선하는 카페리 화물선 등 선박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객선과 동등한 수준으로 탈출설비 비치 기준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국제적으로 통상 선원 제외 승선자가 12명을 초과하는 경우 여객선으로 분류하여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7)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부산항 신항 항행 최고속력 신설

- 부산항 신항 항행 최고속력을 12노트로 규정

심사결과 부산항 신항 이용 선박 대형화, 토도섬 제거로 인한 부산항 신항 통항 여건 변화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항행 최고속력 신설을 도선사 측에서 제안하여 신설. 항내 안전을 위해 속력 제한이 필요하며, 통상 항행 최고속력을 7~12노트로 정하고 있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유사사례를 참고하면서도 부산항 신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항행 최고속력을 12노트로 설정한 것으로 동 규제는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족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신설

- 4종의 해양조사장비에 대해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며, 검사 유효기간을 조위계(압력식)와 유속계(도플러식)는 2년, 단일빔 음향측심기와 다중빔 음향측심기는 3년으로 정함

심사결과 해양조사장비의 정확도는 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양조사장비에 대해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국립해양수산원에서 관리하는 동일 장비에 대해 「해양관측시설 및 해양조사장비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주기와

비교할 때 검사주기가 동일 또는 완화된 점, 해양조사선 선저에 고정·장착되어 검사가 어려운 경우 성능검사를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5)

심사내용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신설

-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시기·내용을 신설함

심사결과 해양조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책·법규, 전문기술과 관련하여 해양조사기술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유지·향상시킬 필요성이 인정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점, 대체 가능한 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훈련의 면제 및 연기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족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 기관 지정요건** 신설

- 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의실을 갖추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해양조사·항해용 간행물 제작 분야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특급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조사기술자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원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동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신설

- 전문교육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교육훈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신설함

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해양조사기술자 교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할 필요성이 인정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등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정보서비스업 등록기준** 신설

- 해양조사·정보업 중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신설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인력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함

심사결과 기존 수로사업 등록기준은 단순 해양정보 활용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불필요하게 높은 등록기준이 적용되어 해양정보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등록요건을 낮춘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신설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해양조사정보법」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해양정보 활용과 관련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해양조사·정보업 내 타 사업과 비교하여 기술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동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족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기준** 신설

-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지정취소를 유예하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심사결과 기존 판매대행업자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취소 유예기간을 축소,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요구했던 지정요건인 수로도서지 제작 실무경력자는 희소성이 높아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제정된 「해양조사정보법」의 해양조사기술자는 관련 용역과 민간시장 활성화 등으로 채용에 어려움이 적은 점, 타법의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등록취소 유예기간이 통상 30~50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0)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표준어선형 기준 등** 신설

- 표준어선형의 표준전장, 안전성 기준 등 신설

심사결과 어선의 안전·복지시설 설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선 크기 관련 규정을 완화하며, 이로 인해 증가된 어선의 크기를 고려하여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정을 마련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어선안전고도화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한 점, 어업인 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대상으로 기준 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점, 어선의 안전복지 공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공간과 관련하여 어선 규모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동 기준을 마련하며 대신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강화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1)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기준** 신설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시설(강의실, 실습실, 편의시설 등), 인력 기준(교수요원 1인 이상 및 전담관리자 1인 이상) 신설

심사결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전문 교수인력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기준과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2)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갯벌생태관광 인증기준** 신설

- 갯벌생태관광 인증기준을 크게 갯벌생태 보전, 지역민 지지·참여, 지역 지속가능성 기여로 나누어 정하고, 각 기준 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함
-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 총점이 70점을 넘는 경우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부여함

심사결과 기존 단순 채집형 관광에서 탈피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 취지를 반영하여 인증기준 마련 필요성이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기준과 유사한 수준에서 갯벌 생태보전, 교육, 지역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한 기준인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갯벌생태관광 인증유효기간** 신설

- 갯벌생태관광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심사결과 갯벌생태관광 인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 여부가 소비자의 관광상품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유효기간 설정 필요성이 있음. 타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와 비교하여도 동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있다 판단되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3)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공동체 등록 취소** 신설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어업인의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체별 최소 구성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에 대해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최소 구성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 취소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기존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공동체 구성요건 미충족 시 선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 검역시행장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폐업 등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소각·매몰 대상 검역물을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타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검역시행장 지정취소
-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및 지정취소 기준 신설

심사결과 검역시행장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위법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시정명령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미이행하여 재차 위법행위 발생 시 업무정지 및 취소처분을 하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가 센터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운영정지 처분 기준 신설

심사결과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운영정지 기준을 명시하여 해당 센터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동 규제가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변경** 신설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교수요원 및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해양교육프로그램 내용 변경 시, 해양교육프로그램 내용 전·후 비교표, 내용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해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신설하며, 해당 인증 관리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용 변경 시 해당 사항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됨. 인증의 경우 소비자의 해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5)

심사내용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신설

-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로 최근 2년간 매년 해양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경우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는 해양교육을 위한 교재·프로그램 개발,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등 업무를 수행함.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시설·단체를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로 지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동 규정에 대해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흡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 시정·운영정지 명령 기간** 신설

-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가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운영정지 명령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함

심사결과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운영정지 명령기간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인정됨. 동 센터와 유사하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에 대해서도 시정 운영정지 명령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취소** 신설

- 해양교육전문기관이 지정 후 1년 이내 해양교육 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해양교육전문기관은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해당 기관이 해양교육 및 강사 양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과 유사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제출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신설

-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교육과정·내용, 교육 인력의 전문성,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심사결과 해양교육전문기관이 해양교육 업무 및 해양교육 전문강사 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과정 및 시설, 강사를 두도록 기준 마련 필요. 동 규제의 지정기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기준을 정한 점,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교육시설 평가** 신설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과정·내용, 전문강사 보유,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된 세부평가기준을 신설함

심사결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가 기관 운영 및 지원 취지와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지자체 재원이 지원 취지와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사후평가 기준과 유사한 정도인 점을 고려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7)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전기추진선박의 주요설비에 대한 시험기준 등 신설** 신설

- 전기추진선박의 주요 설비 5개 품목(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시스템, 전력변화장치, 추진용 전동기)에 대한 시험 및 검정 기준 신설

심사결과 전기추진선박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 개발·적용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전기추진선박의 주요 설비에 대해 일정한 시험 및 검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가표준(KS) 및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기준을 준용하였고,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있다 판단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8)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 형식승인 기준** 신설

-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의 형식승인 기준 및 검정항목 신설

심사결과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의 형식승인 기준 및 검정 항목을 마련하여 시험 및 검정을 거치도록 하여 어선 안전을 위해 적합한 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개정안의 기준은 KS, KC, IEC 등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있고, 제조업체 및 시험기관과 협의를 거친 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점을 고려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해양경찰청

집필자 양다희 사무관
Tel. 044-200-2441, ydh4423@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수상레저안전법 등 총 3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2.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3)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7.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5	신설 1 (비중요5)
계	-	원안의결 10	신설 8, 강화 2 (비중요 10)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가시거리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운항제한** 강화

- 수상레저활동자는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k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아니됨

심사결과 수상레저활동 시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소형으로 사고 발생 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어려움이 있어 가시거리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운항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출된 실적이 없으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유도선, 낚시어선의 경우 1km의 시계 제한을 두고 출항을 제한하는 등 타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교육·시험·검정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교육 수료증 발급·안전검사 등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지정취소
- 위탁기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업무정지 6개월, (4차) 지정취소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교육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업무정지 6개월, (4차) 지정취소
- 시험대행기관의 장 등이 면허시험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1차) 지정취소
- 검사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지정취소

심사결과 각 위탁기관은 면허 취득 및 안전과 관련된 교육·검사 등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면허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국가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당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기관의 업무 해태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상레저사업 등록 시 안전기준 신설** 신설

- 수상레저기구 중 워터슬래드, 래프팅,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블롭점프)의 경우 탑승정원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안전모를 갖추어야 하며, 탑승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의 안전모는 소아용으로 갖춰야 함

심사결과 워터슬래드, 래프팅, 블롭점프의 경우 기구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머리를 다칠 위험이 타 레저활동에 비해 크므로 안전모를 갖추도록 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이미 워터슬래드, 래프팅을 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모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상당수의 업체가 이미 안전모를 구비하고 있는 등 규제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수상레저안전법 (신설 1)

심사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 의무** 신설

-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됨

심사결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안전검사를 규제하고 있으나, 검사 이후 다음 검사까지 유지·관리 의무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안전을 위해 안전검사 후 상태 유지 의무를 규제 할 필요성이 인정됨.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며,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서도 선박 또는 어선의 검사 후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임시운항허가 준수사항** 신설

-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경우 운항거리(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 및 운항기간(7일 이내, 일출 전 30분~일몰 후 30분 범위 내 운항)을 정함

심사결과 임시운항허가의 경우 안전검사 전 시운전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운항거리 및 운항기간을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수상레저안전법」상 원거리 활동 기준이 10해리인 점, 수상레저기구 수리 기간이 최대 일주일인 점을 고려하여 운항거리 및 운항기간을 규제 한 것으로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신설 5)

심사내용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이용 수상레저사업(블롭점프 및 워터파크)의 등록기준** 신설

- 블롭점프 및 워터파크의 높이, 수심, 인명구조요원 배치 기준 등 등록기준을 신설함

심사결과 블롭점프와 워터파크의 경우 최근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등록기준이 부재하여 안전을 위해 법령으로 등록기준을 마련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지자체 지침으로 운영되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등록기준을 마련한 점, 해외 블롭점프 관련 안전 규정과 유사한 정도의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사업자 준수사항** 신설

-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블롭점프) 운영사업자가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신설함

심사결과 블롭점프 등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별도 운영기준이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수상레저기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지자체 지침으로 운영하던 블롭점프 안전 수칙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인 점, 사업자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정해진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시운항허가 요건** 신설

- 임시운항허가를 위해서는 승선인원 수에 해당하는 구명조끼, 소화기, 위치정보 취득이 가능한 통신기기(휴대전화 포함)를 구비해야 함

심사결과 임시운항허가의 경우 검사 전 시운전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구명설비 및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구명조끼, 소화기, 통신기기 등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 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허용기준** 신설

-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하며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함. 다만, 안전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원거리 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전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 이견을 수용하여 기준을 일부 수정한 점,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거쳐 해당 규정을 마련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상레저사업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로 정함

심사결과 수상레저기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5절 농림·산림 분야

1 농림축산식품부

집필자 박보경 사무관
Tel. 044-200-2421, bokyeong0225@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 총 2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5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4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03)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5)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02.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5)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7)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심사 (2020.04.24)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1, 신설 1 (중요1, 비중요1)
(9) 초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0)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10)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6)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3) 수의사법 개정안	본심사 (2020.07.10)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1)
(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7)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9)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08.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1)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2) 종자산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6)
(23)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4)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6)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4	신설 32, 강화 13 (중요 1, 비중요 44)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등록대상동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사항 신설** 신설

- 등록대상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하도록 하며, 건물 내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끝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

심사결과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해 필요한 규제인 점, 시·도 조례에 따라 가감(加減)이 가능하므로 동물복지 침해 정도가 타인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점, 선진국과 비교할 때 유사하거나 그보다 완화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물생산업의 사육관리인력 및 사육설비기준 강화** 강화, **동물생산업자의 개·고양이 휴지기간 연장** 강화

- (인력·시설기준) 번식 가능한 개· 고양이 50마리당 1명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사육설비 바닥면적의 50% 이상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 확보토록 강화
- (휴지기간) 개·고양이 출산 휴지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심사결과 동물보호·복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강화가 필요한 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동물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 때 완화된 수준의 규제인 점, 인력 고용 및 평판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휴지기간 연장으로 생산수익이 감소하게 되나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개정안에 따른 규제 강화수준이 이해관계자 의견과 현실을 적절히 고려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반려동물 미용업 및 운송업의 영업장 내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의무** 신설

- 동물미용업·운송업의 경우 미용 또는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녹화장치 의무 설치 규정 마련

심사결과 살아있는 동물을 취급하는 영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영업행위 및 위해 요소 방지를 위하여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가 필요한 점, 동물장묘업·위탁관리업의 경우 영업장에 반려동물을 맡기게 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하여 폐쇄회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고객과의 갈등 예방 차원에서 영업자의 폐쇄회로가 이미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행정처분기준 강화** 강화

- 동물생산업자와 경매방식으로 영업하는 동물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설·인력 기준미달 및 준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심사결과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경매업)자의 책임감 확대를 통한 동물 보호·복지 수준 제고 및 관련 영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해소를 위하여 본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아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영업자 책임의식 제고 및 동물 보호·복지 수준 향상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신설

-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이 농약이나 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 2회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심사결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조사·점검 결과 우수관리인증품이 위해요소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3회 이상 적발되어야 인증취소가 가능함에 따라 '우수관리인증품'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점,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1차에서 인증취소를 정하고 있는 「친환경농어업법」과 비교해 완화된 기준인 점,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신설

-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인증(지정)의 절차·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등을 하지 않는 경우 1차 경고 2차·3차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처분기준 마련

심사결과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잘못한 경우'([별표 4]우수관리인증기관 처분기준 2.아목)에 절차·방법 미준수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점, 별표 4 처분기준 중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잘못한 경우'에 규정된 세부항목과 비교할 때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신설

- 상위법에 검정 기관의 검정 항목 중 '품종'이 추가됨에 따라, 검정 기관 지정기준 중 품종검정 인력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검정기관은 주로 민간의 요청에 의한 인증(친환경·GAP 등)과 자가품질검정 목적의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 인력에 의한 분석성적서를 통해 올바른 인증심사 유도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제품 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점, 품위 및 일반성분 검정기관 지정기준과 비교 시 유사한 수준이며, 旣 운영되고 있는 품종 검정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므로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신설

-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이 농약이나 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 2차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심사결과 위해요소를 허용치 이하로 관리해야 하므로 2차 위반 시 인증취소 처분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우수관리인증제도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아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등 신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기준 신설

- (지정기준) 밀 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 교육과정, 교육시간, 강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처분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 마련

심사결과 본 규제는 밀 생산·유통·소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밀산업 종사자·소비자 및 공무원에 대해 적정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입법인「차산업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茶 관련 기술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교육훈련기관 처분기준과 비교해 규제수준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축산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확대** 신설

- 농약을 사용하여 축산물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 살충제 계란을 생산·유통한 농가에 대해 전량폐기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동일한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현행보다 강화된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한 점, 가축전염병 발생 등에 대해 1회 또는 2회 위반 시 허가 취소토록 하나 신설되는 처분기준은 불가항력적 농약 검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하도록 정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완화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 신설

-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 마련

심사결과 살충제 달걀 유통이 지속 발생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비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점, 유사업종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시설 구축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및 농가 소득보전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큰 점, 이해관계자인 한국계란유통협회가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동물보호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윤리위원회 운영기준 강화** 강화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수의학적 지식과 사용·관리지도, 처치 후 관리법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수의사의 회의 참석으로 심의·평가 전문성 및 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점, 이미 윤리위원회 필수 구성원인 수의사를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회의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므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부담이 적은 점, 해외사례와 비교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 적용 예외기준 마련** 신설

- 초·중·고교에서 동물 해부실습을 할 경우 교원·교육과정 전문가·지역사회 인사·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 심의위원회 심의 후 학교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실습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성년자 정서를 고려하기 위하여 심의 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부실습 종료 후 실습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며, 반복적 실습에 대한 심의결과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방안과 해부실습 시 외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사유 삭제** 강화

- 동물실험 금지적용 예외 사유 중,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삭제하고, '사역견 선발 또는 훈련방식 연구'를 추가

심사결과 사역견에 대한 무분별한 동물실험 방지 및 윤리·과학적 실험을 위하여 필요한 점, 사역견 선발과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는 대체실험이 사실상 어려운 점, 사역견 실험을 금지하지 않는 해외사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초지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 신설,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설

- 지자체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초지 전용을 완료한 후 5년 이내'로 규정
- 지자체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

심사결과 초지 전용허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초지 전용 및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악용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법의 목적이 비슷한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도 이미 용도변경 승인제도가 있는 점, 초지 보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축산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강화** 신설

- 수정사가 명의 사용 또는 면허대여를 알선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

심사결과 수정사의 명의 사용 또는 면허대여를 알선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본 규제가 마련된 점, 유사사례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 신설

- 기존 유기가공식품 규정에서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 의무 및 무농약농산물 50% 이상 규정 추가

심사결과 국내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및 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비인증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업체자율표시)의 제도권 진입이 필요한 점, 간담회 및 연구용역을 결과를 반영한 점, 유사입법례(유기가공식품)와 동일하게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심사결과 소비자 신뢰 확보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농약 사용 등에 대한 인증기준을 도입한 것이므로 이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한 본 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유기가공식품에 적용되던 행정처분 기준보다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의 자료보관의무** 신설

-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의 자료 보관기간 연장(2년→3년)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자료 보관기간 신설(3년)

심사결과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법 위반에 대한 민원, 신고 등

발생시 자료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인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이 자료보관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추가부담이 거의 없는 점,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증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 인증심사원과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심사결과 부실한 인증에 따른 인증제도의 신뢰도 하락 및 농업인·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인증기관(54개소) 및 인증심사원(354명)이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험연구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원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농업자재의 모집단'의 범위) 및 개별기준 일부 신설

심사결과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시기관·시험연구기관의 관리를 내실화하고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공시제품의 부적합률을 낮추고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피규제자인 공시기관(3개소), 공시사업자(659개소), 시험연구기관(41개소)이 규제도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 행정처분기준** 신설

- 법 제1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설정

심사결과 교육훈련기관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농업인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 점, 위임 범위 내에서 유사 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 기준** 강화

- 농업식품기본법 상의 농업인 인정기준(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에 부합되도록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메추리 사육마릿수 상향

심사결과 메추리 사육기준 현실화를 통해 실제 농업인 중심의 협동조합을 구현하고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업인의 요건에 부합토록 하여 타 축종과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점, 상위법 취지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것인 점,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수의사법 (강화 1)

심사내용 **진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무 등** 강화

- 동물병원개설자(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진료에 대해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
- 동물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도록 규정
- 진료 전 동물소유자등에게 표준진료항목,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을 고지
- 농식품부장관에게 동물진료비현황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심사결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대되고 있어 진료비용 사전 설명 등을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점, 피규제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고지항목 및 고지의무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가능토록 부칙 등에 명확히 한 점, 고지항목은 전문가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거쳐 하위법령(시행규칙)에 다빈도 주요항목 위주로 구체화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방역시설의 기준** 강화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에 ASF 집중발생지역 및 물·토양 등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추가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방역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의무 부여

심사결과 ASF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차단하여 전염병 발생을 막고 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방역시설 정비가 필요한 점, 피규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을 함께 지원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신설

-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엄격한 관리와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사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제재 기준이 필요한 점, 금지행위 규정의 목적이 손해평가사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고 유사사례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정도에 따라 1차 사업정지, 2차 사업장 폐쇄하거나 즉시 사업장을 폐쇄조치토록 함

심사결과 농어촌민박 활성화와 투숙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박사업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업정지나 사업장폐쇄 조치가 필요한 점, 이해관계자의 별도 의견이 없고 범죄예방으로 인한 편익이 민박 영업정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보다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항목 추가** 강화

-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 클로람페니콜 외용제와 겐티안 바이올렛 함유제제 추가

심사결과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클로람페니콜과 겐티안바이올렛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예기간을 두는 등 피규제자의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수입유통이력농산물 등의 시료수거** 신설

- 수입유통이력농산물 등 신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시료 수거 권한 신설

심사결과 시료 채취를 통해 비식용 농산물의 식용 둔갑, 원산지 세탁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보다 객관적인 유통이력관리가 가능하므로 시료채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시료 채취 시 시료구입비를 지급하는 등 피규제자의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양봉농가 등록 기준** 신설

- 10군 이상 토종꿀벌 및 30군 이상 서양종꿀벌의 사육을 희망하는 양봉농가의 등록의무 및 시설 장비 기준

심사결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봉농가 관리·지원을 위한 등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농가의 꿀벌 사육 현황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제도입에 따른 침해를 최소화한 점, 적은 비용으로 일반국민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신설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유통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기준 설정

심사결과 우수관리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 농산물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된 표시를 한 경우 시정조치가 필요한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품의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비교할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농산물 표준규격 (강화 1)

심사내용 **표준규격품 표시사항 추가** 신설

-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재 겉면에 가열 조리 또는 세척 후 섭취를 권장하는 문구 표시 의무화

심사결과 표준규격 농산물 포장 겉면에 주의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식중독 등 잘못된 조리방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업계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본 규제가 마련된 점, 경과규정을 두어 피규제자의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종자산업법 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종자관리사의 교육** 신설

- 종자업체에 의무고용된 종자관리사에게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보증종자 거래의 신뢰도 향상과 종자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보수교육을 통한 종자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점, 종자관리사 및 종자업체 등 이해관계자들도 종자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점, 유기식품 인증심사원·농산물 품질관리사 등 유사 업종과 비교할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종자의 품질인증** 신설

- 품종의 진위성이 확보되고 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종자업자가 생산·관리한 종자에 대해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자 품질인증제 도입

심사결과 종자 보증체계가 미흡한 묘목·영양체 종자에 대해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품질 종자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 본 규제 도입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 유기식품 인증심사원·농산물 품질관리사 등 유사 업종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증종자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신설

- 인증종자업자에게 품질인증종자의 생산·판매·보급 실적 보고 의무와 품질인증 심사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 부과
- 품질인증종자와 인증종자업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종자 품질인증의 취소·표시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 신설

심사결과 품질인증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준수사항과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을 두어 인증제도의 정착 및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타법에서도 품질인증제도에 따른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와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 아닌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품질인증 등에 대한 부정행위 금지** 신설

- 품질인증 등과 관련하여 거짓·부정 인증, 허위표시·광고 금지 규정

심사결과 품질인증제의 실행력 제고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존 종자 관련 위반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금지 규정 및 제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타법에서도 품질인증제도에 따른 금지행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취소 등** 신설

- 종자업자가 종자 생산·수입 판매와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거나 종자의 품질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종자업 등록 취소·영업 정지의 사유로 규정
- 육묘업자가 묘의 품질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육묘업 등록 취소·영업 정지의 사유로 규정

심사결과 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및 종자·묘의 품질 표시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타법과 비교하여 행정처분의 사유가 과도한 수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종자의 수입신고**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 의무 부여

심사결과 외국 종자 수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종자의 생산·유통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하위 법령을 통해 일부 품목에만 수입신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인 점, 부칙에서 1년의 경과규정을 두어 피규제자의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시험연구용·국제박람회용·농업유전자원용 수입허가 금지품의 증식금지** 신설

- 시험연구용 및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수입허가 금지품이 재식용·번식용 식물인 경우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 증식할 수 없도록 규정

심사결과 수입허가 금지품은 병해충 위험으로 인해 금지된 물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한 점, 이용기간 종료 후 검역을 거치면 용도 전환 및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두고 있어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증식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강화 1)

심사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추가** 강화

-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유기농업자재 원료 검토기준 추가

심사결과 폐기물로 인해 유기농업을 수행하는 농경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공시기준에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이미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을 유기농업자재 공시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맹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 규정** 신설

- 사망·부상·후유장애 등에 대한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의 최저보상금액 규정

심사결과 맹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피해자와 맹견소유자 간의 분쟁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맹견배상책임보험의 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후 개물림사고 평균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금액수준이 결정된 점, 타법과 비교할 때 보상한도가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시설·장비 기준** 신설

-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시설·장비 기준에 EDN 관련 시설·장비 추가

심사결과 식물검역용 농약은 고독성으로 인체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시설·장비 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 해당 기준은 방제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인 점, 기준 마련을 통해 약제 사용 선택권이 넓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산림청

집필자 박보경 사무관
Tel. 044-200-0000, bokyeong0225@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등 총 1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1건 중 3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림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1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1)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7)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세부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0.06.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8)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0) 산림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2)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5)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6)
계	-	원안의결 31	신설 29, 강화 2 (비중요 31)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산림보호법 시행령 (신설4)

심사내용 **보수교육 유예 사유** 신설

- 보수교육 유예 사유 설정
- 유예 사유 해소 시 보수교육 의무 규정

심사결과 보수교육 유예 사유 설정을 통하여 보수교육에 드는 시간·비용 소모를 방지하며, 사유가 해소된 경우 다시 보수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업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 처방전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1차·2차·3차(자격정지2月·4月·6月) 및 4차(자격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수목 건강뿐 아니라 국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사 행정처분기준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 신설

- 양성기관 및 나무병원이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과 나무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 현행「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및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상의 행정처분 기준과 유사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4)

심사내용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요건 신설

-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운영규정,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 규정

심사결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는 도시민의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산촌활성화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사업 내용 및 인력·시설 요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요건과 유사한 수준인 점,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이미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규제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사업의 범위,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업실적 제출의무 신설

- 산촌주민에 대한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규정
-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받을 경우,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1분기까지 제출토록 의무화

심사결과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목적에 따른 사업 범위를 정하고 사업계획·사업실적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 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 점,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사업이 산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세부기준** 신설

-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도시민 산촌정착 및 산촌 경제 활성화 등 해당 업무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유사입법인 「귀농어·귀촌법」상의 지원센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목재이용법 시행규칙」에 의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하여 유사 또는 완화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1)

심사내용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신설

- 관련 지도사 자격, 교육과정 이수 등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자격기준 규정

심사결과 검증받지 못한 인력이 산림레포츠 활동을 지도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공인된 자격을 통해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 산림레포츠 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통한 사고 예방 등 편익이 자격 취득에 따른 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산지관리법 시행령 (강화1, 신설1)

심사내용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위임범위 확대** 강화

-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균경사도, 표고 등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범위 제한 없이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지역 특성에 맞게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지 난개발 및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점, 산지 전용허가기준을 일괄하여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현장점검실시 및 서류제출 의무** 신설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현장점검 방법과 횟수
- 점검기관과 허가받은 자의 현장점검 결과서류 제출의무

심사결과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산지 재해에 취약한바, 산지 관리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현장점검 의무화를 통해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이미 운영 중인 풍력발전시설의 현장점검 의무제도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1)

심사내용 산림레포츠지도사 프로그램의 범위 신설

-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레포츠시설에서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

심사결과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특징과 효과, 모험적 요소 등을 감안한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한 점, 산림레포츠지도사가 개발한 프로그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산림보호법 시행령 (신설3)

심사내용 나무의사 진료부·처방전 기재사항 및 진료부 보관의무 신설

- 진료부·처방전 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심사결과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약사용 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수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수목 피해 발생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진료부·처방전 5년 보관의무를 통해 원활한 수목 진료를 도모할 수 있는 점, 유사법령인 「수의사법」(농식품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양수산부)에서도 진료부·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운영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 신설

- 강의실, 전임 인력 등 보수 교육기관의 지정의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나무의사에게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보수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이 필요한 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등과 비교 시 규제수준이 유사한 점, 보수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력 기준으로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수교육기관 및 나무의사 의무 신설

- 보수교육의 기간·내용·방법·절차·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심사결과 보수교육을 통해 나무의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수목진료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점, 「산림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등에서의 보수교육 기간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나무의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세부기준 (신설1)

심사내용 경력 산정 기준 신설

-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

심사결과 산림사업의 규모별 기술자 배치 기준에 따른 산림기술자 등급 부여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및 산림기술자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경력인정기준이 필요한 점, 경력에 따른 업무능력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업무경력에 따른 기술등급을 기술 특·고·중·초급으로 세분화한 점, 유사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도 업무수행 경력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2)

심사내용 목재교육 전문과정 면제기준 신설

- 목재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목재교육 전문과정(총 176시간)의 교과목 중 일부를 면제

심사결과 신규제도의 도입 및 연착륙을 위해 기존 목재교육 분야 자격 취득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점, 일부 과목이 면제되더라도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획득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국가자격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점, 나무의사 국가자격(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등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목재교육 전문과정 자격평가** 신설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심사결과 교육과정을 이수했어도 수강생에 따른 역량이 다르므로 국가자격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 다른 산림 관련 국가자격(나무의사, 산림치유지도사, 산림교육전문가 등) 제도 모두 자격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1)

심사내용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신설

- 자연휴양림등에서 ① 시설물 이동·훼손, ② 소음·악취 등 혐오 유발, ③ 무단 주차, ④ 지정 장소 외 상행위, ⑤ 기타 관리주체인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행위 금지

심사결과 자연휴양림등의 건전한 이용 및 이용객들의 산림문화·휴양활동 보장을 위해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필요한 점, 수목원, 도시공원, 자연공원 등 다중이용 여가시설에서의 금지행위와 유사하여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산림조합법 시행령 (신설2)

심사내용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신설

- 산림조합의 자산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고, 2,500억 원 이상인 경우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자산규모에 따라 조합장의 상임 여부를 다르게 하여 산림조합의 경영 효율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자인 지역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산기준을 결정한 점, 유사법령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의7에서도 자산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등** 신설

-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위원 중 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관련업무 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연구 경력자로 규정

- 산림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산림조합감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

심사결과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정비가 필요한 점, 유사법령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도 최근 2년 이내에 조합·중앙회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감사위원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중앙회 외부전문가 감사위원의 경우 관련 분야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1)

심사내용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설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 마련

심사결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은 정부의 예산을 사용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후관리·감독 규정이 필요한 점, 전문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본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 점, 유사입법인 「산림보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나무의사 양성기관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산지관리법 시행령 (신설1)

심사내용 외부 토석 반입 행정제재 도입 신설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구역 외의 외부토석을 반입한 경우 행정처분 제재기준 규정

심사결과 토석 채취에 따른 산지 훼손을 방치할 경우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재처분 도입을 통해 적정 수준의 산지 이용 유도가 필요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 및 중기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1)

심사내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세부기준 신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정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을 마련이 필요한 점,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의 규제라 볼 수 없는 점, 위반내용의 경중과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을 차등화한 점, 처분 전 청문 절차를 두어 개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1)

심사내용 부실측정 범위 확대 등 강화

-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설계·감리가 의무화된 산림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대해서만 부실 측정을 시행하였으나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모든 산림 사업으로 대상 확대

심사결과 부실측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점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소규모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 사업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장 실태와 맞지 않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여 벌점제도를 합리화한 점, 유사업종인 건설업에서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측정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설6)

심사내용 양성기관의 지정 등 신설

- 교육내용, 인력, 장비 등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설정

심사결과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관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석재산업 종사자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점, 양성기관이 교육훈련 제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규제자의 경비부담을 최소화한 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등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는 점, 지정 신청이 예상되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들이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추가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신설

-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설정

심사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후 사후관리를 위해 지정취소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의 규제라 볼 수 없는 점, 위반내용의 경중과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을 차등화한 점, 이해관계자의 별도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석재채취업의 등록** 신설

- 석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기술인력 기준 신설

심사결과 자본금·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석재채취업 등록기준을 설정하여 융자·지원 등만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무분별 등록을 막고 부실업체를 선별할 필요가 있는 점, 석재의 용도에 따라 등록기준을 차등화한 점, 등록기준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기준 및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석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 신설

- 석재채취업·석재가공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설정

심사결과 석재채취·가공업 등록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 「산림보호법 시행령」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의 규제라 볼 수 없는 점, 위반내용의 경중과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을 차등화한 점, 이해관계자의 별도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 신설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기준 설정

심사결과 전통 석재기술의 전승 촉진 및 발전을 위해 전통 석재제품 인증과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인증·인정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식품산업진흥법」에서도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과 비교할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신설

- ① 석재·석재제품의 품질, ② 생산시설·기계·장비의 현대화 정도, ③ 최근 2년 간의 생산 및 공급 실적, ④ 사업장 안전 확보와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예방 규정 준수 여부, ⑤ 석재산업 전문인력 확보 정도

심사결과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우수 석재의 공급을 확대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수사업자 인증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를 두고 있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인증기준과 비교하여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농촌진흥청

집필자 박보경 사무관
Tel. 044-200-2421, bokyeong0225@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등 총 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계	-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농약 표시의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 강화

- 농약 표시사항('농약' 문구, 안전사용 기준, 그림문자 등)의 글씨 크기를 포장단위별로 차등 확대
- 용기 마개 색깔을 바탕색과 동일하게 변경

심사결과 농약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PLS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인, 특히 고령 농업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7회) 및 공청회('19.11월)를 통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점, 국제기준 및 타국 사례에 비추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강화 2)

심사내용 **비료원료 사용금지 대상 추가** 강화

- 담배, 담배제조업·수입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연초박 포함)을 사용금지 비료원료에 추가
-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담배제조업 및 기타'를 삭제하고,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삭제

심사결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암발병으로 발생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물질(연초박, 폐수처리오니 등)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비료협회 및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료 포장지 주의문구 추가** 강화

-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비료의 포장지에 주의문구 자구 추가('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및 글자 크기 상향(포장지 앞면 전체면적의 1/10 이상)

심사결과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비료의 포장지에 주의문구를 명확히 하여 반려동물이 독성물질을 섭취하는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기존 비료 포장지를 '21.6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침해를 최소화한 점, 본 규제 도입을 위해 비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회를 개최('19.7.15)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수준이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6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필자 김희재 사무관
Tel. 044-200-2420, kimheejae08@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고시 등 총 19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8건 중 1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하였으며, 3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고시	예비심사 (2020.01.0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2) 전파법	예비심사 (2020.02.2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3)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예비심사 (2020.03.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 전기통신사업법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5) 별정우체국법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0.10.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7) 뇌연구 촉진법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8) 전파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본위원회 (20.11.13)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0.11.23.)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1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0.11.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4) 전자서명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0.11.23.)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16) 방송법	예비심사 (2020.12.1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예비심사 (2020.12.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8)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9) 전기통신사업법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부대권고 1, 원안의결 37	신설 35, 강화 3 (중요 1, 비중요 37)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고시 (신설 2)

심사내용 인적·물적 외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기준 신설

- 손해의 유형별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ICT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하여 보험기준 금액을 정함

심사결과 ICT규제샌드박스는 기존 제도에서 사업 시행이 어렵거나 제도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시장출시 또는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로 향후 테스트될 기술·서비스의 종류나 위험성을 현재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대인대물 손해 外에도, 해킹,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서비스 오류 등 ICT서비스와 관련된 특별한 유형의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ICT샌드박스 참여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할 책임보험 기준을 구체화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간 8.4억 원으로 연간 100억 원 미만인 점,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토록하여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편익이 발생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규제특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기간 및 보험증서 제출 기준** 신설

- 규제특례(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사업자가 가입해야할 책임보험 가입시기·보험증서 제출시기·보험유지기간 등의 기준 설정

심사결과 규제특례(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특례 유효기간 동안 책임보험을 가입·유지토록하고, 책임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제도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에 관한 타 법령인 지역특구법·산업융합촉진법 및 기타 법령상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업자의 보험 가입 및 보험증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전파법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주파수면허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강화

- 주파수면허료 납부 지체시,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체납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심사결과 현행 전파사용료의 경우 체납시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통합된 주파수면허료에 대해서도 체납 가산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프랑스 등 해외 유사사례 및 타법사례(방송법 등)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파수 공동사용 적용 시 신규 이용자에게 기존 이용자 보호 지원에 소요된 비용 부과** 신설

- 주파수 공동사용 시, 해당 주파수의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설비 교체 등 직접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요 비용을 신규 이용자에게 징수

심사결과 이용정보체계 구축(DB구축) 및 기술개발 등에 소요될 공동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나, 기존 이용자의 설비 교체 등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비용부담 징수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규제 도입으로 신규 이용자에게 발생가능한 부담(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비 교체, 전파 보호 차폐막 설치 비용 등)보다 새로 확보한 주파수를 이용한 경제활동 편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점, 사전 연구반이나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접속통신료 정산 제외 구간(무정산 구간) 설정** 강화

- 과기정통부장관이 상위계위사업자(대형통신사: KT, SKB, LGU+)간 접속통신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통신시장에서 대형 통신사(ISP)의 시장지배력 남용방지를 위해, 정부가 대형통신사 간 접속통신료 정산방식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터넷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수단인 점, 이해관계자들과 장기간 협의를 거쳐 본 규제가 마련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전기통신사업법 (신설 2)

심사내용 **보편요금제 도입** 신설

-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심사결과 타 산업에 비해 통신시장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진입이 어려워 시장 자체적으로 자연독점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기능만으로는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이 곤란함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재량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해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점,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규제 근거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점, 보편요금제로 인해 이통사의 이익이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달성되는 편익(시장경쟁 촉진,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편요금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보편요금제를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 대상자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신고 의무 등 관련 사항 준수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용약관의 신고 등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도록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유사 사례와 비교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별정우체국법 (신설 1)

심사내용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제도 폐지** 신설

- (지정승계제도 폐지)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녀·배우자에 대한 지정승계 폐지
- (추천국장제도 폐지)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에게 부여하는 추천국장제도 폐지

심사결과 청사시설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및 혜택을 자녀·배우자에게 무제한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피지정인에 대한 신뢰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시험의 참여제한**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자에 대하여 3년간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

심사결과 평가 시 부정행위자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것 외에, 해당 부정행위자에게 일정기간(3년)의 응시제한의 불이익을 부과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규제에 대해 제기된 이견이 없는 점,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미국, 중국 등의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등)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 내용** 신설

-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그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등 분쟁이 빈번한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을 서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함

심사결과 SW사업계약의 당사자 간 부여된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공정성과 품질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본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영국과 미국에서는 일정한 종류의 계약(토지 양도 및 매매계약, 보증계약 등)에 대해 서면 계약서 기재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서도 서면 계약서 교부 외에 도급계약서에도 기재할 내용을 규정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뇌연구 촉진법 (신설 2)

심사내용 **뇌은행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신설

- 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뇌은행에 운영현황 제출의무를 부과하고(매년 2월말) 이를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뇌연구 전문가로 구성)에서 검토

심사결과 뇌연구자원의 접근성·공공성 제고를 통한 국가 뇌연구 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뇌은행을 지정·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뇌연구자원에 대한 윤리강령·운영지침 등을 규정하여 뇌은행 운영 중인 점, 뇌은행 지정은 지원·육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 지정을 받지 않아도 자원의 관리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뇌은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지정 취소 등의 근거 규정 신설** 신설

- 뇌은행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에 대한 근거 마련

심사결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을 방치할 경우 뇌은행 지정의 법적 취지 및 정책 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정취소 시 청문을 통한 당사자 의견 청취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점, 타법(「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도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전파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전파차단장치 제조 등의 인가** 신설

- 전파차단장치 제조·수입·판매 목적의 타당성과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 최소화를 위해 기술규격(차단 대상 주파수, 불요파 제한 등) 심사 후 인가

심사결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 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의도하지 않은 전파혼신을 최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유럽은 전파혼신을 야기할 수 있는 전파차단기 등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위반 시 벌금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는 점, 규제신설로 인해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별도 비용은 없으나,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전파혼신

예방을 위한 전파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편익 발생이 예상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강화

- 제재처분의 수단인 참여제한의 최대 연수를 늘리고, 기존의 연구비 환수조치를 제재부가금 부과로 대부분 대체하여 가액 범위 증대
- 연구개발 참여제한 제재 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수 대신 제재부가금 부과로 처분기준 변경(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기준 위반의 경우는 환수와 병행)

심사결과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국가재정의 올바른 사용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던 점, 규제 도입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한 반면 연구윤리 확보 및 국가 재정의 올바른 사용에 기여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미국 및 일본에서도 연구비 부정사용과 관련해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재처분 정보의 공개** 신설

- 참여제한 처분 기간이 5년 이상 이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경우 해당 제재정보*를 홈페이지와 통합정보시스템에 6개월간 공개

심사결과 법 위반사항 공개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및 동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점, 명단공표에 따른 연구자의 추가적 행정부담은 없는 점, 정보공개로 인한 피규제자의 피해에 비해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통한 공공성 달성의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미국 NIH(국립의학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부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을 홈페이지와 시스템에 등재(연구자 성명, 소속, 연구부정행위 내용, 처분사항 등)하는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 행정제재처분 기준** 신설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연구실 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위반행위의 경중과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처분을 차등화한 점, 청문절차를 두어 피해를 최소화한 점, 별도 간담회·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별도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교육·훈련 의무 신설** 신설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교육 시간·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위임

심사결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기술인력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에도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교육을 수행해 왔으며 교육비는 정부에서 부담할 예정이므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별도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안전 관련 종사자의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산업안전보건법」등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의무** 신설

- △(대상) 일평균 △국내 이용자수 100만명↑ △트래픽 발생량 1%↑
  △(조치) ①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②이용자 요구 처리 ③자료제출 등

심사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는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에 대한 이견이 제기된 만큼, 트래픽 측정·공개에 있어 측정방법과 기준 등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과 함께, 측정결과 통보 대상에 규제대상 가능성 있는 사업자들까지 확대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부대권고**

(12)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연구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 신설** 신설

- 지능정보기술 연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취소 기준 등 규정

심사결과 지능정보기술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선별하고 건실한 연구개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지정요건과 지정 취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본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도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요건으로 △연구실적 △인프라 △산·학·연 협조체계를 요구하는 등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능정보기술의 기술기준 신설** 신설

-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군사적 목적,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 오작동으로 사람에게 위해 우려) 규정

심사결과 지능정보기술 중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기술은 안정성·신뢰성 등의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국민들의 안전 보호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군사·의료 및 오작동에 따른 위해 등 신체안전에 밀접한 필요 최소한의 사항들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 신설** 신설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시 지정요건 및 절차 규정

심사결과 지능정보기술 전문인력 양성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 일정한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본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유사입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요건과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및 절차 신설** 신설

- △인식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및 절차(신청서) 규정

심사결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능정보제품(KIOSK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선구매제도는 일정 기준·절차를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 측에서 별도의 검증제도를 통한 우선구매제도의 확산을 건의하여 과기부가 이를 수용·반영한 점, EU의 경우, 「유럽 접근성 법」을 통해 공공부문의 의무구매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유보신고제 도입** 신설

- ❶이용자의 이익이나 ❷통신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큰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된 이용약관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이용약관의 인가제를 신고제 전환으로 하였음에도, △부당하게 높은 부담이나 차별적 요금 등으로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도록 요금을 책정해 시장경쟁을 저해하여, 이용자가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반영한 점, 이용약관 반려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만큼, 순응 가능성을 확보한 점, 美·日 등 국가들도 사업자의 이용약관(또는 요금제)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효력 발생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전자서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신설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에 대한 선정기준과 심사 절차 등 규정

심사결과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대한 전문성, 역량 등을 심사할 기준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식재산 경영인증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후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수정·보완을 거쳐 심사항목 및 지표를 설정하였고, 그간 외부전문가 연구반 운영 및 별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용·반영한 점, 미·영 등 해외사례에 대비해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신설

- ❶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마련 ❷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자 평가기관에 평가를 신청할 경우, 세부평가기준 등을 인정기관과 협의 ❸전년도 평가업무 실적보고서를 과기부에 제출(매년 2월)

심사결과 전자서명인증의 신뢰도를 위해 평가기관의 공정·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일정한 업무수행지침·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인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웹트러스트 등)에서도 국제표준 'ISAE 3000' 감사 지침에 따라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신설

-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책임보험 금액 및 기간 규정

심사결과 전자서명과 관련한 문제로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증사업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을 통해 적시에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며, 종전 공인인증제도 下 인증사업자의 보험 가입금액대비 개정안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인증사업자들의 규제 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감정평가법 시행령」 등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평가기관의 선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신설

-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규정

심사결과 전자서명 시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기존에 평가받은 인증을 신뢰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제재처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4]는 △거짓 등으로 기관지정 △부당한 업무수행 △지정기준 부적합 등의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세부적인 제재처분 기준을 규정하는 등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연구실 비치 보호구의 종류 규정** 신설

-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연구활동 유형(화학, 가스, 생물체, 물리인자 취급)에 따라 비치·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 △보호구의 적정 성능 유지의무 등 규정

심사결과 연구실 및 종사자의 사고 예방이라는 법 취지상 보호구를 비치·착용토록 할 필요성과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 EU 등도 연구실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령, 지침 등을 활용하여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의무 규정하고 있어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간 동안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교육 시간 및 내용 규정** 신설

- 대행기관 기술인력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시간 및 내용 규정

심사결과 점검·진단 대상 연구실 및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연구현장의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점검·진단 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반영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점검·진단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연구자들의 생명·안전, 지적재산 등의 피해를 절감함에 따른 각종 편익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시건강검진 세부 실시기준 마련** 신설

- 연구종사자 중 임시건강검진 대상 및 검사항목 등 세부 기준 규정

심사결과 연구활동종사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잠재적 유소견자 조기 발견·조치를 통한 2차 사고(대규모 감염확산 등) 방지를 위해 임시건강검진 등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반영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유소견자 등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실시대상, 검사항목 등을 규정하는 등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요양급여 보상한도 상향** 신설

-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현행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심사결과 대형사고(화학물질 폭발, 집단 감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 고위험 병원체 등)를 취급하는 연구실이 증가하고 있어, 중증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상

확대가 필요하며, 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반영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에서 재정적으로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설정하였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방송법 (신설 1)

심사내용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완화** 신설

- 기본적으로 이용약관 신고제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묶음상품 요금 등)에 한해 승인제를 유지하고 △이용약관이 신고시 갖춰야 할 요건 규정

심사결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이용약관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음에도, △부당하게 높은 부담이나 차별적 요금 등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他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해 경쟁을 해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규율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본 규제에 대해 별도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신고제와 함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는 등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료방송 서비스품질 평가** 신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 대상 품질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심사결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이 제기된 의견은 추후 평가 진행시 반영할 예정인 점,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해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등 해외나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신설

-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 수리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신고제 전환에 따라 발생 가능한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부작용에 대비, 일정한 신고 수리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피규제자의 의견(신고제 전환)을 수용·반영한 점, 현행 승인제에 비해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시청자의 권익 향상 및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 등 사회적 편익 발생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신설 1)

심사내용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완화** 신설

- 기본적으로 이용약관 신고제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묶음상품 요금 등)에 한해 승인제를 유지하고 △이용약관이 신고시 갖춰야 할 요건 규정

심사결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이용약관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음에도, △부당하게 높은 부담이나 차별적 요금 등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他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해 경쟁을 해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규율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본 규제에 대해 별도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신고제와 함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는 등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신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 대상 품질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심사결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추후 평가 진행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할 예정인 점,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해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해외나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및 적용범위 마련** 신설

- 연구실별 위험도에 따른 시설·설비의 설치·운영기준 규정

심사결과 '연구실 및 종사자의 사고 예방'이라는 법 취지상, 연구실의 특성 및 위험도에 맞는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규정하는 등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주요 구조부, 안전설비·장비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만 규정하고 연구실별 위험도에 따라 준수사항을 상이하게 제시하여 현장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전기통신사업법 (신설 1)

심사내용 **대포폰 요건확대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명령** 신설

- 수사기관 등 요청시, 과기부장관이 통신사에게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심사결과 대포폰을 통해 이뤄지는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하는 만큼,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불법 대포폰 이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요구한 이해관계자(이동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규제가 마련된 점, 「정보통신망법」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소위 '스팸') 전송 등과 관련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방송통신위원회

집필자 김희재 사무관
Tel. 044-200-2420, kimheejae08@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등 총 9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2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하였으며, 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예비심사 (2020.03.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0.05.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방송법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방송법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7) 전기통신사업법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본위원회 (20.11.13)	부대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1, 비중요1)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위원회 (20.11.13)	개선권고 1, 부대권고 1	신설 2 (중요2)
계	-	개선권고 1, 부대권고 2, 원안의결 8	신설 10, 강화 1 (중요 3, 비중요 8)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매체영향력을 고려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강화

- ▲종편PP ▲보도PP ▲그외 방송사업매출액 400억 원 이상인 PP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상향(0.05 → 0.1%)

심사결과 공익광고 편성 확대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매체의 영향력 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한 점, 규제 비용은 미미한 반면 공익광고에 따른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본 규제 시행일을 유보(약 6개월)하여 침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요청 대상 및 방법 구체화** 신설

- (대상) 업무 및 경영상황 관련 장부·서류, 전산 자료 ·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으로 구체화(안 제10조의2 제1항)
- (방법)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제출요청 사유, 제출자료, 제출방식 등을 서면으로 통지(안 제10조의2 제2항)

심사결과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피규제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행정청의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방송법」 등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용·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단축 근거 신설** 신설

- 재허가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심사결과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을 위해 노력토록 하여, 재허가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효기간 단축 기간의 상한(2년)을

정하여 승인권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는 점, 「전파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에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단축(2년)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방송법 (신설 1)

심사내용 **정부기관의 협찬고지 요청시 이행의무 신설** 신설

- 정부기관 등(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 협찬을 제공하면서 협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이에 따르도록 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정부기관 등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협찬을 하더라도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관행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방송사업자에게 협찬고지가 요청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규제수준이 과도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방송법 (신설 1)

심사내용 **직권에 따른 조정** 신설

- 방송 유지·재개 명령(방송법 제91조의7)이 내려진 방송분쟁에 대해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

심사결과 본 규제는 사업자 간 분쟁으로 방송의 공급·송출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여 협상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 대상을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경우로 한정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였고, 조정은 당사자 수락으로 성립되는 바, 유사 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며, 침해되는 사업자 이익보다 국민의 시청권 보호편익이 더 크다는 유사판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신설 1)

심사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 등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신설

-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여부 사실관계 조사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자료 제출 요청에 응할 의무

심사결과 IPTV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유료방송사업자와의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입법인 「방송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여타 사업유형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방송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전기통신사업법 (신설 1)

심사내용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 시, 다시 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하루당 이행강제금 부과

심사결과 전기통신사업자의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한 심리적 강제 수단으로 작용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조사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가능한 만큼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이용자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편익이 확보되는 점, 「공정거래법」 등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신설

- (범위) 일반에 공개·유통되는 정보를 이용자간 상호 게재·공유하는 SNS,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 (조치) 정부 제공 기술 또는 방통위 지정 기관·단체가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금칙어 설정, 필터링 등)

심사결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선제적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로 인해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되어, 하위법령 또는 지침 마련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기준을 정립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신설

-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삭제요청에 대한 처리 의무 및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 사업자에 등록취소, 사업폐지,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의 기준 마련

심사결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규제 적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의무위반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 도입으로 얻는 사회적 편익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마련으로 발생하는 업체의 부담에 비해 큰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영국 등 해외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자의 범위** 신설

- 제출 의무자의 범위(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 규정

심사결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서비스 분류에 있어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만큼, 통상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상위법령에서 대강을 정하고 하위법령 또는 지침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규제 관련 하위법령 또는 지침 마련시 정의 명확화 등 기준을 정립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및 자격요건,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신설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교육이수 의무 부과에 따른 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의 범위, 자격요건 및 필수 교육이수 시간 등에 대해 규정

심사결과 규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의 범위 및 자격요건, 필수 교육 이수 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상 서비스 분류에 있어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대리인의 교육참여 허용으로 인해 본래 입법목적의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코로나19 감염 우려 및 해외업체의 유통방지책임자 교육 이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원격교육 포함'을 명시하고, 교육시간이 연 1회·2시간 이상에 불과한 점, 원격교육 허용시 책임자 본인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음 없이 참석 가능한 점, 대리인 교육 허용 의도와 달리 교육도입 취지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리인 교육 허용' 조항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3 원자력안전위원회

집필자 이지영 사무관
Tel. 044-200-2445, jjyy00@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원자력안전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총 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5)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31)	원안의결 4	강화 2, 신설 2 (비중요4)
계	-	원안의결 8	신설 3, 강화 5 (비중요 8)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핵물질 국제운송 운송방호계획 승인과 운송방호 검사** 신설

-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 또는 국제운송을 위탁 받은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물리적 방호계획 승인과 국제운송 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 신설
- 방호검사 결과 방호요건 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기술기준** 강화

- 방사선투과검사 대상물을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야외작업을 허용하되 야외 검사대상물이 두께 20mm 이하의 도시가스 배관 및 지역난방 배관인 경우에는 Se-75 2.22 TBq 이하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토록 기준 강화

심사결과 방사선안전관리구역 확보, 납 차폐체 설치 등 기술기준 준수율 제고를 위해 사용시설 이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시 작업 기술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검사대상물이 20m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규제강화로 비용이 일부 발생하나 방사선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 등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강화** 강화

- 방사선동위원소 등의 이용허가를 득한 허가사용자의 정기검사시 직전 정기검사를 자체점검(서면심사)로 갈음한 경우, 다음번 정기검사는 자체점검 갈음 제한

심사결과 방사선 허가사용자의 정기검사를 자체점검으로 갈음하는 경우 현장점검 없이 서면심사로만 정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방사선 안전성 제고를 위해 자체점검을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사례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정기검사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자체점검 제한으로 소요되는 규제비용이 일부 발생하나 방사선 안전 위협요소 조기 발견 등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강화** 강화

- 방사선기기 신고사용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기존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업무 경력자 중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자(1회 교육)에서 취급업무 경력자 중 선임일부터 매년 교육을 받은 자로 강화

심사결과 방사선기기 신고사용기관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사례인 방사선기기 허가사용기관의 규정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매년 교육이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방사선 사고 예방 및 신고사용기관의 기업리스크 감소 등의 편익이 기대되므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2, 신설 2)

심사내용 **방사선동위원소 판매 취급기준 강화** 강화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를 추가(기기에 붙이도록 제작된 사용방법, 주의·경고사항 및 사용 및 취급방법에 대한 교육자료)
- 판매자는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훈련 실시

심사결과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선기기 구매 사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판매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방사선기기 신고사용기관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안전관리를 위해 기기 등에 주의사항을 부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타법 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적고 6개월의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취급기준 강화** 강화

-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를 추가(기기에 붙이도록 제작된 사용방법, 주의·경고사항 및 사용 및 취급방법에 대한 교육자료)
- 판매자는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훈련 실시

심사결과 방사선발생장치 구매 사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판매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방사선기기 신고사용기관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안전관리를 위해 기기 등에 주의사항을 부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타법 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적고 6개월의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기기 취급기준** 신설

-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기기의 취급기준 마련
  △신고한 사용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방사선기기가 정상상태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방사선기기의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임의조작·훼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심사결과 방사선기기 사용신고기관이 기기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취급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방사선기기 신고사용기관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동 규칙에 규정된 방사성동위원소 중 밀봉선원 사용기준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6개월의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의무 규정** 신설

- 사용신고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의무 규정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방사선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 부여, △방사선작업 종사자에게 작업방법, 절차 및 방사선장해방지 등 교육, △사용신고기관의 방사선기기 사용기준 등 준수여부 확인

심사결과 방사선기기 신고사용기관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방사선기기 신고사용기관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기본적인 임무로 규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7절 노동·환경 분야

1 고용노동부

집필자 김진용 사무관
Tel. 044-200-2447, wisdom7784@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총 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예비심사 (2020.01.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예비심사 (2020.01.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예비심사 (2020.01.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0.03.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0.03.27)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3)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0.03.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0.03.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8)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예비심사 (2020.04.17)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9)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5)
(1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예비심사(202 0.06.1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11)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1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위원회 (2020.08.14)	원안의결 5	신설 5 (중요1, 비중요4)
(15) 고용보험법	본위원회 (2020.08.14)	원안의결 3	신설 3 (중요1, 비중요2)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0.08.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0.08.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8) 임금채권보장법	예비심사 (2020.08.2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3)
(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2)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2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0.10.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25) 고용보험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3)
(27)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예비심사 (2020.12.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9)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59	신설 44, 강화 15 (중요 2, 비중요 57)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이동식 크레인 등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마련** 강화

- 프레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건설용, 산업용, 이삿짐운반용), 고소작업대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프레스) 소음 측정기준 신설, △(이동식 크레인) 現 '크레인' 기준 적용 → 改 '재료, 하중의 종류, 풍하중 등'은 '크레인' 기준을 준용하고, '안정도, 드럼등의 직경 등'의 안전기준 신설, △(건설용 리프트) '승강로의 구조 및 지지방법' 안전기준 신설,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구조·안전조치 등'의 안전기준 강화 및 '운반구 수평, 화물의 낙화위험 등'의 기준 신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정도 시험 요건 신설,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임의해체 시 작업대가 작동하지 않도록 연동장치 기준 신설

심사결과 위험 기계·기구의 불법 개조·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근원적 안전성 확보하고, 인증기준 미비점 보완 등 산업용 기계·기구의 인증기준을 재정비하여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사후관리 강화** 신설

-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 정기평가, 수시평가 신설

심사결과 현행 규정 상 행정관청이 작업환경전문기관의 연구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작업환경전문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정받은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특례까지 적용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강화 1)

심사내용 **공정안전관리 대상사업장 차등관리 강화** 강화

- 'M-'등급 사업장의 점검 주기 강화(등급부여 후 1년에 1회 점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대상에서 '저유소, LNG, LPG저장소'를 제외하여 '일반사업장' 기준적용

심사결과 중대산업사고는 '안전운전절차 미흡, 작업허가절차 미흡' 등 인적원인(74.6%)이 주요 사고원인이므로, 'M-' 등급의 점검주기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의 '점검'은 근로자들이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작업 매뉴얼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점검인 반면, 타법상의 안전점검은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시설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으로서 중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규정** 신설

- 건설공사 도급인 및 수급인의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규정 마련

심사결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해외사례 등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공사** 신설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적용대상 '발주자 및 건설공사' 범위 신설. △(발주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 중 1건의 공사가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심사결과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도입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된 '발주자 및 건설공사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본 규제는 계약예규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며 타법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확대** 강화

- 퇴직공제의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 범위 확대 △(공공공사) 現 3억 원 → 改 1억 원 △ (민간공사) 現 100억 원 → 改 50억 원

심사결과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된

퇴직공제제도의 취지 고려 시,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됨.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건축을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점 등의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제부금 일액범위 확대** 강화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금액 확대(現 1일 '1천 원 이상 5천 원 이하' → 改 1일 '5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

심사결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제부금 일액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됨. 공제부금 일액 범위에 대한 노사간 이견 가능성 등을 감안, 노사정 협의(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TF)를 통해 도출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의무적용 사업주, 대상 등** 강화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적용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 △(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 중 정년, 경영상 사유 등 비자발적 이직예정 근로자 △(서비스 제공내용)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중 하나 이상 △(서비스 제공시기)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다만,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

심사결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재취업 지원은 퇴직(예정)자가 원하는 경력목표(재취업 또는 창업)에 구체적 도움을 제공하고, 고령인구 노동시장의 능력을 개선하며,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매개하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 중 하나임.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연공급 임금체계 비율이 높아 조기퇴직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별표 1'의 '2.개별기준' 중 '나. 마. 바. 사'의 위반사항을 '1년 이내'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現 '훈련정지 2~6개월' → 改 '지정취소'

심사결과 승인내용과 다르게 훈련시설을 부실운영,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훈련생의 피해 등에 대해 적실성 있게 처리하고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인정됨. 현행 제재기준의 불균형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신설 4)

심사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위탁기관 등의 요건 신설

- 업주가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위탁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의 인력과 시설에 관한 기준 설정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위탁기관의 요건
진로설계 또는 취업알선	① 직업·진로상담 분야에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직업·진로상담 분야에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을 것 ② 개인별 상담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교육·훈련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을 것

심사결과 재취업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 보유자를 갖추도록 하고, 진로설계·상담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 미제공자의 사실 확인 자료보관 신설

- 사업주가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2년간 보관

심사결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일정기간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보관기간 2년은 타법 등과 비교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기준 신설

- 사업주가 이직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의 유형별(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 내용 및 제공일수·시간 등 기준 설정

심사결과 사업주의 서비스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영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주가 상황에 맞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보고** 신설

-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을 다음 연도 3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제도의 형해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도 이행률을 높이고 의무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신설 5)

심사내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결격사유 및 인증취소** 신설

- △(인증) 시설, 인력, 운영실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부로부터 인증,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 인증 불가, (휴·폐업) 제공기관은 휴·폐업 시 고용부에 신고, △(인증취소) 인증요건 미부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7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공기관 사업주의 책무** 신설

- △제공기관은 인증사실 및 가사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 의무, △이용자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이용자와 근로자의 불편 사항 개선 등 의무 부과, △제공기관은 고용부장관이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 제출 요청 시 지체 없이 제공 의무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7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준수사항** 신설

- △이용자와 제공기관간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이용자의 가사서비스 이용권 활용 및 환전 등과 관련하여 제공기관의 금지사항 등을 규정,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임금, 연차유급휴가 및 입주 가사근로자 특례 등 근로조건을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7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 △이용자와 제공기관간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이용자의 가사서비스 이용권 활용 및 환전 등과 관련하여 제공기관의 금지사항 등을 규정,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임금, 연차유급휴가 및 입주 가사근로자 특례 등 근로조건을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7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공기관 평가 및 감독** 신설

- △제공기관 사업주는 평가를 위한 운영 실적 등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고용부장관에게 제출, △고용부장관은 필요 시 제공기관출입, 서류검사,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7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고용보호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고용장려금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강화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과금(추가징수액) 기준 상향

기 준		현 행	개정안
근무 사실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기준 없음	5배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횟수			
	0회	2배	2배
	1회	3배	5배
	2회 이상	5배	5배

심사결과 부정 수급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한 차별성 있는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됨. 고의성이 있는 경우 및 위반이 반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제 수준(2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비교해 볼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강화

-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과금(추가징수액)을 현행 1배에서 10년간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차등징수하는 것으로 상향

심사결과 부정 수급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제재부과금(추가 징수금)을 가중할 필요성이 인정됨. 해외사례 및 타법과 비교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방문판매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기준** 신설

- 산재보험 적용되는 방문판매원의 기준

상시 방문판매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월 소득 521,700원 이상인 경우 ② 월 종사일수 18일 이상인 경우
③ 방문판매업자(사업주)가 상시 방문판매원으로 인정·노무제공신고를 한 경우

심사결과 '19년 산보법 시행령 개정 당시, 방문판매업종을 타 업종과 같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학습기업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신설

-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정취소			
• 지정 요건에 미달된 경우				
1)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지정취소
2)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지1년	정지2년	
3)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지6월	정지1년	
4) 시설·장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지3월	정지6월	

심사결과 일학습병행의 지정·인정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이나 제도운영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정·인정을 받거나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지정·인정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함. 경미한 사항위반에 대해 처분권자가 먼저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학습기업은 그 사항의 시정이 어렵지 아니한 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아니할 때 위반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일학습병행 과정 인정취소 등 세부기준** 신설

-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인정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	인정취소			
•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 실시				
1)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을 위반	인정취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 등 중요사항 위반	인정취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3) 그 밖에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	시정명령	정지6월	정지1년	인정취소
•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1) 자료 미제출	시정명령	정지1월	정지3월	정지6월
2) 거짓자료 제출	시정명령	정지6월	정지1년	인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근로자 평가하는 등 부정하게 이수처리	인정취소			

심사결과 일학습병행의 지정·인정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이나 제도운영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정·인정을 받거나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지정·인정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함. 경미한 사항위반에 대해 처분권자가 먼저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학습기업은 그 사항의 시정이 어렵지 아니한 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아니할 때 위반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신설

-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 지정 요건에 미달된 경우	정지6월	정지1년	정지2년	지정취소
• 거짓 자료의 제출, 운영성과 등이 미흡한 경우				
1) 거짓 자료의 제출	정지1월	정지3월	정지6월	정지1년
2) 운영 성과 미흡	성과평가 결과 최하등급이 5년간 3회 또는 2년 연속일 경우 지정취소			

심사결과 일학습병행의 지정·인정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이나 제도운영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정·인정을 받거나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지정·인정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함. 경미한 사항위반에 대해 처분권자가 먼저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학습기업은 그 사항의 시정이 어렵지 아니한 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아니할 때 위반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서류의 보존** 신설

-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규정(출석부, 회계장부, 위탁계약서 등)

심사결과 일학습병행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실효성 확보와 부정훈련 및 부정수급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보존이 필요함. 보존대상 서류는 일학습병행 운영과정에서 생산되는 서류로 부정훈련 및 부정수급 등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견**

(1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학습기업 경영기준 및 지정기준 규정** 신설

- 학습기업의 경영기준 및 지정요건

경영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용등급 이상
지정 요건	①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 아닐 것 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일 것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⑥ 기업현장교사를 1인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계획을 갖고 있을 것 ⑦ 행정지원 담당자를 1인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계획을 갖고 있을 것 ⑧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등

심사결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학습기업 지정기준과 유사한 점, 학습기업 지정기준은 실질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점, 학습근로자의 보호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업현장교사의 지정요건** 신설

- 학습기업의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 및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규정(일학습병행 개요,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실시 및 평가방법, 교수 기법의 이해 등)

기업현장교사의 요건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②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④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⑥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심사결과 기업현장교사는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을 주도하고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운영에 중요 참여 주체이므로 일정 수준의 학력·경력·자격증 보유 등을 요건으로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타법에서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훈련의 조건 신설

-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학습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조건(기업 내 교육훈련시설·장비의 확보 및 개선, 내부평가 절차 및 방법의 공정한 운영)

심사결과 기업 내 교육훈련시설·장비의 확보는 학습기업의 지정요건이자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부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원금 환수 및 추가징수 신설

- 일학습병행제 관련,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에 대해 그 지원금 환수 이외에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규정

심사결과 학습기업 사업주 등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제재 수단이 필요하여, 타법 사례와 비교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신설 5)

심사내용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신설

- 근로자 아닌 노무제공자를 예술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하되, 그 적용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심사결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노무제공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 시 생계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당연 적용이 아닐 경우 사업주의 기피로 가입률이 낮아 제도가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고용보험은 산재와 달리 민간보험 등 대체상품이 없는 점,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의결**

심사내용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의 자료 등 제공·신고 및 보관의무** 신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의 사업주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플랫폼의 사업주가 그 플랫폼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그 계약내용 등을 공단에 신고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고용부(또는 공단)의 보험관련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에 협조할 의무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특고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보존할 의무

심사결과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징수 등 보험사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플랫폼사업주의 관련자료 제공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무 등** 신설

- 보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사업주 부담분과 노무제공자 부담부분) 납부 의무(원천공제)
- 고용보험료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체납된 경우 플랫폼 사업주에게 체납처분(강제징수) 가능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보험관리업무 대행계약의 개시 또는 종료사실을 공단에 신고

심사결과 본 규제는 보험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의 자율적 선택하에 보험료 납부의무 등이 부여되는 것이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따른 정부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설

- 특고 고용보험료 관련 고액·상습 체납자(보험료 등 체납총액이 10억 원 이상)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 등 공개 가능

심사결과 특고가 근로자·예술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됨에 따라 보험료의 체납(고액·상습)에 대해 동일한 행정재제가 필요하고, 타법사례와 비교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무 등 신설

-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및 소멸 신고 의무,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인적사항 및 휴직·전보 등의 사실,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 현황, 보험관리업무대행계약 현황 등의 신고 의무, △고용부장관 또는 공단의 보험 관련 조사 및 보고·관계서류 제출 또는 출석 요구에 협조할 의무

심사결과 보험가입자의 각종 신고의무 등은 보험운영을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근로자·예술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규제 적정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고용보험법 (신설 3)

심사내용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신설

- 근로자 아닌 노무제공자를 예술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하되, 그 적용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심사결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노무제공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 시 생계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당연 적용이 아닐 경우 사업주의 기피로 가입률이 낮아 제도가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고용보험은 산재와 달리 민간보험 등 대체상품이 없는 점,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의결**

심사내용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의 자료 등 제공·신고 및 보관의무** 신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의 사업주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플랫폼의 사업주가 그 플랫폼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그 계약내용 등을 공단에 신고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고용부(또는 공단)의 보험관련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에 협조할 의무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특고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보존할 의무

심사결과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징수 등 보험사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플랫폼사업주의 관련자료 제공 등의 협조가 필요함.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자의 보험운영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주의 관련 자료가 필수적이고, 제공하기 어려운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무 등** 신설

-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및 소멸 신고 의무,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인적사항 및 휴직·전보 등의 사실,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 현황, 보험관리업무대행계약 현황 등의 신고 의무, △고용부장관 또는 공단의 보험 관련 조사 및 보고·관계서류 제출 또는 출석 요구에 협조할 의무

심사결과 보험가입자의 각종 신고의무 등은 보험운영을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근로자·예술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규제 적정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 위반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신설

- 직업훈련기관이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제재기준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	처분내용
100만 원 미만	인정취소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인정취소와 3개월 동안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인정취소와 6개월 동안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인정취소와 1년 동안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2천만 원 이상	인정취소와 2년 동안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심사결과 법의 위임에 따라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구체적 제재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위반행위(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지원받은 경우 등)와 동일한 수준에 해당하므로 규제 적정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명단 공표의 내용 및 기준** 신설

- 명단공표의 대상인 부정 직업훈련기관의 '명단공표의 내용' 및 '공표 방법·기간, 명단공표 대상 기준(부정수급액을 '3천만 원 이상') 규정

명단공표의 내용	공표 방법	기간
• 훈련기관의 명칭·주소 • 대표자의 성명·나이(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등록번호·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나이) • 위반 행위(3년 이내의 처분내역 포함) • 행정처분의 내용 등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기술교육대학 홈페이지, 기타 공공장소에 게시	1년간

심사결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명단공표의 기준(부정수급액 3,000만 원 이상)은 현재의 훈련기관 위탁 취소·제한 조치기준 상한(부정수급액 2,000만 원 이상)보다 높아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되고, 명단공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임금채권보장법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처분 절차, 보전압류 및 납기 전 징수 제도** 신설

-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변제금 회수시, 사업주의 재산압류 및 납부기한 전 징수, 강제징수 제도 도입

심사결과 채권의 발생원인(공법상 또는 사법상)을 불문하고 그 (급부)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수단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현행 법제는 임금채권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고, 유사입법례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당금 등 부정수급시 제재 강화** 강화

-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 환수금액을 '체당금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체당금의 5배 이하'로 상향

심사결과 체당금 제도 확대 등에 따라 부정수급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금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금을 상향할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는 정부의 부정수급 관리 정책에 맞춘 형평성 있는 제재수준으로, 유사사례와 비교 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 및 수강 제한** 신설

-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으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관련 지원·융자의 제한 등 행정제재 세부기준

경제적 이익 등 제공받은 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수강 및 지원·융자의 제한기간
100만 원 미만	1개월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개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6개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1년
2천만 원 이상	2년

심사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금액의 다소(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재제기준의 차등은 타당하고, 제재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감경기준을 마련한 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위탁제한)과 동일한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신설

- 노동위원회가 동법 상 차별적 처우 등(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조치 의무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때,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본 규제절차는 이미 다른 근로자(기간제·파견근로자 등)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절차(재심, 행정소송)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및 분할 횟수 미차감** 강화

-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심사결과 현행 육아휴직 사용기간(1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행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와 비교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채용시에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의 요구 금지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근로자"로 확대** 강화

-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요구의 금지 대상을 '남성'근로자도 포함

심사결과 동법에서 동 조항 외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여성 근로자'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한 조항은 없으며, 타법에서도 남녀 구분 없이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신설

-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기준(시행규칙 위임)을 갖춘 강사를 활용해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심사결과 사내강사 요건(2일 15시간 기본과정 이수로 운영할 예정)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발생, 기업의 인력상황(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신설 3)

심사내용 **학습기업 지정기준** 신설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의 지정요건
  1) (상시근로자수) 단독기업형은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2) (기업신용등급) 최하위의 두 번 째 등급 이상

심사결과 일학습병행의 운영을 위해서는 학습교사 및 운영담당자 지정,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함. 또한 고등학생 등 재학생도 참여하므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학습기업 지정기준과 동일한 점, 학습기업 지정은 실질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점, 제도 활성화 및 학습근로자의 보호 등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학습기업의 지정취소 사유** 신설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의 지정취소 사유
  1) (임금체불) 3년 기간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2)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심사결과 일학습병행에는 고등학생 등 재학생도 참여하여 장기간(1년이상) 사업현장에서 도제식 훈련이 실시되는 바, 학습근로자에 대한 보호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 등의 사유** 신설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1) 훈련실적 및 학습근로자 출결데이터 허위 입력
  2) 성과평가, 회계정산 실시를 위한 자료 허위 제출
  3) 성과평가 결과 매 5년간 3회 또는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심사결과 '거짓자료'의 범위가 훈련센터의 평가·지원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자료에 해당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취소기준과 동일하므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 신설

-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중 전자카드를 발급·사용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공공발주 1억 원 이상 공사, 민간발주 50억 원 이상 공사 등)

심사결과 본 규제 안은, 공공발주공사 대상 시범사업('18.7~) 등을 통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대형 건설공사(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전자카드 적용 범위·시기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을 고려하여 마련한 바,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 추가(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비공개 제외 화학물질)

심사결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화평법상의 공개 대상물질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 해당하고 이를 MSDS에 공개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장진단 실시의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체자료 기재 승인에 관한 기준** 신설

- 대체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대체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자료(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및 그 판단기준, △대체자료의 적합성(대체명칭의 명명법, 대체함유량의 범위) 판단기준 마련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20.4.24) 및 산재보상예방심의위원회('20.4.29)의 심의·의결을 통해 본 규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의 기준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동일하며, 환경부의 '총칭명'의 명명방법을 준용하고 있는 점,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신설

-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 범위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

심사결과 적용대상을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과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에 한해 적용되는 바, 법의 보호대상(예술인), 보호활동의 범위(문화예술)로 규정한 것은 관련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계약해지 등 처분** 신설

- 직업능력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또는 인정취소) 가능하도록 신설

심사결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위탁계약 해지'라는 제재수단의 도입 필요성이 높고, 계약 해지 전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타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 강화** 강화

-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심사결과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고 있어, 부정수급의 근절 및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위해 제제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타법 사례와 비교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액 한도 상향** 강화

-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부정수급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에서 5배 이하로 강화

심사결과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고 있어, 부정수급의 근절 및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위해 제제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타법 사례와 비교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신설 1)

심사내용 **교·강사의 보수교육별 이수시간** 신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개정('20. 10. 1.시행)으로 직업훈련 교·강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수교육별 이수 시간을 규정

심사결과 훈련 교·강사의 질은 직업훈련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훈련의 교수법 등이 필요한 상황임. 일정 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고, 교육훈련의 참여 시간이 적은 교·강사는 기본교육을 면제(연간 15일 또는 140시간 이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강화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소프트웨어기술자'를 포함

심사결과 SW 프리랜서 대다수는 발주자(원청) 또는 고용업체가 지정한 장소(특정 사무실) 및 시간에 근무하고,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노무 종속성이 있음. 또한, 업무상 재해의 위험(특히 업무상 질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보호의 필요성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강화 1)

심사내용 **공동훈련센터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강화

-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사유 추가(훈련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등

공동훈련센터로 컨소시엄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포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방법 등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지원에 따른 훈련실적을 담보하기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규제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환경부

집필자 신용현 사무관
Tel. 044-200-2443, trustyonghyun@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하수도법 등 총 69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4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8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14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3)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5)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0.01.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본심사 (2020.02.28)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3 (중요 2, 비중요 2)
(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본심사 (2020.02.28)	원안의결 6	신설 2, 강화 4 (중요 1, 비중요 5)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0)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4 (비중요 5)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6)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0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18)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04.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1)	원안의결 8	강화 8 (비중요 8)
(2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8)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05.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3)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4) 하수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6.12)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5) 환경보건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의 품목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0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심사 (2020.07.13)	원안의결 12	신설 3, 강화 9 (중요 1, 비중요 11)
(40)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1)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3)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저탄소제품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0.08.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1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46)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제정안	예비심사 (2020.09.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1)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1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54)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26)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55)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2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5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5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6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61)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2) 악취방지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2)
(6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68)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47	신설 74, 강화 74 (중요 4, 비중요 144)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가축분뇨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TOC 도입** 강화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TOC(총유기탄소) 기준을 도입하고,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도 TOC 도입

심사결과 TOC 도입을 통한 난분해성유기물 관리 강화로 전환되고 있는 물환경정책의 통합성을 위해 가축분뇨정화시설에도 TOC 기준을 도입하는 사항으로 하·폐수 처리시설에 TOC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도 개정한 점과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수용성을 확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재실시** 신설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 제1항 후단에서 위임받은 사항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구조, 재료, 운영조건이 변경되면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재실시 대상을 구체화하여 법률 이행대상의 혼란 방지 및 집행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해외사례(미국, 독일 등에서도 비점오염시설 성능검사를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인증)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항목 및 기준** 신설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기술적 타당성, 성능시험 결과,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성능검사 항목을 기술적 타당성, 성능(제거효율), 유지관리 적절성 등 필수 항목으로 규정하였고, 규제도입 비용과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며, 해외사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총유기탄소(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 규정** 강화

- 현행 COD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부과금액을 COD/TOC 전환비율(1.8)에 따라 TOC 기준 금액으로 변경하여 설정(450원/kg)

심사결과 COD는 분석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산화율이 높고,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관리지표를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에서도 COD 부과기준을

TOC 기준으로 변환시킨 사항이므로 유사입법례에 비해서도 과도하지 않으며,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제지펄프 및 전자부품 제조업 시설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신설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서 위임하는 1~3차년도 업종(발전, 증기, 소각 등 업종)에 대한 시설 설치·관리기준을 4차년도 업종(제지·펄프, 전자부품)에 확대

심사결과 기존의 매체별 환경법령(대기-대기환경보전법, 수질-물환경보전법, 폐기물-폐기물관리법 등)의 배출허용기준 및 준수사항은 매체별 특성만을 고려한 규정으로 인해 규제의 복잡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를 업종별 기술작업반 협의(펄프·종이, 전자부품) 및 현황조사·자문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통합관리법에 기준을 수립하였고, 중복적인 의무부과가 없도록 하여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으며, 각종 영향평가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지펄프 및 전자부품 제조업 오염물질 측정·조사기준** 강화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서 위임하는 1~3차년도 업종(발전, 증기, 소각 등 업종)에 대한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기준에 4차년도 업종(제지·펄프, 전자부품)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심사결과 사업장 허가 시에 부여되는 배출기준, 저감계획 등의 허가 사항에 대한 이행 관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일관된 방법에 따라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통합적인 오염물질 측정·조사기준을 중복적인 의무부과가 없도록 합리화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지펄프 및 전자부품 제조업 최대배출 기준** 강화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서 위임하는 1-3차년도 업종(발전, 증기, 소각 등 업종)에 대한 현행 최대배출기준에 4차년도 업종(제지·펄프, 전자부품)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심사결과 '17.1.1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는 업종별로 환경관리 노력 범위를 정하여, 적정 노력을 기울였을 때 준수할 수 있는 배출기준을 부여하여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환경관리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기술작업반 협의('19.1~'19.6, 펄프·종이, 전자부품) 및 현황조사·자문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진행하였으며,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증기, 1차 철강 업종 최대배출기준 유기물관리지표 전환** 강화

- 전기·증기, 1차 철강업종의 최대배출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

심사결과 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의 측정지표인 COD가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기물 관리를 위해 분석시간이 짧고 산화율이 높으며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에 적합한 TOC로 지표를 전환하는 사항이며, COD를 근거로 설정되어 있던 최대배출기준을 600여개 사업장의 배출실태 분석으로 도출한 비율(1.8)에 따라 TOC의 최대배출기준으로 전환하였고, 물환경보전법상 환경관리와 일관성 있으며 기술영향평가의 의견을 수용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도안 및 기준, 방법 설정** 신설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재활용 어려움, 보통, 우수, 최우수 중 1가지로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기토록 함

심사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엔 평가결과를 표기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포장재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 선택 유도토록 하는 사항으로 행정예고 기간에 제기된 생산자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최소 문구 크기를 4mm에서 2mm로 축소하고, 표시 위치를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서 상단 또는 하단으로 변경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강화

-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학교도서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키즈카페에 대해서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

심사결과 철저한 사전예방원칙에 기초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관리받고 있지 않던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하여 법정기준을 준수하는 규제가 필요하며, 유사한 시설에서 이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견수렴을 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대기관리권역의 설정 강화

-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설정하여,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심사결과 수도권 특별법에 비해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로 중대형 사업장 대상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시행 및 노후 경유차량 관리 강화 등의 확대시행으로 인한 피규제자의 수를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하였고, 대기관리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설정한 것으로 규제지역 설정과 규제 효과성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본위원회에서 원안 동의**

심사내용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이 되는 배출량 기준 강화

- 총량관리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배출량 기준을 대기관리권역 내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설정

심사결과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을 기존 수도권대기법과 동일하게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TMS : Tele-Monitoring System)의 부착 및 측정결과의 보존 강화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배출구의 규제비용 대비 관리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배출구는 제외

심사결과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신규 부착 대상 배출구가 다수 존재하며 대당 설치 비용이 1억 원을 상회하여 연간균등순비용을 고려하여 **중요규제로 검토**. 일정 배출량 이하 배출구까지 TMS 부착을 의무화하여 확보되는 규제 실익(배출량의 실시간 확인 등)에 비해 사업장이 부담하는 설치비와 운영비 등이 과중한 점 및 설치와 전체 공정상의 안전·기술적 요인과

국내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위원회에서** 3종이하 배출구에 대해 다음 일몰기한까지 부착을 유예하고 향후 TMS 부착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소규모 배출권의 규제** 신설

- 생활 주변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규제할 수 있는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 명령의 범위(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를 규정

심사결과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배출원에 대해 시·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입법예고시 제기된 의견 및 기술영향평가 참고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4)

심사내용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강화

- 기존의 수도권 총량제에서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농도를 바탕으로 배출시설별로 공정, 배출농도, 예상 삭감량, 방지시설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설정

심사결과 총량관리사업자에게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운영 투자 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므로 **중요규제로 검토**하였으며, 기존 수도권 총량제에서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농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술수준,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한 바 **본위원회에서 원안 동의**

심사내용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절차 및 산정방법** 강화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시 그 해로부터 향후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데 할당방법은 기존 수도권대기법의 방법을 준용하되,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새롭게 총량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기 연도 할당량을 최근 배출량 수준으로 함

심사결과 기존 수도권대기법과 동일한 할당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적용의 연속성을 확보하였고, 추가적으로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신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초기 연도 부담을 완화하도록 설계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강화

-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하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권역별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의 대기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권역 내 배출허용총량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권역 내 총량관리사업자 간 동일 물질의 이전만 허용

심사결과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자가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여 연도별로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수도권대기법에 준하는 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특정경유차량(5등급 차량)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장치 부착 등을 유도

심사결과 기존 수도권대기법과 동일하게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연간균등순비용이 기준 이하인 점과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참고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에서 특정건설기계의 사용제한** 신설

- 대기관리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

심사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조치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사용제한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한 경우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제한 적용을 유예하도록 변경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및 신청방법** 신설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신청절차를 규정

심사결과 인증기준 및 방식을 기존의 환경표지대상제품과 유사하게 설계하고,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 점과 기술규제영향평가 참고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위임사항인 TMS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방법을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으로 정함

심사결과 TMS 부착된 사업장들이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 자료가 30분 평균치인 점, 실시간 공개의 구체적 방법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산정기준과 부합하는 점,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법 적용대상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 추가 및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강화

-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함께, 어린이집 중 현행 관리대상에 누락되어 있던 가정·협동어린이집을 포함. 또한,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군을 명시하고, 엄격한 유지기준 설정대상 물질을 규정

심사결과 가정·협동어린이집 및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추가는 연면적 기준이 현행법상 이미 관리 중인 국공립·직장·민간·법인어린이집에 대한 것과 동일한 기준(430제곱미터)이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하고,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강화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대행입력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마련(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3월, 4차 영업정지 6월 등)

심사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유사입법례와 동법 유사사례에 대한 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신설 1)

심사내용 **입지제한 지역에 입주한 수용성절삭유 폐수배출시설 이전 등 시설 설치자 준수사항 이행** 신설

-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에 대해 폐쇄명령 등 제재처분 대신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시로 '수용성절삭유 설치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산단 내 입주시설은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산단 밖 개별 입주시설은 시기를 차등화하여 이전 기한 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개정 고시안 마련 과정에서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행법상 폐쇄하는 방법이 있으나 지역 경제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사익 침해가 심각하여 대안으로 고려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수용성 절삭유가 아닌 지용성 절삭유를 사용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4)

심사내용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추가** 강화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

심사결과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기준 및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가측정방식의 대행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저공해 조치대상에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추가** 강화

- 법률에서 위임한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에 기존 대상인 자동차 외에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를 추가하여 정의

심사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위임에 따라 저공해 조치대상 건설기계를 정하는 내용으로 규제대상이 노후 지게차·굴착기로 특정되며, 유사입법례(자동차)와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부여** 신설

-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가측정을 수행하되, 그간 자가측정을 하지 않던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시설에도 기존 배출시설과 같이 자가측정을 의무화(연 1회 이상)하여 관리 강화

심사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에 따라 자가측정 연1회 측정을 의무화하는 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과 중기영향평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을 유예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농업기계 원동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강화

- 향후 국내에 신규 제작·수입되는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입자상물질(PM) 기준을 현행 대비 2배 강화하고, 직접 흡입시 인체 위해성이 큰 입자개수(PN) 기준을 새로 도입)으로 강화

심사결과 해외에서도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건설·농업기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대기오염물질 관리 중이며, 출고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중기·기술영향평가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강화

- 거짓 또는 부정한 인증, 장치결함, 검사불합격 등 인증위반 사항에 대하여 위반 차수에 따른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

심사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유사 위반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강화 1)

심사내용 **생태계교란 생물 추가 지정** 강화

-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등 5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도·보관·운반 또는 유통 금지

심사결과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왕우렁이'를 제외한 점과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신설

-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2개 물질에 대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초미세먼지(PM2.5) 50㎍/㎥, 이산화탄소 2,000-2,500ppm)설정

심사결과 현행 일반시설의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권고기준 및 WHO 잠정목표2와 동일한 점,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신설

- 지하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규정

심사결과 지하역사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규제도입 비용이 과도하지 않고,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신설

-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보유한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대해 매년 1회 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2개 물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운송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규제도입 비용이 과도하지 않고, 유사사례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의무에 비해 완화되었으며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강화 1)

심사내용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강화** 강화

- 국제(EU) 및 국내(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원소 기준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신발, 가방, 장식용 합성가죽 등 인체접촉제품 3개 제품군 유해원소 함량 시험항목(프탈레이트, 구리, 코발트 등) 신설 및 기준 강화

심사결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는 것이 제조업체의 선택사항인 점, 연간균등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신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개 품목 신규 지정(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및 품목별 안전기준 신설

심사결과 신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에 따른 연간균등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과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과 공연용 포그액에 관한 산업계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필터형(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의 제형(분사형) 명확화** 강화

- 필터형(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의 제형을 분사형으로 구분하여 분사형 제품에 공통적으로 금지하는 CMIT 등 5종을 필터형에도 사용 금지

심사결과 현재 금지대상물질을 필터 제조에 사용하는 업체가 없어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이 없으며,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점이 분사형과 유사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발물질을 필터형에 함유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종 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세정제 등 5개 품목에 함유금지물질(미세플라스틱) 추가** 강화

-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5개 품목의 품목별 안전기준 중 함유금지물질에 '미세플라스틱' 추가

심사결과 규제도입에 따른 비용은 대체물질 사용이 가능하여 발생하지 않고, 관리대상 품목의 범위, 미세플라스틱의 정의에 관한 산업계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각종 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유입주의 생물 지정 (강화 1)

심사내용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 강화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수입·반입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심사결과 유입주의 생물 100종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유사입법례나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검사** 신설

- 인증을 받은 후 1년이 지났거나, 소비자단체 등이 상당한 사유를 붙여 검사를 요청하는 등 기준위반이 의심되는 제품 등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판매업소·제조공장·물류창고 등에서 수거, 구입 또는 임차하여 인증검사 실시

심사결과 가정용 보일러 제조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평균 94개의 모델에 대한 규제도입 비용이 과도하지 않고, 유사사례(전수검사)에 비해 완화되었으며 기술영향평가 의견을 전부 수용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신설

- 수집·운반업, 처분업과 재활용업 모두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하면서 5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의 경우 그 기간을 2년간 연장함

심사결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적합성 확인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일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기간을 설정하고, 중기영향평가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강화

- 개정된 법률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수준을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

심사결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결격사유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일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기준을 설정하고, 중기영향평가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 강화

-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반입허가 제한

심사결과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신설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검사업무에 필요한 장비, 인력, 시설, 업무규정(업무절차·방법, 업무 사후관리, 검사수수료 및 징수방법, 검사원 준수사항·관리감독방법 등)을 갖추도록 함

심사결과 개정된 빛공해방지법에서 시행규칙으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인력·장비 등 기준이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빛공해 검사방법** 신설

- 빛공해 검사방법으로 타법령(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심사결과 개정된 빛공해방지법에서 시행규칙으로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미 공인된 환경분야 시험·검사기준을 따르도록 준용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 업무 추진시 지켜야 할 사항(결과보존 의무, 보고의무 등)을 규정

심사결과 개정된 빛공해방지법에서 시행규칙으로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다수의 위반행위 적발 시 처분 기준, 동일사유 발생으로 횟수 가중 시 기간 설정 기준 등 행정처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심사결과 개정된 빛공해방지법에서 시행규칙으로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유사 행정처분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8)

심사내용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강화** 강화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위탁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위탁 후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세부 방법을 규정

심사결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환경부령으로 폐기물배출자의 의무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피규제대상을 축소한 점과 일본·영국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의무를 설정하고 입법예고안에 비해 규제를 완화한 점을 인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 확대** 강화

- 올바로시스템의 입력대상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사진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및 장부기록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부여

심사결과 입력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과 일본·대만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의무를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조건** 강화

-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벌금 2천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것,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허가기준을 충족할 것 등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

심사결과 피규제대상을 축소한 점과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의무를 설정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강화

- 허가취소자등과 관계를 맺어 불법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를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로 규정

심사결과 피규제대상을 최소화한 점과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의무를 설정한 점, 각종 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허가** 강화

-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관련 사전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사전허가'의 경우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타 법령에 일반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여 제출자료를 규정

심사결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유사 입법례 및 일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의무를 설정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반입정지명령** 강화

- 폐기물처리업자가 법령상 규정된 폐기물 허용 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반입정지명령 대상으로 규정하되,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허용 보관량 기준 이하로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 반입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환경부령으로 반입정지명령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허용 보관량에 대한 규제수준이 적정하고 규제순응도를 확보한 점과 예외사유를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강화

- 행정청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 사유,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조치명령대상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상세 사항을 명시한 조치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환경부령으로 조치명령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위임하고 있으며, 일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의무를 설정하고, 각종 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반사항별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

심사결과 신설·조정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이 폐기물관리법 내 기존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 및 유사입법례, 해외사례 등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으며 각종 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신설

- 고시(안) 제8조제1항제8호(안전기준 적용 예외)에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추가하여 제품을 수입·제조시 화학물질 정보, 제품 유해성, 효과·효능 등 자료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승인 받은 후 제품을 소비자에게 유통하도록 함

심사결과 위해성 평가 결과 및 전문가 검토 결과 일부 물질의 위해우려 수준이 높은 점과 사전예방차원에서 승인된 제품에 한하여 시장에 유통되도록 설정하는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법 제34조의7제7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차수에 따라 경고, 지정취소 등으로 규정

심사결과 행정처분기준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유사사례 및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강화

-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중에서 발열량, 염소, 수은, 황분의 4가지 품질기준항목별로 기존 품질검사 데이터분석을 기반으로 품질의 차별화가 가능한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품질기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품질등급기준과 비교하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을 판정)

심사결과 법률에서 위임한 등급제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며 기존 검사제도에서 실시하는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없도록 설계한 점과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자가측정 결과의 제출** 신설

- 대기배출사업자는 자가측정한 결과를 매 반기별로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기존에 결과 보존 의무가 부여된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조작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제출주기를 반기에 1회로 규정하여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한 점과 중기영향평가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강화

-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결과를 누락, 조작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조업정지에서 허가취소 또는 폐쇄까지 처분 조치

심사결과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연관성이 있는 처분 기준을 인용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강화 1)

심사내용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강화

- 아르헨티나개미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학술연구 및 그 밖의 교육, 전시 등 목적일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아르헨티나개미(Linepithema humile)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생태계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규제가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신설 1)

심사내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신설

- 라쿤 1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 규정 (수입·반입 제한 및 방출·유기 금지)

심사결과 라쿤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생태계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규제가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수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절수설비 구조 및 규격 기준 마련 신설

- 대변기의 물탱크 내부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 조절용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선을 표시하고,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6리터를 초과할 수 없게 제작하되, 변기막힘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

심사결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중인 해외 사례(호주, 미국 등)에서도 '00년 이후 절수기준이 도입된 대부분 국가는 6L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예외를 인정한 점과 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폐기물 분류 및 처리시설 종류에 수은폐기물과 수은회수시설을 추가 신설

- 수은폐기물을 수은함유폐기물(폐램프, 폐계측기기, 폐전지 등),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회수한 수은 및 그 화합물에 한정),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및 폐형광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 등)로 구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재활용 시설에 “수은회수시설” 분류 신설

심사결과 유사 제도를 도입중인 해외사례(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은 용출(함량)기준을 사용하여 수은폐기물 분류·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본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함량기준을 삭제하되 수은구성폐기물의 범위를 명확화한 점과 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수은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규정 및 구체적 처리방법 명시** 신설

-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에 수은폐기물을 추가하고, 수은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관, 수집·운반, 처분방법 등 규정

심사결과 바젤협약의 수은폐기물 친환경적 처리 기술지침서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로 미국·일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활용 기준을 신설한 점과 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을 협의·설명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은폐기물의 시설기준, 처리업체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마련** 신설

-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수은회수시설을 이용한 수은폐기물 재활용업을 추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규정 등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

심사결과 바젤협약의 ‘수은폐기물 친환경적 처리 기술지침서’에 준하는 규제수준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설기준을 수정한 점과 기술·중기영향평가 결과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대기환경보전법 (신설 1)

심사내용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 강화

- 대기법 제50조의 법령 구조를 준용하여,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어 정부가 결함시정을 명함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계획서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시 환불·교체·재매입 명령 근거 신설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기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하수도법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배수설비 폐쇄 등 신고의무** 신설

- 건물주 등이 배수설비를 폐쇄, 사용중지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토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하수도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기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고·검사** 강화

- 환경오염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대상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추가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하수도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기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공하수도 점용 후 원상회복 의무** 신설

- 공공하수도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사유(허가받지 않고 점용한 경우, 허가받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회복 근거 마련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하수도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기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환경보건법 (신설 1)

심사내용 **역학조사 등의 고의적 방해 등 금지** 신설

- 환경유해인자 배출사업장 등이 역학조사·건강영향조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자료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한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환경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기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의 품목 (강화 1)

심사내용 **폐PT 및 대체품(PE,PP,PS) 수입금지 등** 강화

- 폐PET 및 그 대체품(PE/PP/PS)의 수입을 금지하되, 국내 대체재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수입건에 대해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폐플라스틱 적체로 인해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며,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각종 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강화 1)

심사내용 **폐지류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신고 면제요건 삭제** 강화

- 폐지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신고 면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他 폐기물과 동일하게 모든 폐지는 신고 후 수출입하도록 함

심사결과 폐지 및 고철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이 예외없이 수출입 전에 신고(유해성이 큰 폐기물은 허가 필요)토록 하고 있다는 점, 중기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이물질 혼입기준을 완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측정대행업 측정 인력 기준 변경** 강화

- 측정대행업 측정 인력기준 중 기존의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기사 1명을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으로 강화

심사결과 측정대행업체들은 대부분 경력 기사들을 보유하고 있어, 이 중 5년 이상 근무한 기사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 드는 비용이 과도하지 않고, 기술규제영향평가 및 중기영향평가의 추가 유예기간 검토 등 의견을 모두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기·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 설정** 신설

- 측정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수질분야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확보 의무 부여

심사결과 시험·검사기관들이 전체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하는데 따른 비용이 과도하지 않고, 기술규제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정 수용하여 측정분석사 양성인력을 적정 수준에서 확대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강화 9)

심사내용 **자발적 참여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 신설

- 자발적 참여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관리업체로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목표관리제에 따른 명세서의 작성·보고를 1회 이상 했을 것, 이전 계획기간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받지 않았을 것)을 명확화

심사결과 해당 규제는 현행 지정거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지정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며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강화

- 자발적 참여업체가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나 파산, 영업허가 취소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에서 지정취소하도록 근거 마련

심사결과 해당 규제는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할당대상업체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고,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할당대상업체간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행정절차** 강화

- 업체에서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에 보고하되, 환경부장관이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되면 할당대상업체 변경 사실 고시, 관계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하고, 권리·의무 승계사실에 따라 상응하는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간에 이전 조치하는 경우 조치 결과를 업체에 통보할 것을 규정

심사결과 해당 규제는 피규제자 측면에서 전자적 방식이 다른 보고 방식(서면, 우편 등)에 비해 경미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종 영향평가의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할당신청서 제출시 배출량·활동자료량 검증의무 부과** 강화

- 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하는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 제출시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검증받아 제출하도록 하되, 현 계획기간에 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한 업체가 다음 계획기간에도 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심사결과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적용하는 업체(신규)에서 기준기간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 검증에 드는 비용이 과도하지 않으며,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강화

- 기존에는 무역집약도, 생산비용발생도 중 한 가지만 기준을 충족하면 무상할당하였으나, 3차 기본계획에서는 무역집약도×비용발생도≥0.2%인 업종은 무상할당하되,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과 관계없이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심사결과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할당대상업체의 유상할당 배출권 구매 연간균등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므로 **중요규제로 검토**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존중하면서 산업계의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에서 EU보다 기준을 완화한 점을 고려하여 **본위원회에서 원안 동의**

심사내용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검증** 강화

-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해당 규제로 인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에 드는

연간균등순비용이 과도하지 않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의 비용을 경감하였고 각종 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설 신·증설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 기준** 강화

- 배출권 할당 단위가 기존에는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로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할당 기준 마련

심사결과 해당 규제는 기존에는 배출권 추가할당 기준이 시설 기준이었는데 3차 기본계획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업체 전체를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 없고, 각종 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설 가동중지·정지·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 기준** 강화

- 배출권 할당 단위가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 가동중지·정지·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 기준을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어, 시설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이상 감소하는 경우 배출권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심사결과 해당 규제는 기존에는 배출권 추가할당 기준이 시설 기준이었는데 3차 기본계획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전체 할당대상업체들의 할당취소량이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3자의 배출권 장내거래 허용** 신설

- 종전에는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및 거래는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만 허용하였는데 3차 계획기간부터 제3자(금융기관, 증권사)의 참여를 허용하되, 제3자에 대해서는 장내거래만을 허용

심사결과 유사 제도를 도입중인 해외사례(EU, 미국 등)에서도 제3자 거래 중 장외파생거래에서는 일정한 관리를 하고 있고, 제3자 거래가 처음 도입되는 것인 만큼 시장안전성을 고려하여 3차 계획기간에는 장내거래만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각종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장조성자 지정·지정취소, 활동실적 제출·평가 및 시정요구·이행** 강화

- 배출권거래에도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하는데 세부적인 사항

(지정대상 및 지정취소 사유, 활동실적 제출 등)을 규정하여 특정 참여주체에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시장에 지속해서 호가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시장의 공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해당 규제는 현행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활동실적 제출주기 등이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및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증기관 지정기준, 검증기관·검증심사원 업무기준 등** 강화

-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주무관청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확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검증기관 지정기준, 검증기관·검증심사원 업무기준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 검증업무 수행결과 작성·제출을 규정

심사결과 해당 규제는 검증기관 지정요건, 검증기관·검증심사원 업무기준 등이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 중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외부사업 승인취소 및 감축량 인증취소** 신설

- 현행 법령에서는 외부사업의 승인 및 감축량 인증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취소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었는데(지침에 규정되어 있었음) 해당 처분은 침익적 처분인 만큼 법령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어 지침의 내용을 상향입법

심사결과 해당 규제는 외부사업의 승인취소 및 감축량 인증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현행 지침에 있는 사항이 상향 입법됨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점, 이해관계자 및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물산업 우수제품 등 검증평가 기준** 신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고시로 우수제품 검증평가 기준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평가항목 중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항목은 시설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자재나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세부항목으로 규정하고 안전성 항목은

구조·기능 성능, 인체 유해성, 위해성, 시설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 법적사항 준수 및 성능규격 만족 여부공급의 안정성 항목은 우수제품의 납품계약 후 업체폐업, 미납품 발생 등의 공급문제와 업체의 불성실한 하자관리 등 A/S관리로 세부항목을 설정함

심사결과 '17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항목·배점기준 등의 초안을 마련하고 '18~'19년도에는 시범사업(물산업 우수기자재 등록제도)에서 적용한 후, 통합대상 SEMS제도(한국수자원공사 운영)의 평가항목까지 포함하여 제조자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결정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환경보건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에 추가 강화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공중·보건위생 평가항목에 건강영향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협의 기관은 추가된 건강영향 항목을 검토·평가하여 협의하도록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에 15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가

심사결과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이 대부분 입주할 수 있어 주변에 미치는 위해도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범위를 동일하게 하는 사항이며, 연간균등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과 각종 영향평가에서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회수 등의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강화

- 어린이용품 회수조치 조치결과보고서에 조치실적, 미조치량 및 향후 조치계획,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인 화학제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등에서 회수 등의 조치결과서를 제출받도록 규제하고 있는 점과 조치실적, 미조치량 및 향후 조치계획,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조치결과의 최소한인 점, 각종 영향평가에서 제기한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공법기자재(분리막 등)의 교체·보완 비용 산출기준 마련** 강화

- 공법기자재의 주기적인 교체·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설개선충당금은 해당 기자재의 교체에 소요되는 총 비용에 해당 기자재 사용연한(월)의 역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기준 마련

심사결과 국가소유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분리막 공법 적용)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과도하지 않으며, 입법예고기간(6.10~6.30) 동안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규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시 대부분 사업장에서 동의하였고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저탄소제품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저탄소제품 기준** 신설

- 기존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저탄소제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마련('20.1.29)됨에 따라 업무규정·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저탄소제품 기준'을 환경부고시로 상향 제정

심사결과 기존에도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기준을 상향입법한 것으로 규제신설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과 저탄소제품 기준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설정·운영중인 점, 중기·경쟁 영향평가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3)

심사내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확대** 강화

- 유해물질 사용제한 전기·전자제품 대상에 23종(제습기, 토스트기, 헤어드라이어 등)을 추가

심사결과 생활에 밀접한 전기·전자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해외사례(EU 및 중국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수입·판매금지 및 벌금을 부과)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에 따라 태양광 패널 등 일부 제품을 대상에서 제외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사용제한 유해물질 추가** 강화

- 전기·전자제품에 사용제한 유해물질로 프탈레이트계 4종을 추가(현행 6종에서 개정 후 10종)하되, 함유기준은 기존 유해물질과 동일한 0.1% 미만으로 규정

심사결과 신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환경 영향의 예방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인 RoHSⅡ보다 국내 시행시점을 1년 이상 유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축소 및 삭제** 강화

- 대체기술이 없어 한시적으로 사용제한 규제에서 예외시켰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 내 유해물질 중 기술개발 등으로 규제준수가 가능해진 물질에 한해 한시적 예외대상에서 제외

심사결과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환경 위해의 예방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에 따라 국제기준인 RoHSⅡ 및 ELV 시행 대비 국내 시행시점을 연기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강화 1)

심사내용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강화

- 스톡홀름협약 신규 등재물질 2종(디코폴, 과불화옥탄산)을 국내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에 추가

심사결과 신규 협약물질 중 농약류인 디코폴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취급이 이미 금지되어 있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산업용인 과불화옥탄산 등은 국내 시장에서 대부분 대체물질로 전환, 대체물질 미흡분야는 협약에 특정면제(일정기간 규제 면제)가 설정되었으며 관련협회 및 업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을 위한 세부적인 제출 방법(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및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제거하도록 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따라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을 규정함

심사결과 유사제도를 운영중인 타 법률의 경우, 인증취소 후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의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 완료 보고 등 절차·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이 없으며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포괄수출입허가 신고자에 대한 서류제출 의무 부과** 강화

- 폐기물 수출입 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포괄 수출입 허가·신고제를 운영 중이나, 이를 악용하여 최초 포괄 수출입 허가·신청 수리 후 실제 수출입시에는 이물질이 다량 포함되거나 폐기물 특성, 성상 등이 다른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포괄 수출입 허가·신고자에게 매 수·출입시 최근 30일내 촬영한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심사결과 중국, 동남아와 같은 국가들도 폐지에 대한 수입금지 등 자국 환경보호를 위해 수입 폐기물 관리 강화를 추진중인 점, 포괄 수출입 허가·신고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불법 폐기물 수출입을 방지하고 사후 점검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과 중기영향평가 의견(사진제출 관련 시점 명확화)을 수용하여 수출시에는 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내, 수입시에는 수출국에서 선적전 30일 내 촬영사진을 제출토록 수정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 신설

- 측정대행 계약시 관련 자료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계약관리를 하도록 하는 대상 사업장을 규모가 큰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으로 한정함

심사결과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 수 대비 배출량이 크고, 측정결과 조작이 일어날 경우 큰 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1~2종 사업장으로 계약관리 대상 사업장을 한정한 점, 각종 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기준 및 지정절차**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정하고 지정을 위한 기준, 절차(사업계획서·업무규정 제출 등)를 마련

심사결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지정절차 신설에 따른 해당기관의 직접비용은 없으며, 타 분야의 업무대행 기관 지정시 지정·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한 기준** 신설

-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이 불법행위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행정처분 경감 규정 마련

심사결과 본 규제와 유사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측정값 조작에 대해 동등한 수준(자격정지 1년)으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측정대행 계약 관련 제출 자료 및 절차** 신설

- 측정대행 계약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측정대행표준계약서와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로 규정

심사결과 계약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관련 서류 등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경쟁영향평가에서 계약 관련 제출자료에서 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에 개입할 우려가 있는 자료 제외 및 검토 범위에서 가격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모두 수용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측정대행업 행정처분 기준 추가** 강화

-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오염물질 자가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문제 발생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측정대행 계약 관련 자료 제출 및 재위탁 금지 등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인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시험검사법상 행정처분기준(확인서가 없는 경우, 계약관련 자료 미제출, 재위탁 금지 위반)에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기준으로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1)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신설 2)

심사내용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기준 신설

-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은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었으나, 폐기물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폐쇄형 매립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기준(설계기준, 에어돔형 차량 출입구 기준, 송풍시스템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은 국가설계기준(KDS, Korean Design Standard)을 반영하여 설계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일본에서도 폐쇄형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설치기준은 일본 건축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점과 각종 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관리기준 신설

- 폐기물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폐쇄형 매립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기준(폭설, 태풍 등 대응방안, 화재·폭발 등 대응방안, 내부환경 관리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작업자 개인보호용 안전모,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안전화 착용 및 매립장 내부 환경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운영·관리중인 점, 규제 도입으로 인한 연간균등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폐수처리업 측정기기 부착 기준 강화

- 수질TMS 부착대상 폐수 수탁처리업은 하천 등 공공수역에 폐수를 직접방류하는 모든

사업장과 200㎥/일 이상(1~3종)의 폐수를 공공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간접방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

심사결과 기존 폐수배출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3종이상 사업장에 부착하되, 하천 등 공공수역에 직접방류하는 폐수 수탁처리업은 모두 부착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사항으로, 폐수처리업에 대한 수질TMS 부착 확대에 따라 대부분 중소기업인 폐수처리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부 재정보조를 할 예정인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 신설

-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를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및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결과를 매년 6월30일까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전산망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공개를 위한 측정자료는 실시간 자료가 아닌 사업장별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자료로 폐수배출량 조사 등을 통해 기존에도 일부 공개가 되는 자료인 점, 유사입법례인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의 전산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수탁폐수 혼합처리시 반응검사 기준** 신설

- 폐수를 수탁하여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하여 저장 또는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폐수간 반응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개정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수탁폐수 간 혼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시설안전, 작업안전의 관점에서 명확히 하는 한편 폐수처리업체에서 준수 가능한 수준으로 선정한 점, 연간균등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기준** 신설

-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하며,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도록 함

심사결과 폐수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업의 주요시설은 소각시설,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처리시설 등으로, 정기검사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시설의 안전유무를 전문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주기는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 또는 대수선주기 등을 고려하였고, 타법 유사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개선기간 등** 신설

- 폐수처리업체에 폐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1년 이내) 또는 사용중지 기간(6개월 이내)을 정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기간 중 원인사유가 없어졌을 때 시·도지사에 보고토록 함

심사결과 폐수처리업체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후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의 기간 내에 부적합 시설의 원인이 소멸되었을 때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유사입법례인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행정명령의 기간과 보고를 규정하고 있고 각종 영향평가에서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새로 규정된 사항의 위반에 대해 기존 측정기기 또는 폐수처리업 관련 유사 처분기준을 준용하여 처분기준을 설정

심사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측정기기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정기검사 미이행 등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4) 수도법 시행령 (신설 6)

심사내용 **수도용 자재·제품 검사기관의 변경승인 사항 및 준수사항** 신설

- 수도법에서 정하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사무실, 실험실 소재지, 상호, 대표자명, 기술인력으로 구체화하여 정하고, 수도법 상 검사기관이 지켜야 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별표로 구체화 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검사기관의 변경승인 요건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유사입법례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나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의 변경승인 요건 및 준수사항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기준 및 대행업자 준수사항** 신설

- 수도법 제21조의4 제1항에서 위임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기준을 업 구분별로 등록기준을 시설(사무실), 기술인력, 장비 요건으로 나누어 기술인력 관련 신규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적용 시기를 차등하여 규정하며, 수도법 제21조의4 제3항에서 위임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업무 수행 시 성실의무 및 업무 수행 결과의 보존의무(3년간)를 설정함

심사결과 규제로 인해 피규제 기업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연간균등순비용이 중요규제 기준의 이하이며,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운영·관리 결과 보존 기한을 3년으로 명시하였고 중기·경쟁영향평가의 의견은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등** 신설

- 수도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위임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력·경력·이수과정 등 등급별 세부 자격 요건 규정하고, 수도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직무 수행범위를 정함

심사결과 정수시설에 대한 전문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상수도 공급(배수) 시스템의 경우 인구수를 기준으로 D1~D5 등급의 운영인력 배치 및 자격요건 설정하고 있는 점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연간균등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 및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운영요원, 종업원의 교육 의무 신설** 신설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의무 교육 대상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운영요원을 추가하고, 경비 부담 관련 규정 신설

심사결과 상수도관망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교육내용이며, 수도시설에 종사하는 여타 운영인력과 동일한 주기로 교육을 받게 되는 점과 해당 교육을 수행할 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 등)들이 충분하여 교육의무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확보한 점, 연간균등순비용이 크지 않고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추가** 신설

- 기술진단 실시 장비요건에 잔류염소계와 관 내시경을 추가하되, 법률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행업체는 추가되는 장비에 대해 대여, 임대를 통해서도 업무 수행 가능하도록 함

심사결과 동 개정안에서 추가적으로 갖추도록 한 잔류염소계측정기는 이미 대부분의 기술진단업체에서 보유 중으로 추가부담이 없고, 관 내시경의 경우는 전문대여업체를 통해 대여가능하므로 장비 요건 추가로 인한 비용 발생이 크지 않은 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요건에 유사한 장비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돗물 공급, 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마련** 신설

-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 공급, 수도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가능 사무로 추가

심사결과 수도 사용량에 근거해 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도입하며, 유사입법례인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기술, 경쟁, 중기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5) 수도법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제도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신설

-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 및 수도용 자재·제품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유사한 입법례(먹는물 수질 검사,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와 견주어 처분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의 수준이 비슷하고, 일반기준을 통해 가중·감경기준을 두고 있는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도용 자재·제품 검사기관 지정·관리기준 신설** 신설

- 기존 환경부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으로 이동하고, 변경신청 등에 대하여 일부 사항(변경신청 절차 및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 규정)을 추가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인 먹는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의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에 관한 지정절차 및 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중기·경쟁·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신설** 신설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절차(등록신청→서류심사→현장확인→등록증 발급),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상호·명칭변경,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 사무실 소재지 변경, 기술인력 보유현황 변경) 등을 신설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균등순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 제도 규정** 신설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교부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여 자격증 교부 행정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심사결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기존 유사 자격증 절차 및 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비슷한 수준이며,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강화

-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정량분석 장비 외에도 지정 받는 시험·검사분야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경력 기준으로 기술책임자의 경우 3년 이상, 시험기술자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을 최소 기준으로 강화

심사결과 장비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모두 개정안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부담이 크지 않고, 인력기준 강화는 분석결과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숙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 기준이며, 유사입법례(환경시험검사법 등)의 책임자·기술자 기준과 유사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및 통보사항** 신설

- 선임자의 수행 업무(물질 및 제품 승인의 신청,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등)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에 관한 업무,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에 관한 업무, 자료보호에 관한 업무, 자료사용 동의에 관한 업무 4가지로 규정하고,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살생물제 수입자에게 통보해야할 사항으로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살생물제를 수입하기 위해 법령상 필요한 살생물제 정보, 수입자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살생물제 정보 등 4가지로 규정함

심사결과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국외제조자의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면서 수입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한 선임자의 업무와 통보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과 기술영향평가에서 제시한 WTO 통보를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 등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사전 수입 제한 조치가 필요하나, 수출입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의 경우 수입 제한에 한계가 있어 질병 매개 우려 동물에 대해 수출입 허가대상으로 추가 지정

심사결과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 수입과 주요감염병 등의 위협을 고려하였을 때, 수입 제한 확대가 인정되는 점, 무조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내에서 국내 유통되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사전 절차 강화 목적이며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해서 매개 가능성이 높은 야생동물로 한정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출입 허가절차 보완**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 등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사전 수입

제한 조치가 필요하나, 수출입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의 경우 수입 제한에 한계가 있어 수입 허가시 사진 제출 의무화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곤충 사육 신고시에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요국(EU, 미국, 호주 등)에서도 야생동물 질병의 자국 유입 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점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방법** 신설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포획허가를 받은자의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인도받아 처리하도록 하면서 처리 방법을 매몰, 소각,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 등으로 규정

심사결과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의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은 이미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포상금으로 인해 실제 민간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과 해외사례(호주는 소각, 허가된 매립, 비료화 처리, 가공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수보호관리법에 의거 포획물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매설(매립) 하도록 규정)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신설

- 한국환경공단, 국공립연구기관 외 타 법률에 따라 검사 능력이 입증된 기관을 검사기관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적정 검사능력 확보를 위해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마련함. 또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지정(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검사기관 지정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정기준 유지, 검사거부 금지 등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추가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주기(매년 1회) 및 내용을 규정

심사결과 유사 제도를 도입중인 해외사례(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기술규제영향평가 및 경쟁영향평가의 의견(두 개 이상의 검사대상 분야에 대해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무실은 중복하여 갖출 필요가 없도록 조치)을 모두 수용하여 개정안에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배터리 재활용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신설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중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업(폐배터리를 태양광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업종 및 파쇄 등을 통해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물질재활용업종 등 2개로 구분)을 등록하기 위한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전기차 폐배터리의 중간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이 유사분야 및 해외사례(독일의 경우 자국 법령에 '배터리 지침'을 반영하여 안전한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보관·회수 등의 절차와 관리방법 등을 규정)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과 연간균등순비용이 크지 않은 점, 기술·중기영향평가의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기물매립시설 검사** 강화

-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질소에 대해 처리기술의 발전, 현장 처리실태, 물환경보전법 개선사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고농도 원수에 대한 처리효율로의 대체기준을 삭제함. 또한 매립시설 침출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상 폐수 배출허용기준 관리항목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셀레늄을 새로이 관리항목에 포함하고,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검사항목을 신설

심사결과 현행 질소처리시설(RO막 등) 개선·보완, 다른 법령의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질소는 3년 이후 시행하고,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셀레늄은 침출수처리시설 공정개선 기간 등을 감안하여 6개월 이후 시행하는 등 부담을 경감한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 「폐기물관리법」에서 추가된 내용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기관 등에게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법 이행가능성을 확보

심사결과 유사사례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처분기준을 마련한 점, 일본에서도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특정 기간을 정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신고 절차** 신설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가진자) 및 선임 또는 해임시 신고방법(상기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국내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등 정보 등을 제출) 등을 규정

심사결과 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로 해외사례(유럽연합(EU)에서도 REACH에 따라 국외 제조자가 국내 수입자에 부여된 등록, 허가 등의 의무를 '역내'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유일대리인)하여 이행하도록 함)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유사입법례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선임자 요건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기술영향평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WTO에 통보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승인 받은 제품의 품질관리 기준** 신설

- 승인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가 제품 품질의 유지·관리를 위해 준수해야할 기준(제조·보관시설,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 안전관리 인력기준, 문서 관리기준, 작업자·방문자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 등)을 규정

심사결과 승인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품질관리 의무(제조업 관리, 제조관리자 의무교육,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등)를 旣이행하고 있었으며, EU 살생물제 관리 규정(BPR)에서도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이 생산되도록 규제·검사하고, 제조자는 적절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경쟁·중기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살생물제품의 한시적 승인면제에 대한 표시** 신설

- 화학제품안전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승인이 면제된 살생물제품은 면제 제품임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한시적으로 승인이 면제된 제품에 그러한 사실의 표시(표지 부착 포함)를 하도록 하는 것은 긴급한 필요에 의한 한시적 승인 면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승인대상 제품의 경우에도 긴급 상황시 별도 없이 승인하고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약사법에서도 긴급방역용 동물용

의약품은 제품의 포장에 표시하고 판매할 것을 규정하므로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과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효과·효능에 대한 표시·광고 제한** 강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는 제품의 효과·효능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증명서·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효과·효능 기재는 금지

심사결과 제품의 효과·효능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증명서·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효과·효능 기재를 금지하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효과·효능 광고로 인한 제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경쟁·중기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없고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WTO에 통보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택지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설

-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 요건으로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생활에 영향이 있는 경우(처리시설 옆 주택,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하설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자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심사결과 택지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조항은 관련 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의견 수렴 후 원인자부담 원칙에 기반하여 기준을 설정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 입법예고기간 중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강화

-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지자체가 부담하던 주민편익시설 설치한도를 설치비 10%이내에서 20%이내로 상향하고, 택지개발사업자가 직접 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시설 설치비용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함께 납부하도록 함

심사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댐 등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주민지원 제도를 운영중이며,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를 상향하는 등 수용성을 제고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1)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신설 1)

심사내용 **이의신청의 반려** 신설

-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 시 국립생태원장의 자료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혹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해당 이의신청으로 인해 생태자연도안이 다시 국민열람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역에 대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경우 국립생태원장이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인 민원처리법에서는 서류 보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반복민원의 경우 사건 종결토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규칙'에서도 신고 서류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및 처리결과 이의신청이 반복적인 경우에 반려처리토록 규정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2) 악취방지법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개선계획서 제출 명확화** 신설

-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받은 대상자는 개선계획서를 관할 감독기관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명문화

심사결과 현재도 사업자가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기간 산정을 위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지정취소 기준 추가** 강화

-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심사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검사기관 및 인증대행기관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신설

- 고흡수성수지가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kg당 313원) 부과하되, 하되, 고흡수성수지가 아닌 식물성섬유·전분 등 대체 소재를 사용하거나 회수·재사용한 경우에는 면제

심사결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폐기물관리와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통한 발생량 감축 및 적정 처리가 필요하고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4) 대기환경보전법 (신설 1)

심사내용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조업정지 근거 마련** 신설

- 비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조업정지 법적 근거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처럼 조업정지 대상 행위를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심사결과 다른 제도에서도 미신고, 관리기준 미준수 등의 반복 위반 시 조업정지 처분하는 사례를 볼 때 비산/VOCs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고,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관리** 신설

- 지정폐기물 분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신설하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재활용 원칙(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 부적합 가공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등)을 설정하고,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의 천연방사성핵종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심사결과 국제원자력 기구(IAEA) 등 해외사례에서도 천연방사성핵종 폐기물 특성에 따라 소각 등 전처리 후 분산 ·매립 등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 입법예고기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배출자 의무 부과** 신설

-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위탁 후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대상에 폐기물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추가하고,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

심사결과 폐기물 처리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과도하게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처리를 수탁받거나, 부적정 처리 또는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하는 점, 다른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도 배출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은 점 및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 신설** 신설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을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분류별로 구체적인 수집·운반, 보관, 처분기준 신설

심사결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적, 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부 처리기준이 필요하며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과 해외에서도 저농도 천연방사성핵종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소각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점, 경쟁·중기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강화 3)

심사내용 **기준기간 사업장 신증설 기준 변경** 강화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배출권 할당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의 증설 인정 기준인 배출량 증가 5% 기준 판단시 사업장 증가분 및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로 인한 배출량 증가분도 동시에 판단하여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증설로 인정

심사결과 배출권거래법이 개정되어 할당의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증설시설의 기준을 사업장의 증설에 준하는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점, 기준기간 사업장 증설 기준 판단 시 시설 변동량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점,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배출권 추가할당량 산정기준 변경** 강화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배출권 할당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내 다수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증설시설로 인한 사업장의 배출량 증가분에 합당한 추가할당량 산정기준 마련(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에 따른 추가할당량 산정 시 사업장 증가분과 시설의 증가분 중 적은 값으로 산정)

심사결과 증설 시설의 증가분을 모두 사업장 추가할당량으로 인정하면 사업장 내 신증설 시설이 아닌 다른 사유(단순 가동률 증가 등)로 인한 시설의 배출량 증가분이 포함되어 과다할당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배출권 할당량 산정시 할당계수 적용** 강화

- 현재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F가스 공정배출, 석회생산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별도의 할당량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할당량을 산정하지 않고 할당계수를 적용하여 할당량을 산정하도록 개정

심사결과 적용되는 할당계수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명시됨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점, 일부 배출시설·활동을 부문에서 따로 구분하여 총량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문 내에 그대로 두면서 별도로 할당계수를 적용하여 별도로 총량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방법상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8)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강화 1)

심사내용 **생태계교란 생물 추가 지정** 강화

-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 외래생물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사육 및 방출·유기 등 금지

심사결과 해외 주요 선진국(일본, 미국, EU 등)에서는 관리 대상 외래종을 상당히 넓은 범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와 부합하는 점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 강화

-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

심사결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하여 주민 의견 수렴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점,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하는 시기만 사업계획 확정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임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기상청

집필자 신용현 사무관
Tel. 044-200-2443, trustyonghyun@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등 총 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상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0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9	신설 9 (비중요 9)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신설

- 기상산업체 등 기상산업 실태조사를 받는 기관이 실태조사의 범위(사업체명, 소재지 등 기상산업체의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매출액, 수출입 현황 등 기상산업체의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근로자수, 인력채용 계획 등 기상산업체 인력현황에 관한 사항, 기상산업체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 및 절차를 사전에 짐작 가능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관련 내용과 방법에 대해 규정

심사결과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는 직접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신설

- 지진관측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검정대상 관측 장비(가속도지진센서, 속도지진센서, 지진기록계), 유효기간(5년), 유효기간 만료시 재신청(만료 1개월 전) 등에 대해 규정

심사결과 지진관측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관측장비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공공기관이 관측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어 행정·재정적 집행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규정이 있으며,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신설

- 지진관측법 개정에 따라 검정인력, 설비 요건 등 구체적인 검정대행기관 지정 요건을 기관, 인력(검정요원 3명 이상 확보), 설비, 사무공간 등으로 나누어 규정

심사결과 관측 장비와 같은 측정기기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기상관측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다수의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 신설

- 지진관측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 등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관측 장비에 대한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한 검정제도 도입 시 관련 검정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정 기준 제시

심사결과 관측 장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을 준수하는 사항으로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이며, 유사입법례인 기상관측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각종 영향평가에서 의견없음을 제시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정설비의 요건** 신설

- 지진관측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검정장비 기준에 대하여 위임하고 있어 관측장비에 대한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해 검정제도 도입 시 관련 검정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정설비 기준을 규정함

심사결과 관측 장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측 장비의 검정 설비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미 유사입법례(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도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각종 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 지진관측법 개정에 따라 검정대행기관 제도가 도입되었고, 대행기관이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시행령상 행정처분기준에 마련

심사결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련 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행정적 조치이며, 비슷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점과 중소·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신설

- 지진관측법 개정에 따라 지정된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고시에서 연간검정계획서, 분기 및 연간 검정실적,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변동 등으로 규정함

심사결과 검정제도 도입과 더불어 기상청은 검정대행기관의 연간 검정계획서, 검정설비 운영, 검정요원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확보를 통해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할필요가 있는 점, 기상측기 검정규정,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과 각종 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정대행기관의 점검** 신설

-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위해 검정대행기관 제도가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기상청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적절성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검정대행기관의 점검 세부사항 및 방법 에 대해 규정

심사결과 지정된 검정대행기관이 검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정설비, 검정요원, 검정 기준 등 적절성 유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유사입법례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신설 1)

심사내용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공차** 신설

- 경주지진('16) 및 포항지진('17) 이후, 기상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지진관측망이 점진적으로 확대·운영됨에 따라 관측자료의 정확도·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검정기준에 대해 적정 범위의 공차(관측장비 등 수입·제작시 설계상 정해진 치수에 대해 실용상 허용되는 범위의 오차)를 설정함

심사결과 관측 장비에 대한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한 검정제도 도입 시 허용되는 오차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점, 유사입법례인 기상관측기에도 공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진 관측 장비의 공차 기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과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8절 교육·문화 분야

1 교육부

집필자 최은옥 주무관
Tel. 044-200-2436, eochoi@korea.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총 2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5건 중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2건에 대하여 철회권고, 1건은 부대권고, 2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교육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본심사 (2020.02.14)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1)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4.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4.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4.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5.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7)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본심사 (2020.5.8)	개선권고 1 부대권고 1	신설 2 (중요2)
(8)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본심사 (2020.5.8)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1)
(9) 유아교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신설 1 (비중요1)
(1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신설 1 (비중요1)
(1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7.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7.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3)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본심사 (2020.7.31)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1)
(14)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8.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5)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9.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6) 고등교육법 개정안	본심사 (2020.09.29)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1, 신설 1 (중요 1, 비중요 1)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8.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2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2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0.11.2)	원안의결 3 철회권고 1	강화 1, 신설 3 (비중요2, 중요2)
(22)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3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계	-	철회권고 2, 개선권고 3, 부대권고 1, 원안의결 29	신설 32, 강화 3 (중요 8, 비중요 27)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임용고시 응시자격 제한 신설

- 동법 등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또는 채용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불가

심사결과 임용시험 응시제한 사유에 동법 및 타법령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교원 임용시험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됨. 국가직 및 외무직 공무원 선발시험에서도 국가공무원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임용 결격자는 선발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타법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신설

-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부 일반고의 전국단위모집도 폐지하여 학생모집 단위 축소 및 입학전형 실시권자 변경

심사결과 고교 유형 분리로 초래되는 고교 서열화, 사교육 과열 등 전반적인 교육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교 교육체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인 간 이견 존재하여 **중요규제로 분류되어 본위원회에 상정**된 결과,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예외적으로 인정된 입학전형 실시권, 전국단위 학생모집 특례의 변경·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 사용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전면 시행까지 5년 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학생·학교측의 신뢰 보호를 도모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원안의결**

(3)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학교법인 및 대학의 회계정보 공개 의무사항인 '예산 부속서류'에 적립금 운용계획 명세서를 추가** 강화

심사결과 적립금 사용목적, 사용시기 등을 포함한 적립금 운용계획을 공개하여 학교구성원의 알 권리 및 신뢰를 제고하고, 학교경영자가 학생·교원 등의 복지 향상, 학습·교수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축적한 적립금을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회계 부정·비리 예방과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적립금 운용계획서는 예산사용계획에 대한 정보인 바, 등록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등과 같이 예산의 부속서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他법령에 서 적립금 기본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있어 적립금 운용계획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구체적인 부정행위기준 마련** 신설

- 입학전형에 위·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 타인의 대학별고사 대리 응시
- 기타 대입전형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학칙으로 규정하는 행위

심사결과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19.12) 됨에 따라 입학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등에 따라서도 대학입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대학의 장이 해당 학생의 입학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기준 대비 과도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예외에 따른 보고 및 시정명령** 신설

- 사립유치원이 운영위원회 사전 자문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단서조건으로 운영위원회·관할청에 즉시 서면보고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을 생략한 경우, 관할청에서 시정명령

심사결과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생략 제도의 남용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유치원에 사후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조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 인정됨. 운영위원회 자문을 생략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서면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완화된 규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등 타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대안학교 수업일수 감축사항 보고** 신설

- 대안학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1/10 범위에서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단서 조건으로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관할청(시·도교육감)에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대안학교에에 사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법정 수업일수 단축 남용제도 방지 및 학생들의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관할청이 대안학교 운영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법정 수업일수를 단축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서면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로 타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개방이사 자격 제한** 신설

- 학교법인 설립자·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대상에서 제외

심사결과 학교법인과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여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인 반대의견과 경쟁영향평가에서 자격제한 완화 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본위원회에 상정**된 결과,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는 외부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여 학교운영 거버넌스를 개선하자는 것이므로 법인임원 경력자 가운데 일반이사와 개방이사를 구분하여 개방이사 경력자는 자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시정요구 없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 강화** 신설

-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사실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10% 이상(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의 경우 20%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심사결과 임원취임 취소요건 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이 대립하는 사안으로 **중요규제로 본위원회 심의** 결과, 사학의 회계 부정·비리를 근절하고 사학법인 운영 책무성을 제고할 필요성 및 국내 타법사례 등과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단, 개정조문의 관할청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중 '명백히' 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명확성을 높일 것을 **부대권고**

(8)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사립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정보 확대** 신설

- 사립학교법인이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학교법인 임원 인적사항 공개정보에 '임원간 친족관계' 추가

심사결과 건전한 사학운영을 유도하고, 친·인척 경영으로 인한 사립학교 비리·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임원의 친족관계를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중요규제로 본위원회 심의** 결과,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임원의 '친족이사 해당 여부'만 공개하도록 **개선권고**

(9) 유아교육법 개정안(신설 1)

심사내용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신설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심사결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치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일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 신설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임용고시 응시자격 제한** 신설

- 동법 등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또는 채용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불가

심사결과 현재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의 임용 결격 또는 채용 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은 최종시험일(2차)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임용시험 응시제한 사유에 동법 및 타법령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교원 임용시험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됨. 국가직 및 외무직 공무원 선발시험에서도 국가공무원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임용 결격자는 선발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타법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사립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신설

- (작성내용)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 (공개방법)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심사결과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이 운영되는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수단임.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그 내용의 공개를 통해 내실 있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회의록 작성내용 및 공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시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치원의 법령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세부내용 규정** 신설

- (공표사항) ①유치원 명칭, ②주소, ③위반 당시와 공표 당시의 설립자·원장 동일인 여부, ④관할청
- (공표절차) 해당 유치원에 공표사실 서면 통지 → 유치원 의견제출 기회 부여 → 공표 여부 최종 결정
- (공표방법) 3년 간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표

심사결과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의 책무성 제고 및 학부모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유치원의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정하여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시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유치원 설립·운영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세부내용 규정** 신설

- 통지방법, 교육기관,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 교육비용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유치원 설립·운영 시 이수해야 하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유치원 내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인 영유아보육법을 고려할 때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조금 등 반환 처분시 위반사실 공표대상이 되는 기준 설정** 신설

심사결과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의 책무성 제고 및 학부모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유치원의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 위반에 따라 보조금 등의 반환 처분시 위반사실 공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포대상 금액 기준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정하고, 유사입법례인 영유아보육법을 고려할 때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대해 관할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신설

심사결과 현행 법령에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적정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나, 이해관계인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중요규제로 분류되어 **본위원회에 상정**. 「사립학교법」 제4조 및 제43조는 사립학교에 대한 일반적 지도·감독 및 인건비 지원 규정으로 본 개정안의 직접적인 위임근거로 보기 어렵고, 사전협의 의무를 직접 법률에 규정한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여 **철회권고**

(14)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사립학교 육아휴직 교원의 신분 및 처우** 신설

- 사립학교 법인에게 육아휴직·입양휴직 교원의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부여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교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으로 육아휴직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 등 처우를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됨.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현재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 유사입법례인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사립학교 교육경험 이사 선임 관련 교육경험 자격 구체화** 신설

- 「사립학교법」및「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로 근무한 경험을 교육경험으로 인정

심사결과 사립학교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근무경험에 준하는 교육경험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개정안에서는 법정 자격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교육경험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는 강사 및 명예교사는 교육경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법인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교육경험 인정범위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교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기록물의 범위,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절차에 대한 시행령 중 ①폐교 등이 제출해야 하는 기록물 범위, ②3개월 이내 제출 의무화

심사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 등 폐교가 증가될 전망으로, 폐교 이후 학적부 등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이관·관리하여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관할 기록물의 범위 및 방법 등을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당초 개정안에서 이관 대상으로 규정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규제심사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포괄적 해석의 소지를 해소하였고, 유사입법례인 '공공기록물법'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규제의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고등교육법 (강화 1, 신설 1)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강화

-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대상에 '학원' 외에도 '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 추가

심사결과 대입의 사교육 의존도 완화,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을 법제화하였으나('12.1.) '학원'만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여 학원 외의 사교육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추가 필요성이 인정됨. 입학사정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입법취지 달성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대학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한 취업제한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의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학원·과외 교습 등 설립·운영 결격 사유** 신설

- 입학사정관으로 퇴직하여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취업제한 예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학원 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 위반 시 종전 벌칙규정 적용

심사결과 현행「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반 시 이를 제재할 규정 미비로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퇴직 입학사정관이 취업제한 법령을 위반하여 학원·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규제의 수준 및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규제비용도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회통합전형 운영 의무** 신설

- ① 차등적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을 위한 전형은 일정비율 선발 의무화
- ②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은 일정비율 선발 권고를 도입

심사결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장애인·농어촌 학생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의 법적 도입 취지는 인정되나,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중요규제로 본위원회**에 상정. ①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일정비율 의무화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고, 기존 학생들과의 공정성에 대한 상반된 시각도 존재하므로 '의무규정을 권고규정'으로 변경하고, 향후 시행령 마련 시 대학별 규모 및 기존 모집비율 등을 고려하여 '비율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 대학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개선권고**. ②지역균형발전 전형은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중 '선발방식'까지 포함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향후 시행령 마련 시 대학별 규모 및 기존 모집비율 등을 고려하여 '비율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 대학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개선권고**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침해 신고조사 방법 및 절차** 신설

심사결과 특수교육법 개정('19.12.10.)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건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 마련 시 현장의견을 수렴한 점, 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필요 최소한도로 규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규제의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신설

-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유초중고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대학 등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심사결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제정('19.12.3, 시행 20.12.3)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인증 대상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별로 안전인증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별 기준 설정도 기술규제 영향평가 결과 합리적 수준으로 인정됨. 他법령상의 안전점검과 중복되지 않으며, 타법사례와 비교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점검 등의 결과 조치기간** 신설

-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 결함이 발생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개축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심사결과 교육시설법에서 모든 교육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시설 및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일정기한까지 조치하도록 하여 이행 강제력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조치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 것은 타법사례 등과 비교 시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성평가 대상** 신설

- 건축승인 대상 규모로 학교 건축을 하거나, 학교 경계로부터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에서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공사를 할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심사결과 교육시설의 건축 및 인접 대지에서의 건설공사 시 교육시설과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화 추진에 따라 시행령에서 안전성 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1)학교內 건설공사는 건축허가(승인) 대상 규모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교육시설이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며, 2) '4m 초과 50m 이내의 건설공사에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는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는 터널공사, 발파공사 및 지하굴착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로 한정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중소기업 영향평가에서 '중대한 위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제시, 부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시설 등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로 조문을 수정하여 적정성을 확보하였음.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점검 대상** 신설

-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규모로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을 하는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에도 사전 평가·점검 실시 가능

심사결과 법률에서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점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교육시설 완공 이전에도 평가·점검이 가능한 건축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규모로 설정한 것은 타법사례인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시공평가' 등과 비교시 적정한 수준으로, 학교가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 건축물의 완성도 및 안정성 제고,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시설 안전인증 유효기간** 신설

- 교육시설안전인증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안전인증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육시설은 유효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가능

심사결과 사전 예방적 차원의 안전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법률 제정 취지를 감안하고, 규제 차등화를 적용한 점, 타법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제수준 및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시설 안전인증 재인증 대상** 신설

- 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을 연면적 500㎡ 이상으로 개축·증축 등 건축을 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함

심사결과 교육시설을 증축·개축 등의 건축을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시점과 새로운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증개축 규모'를 '연면적 500㎡ 이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및 타법사례(건축법) 고려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대학별 학생선발 관련 평가 환경 정보 공시** 신설

- 대학별 모집요강 외에 학생선발 관련 평가환경 정보인 '전임사정관 현황' 및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의 공시정보 범위 추가

심사결과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 평가요소에 대한 대학의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종의 공정성·전문성 등 평가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해당 공시지표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됨.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 공시** 강화

- 현행 대학 공시항목인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

심사결과 학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 운영이 필수적이나 현재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함. 현행 대학 정보공시항목인 '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적' 외에 '전담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적으로 공시함으로써,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 및 지원 등 전담기구 운영 내실화를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규제의 수준 및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립대학의 대학의 장, 이사장,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공시** 신설

- 사립학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장, 이사장,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의 공시정보 범위 신설

심사결과 현재 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고,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 업추비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비리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공시정보를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 반대의견이 제출되고 적정성 판단을 위해 **중요규제로 본위원회에 상정.**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업추비 목적을 감안할 때 법인을 대표하는 인사인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업추비를 공시하는 것이 사학의 자율성 침해보다 회계 투명성 제고의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대학의 장의 경우에는 중복규제 소지가 있으나 위반시 고등교육법상 시정명령 등 실효적 수단이 마련된 '공시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립대학의 임원, 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신설

- 사학법인 운영의 책무성·공공성 확대를 위해 '임원 및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의 공시정보 범위 신설

심사결과 사학법인의 인사비리가 설립자나 임원의 친족관계에 의한 학교경영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친족관계 교직원 수' 공개를 통해 사학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나, 이해관계자 반대의견이 제출되고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여 **중요규제로 본위원회 상정.** 친족관계의 수 공시는 위임입법 일탈의 소지가 있고 정책목표 달성에 실효적 수단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개인 친족관계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실효적인 수단과 정책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아 **철회권고**

(22)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교원양성위원회에 재학생 등 포함 의무** 신설

-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으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의 유·초·중·고 현직 교원을 한 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심사결과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초·중등학교 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교원양성위원회의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 해당 기관 재학생 등의 참여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온 바, 교원양성위 구성원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의 현직교원을 포함하여 학교현장의 변화와 예비교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교원양성위원회는 ①'교원자격검정 실시', ②'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는 바, 재학생 등 포함 의무는 ②'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시'로 한정하고 있고, 재학생 참여가 부적절한 ①'교원자격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재학생 배제가 가능하므로 규제의 수준 및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시험검정에 성인지 교육 이수기준 추가** 신설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기준에 ⑤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연 1회 이상 또는 총 4회 이상) 추가

심사결과 교원양성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하여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교원이 되려는 사람의 양성평등 의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필수 교육 이수 기준을 연 1회로 최소한으로 규정하였고 해외사례와 타법사례 등을 고려 시 규제의 수준 및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문화체육관광부

집필자 최은옥 주무관
Tel. 044-200-2436, eochoi@korea.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등 총 1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0.02.28)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1, 비중요1)
(3)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5.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5.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5.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6)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6.1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6.18)	원안의결 5	강화 2, 신설 3 (비중요5)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본심사 (2020.6.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9)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7.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7.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7.31)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 1 (비중요3)
(1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3)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본심사 (2020.1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8.3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계	-	원안의결 31	신설 25, 강화 6 (중요 1, 비중요 30)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가족호텔업 평가항목 신설** 신설

- 가족호텔의 공용공간, 객실·취사시설, 식음료·부대시설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

심사결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9.12)으로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객관적인 등급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호텔업 평가에 필수적인 항목만을 최소한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고, 관광호텔 등 다른 호텔업 등급평가 항목과 비교시 동일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고 규제비용도 크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확대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신설

-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 이용 불가

심사결과 자동진행장치 활용이 가능토록 게임물 개·변조를 통해 제공되는 불법게임물로 인해 이용자의 사행심 유발, 게임 점수의 현금화로 이어지는 사행행위 등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음.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고, 중소기업영향평가시 유예기간 연장 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본위원회에 상정**. 자동진행장치 제공·사용 금지를 통해 일반·청소년게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행행위 근절 및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게임사업자 영업이익 손해나 이용자 편의성 등에 비해 불법·사행 영업 방지라는 공익 실현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심사내용 **베팅성 웹보드게임물 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신설

-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이행

심사결과 온라인 스포츠베팅 게임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현행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여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온라인·모바일·스포츠베팅 게임을 온라인 포커·고스톱과 마찬가지로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사행성 조장 방지 등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적합하고, 타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신설

-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이 일정한 교육·인력·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가능

심사결과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지관의 지정기준 및 제출자료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타법사례와 비교시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애니메이션업의 변경신고요건 및 변경신고기한 마련** 신설

- (변경신고대상)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경우 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 (변경신고기한)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심사결과 애니메이션법 제정('20.6.4.시행)으로 애니메이션업이 신설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대상·기간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계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애니메이션업 신고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신고요건과 기간을 규정하고, 기존 영화및비디오법에 따른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관한 신고·조사기준** 강화

- 예술인의 신고 및 문체부 조사가 가능한 불공정행위 기준 확대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서면계약 체결 관련 사항 위반,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도록 한 경우, 예술인은 문체부에 신고하고, 문체부는 그 사실관계 조사 가능

심사결과 문화예술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구두계약, 계약 외 노동,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조사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문화예술용역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강화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경우, 그 행위의 ①내용·정도 ②기간·횟수를 고려하여 공표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과 취지에 따라,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사실 공표에 필요한 기준을 명시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공정거래법 등 타법사례와 비교시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및 공개 방법** 신설

- (공개정보)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결산서 첨부사항, 기타 권리자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 운영에 중요한 사항
- (공개방법)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적 의무 공개정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제공하되, 업무규정 변경 시에는 즉시 공개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신탁관리단체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내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저작권자 권익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개대상 정보는 대부분 이미 자체적으로 작성·관리되는 정보로 투명성 제고 목적에 적합한 수준이고 국내 유사사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조사방법 마련** 신설

- 문체부 담당 공무원, 문체부로부터 조사업무를 위임받은 공인회계사 및 기타 관계 전문기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사무소에 출입하여 현장조사 가능

심사결과 과도한 행정조사로부터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사자 및 조사내용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상위법 위임에 따라 위탁관리단체 조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존에도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의거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현장의 규제순응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시 규제의 수준 및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보관된 저작물의 이용** 신설

- 고아저작물(저작권자 불명)을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범위 규정

심사결과 비영리·공익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이용(디지털화·대국민 제공 등)할 수 있는 국가·지자체 소속 공공문화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여 종전 법정허락제도만으로는 이용되기 어려운 문화시설 소장 고아저작물들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사회문화적 편익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고아저작물 저작권자의 잠재적 이익 손실은 미미하며, 국내외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유원시설업 신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강화

- 유원시설업 신규 안전관리자는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현행 6개월) 안전교육 이수

심사결과 안전관리자는 유원시설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사업장 배치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당초 개정안은 “배치 전”이었으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3개월 이내”로 변경하였고, 현행 안전관리자 교육일정을 확대(연 4회→ 연 6회)하여 피규제자의 규제준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규제의 수준과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종합·일반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신설

- 2년마다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 의무

심사결과 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유원시설 환경 마련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이 인정됨. 교육 시간 및 비용이 과도하지 않고, 타법사례(공중위생업자의 위생교육)와 비교시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물 설치 이용 제한** 신설

심사결과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설치 가능한 영상물이 게임물뿐만 아니라 영화 및 비디오물까지 허용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속적인 영상물 제공을 위해 설치·이용 제한이 필요함. 유원시설 이용객들에게 다채로운 영상물을 제공하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유해 영상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제한 규정으로 규제의 수준 및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관할 지자체에 수질검사 결과 통지** 신설

- 물놀이형 유원시설 사업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함

심사결과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한 수질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질검사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규제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미미하고, 안전한 수질관리 목적 대비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호텔 경영사 시험 격년제 전환** 신설

- 호텔 경영사 자격시험을 2022년부터 격년제로 전환(현행 매년 실시)

심사결과 매년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비용부담을 합리화하여 자격시험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격년제로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자격시험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자격시험의 폐지, 비정기적 시험실시보다 격년제 실시가 더 완화된 규제대안으로 적정하며, 타법 자격시험과 비교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신설

-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사용금지 조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개정)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심사결과 게임물의 사행행위 억제 및 국민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법의 유사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 시 규제의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추가** 신설

- 정보(약관, 사용료 징수 규정, 사업보고서 등)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신탁관리업) 또는 신고(대리중개업)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심사결과 일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방만경영으로 저작자 권익침해가 우려되며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으로 위반행위 시 업무정지가 규정되어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처분기준이 현행 유사규제에 준하는 수준이며 처분사유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시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성폭력 범죄 등에 해당하는 자의 지급중지 및 환수대상이 되는 장려금의 범위** 신설

- 올림픽경기 등에 입상한 선수에게 지급하는 ①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그 지도에게 지급하는 ②체육지도 연구비, ③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려금

심사결과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국가 장려금을 받은 자가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 지급한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을 중지하는 제재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환수 및 지급중지의 범위(대상)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인권침해 사건을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정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수혜를 제한하는

것이며 타법사례(국자유공자법)과 비교시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연수과정 신설** 신설

-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시, 연수과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3시간) 이수 의무 부여

심사결과 법 개정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시 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연수과정이 면제되었던 자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연수과정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 상위법의 집행을 위한 규정 마련이고 규제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신설 1)

심사내용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 신설

-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경기단체 임직원은 매년 1시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수 의무화

심사결과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예방교육의 대상·방법·기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타법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 의무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육지도사 자격 취득시 연수과정 이수기준 강화** 강화

- 이수 요건으로 '연수태도, 지도 및 현장실습 평가 등을 통과한 경우'를 추가

심사결과 우수한 체육지도자 양성 및 체육지도자 자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연수과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본 규제는 연수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타법 사례와 비교시 규제의 수준 및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육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강화

- 선수에게 폭행, 성폭력 등을 행하는 행위,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추가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심사결과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법 개정(제12조 제1항 제5호~제7호)으로 추가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타법사례와 비교시 위반행위별 그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 추가 신설

-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추가

심사결과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여행 트렌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관광객 주요 접점인 일반음식점업을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품질인증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 국가 지원 및 홍보효과 발생 등 편익이 발생하는 점, 해외사례 등을 고려시 규제의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 규정 신설 신설

심사결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대상에 '일반음식점업'이 추가 도입됨에 따라, 음식점업 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은 내·외국인이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 사업장을 안심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 수준이며, 同법령상의 기존 대상 사업의 인증 기준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교육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규정 신설

심사결과 대중문화예술인 연루 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스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의 최소한의 시기·내용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연 1회, 연 1시간 이상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정도 및 수준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에 '체육교습업' 신설** 신설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 줄넘기, 축구 및 종합교습' 운동 종목을 30일 이상 교습·강습·훈련하거나 교육 하는 업

심사결과 그동안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교습업'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바, '체육교습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한 법개정에 따라 '체육교습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세부 종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 대상 체육 교습시에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안전대책 마련이 법개정 주요 취지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 대상 업종으로 한정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종목으로 우선 9개 종목을 선정한 점, 규제비용 대비 어린이 이용자 안전확보의 편익이 더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규제의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신설

- 야간시간 교습금지(24시~5시), 주류 판매·제공 금지

심사결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육교습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절한 준수 사항을 부과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체육교습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들의 이용 특성을 감안하여 야간시간 교습 금지, 주류 판매·제공 금지 등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체육교습업의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 신설** 신설

심사결과 신설된 '체육교습업'에 대해 '체육시설법' 상의 시설 및 안전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공통기준 외에 '체육교습업'의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최소한의 준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제 수준 및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체육교습업 신설** 신설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 1명 이상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 2명 이상

심사결과 체육교습업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체육교습업자에게 어린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발생 및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용자의 안전과 교습운동 종목별 동시 최대 교습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신설

- (안전시설)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인근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비구방지망 등)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도심 지역 인근에 설치된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인근 주변으로 날아가는 타구공에 의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망 설치 등의 시설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함.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인근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설치기준을 한정하여 규제의 수준 및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 신설

- (시설기준)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 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심사결과 수영조 내 사다리 설치 기준 마련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체육시설업자가 현장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문화재청

집필자 김진용 사무관
Tel. 044-200-2447, wisdom7784@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총 4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3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문화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7	신설 7, 강화 0 (비중요 7)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신설

-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미충족 행위에 한해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부실운영 행위는 최대 '업무정지'만을 규정

심사결과 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판단되며, 타법 사례의 제재처분 기준과 비교 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및 승계신고 기한 규정** 신설

- 문화재매매업자는 주요내용 변경,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 20일 이내 지자체장에게 신고

심사결과 법의 위임에 따라 주요내용 변경 및 영업승계 신고기한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고의무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신고기한 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신설

- 우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발굴·인증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심사결과 법 개정으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구체적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기준은 일반적인 규제와 달리 프로그램의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측면이 더 크며, 타 인증기준(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과 비교 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입이나 경쟁의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라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는 중요한 사항 규정** 신설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겨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

심사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발굴(변경)허가는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발굴 '면적' 및 '기간'의 변경은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한 허가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변경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변경사항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요건** 신설

- △공공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등의 실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고 실행 가능

심사결과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 지정 요건이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안정성, 돌봄사업의 품질 도모 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수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세부기준**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취소, △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 지정취소, △ 그 밖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차) 시정명령, (2차) 지정취소

심사결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법에서 반드시 지정취소하도록 규정한 사유와 중대한 하자를 제외하고 1차적으로 시정명령으로 규정한 점, 경미한 경우 처분 전에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문화재 수리 설계승인 기준** 신설

- 지정문화재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 등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설계승인을 위한 설계심사의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문화재 수리는 실측과 고증조사 등을 통해 문화재의 원형 보존·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본 규제안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필요·적합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1 보건복지부

집필자 / 김경호 사무관
Tel. 044-200-2425, hj1002@opm.go.kr

이명자 사무관
Tel. 044-200-2399, ladies2000@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총 31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5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7건 중 1건에 대하여 부대권고, 5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0.03.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0)	원안의결 4	신설 1 (비중요1)
(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20.03.30)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1)
(8)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9)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예비심사 (2020.04.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0)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5.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5)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6	신설 2, 강화 4 (비중요6)
(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9.)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4)
(18)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9)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2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03)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4)
(21)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예비심사 (2020.07.1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22)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17.)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2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2	신설 1,강화 1 (비중요2)
(25)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6)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27) 모자보건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8)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0)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31)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부대권고 1 원안의결 56	신설 41, 강화 15 중요1, 비중요56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신설

- 시설기준으로 응급전용입원실 2병상 이상과 응급전용보호실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인력기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과 환자 3명당 1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함

심사결과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손상 등에 대한 외상 진료와 더불어 적정 수준의 정신과적 진료를 위해 인력 및 시설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손상에 대한 응급진료 후 정신과 전문의가 연계 진료를 하기 위한 최소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의료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강화** 강화

-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체보호대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나 기준 및 준수 의무가 없어 자칫 환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의 인권과 안전보호를 위한 최소기준만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이식정보보고 및 부적격제대혈 정보등록 의무 강화** 신설

- 제대혈 이식을 하는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 1년 경과 전 6개월 주기로 1년 경과 후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
- 부적격제대혈에 대한 정보등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제대혈 기증·위탁 활성화와 불법 제대혈 사용금지를 위해서 제대혈 이식 후 경과와 부적격제대혈에 대한 정보등록이 필요하고, 제대혈 기증·위탁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격 제대혈 악용을 금지시키고 제대혈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수출금지 대상 의약외품 지정 (신설 1)**

- 수술용 마스크 및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 목적의 외용 소독제, 의료인 및 방역관계자 등이 착용하는 보호장비,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심사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그리고 진료 및 방역을 위한 보호장구의 국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고, 감염병 확산추세를 고려할 때 마스크뿐만 아니라 손소독제와 보호장비의 국내수요에 대응할 긴급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 신설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준과 지위승계 심사 예외사항, 인증취소의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증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지정요건이 인증제도 달성에 적합해 보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된 기업의 혜택을 중단·환수조치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신설

-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정보관리기관 지정대상으로 역량있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중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을 분야별로 세분하여 지정

심사결과 혁신의료기기는 전문분야로 연구개발 정보관리 역량이 있는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고, 통합·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해선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선정이 필요하며, 전문성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포함하여 대상범위를 넓힌 점과 일정 수준의 인력과 장비 요건은 통합정보포탈과 같은 시스템 운영에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설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신청 시 첨부서류,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지정취소 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사항 규정

심사결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온·오프라인 교육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지원을 받으므로 공인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과 인프라 요건도 적정한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및 취소** 신설

- 혁신의료기기 지정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명시하였고 지정취소된 자는 지정서를 반납하도록 하는 의무부과 규정 신설

심사결과 혁신의료기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첨부서류 및 지정취소에 따른 지정서 반납 규정이 필요하고 혁신의료기기의 기술집약도, 안전성·유효성의 개선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명자료 제출요구는 의료기기법과 산업융합촉진법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규정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연면적 산정을 위한 위임 규정** 신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 시설 연면적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 신설 후, 고시 또는 지침을 통해 위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주차장법상 의무설치 면적만 포함하도록 명시

심사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연면적 산정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어 소송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면적 산정기준의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 신설이 필요하며 지침을 통해 위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주차장법상 의무설치 면적만을 표함하도록 명시하였고 유사사례와 비교하더라고도 과도하지 않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의료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보안설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세부기준** 신설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만 해당)에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1명 이상) 배치
-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 및 의료인 대상 교육 실시
- 안전을 저해하는 폭력행위 금지 등 게시물 제작 및 게시

심사결과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보안장비·인력을 두도록 하는 것은 연간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국민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안전을 제고하고, 추가 고용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지원을 의료업계와 충분히 공유한 점을 고려하여 100병상 이상 병원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 설치하는 것에 **원안동의**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병원 업무 가중 등 규제준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도기간 부여 등 병원의 부담 완화방안 마련을 **부대권고**

(8)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강화** 강화

-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기준을 상향조정(21%→30%)하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을 하향 조정(입원환자 16%→14%, 외래환자17%→11%)하는 등 중증환자 진료기준을 강화함
- 감염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대평가로 운영하던 병문안객 운영체계 기준을 절대평가 기준으로 상향

심사결과 중증환자 기준을 강화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환자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환자의 안전 및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 마련이 필요하고, 환자구성 비율의 경우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최저치 이하를 설정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병문안객 감염관리 기준도 필수사항만 규율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 신설

-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 인정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외국학위 소지자의 졸업대학이 국내대학과 동등한 수준임을 판단하는 검증기준이 필요하고, 면허시험 응시자가 충족해야 할 적정한 검증 잣대를 마련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신설 등** 신설

-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유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하여 세부 처분기준 규정

심사결과 부당청구금액이 대부분 소액으로 감경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업무정지 1.5개월을 적용받아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적용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설

- 징수금 1억 원 이상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의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심사결과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가해 징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특정 개인을 지칭할 정도의 인적사항 공개 필요하며, 국세기본법과 국민연금법 등에서도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부사항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요건** 신설

- 전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나 생물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

심사결과 고위험병원체 관리는 전문성을 요구하며 관련 전공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인력이 적합하므로 학력 또는 경력요건은 필요하고, 피규제자에게 고위험병원체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을 통해 충분한 안내를 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신설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검사·운영체계 및 검사능력의 숙련도를 평가

심사결과 확인기관의 검사능력 전문성 강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숙련도와 검사·운영체계 평가 관리 필요가 있으며,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숙련도와 기관운영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기준은 아니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국민건강증진법 (신설 1)

심사내용 **담배판매 촉진행위 금지** 신설

- 담배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가 판촉행위로 금품 또는 체험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의 사용경험 및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금지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 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규제심사 시 흡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담배판매 촉진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기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상급종합병원의 병문안객 관리 강화** 신설

- 병문안객에 대해 출입자 관리방법, 허용시간 등을 구비
- 전자테그와 슬라이딩 도어 등 고정식 시설물을 설치
-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상주 보안인력을 병원별 통제시설 및 건물구조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근무 현황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감염병 역학조사 시 신속한 병문안객 파악이 이뤄져야 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병문안객 이동경로 제한이 요구되며, 운영체계와 통제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한 점, 고정식 시설물과 보안인력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 기설치한 점,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통해 비용 보전이 이뤄지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신설2, 강화 4)

심사내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 확대** 강화

- 유아교육법을 위반하여 유치원 폐쇄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을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에 「유아교육법」위반으로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 추가에 대해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기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 강화

-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내 아동방치,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및 차량· 학대사고 발생 시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정기 등 처분기준 신설 및 강화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에 대해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기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의 관리 강화** 신설

-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은 보육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육료 최초 수납 시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목적에 따른 사용처,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보호자에게 설명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분류되었으며, 복지부가 회계시스템 개선 등 보육료 유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검토하고 법 개정안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전에 강화된 규제 내용을 현장의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부대권고 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기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반사실의 공표대상 확대** 강화

- (현행)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ㅇ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한정
- (개정)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비용, 보육료,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까지 추가로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분류되었으며, 복지부가 회계시스템 개선 등 보육료 유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검토하고 법 개정안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전에 강화된 규제 내용을 현장의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부대권고 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기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집 폐쇄사유 추가** 강화

- (현행) 어린이집 폐쇄사유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한정
- (개정) 어린이집 폐쇄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비용, 보육료,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까지 추가로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분류되었으며, 복지부가 회계시스템 개선 등 보육료 유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검토하고 법 개정안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전에 강화된 규제 내용을 현장의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부대권고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기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사유 추가** 강화

- (현행) 어린이집 원자아 자격정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한정
- (개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비용,

보육료,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까지 추가로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분류되었으며, 복지부가 회계시스템 개선 등 보육료 유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검토하고 법 개정안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전에 강화된 규제 내용을 현장의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부대권고 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기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건강보험 신고 업무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설

-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신고사무 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심사결과 신고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한 사업주의 경우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신고함으로써 공단-사업장-대행기관 간 효율적 의사소통이 가능해 단순신고 절차만으로 업무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4)

심사내용 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②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③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④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강화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배치(24시간 1명 이상) :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
- 응급의료정보관리인력을 1명이상 배치 : 전문·지역응급센터
- 격리병상 설치 : 지역응급센터(3개 이상), 지역응급기관(1개 이상)

심사결과 응급의료센터에 폭행상황 발생 시 다른 응급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응급환자를 유휴 응급의료센터로 분산시켜 신속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요원은 필수적이고, 감염병 의심환자 내원 시 응급의료센터 내 일반환자 감염을 막기 위해 격리병실도 필요하며, 응급실 시간대별 이용객 분포를 고려하면 24시간 보안인력 배치는 타당해 보이고, 응급정보인력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점, 감염병 환자의 응급의료기관

내원빈도가 낮지 않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비용이 과도하지 않고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점과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아동·분만병원 요건기준** 신설

- 아동·분만병원에 지정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환자구성 비율(1세 이하 환자비율 25%이상 등), 필수 진료과목(산부인과 등), 의료인력(산부인과 전문의 등), 병상(50병상 이상 등) 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아동, 산모의 경우 감염 위험이 크고 1인실 선호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지역별 차등요건을 마련하였고, 기존의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문병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점, 행정예고 기간 중 피규제자가 제시한 기준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신설

-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기관(상급종합병원 등) 및 단체(중앙회 등)를 명시하였고, 세부적인 지정기준(운영규정 및 인력 등)을 마련
- 지역환자안전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정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정명령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보건의료기관 간 환자안전활동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이 미흡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양질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환자안전센터 설치 가능 대상기관들이 지정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며,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후준비센터의 경우도 시설 및 인력기준이 지역환자 안전센터와 유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기관 규정** 신설

-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단, 종합병원인 경우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심사결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기반 돼야 하나, 자율보고를 통해선 환자안전사고 데이터 축적실적이 미미하므로 의무보고제도 도입 필요하고,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추가적 부담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기준 강화** 강화

-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수의 숙박 영업신고 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와 사건·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담보할 보험증서를 추가로 제출
- 하나의 건축물에 복수의 숙박업 영업신고가 된 경우 숙박영업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

심사결과 객실 소유자와 숙박업 운영자 간 민사관계 증명이 선행된 후 복수 영업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위생관리 공백 차단을 위해 변경신고 사항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권리확보 증명서류 방식을 한정하지 않았으며, 보험증서는 기가입된 보험에 특약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변경신고 사항은 신고 의무만 부과한 것이므로 행정부담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강화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에 취사설비를 고정형(가스레인지, 인덕션 등)으로 설치
- 숙박업 복수 영업신고를 하려면 최소 30객실 이상이거나 전체 연면적의 1/3이상이어야 함. 다만,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최소기준을 낮추어 정할 수 있음

심사결과 취사설비를 고정한다면 화재 발생 시 화재감지기가 온전히 작동할 가능성이 커 사고로부터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복수 영업자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설 및 설비기준 마련하여 입법불비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형 숙박업소 대부분은 고정형 취사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동형에서 변경이 어려운 경우라도 숙박업 영업 가능한 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복수 영업신고 최소 객실기준 변경이 가능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강화** 신설

- 숙박업자가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안전설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면, 개별 난방설비 주변 및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소방시설법」

인증제품)를 설치하도록 규정

- 집합건물 숙박영업 하는 경우 ①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복수 영업자 숙박시설임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기재하고, ②숙박영업자는 영업장 현황(면적, 객실 수)을 행정청에 매년 보고하고, ③복수 영업자 숙박시설일 경우 복도·계단 등 공용시설의 위생관리는 공동책임으로 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집합건물 내 복수 숙박영업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민박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서도 도입하고 있으며, 국민의 위생·안전을 위해 긴요한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강화** 신설

- 숙박업, 미용업 각각의 업종을 신고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등의 처분규정 신설
- 목욕업자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10일 등의 처분규정 신설

심사결과 불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실무담당자의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내 유사 위법사례 처분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영업자에게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인체세포등 처리·관리 허가기준** 신설

-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과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설 및 장비(인체세포 등의 채취를 하는 채취실 등), 인력(세포처리시설 장과 품질책임자 1명 이상), 품질관리체계(채취부터 출고까지 전공정 품질유지를 위한 작업지침서 마련)를 갖춰야 함

심사결과 인체세포 등을 채취하고 보관·처리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가 요구되고, 오염되기 쉽고 인체에 주입되는 세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품질관리체계 필요하며, 시설·인력·장비 및 품질관리체계 기준은 기존 약사법에서도 요구하던 사항으로 업계의 순응성이 높아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종세포 등의 채취** 신설

- 이종세포 또는 조직 및 이종장기 채취요건을 의료인 또는 수의사로 한정하며, 채취대상 동물에 대한 진찰 및 검사 등을 통해 채취 적격성이 인정되고, 채취과정에서 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방지 초치를 취할 것

심사결과 이종세포등 채취 시 오염 가능성을 방지하고, 재생의료 연구대상자에 투여되는 만큼 적정 수준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의사 또는 의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임상연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종세포 활용을 허용한 입법 취지와 양질의 이종세포 채취를 위해 전문인력이 주된 역할을 하도록 한 제정안은 타당해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신설

- 첨담재생의료 임상연구 시 임상연구 계획을 준수하고, 연구대상자 안전대책을 세우며, 충분한 설명 후 동의 절차 진행하고, 연구 진행상황 실시간 공유하며, 인체세포 관련 규정 준수하고, 의료기관 내 가용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자료를 보존하며, 안전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국제 인증을 받은 재생의료 임상 실시기준을 준수할 것

심사결과 승인된 임상연구 계획의 준수,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연구대상자에 연구내용의 정확한 설명 의무 등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기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등** 신설

- 첨담재생의료실시기관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로 규정
- 시설 및 장비 기준은 임상연구용 인체세포 등 보관실과 기록 및 자료 보관실, 임상연구 관리를 위한 안전성 모니터링실, 임상연구 실시 및 검사실을 갖출 것
- 인력기준으로 첨단재생의료관리자, 임상연구자,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를 둘 것
- 표준작업지침서에 재생의료기관 장의 준수사항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인력의 자격 요건 등을 기재할 것

심사결과 임상연구를 위해서 시설 및 장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임상대상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건전문기관 책임하에 전문인력이 수행할 필요가 있고, 표준작업지침서 마련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약사법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완화된 수준으로 보이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세포처리업무 기록·보관 신설

-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세포처리 업무기록을 재생의료기관에 제공한 날부터 20년간 관리·보관
-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세포처리업무 보고서를 세포처리업무를 한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심사결과 임상연구 후 발생할 부작용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체세포 채취, 배양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실이나 훼손을 대비해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케 하여 보관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작용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장기간의 자료 보존은 적정해 보이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신설

- 세포처리업무 기록 책임자와 인체세포등 처리보관 책임자를 지정하고, 인체세포등 처리를 위한 표준작업 지침서를 갖추며, 정기적으로 세포의 오염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인체세포등을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인체세포등의 채취 및 검사에 관한 기록 등을 함께 제공하며, 인체세포등 처리·보관 인력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심사결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담당자 지정이 필요하고, 임상대상자의 건강관리와 위생관리를 위한 기록은 필수적이며,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 체계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소홀하기 쉬운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세포처리시설의 장에게 준수토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규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이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제재 처분기준 신설

- 첨단재생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연구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정의 준수 가능성 제고하고 위반 시 지정받은 재생의료기관에 대해 제제조치 필요한 점, 위반사항으로 발생될 연구대상자의 피해는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제제조치로 인한 재생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은 일시적이고 위반한 행위에 한정되어 적용되므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약가인하 우회등재 신청반려 신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감액되거나 조정된 약제의 제조·위탁제조·수입업자의 계열회사가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약제 요양급여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심사결과 동일제제·가격 원칙에 따라 최초등재제품 가격의 53.55% 책정되는 제도를 악용하여 계열사를 통해 동일 의약품을 높은 약가로 재등재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약제 요양급여 신청 반려조항 도입이 제약업체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악용사례가 1건에 불과하므로 업계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신설

- 부정청구 가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한하고자 할 때 부당가담금액 산정방법, 급여 중단 기간의 가·감산 등 일반적인 적용기준 및 개별기준인 부당가담금액별 급여 제한 기간을 정함

심사결과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부정청구 가담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정청구 가담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 위반행위 동기, 위반정도 등에 따라 급여 이용 제한 기간을 가감산을 적용하고 가담한 급액별로 급여 이용 제한 기간을 세분화하였고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강화** 강화

- 노인학대 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행위가 단일하나 중대한 불법행위인 경우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별표 2 제1호다목)
- 거짓·부정청구 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을 3차 위반 시에서 2차 위반 시로 강화(별표 2 제2호나목)

심사결과 장기요양기관 시설 내 노인학대 행위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 부정청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유사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의료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한 경우나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등 의료기관 인증서의 반납 및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것

심사결과 「의료법」 인증취소 규정의 행정집행력을 확보하고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필요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제재처분의 비례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국민건강증진법 (강화 2)

심사내용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강화

- 니코틴 용액 1ml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을 담배 잎에서 담배 잎의 다른 부분까지 확대

심사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궐련형 담배와의 가격 격차가 완화되고 저가담배화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흡연감소 및 방지에 기여하고, 영국, 프랑스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담배 잎'이 아닌 '담배 전체 또는 부분'만을 구성하더라도 담배로 인정한다는 점, 예산 부수법률로 국회에 제출되므로 담배 제세와 별개로 논의하기 어려운 점,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사담배 제조자의 보고의무 강화** 강화

- 유사담배(담배 잎 이외 부분)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부여

심사결과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와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도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면서 정확한 제세부담금 산출을 위해 수량 등의 정보 필요하고,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납부를 위해 유사담배 수량 등을 신고하는 등 통일적인 제세부담금 부과체계 운영 등을 위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모자보건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임신 출산종합상담기관의 지정** 신설

-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아야 함(제7조4)

심사결과 형법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19.4.11)에 따라 관련 법인 모자보건법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한 상담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신출산 종합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할 필요가 있고, 임신출산기관으로 인가받은 기관에서 상담 및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사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였고,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전공의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 지정기준** 신설

- 신경외과 중환자실을 외과계 중환자실로 변경하는 등 명칭을 개정
- 상부위장관 내시경, 복부초음파기 등 시설 및 기구 신설사항 규정
- 직업환경의학과의 경우 '업무상 질병 외래환자 300명 이상'과 '직업성 질병 진단 환자 300명' 기준을 '특수건강진단 등 외래환자 300명 이상'으로 변경연간진료실적 변경

심사결과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과 장비를 규정하였고, 의료체제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정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안의 지정기준을 현행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에서 모두 충족한 상태이므로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수련기관 지정 및 수련과정 등** 신설

- 사회복지사의 수련기관 지정기준
  * 의료사회복지사 :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수련지도자로서 1인 이상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제외)
  * 학교사회복지사 :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수련지도자로서 1인 이상 상시 근무하는 학교
-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수련과정 등 규정(별표 1의3)

심사결과 의료 및 학교 사회복지사를 국가자격으로 교부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20.12.12 시행)됨에 따라 영역별 의료·학교사회복지사의 수련기관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이 필요하고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지정 및 수련과정은 이미 국가자격으로 발급해 온 유사직종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의 수련기관·수련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및 기능 등** 신설

- 수혈관리위원회 설치대상 의료기관 : 2021년 6월 30일 이전까지 1,000개 이상 병상을 지니며,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20,000단위 이상인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100개 이상의 병상을 지니며,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1,000단위 이상인 의료기관이 대상
- 수혈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 : 2021년 6월 30일 이전까지 1,000개 이상 병상을 지니며,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20,000단위 이상인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500개 이상의 병상을 지니며,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10,000단위 이상인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100개 이상의 병상을 지니며,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5,000단위 이상인 의료기관이 대상
- 심의기구인 수혈관리위원회와 집행기구인 수혈관리실의 역할을 규정
- 수혈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모든 병원에 일제히 설치하는 것보다 병원 규모가 크고 혈액제제 사용량이 많은 의료기관부터 적용하게끔 기준을 설정하였고, 혈액사용의

적정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해 수혈관리 자체 규정안 마련 등 수혈관리위원회 업무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위원회 심의사항을 집행하고 감시하기 위해 수혈관리실의 업무규정은 필수적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피규제대상의 경우 수혈관리위원회가 기설치된 상태이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운영 중이므로 준수가능성도 높고, 규제비용이 적으며,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혈관리실 인력 및 교육기준** 신설

- 수혈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1명 이상과 간호사 1명 이상, 그리고 수혈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단,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중 1명 이상은 전담근무할 것
- 수혈관리실 근무 인력은 매년 8시간 이상 수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심사결과 수혈용 혈액관리 총괄 책임자로 전문성 있는 의사가 필요하며, 의료현장 이해도가 높은 간호사가 수혈정보를 관리하고, 임상병리사가 혈액의 채혈, 혈액형 검사 등을 담당하므로 수혈관리실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을 규정하였고, 수혈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의 경우 혈액관리료(의사와 임상병리사 인건비용 보전)를 지급받고 있으며, 워크숍이나 학회참석으로도 교육시간이 인정된다는 점, 규제비용이 적으며,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혈액원, 의료기관의 제출정보 등** 신설

- 혈액원과 의료기관의 장은 매일 정오까지 전날의 혈액 관리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혈액부족 등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당일 혈액 사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함
-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병상 수, 혈액형·혈액제제별 전년도 일평균 혈액 사용량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심사결과 혈액원이 제출할 혈액공급정보는 의료기관별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폐기정보는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혈액이 없는지 확인하며, 재고 정보를 통해 혈액 수급 상황관리 및 헌혈 요청 등의 조치에 취하는데 필요하며, 혈액원은 이미 '혈액수급 일일정보 보고'를 제출하고 있으며, 혈액 사용 의료기관의 경우 혈액수급감시체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제출이 가능하고, 일일 단위 보고가 불필요한 수혈자의 성별, 연령, 혈액형 및 진료과목 정보의 경우 월간 단위 보고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혈액원이 사업계획,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의무규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위반 시 행정제재 처분은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최초 위반행위 시 시정명령을 내려 제출의무를 준수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암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기준 등 운영규정** 신설

- (지정기준 및 절차) 세부지정기준은 고시로 위임하고,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현황과 사업계획서, 재정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운영 및 평가)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앙·권역센터의 운영에 대해 수시로 평가를 시행
- (지정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권역센터가 암생존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잘못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심사결과 중앙·권역센터 지정 시 업무수행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의 현황자료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지원사업이므로 사업평가와 시정명령 등의 관리·감독은 필수적 규정이며, 사업을 잘못 운영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센터의 경우 시정명령 등은 적정한 관리 수단으로 판단하였고,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여성가족부

집필자 / 이명자 사무관
Tel. 044-200-2399, ladies2000@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총 8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0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0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3)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08.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9)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11	신설 4, 강화 7 (비중요11)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강화

- 아이의 신체에 폭행·상해를 입힌 경우 (6개월 → 1년)
-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업무수행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6개월 → 1년)
-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 (6개월 → 1년)
- 영리목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 알선 등 (3개월 → 6개월)

심사결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등으로 아이돌보미 자격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이용 부모의 불안 해소와 서비스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재처분 강화를 위한 사유별로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유사사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수련시설의 중요사항 변경** 신설

- 수련시설 운영 중 모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청소년 수련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수련시설 내 집라인 등 모험시설물(집라인, 인공암벽 등)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규 규정이 필요하며 수련시설 운영 중 모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사례 '궤도운송법'에서도 궤도사업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련시설의 종합안전· 위생점검 대상 확대** 강화

- 시행령 별표 1의2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의 점검 대상 분야에 험시설 추가

심사결과 청소년 수련시설내 모험시설에 대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종합안전위생점검분야 및 내용의 점검 대상분야에 모험시설을

추가하여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 유사사례 및 국외사례와 비슷한 수준이며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신설 1)

심사내용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취소 등 기준 개선** 신설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취소 등의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 실적이 없는 기간 단축 (1년이상 → 6개월 이상)
- (신설)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취소 (1차 : 시정명령, 2차 : 업무정지 2개월, 3차 : 지정취소)

심사결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상적인 센터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법사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비용이 없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시서비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제정안(신설 1)

심사내용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함** 신설

-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확인된 이용자의 정보로 회원가입정보관리를 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 대화저장(대화내용 유지, 캡쳐나 대화내용 내보내기 등)이 불가능한 애플리케이션
- 신고기능이 없거나 신고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애플리케이션

※ 제외사항 : ①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와 연계하여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대화서비스 ② 특정한 게시물에 댓글을 쓰는 방식이나 메일과 같은 방식으로 대화하는 서비스 ③누구나 열람·시청·청취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심사결과 랜덤채팅앱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가 없는 랜팅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인증기능, 대화저장기능, 신고기능)에 대한 비용부담은

있으나 온라인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규제이며 유사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강화

- 아이의 신체에 폭행·상해를 입힌 경우 (6개월 → 3년)
-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업무수행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6개월 → 2년)
-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 (6개월 → 1년)
- 보수교육 연속하여 3회 이상 미이수, 영리목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 알선 등 (3개월 → 6개월)
- (신설) 아이 모욕·협박 2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음주·흡연 등을 이용한 경우 1년

심사결과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아이돌보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이돌보미는 가정내에서 1대1로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의 어린이집보다 더 엄격한 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며 규제비용이 없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강화 1)

심사내용 **결혼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강화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최근 3년이내에 교육 이수

심사결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3년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중개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문화 사회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개정 사항 및 인권과 직업윤리 등 최근 내용을 반영한 교육이 필요한 사항으로 최근 3년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유사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강화 2)

심사내용 **국제결혼 중개업자 다문화 수용성 제고 교육 확대** 강화

- 국제결혼중개업자 대상 다문화사회의 이해 및 인권강화 교육(4시간 → 6시간으로 확대)

심사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예방과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다문화 인식 제고와 건전한 결혼 문화를 위해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예정자에 대해 다문화 및 인권증진과정을 추가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변화,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유사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권침해적 결혼중개업 광고행위 규제** 강화

-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사업장 표시·광고에 활용한 표시·광고' 금지

심사결과 얼굴, 키, 몸무게 등의 개인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인터넷 등에 노출되는 경우 상대방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표시·광고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국내결혼중개업 광고의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업계 상규에 따라 실제 결혼 희망자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업장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광고에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제결혼중개업도 동등한 수준에서 사업장 홍보로 개인 신체가 노출되는 동영상은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사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신설 1)

심사내용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신설

- 청소년수련시설 생활관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심사결과 청소년 숙박시설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기준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중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타법령에서도 숙박시설의 개별난방일 경우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어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며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 (신설 1)

심사내용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취소 등 기준 개선** 신설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취소 등의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 실적이 없는 기간 단축 (1년이상 → 6개월 이상)
- (신설)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취소 (1차 : 시정명령, 2차 : 지정취소)
- (신설) 처분 일반기준

심사결과 '20. 7월에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당초 개정안은 3단계로 정하였으나,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업무정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처분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하고 행정처분 일반기준(위반횟수 및 감경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명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개위원회 재심사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자 없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필자 김경호 사무관
Tel. 044-200-2425, hj1002@opm.go.kr

이명자 사무관
Tel. 044-200-2399, ladies2000@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총 4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7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9건 중 1건에 대하여 철회권고, 78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0.01.03)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5)
(2)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02.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5)
(3)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0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0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24)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4)
(6)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3)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4)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1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1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3)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2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11)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개정안	본위원회 (2020.04.17)	원안의결 2 철회권고 1	강화 3 (중요1, 비중요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4.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3)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1 (비중요2)
(14)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0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1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16)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0.05.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7)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5.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8)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19)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7	강화 7 (비중요7)
(21)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2)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제정안	예비심사 (2020.07.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3)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예비심사 (2020.07.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5)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예비심사 (2020.08.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6)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04)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3)
(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9)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0) 의약품 동등성시험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1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3)
(3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32)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4)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3)
(3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3)
(39)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0)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1)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제정안	예비심사 (2020.1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2)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3)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철회권고 1 원안의결 78	신설 30, 강화 49 (중요1, 비중요78)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간장의 3-MPCD 기준 강화 강화

- 산분해간장, 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현행) 0.3mg/kg 이하 → (개정) 0.02mg/kg 이하

심사결과 산분해간장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인 3-MCPD는 중화시설을 개선함에 따라 저감이 가능하므로 국민의 불필요한 유해물질 섭취를 막기 위하여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점, 해외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패류 및 갑각류의 기억상실성 패독 기준 신설** 신설

- (현행) 패류 및 갑각류의 도모익산 기준 없음
  → (개정) 패류 및 갑각류의 도모익산 기준 20mg/kg 이하로 신설

심사결과 기억상실성 패독(도모익산)은 유독규조류를 섭취한 패류 등에서 생성되는 자연독소로 인간이 중독될 경우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어 기준 신설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외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규제 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캔디류의 납 규격 강화** 강화

- (현행) △젤리 납 규격 1.0mg/kg이하 △사탕 납 규격 0.2mg/kg이하
  → (개정) 캔디류 납 규격 0.2mg/kg이하

심사결과 납은 만성 신경독성, 지능발달 지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린이의 납 민감성을 고려할 때,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 전체에 대하여 납 규격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캔디류의 중금속 검사결과 동 규제 도입시 부적합률은 0.27%로 업체에서 준수 가능한 수준이며, 업계 간담회를 통해 확정하고 동의하여 개정안을 마련 한 점, 또한 국외, CODEX와 비교하더라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규제비용이 없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 강화

-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70종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강화

심사결과 식약처는 농진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에 따라 독성 시험을 거쳐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농약의 경우 도입 당시 국내 과학적 평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해외기준을 참고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성정한 바 있어 잔류어허용기준을 재설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량 평가결과 등 과학적 근거 확보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재설정하였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사안이며 국민 건강을 위해 다른 규제 대안이 없어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신설

- (정의)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식품유형 18-1 ~ 18-1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제조·가공기준) 살균 또는 멸균처리 공정 의무 적용
- (규격) 유가공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식중독균 규격*설정

  *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심사결과 당류가공품 또는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될 경우 식중독균 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하나 기존의 유가공품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함유가공품 유형을 신설하고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설되는 유함유가공품은 유가공품과 특성이 동일하므로 유가공품과 동일한 규격으로 설정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가결**

(2)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 신고의무 (신설 2)

- 생산업자는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 등의 실적을 매일 식약처장에게 신고
- 판매업자는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구매단가, 구매수량을 식약처장에게 즉시 신고

심사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과 직결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물량정보 확보를 통한 물가안정과 국민불안 시급히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긴급한 규제신설 절차를 밟았으며, 국내보급 가능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생산자의 일간 생산량, 출고량, 수출량 등의 정보 파악이 필수적이며,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차단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유통정보 수집체계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록관리, 교육 등 규정 신설

- 시설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정신청서에 첨부자료를 추가하여 식약처에 제출하게 하는 등 식약처장의 실태조사 실시근거 및 지정서 발급 등 세부절차 규정 신설
-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서에 따라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실시토록 하는 등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준수사항 규정
-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종사자 교육을 1년에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안전기준이 필요해 보이며, 과학적 성능시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정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의료기기법의 임상시험기관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고,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신설 신설

-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와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 등에 대해 일정 기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의료기기산업법에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이 필요했으며, 의료기기법과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점과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개정안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생산업자의 신고,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 마스크 수출제한, 판매업자의 신고 (신설 2, 강화 2)

-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출하량의 50% 이상을 공적기관에 출고
- 생산업자만 보건용 마스크 300장 이상을 수출할 수 있음
-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에서 모든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포함)로 확대

심사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지역감염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마스크·위생용품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시장수요의 안정과 국민 보건위생 차원에서 마스크 출고 및 수출제한 조치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긴급한 규제신설 절차를 밟았으며,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개정안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생산·판매업자의 신고, 공적판매처 및 약국의 의무, 마스크 수출금지, 매점매석 마스크 출고 (신설 2, 강화 2)

-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향후 3일간 생산예정량, 당일 공적판매처별 출고량 등을

신고하고 판매업자가 공적판매처 외에 일정수량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 필요

- 공적판매처에서 약국에 출하한 마스크 물량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하고, 약국은 공적판매처에서 출하받은 마스크 물량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하고, 공적판매처 및 약국에서 판매되는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설정
- 마스크 수출 원칙적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도적 목적에서 관계기관 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
-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경우 마스크 전량을 공적판매처로 출고

심사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현상이 발생하면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물품 수급 불안정 우려가 제기됐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스크 수출금지와 1인당 마스크 판매수량 제한조치 등이 시급함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정안에 대해 긴급한 규제신설 절차를 거쳤으며,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춤추는 행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제외(안 별표 23)** 강화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춤추는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1개월→2개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금지

심사결과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 등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불가하도록 하여 불법 영업 행위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와 동일한 규제 수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규제부담이 적으며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시설개수 명령도 있어서 적정성이 인정되고 규제비용이 없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오징어의 중금속 기준 강화(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강화

-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을 1.5 mg/kg 이하로 강화
  * (현행) 2.0 mg/kg 이하 → (개정) 1.5 mg/kg 이하

심사결과 환경 및 식습관의 변화에 따라 중금속의 인체 노출량 역시 변하므로,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중금속의 노출 점유가 높은 식품(오징어)에 중금속 기준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대비 강화된 여러 기준(안)에 대하여 노출 저감률, 비용 편익 등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 '1.5mg/kg' 이 순편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준치를 설정하였고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품원료 목록 개정 강화

- '왕백산차', '좁은백산차'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심사결과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의 원료재평가 결과, 섭취 시 부작용 사례 등 발생되어 식품원료로 모든 식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료목록에서 삭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에서도 해당원료에 대해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고 현재 식품원료로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없어 이해관계자 및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가결**

(9)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식용란 선별포장업과 닭 사육시설 간 이격거리 규정(제29조 별표 10) 강화

- 식용란 선별포장업과 닭 사육시설 간 이격거리 규정(제29조 별표 10)
-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건물은 닭·오리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규정

심사결과 '식용란 선별포장장'과 '가축사육시설' 이 인접할 경우 계란 수거 차량 등 외부인의 잦은 출입이 있으므로 축사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 축산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선별포장업 허가 신청에 따른 설비비용이 발생하나 산란계 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판단됨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였고 이해관계자 및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규모 농가 선별포장처리의무 면제시 준수하여야 할 위생기준 및 선별포장의뢰서 작성의무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1조 별표 3) 신설

- 1만수 이하 소규모 농가 선별포장처리의무 면제 대신 수집판매업 HACCP 인증받거나 또는 위생기준 준수(생산한 달걀의 10% 이상 검란 실시)

- 선별포장장에 선별포장처리 의뢰하는 수집판매영업자는 선별포장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농가가 선별포장장을 겸할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처리대장의 작성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수 있음

심사결과 선별포장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선별포장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1만수 이하 소규모 농가는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HACCP 인증 또는 위생처리기준(생산한 달걀의 10% 검란 실시)의 의무를 부과하여 최대한 달걀 안정성을 확보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소규모 1만수이하의 농가는 수익대비 선별포장 비용 부담이 커 경제성 손실 과다로 최소한의 적정한 수준이며, 해외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HACCP 적용업소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강화

-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HACCP 즉시 인증취소로 확대

심사결과 HACCP 제품이 집단식중독 발생원인으로 HACCP 업체 사후관리 부실 지적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HACCP 인증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의 최소화 조치로 타법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유사한 수준이며, 영향평가 이견이 없은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정보공개 세부기준 마련 신설

- (정보공개 범위)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제조국·생산국, 수입중단 조치일자 또는 해제일자, 수입중단·해제 사유, 제품유형
- (정보공개 기간) 수입중단 조치일부터 수입중단 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 공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정보공개 세부기준 마련하는 것으로 수입중단 조치 또는 수입중단 해제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정보공개 범위 및 기간을 명확히하여 정보공개할 필요가 인정되며 같은법 통관단계 검사결과 등의 공개와 동일한 수준이며 규제비용이 없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은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 강화

-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심사결과 불량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등을 수입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식품등과 비교하여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식품 등에서도 동등한 수준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 식품법령과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규제비용이 없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을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약품으로 확대** 강화

-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약품의 국제공통문서 자료 제출 의무

심사결과 의약품 허가심사체계의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전문의약품 중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약과 제네릭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식약처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과 규제비용이 과도하지 않고 영향평가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접 용기·포장 재질 및 종류 변경 시 안정성 시험자료 제출 의무** 강화

- 무균제제와 비무균제제의 용기·포장 종류 및 재질 변경 시 장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 등 안정성 시험자료 제출하도록 의무부과

심사결과 의약품에 직접 닿는 포장용기 종류 및 재질 변경 시 화학반응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품질 확보를 위해 안정성 시험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한정하여 우선 적용하고, 시험실시 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탁(공동)생동 제도를 통한 의약품 허가 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제출자료 면제 품목 수 제한건강기능식품 취급시설 기준 강화** 강화

- 현재 위탁(공동) 제조하는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자료를 품목 수와 상관없이 면제해 줬으나, 위탁(공동) 제조하는 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자료면제 품목 수를 4개(원제조사 1개 + 위탁 제조사 3개)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심사결과 위탁(공동)생동 제도를 통한 의약품 허가 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제출자료 면제 품목 수 제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성 규제의견이 제출되고,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 제기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상정된 규제안은 규제 도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제약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 역시 의약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 효과가 낮고 연구개발 증진 효과도 미미해 보이고, 2010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한 규제와 유사한 규제를 재도입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탁 제조하는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자료 면제 품목 수 4개(원제조사 1개 + 위탁 제조사 3개)로 제한하는 규제 도입에 대해 **철회 권고**

(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1)

심사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선임된 품질관리인의 신규 교육시간 확대 강화

- (현행) 신규교육 6시간(이론), 보수교육 매년 6시간
- (개정) 신규교육 16시간(이론+실무), 보수교육 매년 6시간

심사결과 신규로 선임되는 품질관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교육에 품질관리 기술 등의 실무사례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품질관리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규로 선임되는 품질관리인의 신규교육에만 적용, 품질관리 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교육시간을 산정하였고 유사사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 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은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1, 강화 1)

심사내용 고카페인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강화

- 고카페인 함유 건강기능식품 주표시면에 총카페인 함량 추가 표시
- 제품명이 '커피', '차'인 제품도 규정 적용

심사결과 소비자가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고 올바른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고카페인 함유 건강기능식품에도 카페인을 표시하여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 필요성이 인정되며,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에 일반식품과 동등하게 표시사항 관련 의무를 부여하였고 포장지 소진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 인정, 규제 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은 사안으로**비중요 규제로 원안가결**

심사내용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기준치 마련 신설

- 영아(만0~1세), 유아(만1~2세) 섭취대상 표시 식품에 대하여 각 연령에 대한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 기준 표시

심사결과 영유아 대상 영양성분 과잉섭취 예방을 위하여 해당연령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 연령대별로 맞는 섭취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외사례에서도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에 대해 연령대별로 영양소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며, 기존 포장지 재고소진을 위해 유예기간('22.1.1)을 두고 있으며 규제 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은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가결**

(14)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방법 명확화** 강화

- 수산물의 원재료명 명칭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에 고시된 명칭으로 표시하되 시장에서 통용되는 형태학적 분류에 따른 명칭으로 사용 가능하나, 민어과의 경우에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명칭으로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수산물의 원재료명 명칭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다른 품종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산물 중 민어과의 원재료명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원료의 명칭으로 표시 가능하고 기존 포장지 소진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였고 해외사례에서도 어종에 대해 오인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규제 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은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및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 강화** 강화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규정
- 신선 농·임·축·수산물의 한글표시 특례요건 강화
  - ⇒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생산자, 생산연도 등 표시가 면제되는 투명포장 자연산물 등에 대해서도 표시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일반식품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성이 있고 생산자 정보 미표시 및 중량미달 등 내용량의 차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특례 규정을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선 농임축산물에 대한 표시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에서도 특수의료용 식품에 대해 설명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포장지 소진을 위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고 규제 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은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동물용의약품 중 기준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강화(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강화

- 항균제에 대하여 축·수산물(유,알포함) 및 벌꿀(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포함)의 항균제 잔류기준 강화

  * (현행) 0.03 mg/kg → (개정) 0.01 mg/kg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 중 위생평가가 필요한 대상 및 세부 절차를 위임했고 수입 여건상 변화가 있는 경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와 비슷하게 적용하고 국내 농약의 허용잔류기준(PLS)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정하며 비용발생이 적고 중소기업영향평가에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강화

- 델타메트린 등 농약 37종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함

심사결과 농약의 경우 도입 당시 국내 과학적 평가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해외기준을 참고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 바 있어 잔류허용기준 재설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농약 전문가 검토회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회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외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등에서도 10~15년 주기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현재의 사용방법에 맞게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적정하며 기술영향평가의 디티오카바메이트의 블루베리 잔류허용기준강화(현행 5.0mg/kg에서 개정 0.05mg/kg)에 따른 의견을 부처에서 수용(향후 별도 재행정예고 추진 예정 검토안 0.05mg/kg에서 5.0mg/kg)하였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다른 규제 대안이 없어 불가피성도 인정됨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6)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기준** 신설

-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 1명 이상과 기업 조직도상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실적이 1건 이상 있으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제조 등 관리체계가 적합한 기업인 경우 인증

심사결과 혁신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갖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선정기준이 필요하며, 인증기준으로 물적, 인적 연구개발 실적과 역량을 규정하여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신설 신설

-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경우 약사법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제조업자 준수사항 및 기준성능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등이 부여

심사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말차단 성능이 확인된 마스크를 확대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고, 여름철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를 위해서 통풍성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확보가 필수적이며, 비말차단용 마스크 기능은 감염병 확산방지 효과와 직결되므로, 성능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은 적정해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영양·기능성분 및 기타원료의 함량표시 강화 강화

-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주표시면에 제품명(영양·기능성분 명칭)과 함량 표시
-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는 제품설명서(포장지외 종이)가 아니 정보표시면(표장지측면, 뒷면)표시
-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기타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원료명을 주원료와 기타원료로 구분하고 원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하되 기타원료명에 함량을 함께 표시 (주원료 : A, B 기타원료: C, D 함량 00%)

심사결과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및 함량을 표기하는데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내용량과 실제 함량을 오인·혼동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에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대해 오인 혼동 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며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가결**

심사내용 제9호다목 이외에 기타원료의 명칭 또는 함량, 사진, 이미지 등 표시 금지 신설

심사결과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주표시면에 기능성이 없는 기타원료의 명칭, 함량, 사진, 이미지

등을 무분별하게 강조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 주표시면에 기타 원료를 강조하는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주표시면에 기능성이 없는 기타원료를 강조하는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없고 영향평가의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가결**

(19)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유효기간의 연장** 강화

-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0년 7월 11일로 연장

심사결과 공적마스크 재고 소진을 위해 공적 출하량 축소하고, 수출물량 비율 상향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지속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고, 유효기간 연장일 수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7)

심사내용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제출 면제대상 축소** 강화

- 전문의약품 중 공정서에 등재된 경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었으나, 전문의약품은 공정서 등재 여부 관계없이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공정서에 기재된 기준 및 시험방법의 경우 기초적 내용만 반영돼 개별 의약품 원료, 제조방법 등의 차이 발생 시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는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이미 보유한 자료들이 다수이며, 신규 자료생산은 불필요하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공정서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등 자료 제출대상 확대** 강화

- 제형과 관계없이 모든 전문의약품은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경구용제제, 무균제제, 그 밖의 제제도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약효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동성 시험 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생동성 시험 대상에서 제외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과 미국, 유럽에 비해 규제안은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제출대상 확대** 강화

- 공정 전체를 위탁제조하는 의약품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심사결과 위탁생산의 경우 완벽한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GMP심사를 거쳐 제품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시장에 제공하게 하여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며, 통상적 GMP심사 시 3개 제조단위를 생산하나 업계 부담완화 차원에서 1개 제조단위만 생산토록 하였으므로 제약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강화

-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의료기기용 소독제 등)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

심사결과 의료기기용 소독제는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소독제의 품질과 안전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관리 필요성이 높고, GMP 평가는 현재에도 의료기기용 소독제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 제조업체에 요구되는 사항이며,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안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보고절차 강화** 강화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중단일의 180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은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시간이 필요하고,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된 경우 10일 내에 보고하도록 단서규정이 마련된 점, 중단 보고기한 연장에 따라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의 신속보고 기한 단축** 강화

- 의약품 등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정부의 조치 등을 알게된 경우 3일 이내(국내에서의 조치 계획은 7일 이내 보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심사결과 외국정부에서 판매중지나 회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신속히 의약품 복용을 중단토록 하여 환자의 건강상 위해를 제거하고 생명을 보호하고자 보고기한 단축이 필요하고, 유럽의 경우 안전성 정보에 대해 3일 내 보고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강화

-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가 변경, 폐지되었으나 식약처장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심사결과 약사법에서 안전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후관리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제조관리자와 수입관리자의 경우 제재처분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안전관리책임자만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과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의약품 지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지정** 강화

- 신약지정이 해제(예정)되는 의약품 아비라테론 등 36개 의약품 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심사결과 생동성 시험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복제약 복용 시, 환자의 건강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신약지정 해제 의약품에 대한 동등성 확보 대상 지정이 필요하고,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36개 품목 중 상당수가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미국과 일본도 복제약 허가 시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신설

- (생산업자 신고 의무) 마스크(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생산업자는 식약처장에게 당일 생산량·수출량·재고량 등의 정보를 보고
- (마스크 공적판매처 출고) 수술용 마스크 당일 생산량의 80%를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에 출고하고, 보건용 마스크 공적판매처 출고 제외
- (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등의 신고)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고,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가능
- (생산확대 및 공급 명령 등) 식약처장은 생산업자에게 생산 확대 명령 가능하며, 도서·농어촌 지역 등 수급조절을 위해 공급 명령 가능
- (마스크 수출제한) 보건용마스크는 식약처장이 업체별 정하는 수량 이내의 범위에서만 수출 허용(단, 인도주의적 목적, 정부 직접 수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 허용)
- (매점매석 마스크 출고) 정부는 매점매석한 마스크 전부를 즉시 판매토록 명령 가능

심사결과 기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 만료 시점('20.7.11)이 다가오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계속되고 향후 추이를 예측할 수 없어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고, 국내 생산물량이 증가하고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수록 공적 개입의 부작용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스크 시장 변화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 중심의 새로운 마스크 수급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타당하며,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신설** 신설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 받은 자,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 세포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심사결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확보 규정의 준수 가능성 제고를 위해 위반 시, 허가받은 취급자에 대해 제제 조치가 필요하며, 이해관자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HACCP 인증 의무 미준수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만 해당
-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심사결과 소비자의 안전확보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하거나,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위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하는 것으로 국내사례 식품위생법과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규제비용이 없으며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 맞춤형 화장품 조제 전에 품질 및 안전성 점검하고, 화장품법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며, 원료 등의 사용기간을 준수하고, 맞춤형화장품 사용기간 설정 시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며,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하고, 소비자 유형 분석 전 조제 및 보관을 금지

심사결과 맞춤형화장품은 소비자의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안전기준, 오염방지, 사용기간 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이 필요하고, 화장품법상 화장품 판매업자 준수사항과 유사하므로 과도하지 않은 규제수준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기재 및 표시** 강화

-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된 향료를 위생용품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정보를 명확히 표기하고,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한 향료의 성분명 표시는 필요하며,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시행일 '22.7.1.)을 부여하였고, 향료가 사용되는 다른 분야에서도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한 점과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신설 2)

심사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강화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해 위생모외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심사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흥주점 및 음식점에서 집단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품취급시설 종사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집단감염 방지 및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방역지침을 통해 대부분 식품접객업 영업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의무사항으로 판단되며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손 소독용품을 갖추도록 의무화 신설

-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영업장 내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심사결과 코로나 등 감염병이 전파될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 손 소독 장치 또는 소독용품 구비를 의무화하여 영업장 내의 집단 감염 발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손 위생관리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며,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가 시작되는 제3단계(경계단계)에서 식품접객업 모든 영업장에서 손소독제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부담이 적은 최소한의 규제 수준으로 정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다른 규제 대안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신설 (안별표 17) 신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대체 금지

심사결과 유흥주점 등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여 집단감염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분기준을 적용하였고 규제비용이 없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대상 확대 강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의 영업자 중 해당 가맹사업 점포수 100개 → 50개 이상의 영업자로 확대

심사결과 어린이의 식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외식이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과 알레르기 원료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를 확대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외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기준은 프랜차이즈 점포 90%를 포괄하여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되며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영양성분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신설

- (베타카로틴) 가.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 가.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_1, 비타민 B_2, 판토텐산, 비타민 B_{12}, 비오틴)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 가.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심사결과 '19년 건강기능식품 베타카로틴 등 9종의 영양성분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강기능식품을 잘못 섭취할 경우 폐암, 관상동맥 질환, 소화기 장애, 발진, 고칼륨혈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섭취와 관련된 안전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해외사례에서도 소비자에게 안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적정하며 규제비용이 없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강화 3)

심사내용 **의약품 품목변경 허가 시 대조약 선정기준 강화** 강화

- 생동성시험이 필요한 변경허가의 경우 공고대조약으로 시험을 실시
- 원료약품 및 분량 변경 시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변경 전제제에서 대조약과 의약품동등성 입증 제제 또는 임상시험 실시 제제 기준으로 변경

심사결과 제네릭의약품 변경신청 시, 변경 전 제제를 대조약으로 선정하여 시험한다면 당초 허가된 의약품과 원료약품(첨가제) 구성 비율 등의 차이로 동등성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고 대조약으로 생동성 시험을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변경 전 제제를 통해 생동성시험을 수행한 사례는 일부이기 때문에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도 과도하지 않아 보이며, 규제비용도 적고 영향평가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등 자료 제출대상 확대** 강화

- 제조업자가 주성분 함량만 다른 두개 이상의 제네릭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저함량 제제의 경우 생동성시험자료를 비교용출시험자료로 대체하던 사항을 축소함으로써 의약품의 동등성 시험기준 강화

심사결과 제네릭의약품 허가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높여 품질 및 안전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첨가제 비율에 따라 체내 흡수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저함량 제제를 통해 생동성시험을 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고함량 제제로 생동성시험을 수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제출대상 확대** 강화

- 생동성 시험결과 비동등인 경우에도 일부 규정(비교용출시험 동등, 시험대상자24명

이상 등)을 만족하는 경우 '동등'으로 판정하던 기준을 삭제

심사결과 당초 예외규정 제정사유는 고변동성 약물의 경우 생동성 판정에 기존 기준 적용 시 많은 시험대상자 수가 요구되는 등 동등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마련하였으나, 고변동성 약물에 대한 별도규정 시행 중(시행 2013.7.31.)이므로 중복 규정 삭제가 필요하며,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품목 수가 많지 않고, 생동성시험의 취지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예외사항은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의료기기 허가 등의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 등 규정 강화

- 갱신신청 기간을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한정
- 갱신신청 시 제출서류를 품목 허가증 또는 인증서에서 유효기간 동안 의료기기 성능 등 변경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여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갱신제도 목적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성, 최신기준규격 반영·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경사항, 부작용 관리사항, 생산·판매 실적 자료가 필요하고, 유사 분야인 의약품의 경우 갱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갱신 시 자료제출 수준 또한 개정안과 비슷한 수준이고, 갱신 자료 검토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점과 영향평가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재심사 위반, 의료기기 유효기간 규정 위반, 부작용 발생에 따른 안전조치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심사결과 시판 후 안전관리, 안전성·유효성 관련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부작용 정보의 보고기한,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준수 의무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제재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비례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LED 마스크 형태 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의료용광선조사기 기준규격 신설

- LED 마스크 형태 제품의 안전기준 중 ME(Medical Electrical)기기 및 ME시스템의 분류하고, 과도한 방사선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기준과 과온 및 기타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하고, LED 마스크 형태 제품의 측정방식 규정을 신설

심사결과 LED 마스크 형태의 의료기기는 기존 의료용광선조사기 기준으로 확인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은 필요하며,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용성을 높인 점, LED마스크 품목의 위해도에 따라 제출자료의 정도를 달리 규율한 점과 규제비용이 적고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자율심의 대상 지정 및 회수행정처분 강화 강화

- 기능성 표시 식품의 표시·광고를 자율심의 대상으로 함,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기능성표시식품의 기능성 함량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회수·폐기처분 대상

심사결과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으로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을 자율심의 대상으로 하고 회수·행정처분 등 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능성이 있는 일반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였고 국내외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일반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규제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신설

- 오·남용우려의약품 품목에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 포함

심사결과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가 병·의원에서 불법 유통됨에 따라 무분별한 사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이 필요하며, 규제비용이 적고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지정** 강화

- 3시-이(3C-E),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 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레미마졸람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심사결과 추가되는 물질들은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있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대상에 해당하며, 프로린탄과 레미마졸람은 의료용도로 사용되므로 구분하여 지정 필요가 있으며, 3시-이를 포함한 물질 4종 등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이 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본에서도 추가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고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이물혼입에 대한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영업정지) 금속, 칼날, 유리, 기생충, 바퀴벌레 등 위해·혐오 이물·혼입
  *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또는 유리혼입 (1차 영업정지 2일, 2차 5일, 3차 10일),
  * 칼날 또는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 등 동물 사체 혼입 (1차 5일, 2차 10일, 3차 20일)
- (시정명령) 그 외 이물 혼입(1차 시정명령, 2차 2일, 3차 3일)

심사결과 식품접객업에서 식품의 이물 혼입 발생시 이물이 위해성과 유해성이 크더라도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물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외사례에서도 식품 이물 혼입에 대해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유사사례 식품제조 가공업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였고 규제비용이 없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거짓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조지시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거짓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강화 3)**

-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국가출하승인 등을 받은 경우 업허가 취소나 해당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 약사법 개정사항의 행정집행력을 확보하고 처분권자의 집행 용이성을 보장하며 제조(수입)업자의 처분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재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관련 허가를 받음으로써 국민 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업체의 부담을 고려할 때 처분 양형 기준은 적정한 규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고령친화식품의 점도규격 신설** 신설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심사결과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대하여 점도규격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고령자들의 질식, 흡인성 폐렴 방지를 위하여 액상제품에 한하여 점도 규격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설되는 점도규격은 삼키기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를 섭취 대상으로 한 액상제품 중 점도조절 제품임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요외국의 고령친화식품 점도단계 및 국내 고령친화 식품 한국산업표준(KS)의 점도 품질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신설

- 특수의료용도식품 하위분류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 환자대상 식품으로 제조·판매가 불가능했던 가정간편식 형태 제품을 환자용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분류와 기준·규격을 신설

  ⇒ 정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식품유형, 규격 등의 기준 마련

심사결과 특수의료용도식품 하위분류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식사관리형 식품 시장형성 및 만성질환자 일상식사 관리를 위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분류와 기준·규격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기준이 없어 제조할 수 없었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였으며 해외사례에서도 가정간편식 형태의 식사관리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며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강화

- 이미녹타딘 등 59종의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함

심사결과 식약처는 농진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에 따라 독성 시험등을 거쳐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농약의 경우 도입 당시 국내 과학적 평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해외기준을 참고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 바 있어 잔류허용기준 재설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잔류량 평가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재설정함에 있어 농약 전문가 검토회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회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규제비용이 없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식용색소 16품목을 혼합 사용하였을 경우에 총합으로 관리하는 일반사용기준 신설** 신설

-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심사결과 식품에 사용하는 식용색소(9종 16품목)에 대해 개별 색소의 사용량 기준은 있으나, 여러 가지 색소들을 혼합 사용하는 경우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혼합사용시 과다 사용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EU에서도 혼합사용시 개별색소 사용기준과 식품 유형별 총량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수준이 적정하며,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 산출의 합리화** 강화

- 의약품 재심사 시, 조사대상자 수의 산출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삭제

심사결과 시판 후 조사대상자 수 산출 시 해당 의약품의 특성, 유병률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 검토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품목별 재심사 제도를 운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약품 특성에 따른 조사대상자 수 산출을 행정지도하여 제약업체의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동 규제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신설

- (생산실적 보고) 마스크 생산업자는 매일 생산량 보고
- (생산 확대명령) 식약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업자에게 마스크 생산 확대, 도서·벽지 등에 마스크 공급 명령 가능
- (매점매석 마스크 출고) 정부는 마스크 생산·판매업자에게 매점매석한 마스크의 전부를 다른 판매업자에 판매 명령 가능
- (관계부처 수급안정 TF 운영) 식약처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스크 생산, 공급, 출고, 양도 등 필요한 사항 정할 수 있음

심사결과 기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 만료 시점('20.12.11)이 다가오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마스크 수급상황 관리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 전파를 차단한 국내사례가 있으며,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결과에서도 감염 억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져 감염병 확산 감소를 위해서 마스크 역할은 필수적인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긴급한 규제신설 절차를 거쳤으며,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신설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 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업무에 1년 이상 경력요건이 있다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부여

심사결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업무는 구분되므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은 필요하며,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와 관련 학점 취득자에 대해서도 1년의 경력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은 규제수준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조리식품(커피 및 다류) 고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신설

- (대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점포수 100개 이상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에 한함
- (내용) 0.5mg/1ml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커피 및 다류 등 액체식품에 대하여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고카페인 함유” 표시

심사결과 커피전문점 등 조리식품(커피, 다류)의 카페인 과다 섭취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총카페인 함량, 소비자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여 안내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가공식품의 고카페인 표시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질병관리청

집필자 김경호 사무관
Tel. 044-200-2425, hj1002@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 1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2.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방역지침 위반 시 경고나 일정 기간 운영중단하는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현행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방역지침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상위법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처분강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할 관리자가 이를 준수했는지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비례적으로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한 점과 규제비용이 적고 영향평가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1 외교부

집필자 권회근 사무관
Tel. 044-200-2913, beatitud0@korea.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등 총 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외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8.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전임교수요원의 자격** 강화

- 교수요원의 최소 자격요건 강화 규정
  (조교수 4년, 부교수 7년, 교수 10년 → 조교수 5년, 부교수 9년, 교수 14년)

심사결과 외교관 교육 및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수요원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우수한 자질을 지닌 교수요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립대학 전임교수요원의 자격요건 등 타법사례보다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내용 **온라인 신청 여권의 수령** 신설

-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교부 거부 또는 제출서류 보완 사유 및 온라인 신청 여권의 대면 수령을 규정

심사결과 여권이 갖는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여권 발급 거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대면 수령이라는 최소한의 본인확인 절차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절차에 따를 경우에도 최소 1회 이상의 행정관청 방문이 필요하고 해외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신속해외송금 신청의 거부** 신설

- 마약·도박·자금세탁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의 송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의 송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신속해외송금 신청에 대한 거부 사유 규정

심사결과 신속해외송금 지원기준을 정하여 해당 제도의 악용·남용을 방지하고 재량 규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인정되며, 마약·도박·자금세탁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및 명백히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등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신설

- 재외국민 긴급지원 관련 금융기관 등의 장에 대한 금융정보제공 의무 규정

심사결과 타 국가들의 경우 비용대출(대부-상환)을 전제로 재외국민에 대한 긴급지원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영사조력법상 긴급지원비 제도는 무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요건 심사를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외국민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이 진행된다는 점, 긴급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등 다른 자산 관련 자력 정보는 제외한 점,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통일부

집필자 현대경 사무관
Tel. 044-200-2442, hyun422678@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 중 전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통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신설 1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23)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계		원안의결 7	신설 5, 강화2 (비중요 7)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신설

-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사유, 절차, 국회 보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법률안으로 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험 등 특정상황 발생 시 남북교류·협력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심사시 원안 의결한 바 있고 규제내용이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4, 강화 2)

심사내용 **남한 주민의 북한방문 승인 거부 및 제한 사유 명시** 신설

- 남한 주민의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장기 3년 이상의 형의 죄로 기소 중지된 사람,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등)

-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북한방문 승인 제한 사유(제27조에 규정된 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등)

심사결과 모호한 북한방문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청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재량으로 운영되었던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규제 부담이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북한방문 승인받은 자의 승인정지 또는 취소사유 확대** 강화

- 방문 승인받은 사람에 대한 그 승인의 정지·취소 사유에 '북한지역에서 남한의 주민이 남한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

심사결과 북한지역에 방문·상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재확인하고 법 위반 시 신속히 국내로 귀환 조치시켜 신병을 보호하려는 규제로 추가적 규제 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우수교역업체 인증 취소** 신설

- 통일부장관이 남북 교역사업자를 우수교역업체로 인증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또는 승인받은 경우, 반출·반입 정지기간 중 반출·반입한 경우 등 인증 취소

심사결과 우수교역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추가적 규제 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물품 반출·반입 시 신고의무 신설** 신설

- 물품의 반출·반입하는 경우 물품의 품명·규격·가격 등 통일부 장관에 신고

심사결과 북한산 물품 반입 시 수량·가격 등 비중요 사항 신고위반의 경우 관세법보다 완화된 제재 처분을 받도록 하되 기존과 동일하게 관세청에 업무를 위임하여 추가적 규제 부담이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협력사업의 승인 취소사유 확대** 강화

-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사유 추가(경제협력·사회문화협력·인도협력사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보조금·기금사업으로 지원받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심사결과 남북교류 경제·사회문화·인도협력사업의 요건에 미달하거나 보조금 및 남북협력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승인 취소사유 포함은 적정성이 인정되며,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시 승인 및 승인 취소** 신설

-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시 승인조건과 승인받은 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무소 운영의 정지 및 취소 사유 신설

심사결과 동 규제는 통일부 지침(고시)으로 규정된 사무소 설치 승인조건 등을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국방부

집필자 현대경 사무관
Tel. 044-200-2442, hyun422678@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 전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방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2	신설 2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읍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1	신설 1
(3) 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1	신설 1
계	-	원안의결 4	신설4 (비중요 4)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신설

-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마련

구 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비행장	대도시지역	85이상 90미만(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95 이상(웨클)
	기타지역	80이상 90미만(웨클)		
사격장	대형화기	84이상 90미만(dB(C))	90이상 94미만(dB(C))	94 이상(dB(C))
	소형화기	69이상 77미만(dB(A))	77이상 82미만(dB(A))	82 이상(dB(A))

심사결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갈등 해소 및 민-군 비행장 간의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법 및 해외 유사 입법사례가 있고 대법원 판례를 준용한 정부-국회 합의된 사항으로 규제 비용에 비해 주민 피해보상 및 소송비용 경감 등 편익이 크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항시설관리자 등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협의 신설

- 공항시설관리자와 공항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민군공용비행장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변경할 경우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심사결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항공기 사고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군공용비행장 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시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해당 부대장과 사전협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동안 합의서 형식으로 운영되어온 사항을 법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제한 신설

-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2종·3종으로 구분하되, 제1종 구역에 한해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허가(제2종·3종 구역은 건축 허가 제한 없음)

심사결과 군소음보상법 제6조에 근거한 법률위임사항으로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이 가장 높은 제1종 구역에 한하여 시설물 설치 시 복층장(이중창)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타법 및 해외 유사 입법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규제의 부담이 크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 신설

- 국방대학교가 아니면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심사결과 국방대학교 설립 목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국내 국방·교육·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유사 입법사례가 많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국가보훈처

집필자 / 이지영 사무관
Tel. 044-200-2445, jjyy00@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총 14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6)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5)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5)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08)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8)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9)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 1 (비중요3)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 1 (비중요3)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 1 (비중요3)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 1 (비중요3)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2)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44	신설 35, 강화 9 (비중요 44)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국립묘지의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의 이장 제한** 신설

- 국립묘지에 조성된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유족의 이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없음

심사결과 국립묘지에 자연장 방식이 실시됨에 따라 자연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골의 이장을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연장 안장 여부를 유족이 선택할 수 있으며, 지자체 조례로 규정된 자연장 시설 규정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신설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의 인증제도 도입

심사결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제도와 비교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신설

- 보훈단체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 30일 전까지 보훈처장에 보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설

- 보훈단체가 아닌 자는 각 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승인 및 승인취소 등** 신설

- △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규정, △수익사업 승인취소시 1년간 해당 수익사업 승인 제한, △명의대여 금지, △승인취소 및 6개월 이내 정지기준 규정, △승인취소 및 정지로 계약의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속 수행 허용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중요규제로 상정되어 부대권고된 안건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부대권고 사항 포함)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 신설

-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 연장 신청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승인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중요규제로 상정되어 부대권고된 안건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부대권고 사항 포함)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실태조사** 신설

- 보훈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중요규제로 상정되어 원안의결된 안건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부대권고 사항 포함)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회계규칙** 신설

-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5)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5)

심사내용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신설

- 보훈단체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 30일 전까지 보훈처장에 보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승인 및 승인취소 등** 신설

- △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규정, △수익사업 승인취소시 1년간 해당 수익사업 승인 제한, △명의대여 금지, △승인취소 및 6개월 이내 정지기준 규정, △승인취소 및 정지로 계약의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속 수행 허용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중요규제로 상정되어 부대권고된 안건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부대권고 사항 포함)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 신설

-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 연장 신청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승인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중요규제로 상정되어 부대권고된 안건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부대권고 사항 포함)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실태조사** 신설

- 보훈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중요규제로 상정되어 원안의결된 안건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부대권고 사항 포함)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회계규칙 신설

-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승인 및 승인취소 등 신설

- △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규정, △수익사업 승인취소시 1년간 해당 수익사업 승인 제한, △명의대여 금지, △승인취소 및 6개월 이내 정지기준 규정, △승인취소 및 정지로 계약의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속 수행 허용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중요규제로 상정되어 부대권고된 안건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부대권고 사항 포함)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 신설

-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 연장 신청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승인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중요규제로 상정되어 부대권고된 안건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부대권고 사항 포함)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실태조사 신설

- 보훈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중요규제로 상정되어 원안의결된 안건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부대권고 사항 포함)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회계규칙 신설

-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지정해제 신설

- (지정) 보훈기념시설의 지정시 시설 소유자 등은 시설의 활용실태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해제)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해제시 시설 소유자 등은 보훈기념시설 안내판 철거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심사결과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 및 지정해제 시 시설소유자 등에 대해 관리계획 제출 및 철거조치 등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렵고, '문화재보호법' 등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훈기념시설의 관리자 지정 및 보존·관리 의무 신설

- △보훈기념시설의 관리자는 보훈기념시설 성실 관리, 훼손·멸실 등 방지 노력, △누구든지 시설 임의 훼손·철거 불가, 다만 천재 또는 지역개발 추진 등 사유로 철거·이전시 국가보훈처 승인 필요, △훼손·방치 등으로 시설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 등에게 시설 개·보수 등 시정 요구

심사결과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관리자 및 국민의 보존·관리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문화재보호법' 등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훈처에서 보훈기념시설 보존·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바 규제부담도 크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2, 신설 1)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신설 1)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신설 1)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신설 1)

심사내용 **수익사업 주요 승인사항에 사업수행자 지정 등 추가** 강화

- 보훈단체 수익사업 주요 승인사항으로 사업수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추가

심사결과 그간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의 불투명한 운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익법인 수익사업 승인신청시 임원명부도 함께 제출토록 규정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제도 강화** 신설

- △(발급제외)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단체가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확인증명서 발급 제외(제1항 단서), △(확인기준) 「판로지원법」 및 「조달사업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 준용, △(확인취소) 확인기준 위반시 확인증명 취소, △(시정조치) 취소전 시정조치 요구 가능→단체는 30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확인증명 취소

심사결과 보훈단체 수익사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 규정에 따른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익사업의 명의대여 의혹 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됨.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두고 있는 타법 사례를 준용하고 있고, 유사입법례인 '판로지원법'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직접생산 확인 증명 취소전 시정조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한 점 및 발급제외되는 규정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렵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 실적보고 서류 추가** 강화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보훈단체가 매년 보고해야 하는 실적보고 및 서식 규정

  △결산보고서(별지8호서식의 재무상태표·별지9호서식의 손익계산서 포함), △별지10호서식의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별지11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명세서, △별지12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별지13호서식의 회원복지비 지출명세서, △회계감사결과보고서

심사결과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통일성있는 실적보고를 유도하여 수익사업 운영 및 수익금 집행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적보고 서류 추가 및 서식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익법인회계기준'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보훈단체의 결산업무·회계감사 업무 등에 있어 본 서식을 활용하여 중복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렵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제도 강화** 신설

- △(발급제외)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단체가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확인증명서 발급 제외(제1항 단서), △(확인기준) 「판로지원법」 및 「조달사업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 준용, △(확인취소) 확인기준 위반시 확인증명 취소, △(시정조치) 취소전 시정조치 요구 가능→단체는 30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확인증명 취소

심사결과 보훈단체 수익사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 규정에 따른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익사업의 명의대여 의혹 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됨.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두고 있는 타법 사례를 준용하고 있고, 유사입법례인 '판로지원법'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전 시정조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한 점 및 발급제외되는 규정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렵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 실적보고 서류 추가** 강화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보훈단체가 매년 보고해야 하는 실적보고 및 서식 규정

- △결산보고서(별지8호서식의 재무상태표·별지9호서식의 손익계산서 포함), △별지10호서식의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별지11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명세서, △별지12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별지13호서식의 회원복지비 지출명세서, △회계감사결과보고서

심사결과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통일성있는 실적보고를 유도하여 수익사업 운영 및 수익금 집행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적보고 서류 추가 및 서식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익법인회계기준'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보훈단체의 결산업무·회계감사 업무 등에 있어 본 서식을 활용하여 중복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렵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취소 규정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결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도입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적절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유사입법례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 취소기준과 비교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1 행정안전부

집필자 / 이지영 사무관
Tel. 044-200-2445, jjyy00@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6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6건 중 4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6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4)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4	강화 1, 신설3 (비중요4)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7	강화 6, 신설1 (비중요7)
(8)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09)	개선권고 4	신설 4 (중요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09.0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1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10.16)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6)
(16)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0.10.16)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8)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9)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2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21)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5) 주민투표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7)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2)
(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계	-	개선권고 4, 원안의결 62	신설 51, 강화 15 (중요 4, 비중요 62)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강화

- 기부자가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내역의 공개 요청시, 모집자는 확인서를 제공하거나 확인 가능토록 안내 의무 규정

심사결과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기부자들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사용내역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모집자는 정보 공개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고 旣 작성·공시한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내용을 확인하도록 공개 요청자에게 안내가 가능하므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3회 이상 반복하여 공개요청시 2회 이상 공개한 결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 공개요청 기한 및 공개 거부는 향후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검토·보완할 계획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 강화

- 온천목욕장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에 순환형 레지오넬라균 및 염소농도 규정 추가

심사결과 순환여과식 욕조는 물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레지오넬라균 증식의 위험성이 높아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에 레지오넬라균 및 염소농도 검사기준을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됨. 일본 등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목욕장 기준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질기준 추가로 비용이 일부 발생하나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 등 사회적 편익이 크며,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시정명령** 신설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운영이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행안부장관은 업무의 시정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7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무정지 신설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7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임명령 신설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임원이 직무정치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수행을 계속하거나 정관상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명령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7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주소정보시설 등의 훼손 등에 따른 조치 신설

- 주소정보시설의 훼손 등을 한 자는 이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금고의 총회소집통지서 발송 명시 신설

- 고 총회개최일 7일 전 공고하고, 총회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개별 발송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

- 직원요청시 업무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 보호조치 의무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원 결격사유 등 강화** 강화

- (결격기간)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 임원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 (결격사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및 상해·폭행·강요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음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신설

-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 중에서 선임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제외요건 강화**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제외요건에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업무를 하는 경우 추가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된 이후 지정 제외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신설1, 강화 6)

심사내용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강화

- 신고사업을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유·도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규모, 영업구역 등의 구분 없이 면허를 받아야 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도선 사업의 시설기준 등 강화

- 유·도선 사업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에 유·도선장 추가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도선 사업의 결격사유 강화

- 유·도선 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대상이 되는 법률에 선박등 관련 법률 추가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사업 면허의 취소 및 3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 기준 추가
  △선원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제한시 운항이 제한된 유·도선을 운항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하고 조종한 경우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강화

- 유·도선 사업자에 대하여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 구체화

  △5톤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이 인정 지정하는 유·도선, △외부 갑판에서 낚시 등 활동을 하는 유선, △그 밖에 선장이 기상악화 등으로 필요를 인정하는 유·도선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도선 안전관리자 지정** 신설

- 유·도선 사업자는 업체 직원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신고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강화

- 도선 내 차량과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 운송 의뢰인이 적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8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2)

심사내용 **토지 등의 사용 및 장애물의 제거** 신설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설치, 보수를 위해 다른 국유·공유·사유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사용하고, 설치에 장애가 되거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7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재난안전통신의 보호 신설

-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훼손·오손하거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표지물 등 훼손 금지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7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개정안 (신설3)

심사내용 시정명령 신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운영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업무의 시정 또는 그밖에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7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음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7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신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을 해임시킬 수 있음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7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4)

심사내용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기존에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정보를 추가적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 충족 필요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을 것,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추가 이용이 예측 가능할 것,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가명처리하여도 추가 이용·제공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 가명처리하여 이용할 것

심사결과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 요건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출되고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중요규제**로 분류.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주체의 추가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상위법 해석 및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비교시 본 규제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해당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 내부통제수단을 마련토록 **개선권고**. 아울러 요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해설서를 통해 예측가능성 판단 기준을 제공할 것을 **부대권고**하고, △이익침해금지 대상에서 '제3자의 이익'을 삭제토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암호화 등 다양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민감정보의 범위**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의 개별적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는 정보의 범위 확대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정보, △인종·민족정보로서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심사결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의 개별적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는 정보인 민감정보 범위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출되고 규제수준의 정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중요규제**로 분류. 상위법 개정으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가능한 개인정보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중 생체정보 등과 같이 프라이버시권이 강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민감정보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규제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설서 등에 명시할 것을 **부대권고**하고, 인종·민족정보의 경우 차별 우려 여부에 대해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인종·민족정보 전체를 민감정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민감정보의 범위를 재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가명정보의 결합** 신설

- (신청) 신청기관은 전문기관에 가명정보 결합 신청서 제출
- (결합)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받아 결합
- (분석) 신청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아 전문기관 내 분석공간에서 결합된 정보 분석, 가명·익명처리 등 수행
- (반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명정보 반출

심사결과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출되고 규제수준의 정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중요규제**로 분류. 상위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결합이 허용됨에 따라 안전한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 관련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의 결합절차모델이 '신용정보법령'상 결합모델과 차이가 있으나, 모델간 보안성·비용상 우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외부에서 가명정보 분석시 외부유출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합 관련 규제수준에 원안 동의.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편의 제고와 가명정보 결합의 안전성 여부 등 제도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1년의 일몰기한(규제의 재검토)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가명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와 추가정보 분리보관, 가명정보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등의 조치

심사결과 가명정도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출되고 규제수준의 정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중요규제**로 분류. 상위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이 허용됨에 따라 안전한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일종이므로 안전성 조치가 필요한 점, 가명처리 목적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바 대외공개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시 원안에 동의하나, 가명정보처리자의 편의제고와 가명정보의 안전성 여부 등 제도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1년의 일몰기한(규제의 재검토)을 설정할 것으로 **개선권고**. 아울러 가명정보 파기 규정은 위임일탈에 해당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11)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신설1)

심사내용 **재난 등 긴급한 상황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간 단축** 신설

-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민간경력자 채용공고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시 인력모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채용공고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공고기간의 과도한 단축시 공직임용을 희망하는 자의 임용기회를 제약하고 채용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공고기간 5일을 설정하고, 재난의 범위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재난관리법 제14조의 대규모 재난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4)

심사내용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신설

-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규정

  1. 담당조직의 구성·운영, 2. 위 조직에 특정 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사람 3명 이상 상시고용, 3. 결합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 및 시설 구축, 4. 가명처리, 가명정보 결합, 반출심사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구축, 5.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6.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책 및 절차 마련, 7. 일정 기준 이상의 재정 능력 충족, 8. 최근 3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공표된 적이 없을 것

심사결과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당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 및 안전한 데이터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지정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인정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시스템 등 가명정보의 결합·반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기준 준수에 따른 비용이 일부 발생하나 가명정보의 활용 활성화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명정보의 결합절차 신설

- 1. 결합신청자는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결합키관리기관에, 결합대상정보와 일련번호를 결합전문기관에 각각 송부

  2.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들로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

  3.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결합대상정보를 결합한 후 결합키연계정보 파기

심사결과 원활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구체적인 결합절차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결합절차 준수에 따라 규제비용이 일부 발생하나 가명정보의 활용 활성화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고, 가명정보 결합제도 시행 1년 후 일몰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결합정보 반출승인 요건** 신설

- 가명정보 결합신청자가 결합전문기관에 반출요청시 결합전문기관이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출심사를 하도록 규정
- 반출승인 요건 △결합 목적과 반출정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심사결과 결합된 정보의 반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출심사위원회 구성하고 반출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일부 발생하나, 결합된 정보 반출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최소화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결합전문기관의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신설

-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분석 또는 반출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보호위원회에 관련 서류(결합·반출신청서, 반출심사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파기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심사결과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의 결합·반출시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의 안전성 확보 조치들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판단되고,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예방 등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1)

심사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신설

-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통지시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고, 공공기관별 비공개 정보범위 세부기준 현행화 및 제출의무 부과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7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3)

심사내용 **관허사업 제한** 신설

-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심사결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간접제재수단으로서 관허사업 제한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및 유사입법례인 '지방세징수법'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허사업 제한이 납부의무를 위반한 자 및 체납 대상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 충당** 신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을 조회하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체납금에 대한 추심절차 없이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및 유사입법례인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색의 권한과 방법, 검사 및 수색 참여자** 신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시 필요한 경우 체납자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 등 규정

심사결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행정제재·부과금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 수색권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 수색여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규정 필요. 또한, 사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및 유사입법례인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수금 포탈행위가 있는 경우 수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시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6)

심사내용 **어린이이용시설의 범위** 신설

- 어린이안전 관리책임이 적용되는 어린이 이용시설의 범위를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사고위험에 노출된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 및 안전교육 의무 등이 적용되는 어린이 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장소 현황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점, 미국·스웨덴 등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등을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 안전교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또한, 상위법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어린이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방법** 신설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조사시 피규제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 점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타법 사례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사결과 공표방법 및 게재기간** 신설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 공표시 행안부·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토록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의 공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표 전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는 점 및 명단공표 등을 규정하고 있는 타법 사례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법령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표여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법사례 및 국민의 알권리 등 감안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신설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규정
  △(처분사유)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 거짓으로 교육이수 증명서류를 발급한 경우, ④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 지정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별표 2])
  △(보완명령)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처분 3개월 전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보완명령(1회 한정)
  △(공고)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심사결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의무화된 안전교육이 적합한 교육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점, 처분전 보완 기회를 부여하는 점 및 유사입법례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신설

- 행안부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및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전문기관은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의무화된 안전교육이 적합한 교육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점, 교육기관 감독규정을 두고 있는 타법 사례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대상 및 방법 규정** 신설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 및 내용 등 규정
  △(대상자) ①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②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중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그 밖의 고시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시기) 교육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 이수
  △(방법) 매년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4시간 이수
  △(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응급처치 이론, 응급처치 실습교육(2시간 이상) 등

△(결과보고)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함

심사결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의무화된 안전교육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점, 응급처치 등의 교육의무를 두고 있는 타법 사례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어린이 안전교육으로 비용이 일부 발생하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 안전교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고,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3)

심사내용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 신설

- △(지정기준) ①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신청방법) 신청서 및 지정기준 증명서류 등 제출

심사결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의무화된 안전교육이 적합한 교육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점,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을 두고 있는 타법 사례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교육 실시현황 및 증빙자료 보관 의무** 신설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제출하고, 실시 현황 및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심사결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의무화된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점, 유사입법례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방법** 신설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담당자 지정이 곤란한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심사결과 응급상황 발생시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하기 위해 지정 및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토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을 3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1)

심사내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확대** 강화

- 재난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추가, 사업자는 시설에 대한 허가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심사결과 최근 농어촌민박 관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난 발생시 충분한 손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보험 대상시설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인정됨. 관계기관 및 협회 사전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유사환경인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은 재난보험 가입대상으로 기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시설이용자의 신뢰 제고로 시설이용 증가 등의 편익 발생이 기대되고, 손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신설1)

심사내용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 등 취소** 신설

- 채용비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심사결과 채용비위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합격을 취소할 수 없어 공정한 인사행정의 원칙 훼손이 우려되므로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규제비용이 없고, 유사입법례인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운영법'등에서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채용비위에 대해 본 규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신설3)

심사내용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이행 의무 승계 및 통보 의무** 신설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이행 의무가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양도, 사망 또는 법인 합병시 양수인등이 협의 이행 의무 등을 승계하고,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내용 이행 상황 및 승계 사유 등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함

심사결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이행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무로 양도·상속·법인 합병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계 및 통보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환경영향평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이행 전 공사시행 제한** 신설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재협의 절차 이행 전 개발사업의 허가 및 공사 시행 제한, 위반시 공시중지 명령을 할 수 있음

심사결과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의 절차 이행 전 개발사업 허가 및 공사시행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긴급 조치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 예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유사입법례인 '환경영향평가법'과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및 신고 의무** 신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사망하거나 등록된 업무를 양도 또는 법인 합병시 양수인 등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
  △(신고의무) 승계한 사업시행자는 관련 사항 등을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안부장관에게 신고
  △(승계대상) 종전의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실적,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심사결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양도·상속·법인 합병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권리·의무도 승계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점 및 유사입법례인 '환경영향평가법'과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3)

심사내용 **데이터 등록·제공결정·조정요청 등의 기한** 신설

- △(등록) 데이터 등록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함

  △(제공)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조정) 데이터 제공 거부시 요청기관은 거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요청을 할 수 있음

심사결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등록 및 제공, 조정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점, 유사입법례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신설

- △(지정요건) ①공공기관, ②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 조사·연구·컨설팅·교육 등 실적이 있을 것

  △(지정취소)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고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업무정지시 관보 등에 고시

심사결과 전문성이 필요한 데이터기반행정 특성상 전문인력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점, 전문기관 등의 지정요건 및 취소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타법 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데이터기반행정 자체점검 사항 및 개선조치** 신설

-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실태 점검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심사결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점, 유사입법례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3)

심사내용 **어린이안전교육 전문인력 기준** 신설

- △상근 전문강사 1명 이상(① 의사 ② 간호사 실무 2년이상 ③ 1급 응급구조사 실무 2년이상 ④ 2급 응급구조사 실무 3년이상)
  △보조강사 1명 이상(20명 이상 교육생 대상으로 실습교육 실시할 경우만 적용)
  △사무 전담인력 1명 이상

심사결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점, 타법에 규정된 응급처치 교육 전문강사 자격기준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비용이 발생하나 교육기관 지정 후 수강료 수입 등 편익이 예상되고, 어린이 안전확보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관련 공인자격이 응급구조사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한바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안전교육 시설 및 장비, 교육과정 및 교재 확보 기준** 신설

- △(시설) 연면적 60m2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
  △(장비) 응급처치 실습교육 체험교구(①마네킹 ②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③페이스쉴드 ④부목,삼각건,롤붕대 ⑤구급함)
  △어린이안전교육 내용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재 보유 의무

심사결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점, 타법에 규정된 안전 교육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비용이 발생하나 교육기관 지정 후 수강료 수입 등 편익이 예상되고, 어린이 안전확보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온라인교육 진행요건** 신설

- 어린이안전교육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수강자 신분확인 기능 및 개인정보 수집 안내 명시, △수강신청 현황 확인 기능, △수강신청 및 변경 기능, △개인별 학습이력 확인 기능, △동일 아이디 동시접속 방지 기능

심사결과 대면교육을 받기 어렵거나 온라인을 통한 이론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시스템 요건을 갖추도록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등에 따른 비용이 일부 발생하나, 교육기관 지정 후 수강료 수입 등 편익이 예상되고,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정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신설1)

심사내용 내수면 물놀이 구역 지정 및 운영기간 등 제한 신설

- 지자체장은 일부 지역을 내수면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시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운영기간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심사결과 안전한 내수면 물놀이 환경 조성 및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위해 내수면 물놀이 구역을 지정하고 운영시간 등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지정 및 개장기간·시간제한 등을 규정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1)

심사내용 청렴서약서 내용 등 규정 신설

- 지방공사·공단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청렴서약서의 내용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 포함

심사결과 지방공공기관 계약 관련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청렴서약서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상 청렴서약서 포함사항과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1)

심사내용 **청렴서약서 내용 등 규정** 신설

- 지방출자·출연기관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청렴서약서의 내용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 포함

심사결과 지방출자·출연기관 계약 관련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청렴서약서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상 청렴서약서 포함사항과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주민투표법 개정안 (신설1)

심사내용 **주민투표운동 기간 축소 및 투표운동 제한 대상 추가** 신설

- 주민투표운동 기간축소 (現)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23일이상 30일이내) → (改) 주민투표일 전 14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13일)
- (대상)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통·리·반장 추가

심사결과 주민투표제도의 공정성 제고 및 투표운동 과열 문제예방을 위해 주민투표운동을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프랑스 등 해외사례 및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과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1)

심사내용 **주민소환 투표운동 기간 축소** 신설

- (現) 투표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18일이상 28일이내) → (改)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13일)

심사결과 제도적 유사성이 높은 지방선거 운동기간과 형평을 맞추고, 투표운동 과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운동 기간을 축소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공직선거법'과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1, 신설1)

심사내용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기준 강화** 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기준 중 체납액 30%이상 납부 기준을 체납액 50%이상 납부로 강화

심사결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간접제재수단으로서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생계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공개 제외가 가능하므로 피규제자의 권익 침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유사입법례인 '지방세징수법령'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기준을 본 규제와 동일하게 개정 중인 점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야간수색 대상 영업 규정** 신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집행시 야간에도 수색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주류 제공 및 유흥종사자가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심사결과 상위법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집행시 수색권한이 도입됨에 따라 야간에도 수색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국세징수법령' 및 '지방세징수법령'도 야간수색 대상 영업을 본 규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2)

심사내용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강화

- 지역제한 입찰대상이 되는 기타공사의 기준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심사결과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제한 입찰제도 중 기타공사의 경우 노무비·재료비 등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액 기준이 변동이 없어 실질적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중앙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기타공사의 제한입찰 대상 금액기준을 규정한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한 점 및 지역 중소업체 지원 강화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강화** 강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원자 dEh는 중기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강화

심사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이나,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6개월이 적용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해 발주기관 및 적용법령에 따라 제한기간이 상이해지는 불합리가 발생.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입법례인 '국가계약법령'과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법무부

집필자 권회근 사무관
Tel. 044-200-2913, beatitud0@korea.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0.05.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06.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24)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위원회 (2020.11.27.)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2)
계	-	원안의결 12	신설 9, 강화 3 (중요 2, 비중요 10)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심사내용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신설

-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기한(60일) 설정

심사결과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신속한 회복 및 환부될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의 피해자간 조속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대상자를 확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회복대상재산 보관시 환부청구기간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청구기한 도과로 부당하게 청구권이 배제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제수준이 적정하고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심사내용 **관리인 선임 신고** 신설

-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서, 2019년 규제심사시 구분소유권의 수가 5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한 관리인 선임 신고의무 부과에 대해 원안의결한 사항임. 규제내용이 심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기심사 결과를 준용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리인에 대한 의무 부과** 신설

-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리인에게 관리비와 관련된 장부 작성·보관의무를 신설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서, 2019년 규제심사시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리인에게 관리비 관련 장부 작성 및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사안에 대해 원안의결한 사항임. 규제내용이 심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기심사 결과를 준용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설

- 구분소유권 수 50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자료제출 및 보고의무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서, 2019년 규제심사시 구분소유권의 수가 5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의무 부과에 대해 원안의결한 사항임. 규제내용이 심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기심사 결과를 준용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심사내용 **외국법자문사 등록 갱신 해태 시 등록 취소** 신설

-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 취소

심사결과 동 규제는 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서, 2019년 규제심사시 외국법자문사가 등록갱신 의무 해태 시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취소 하는 사안에 대해 원안의결한 사항임. 규제내용이 심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기심사 결과를 준용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내용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기준** 신설

- 유효한 여권 보유여부, 입국금지·거부 대상인지 여부, 체류기간 내 본국으로 귀국할 것인지 여부 등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기준 규정

심사결과 사전여행허가를 통해 관광객·기업인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의 신속·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면서도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감염병·테러·범죄 등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여행허가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이 통상 외국인 입국심사 시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하는 항목들로써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받더라도 침해되는 외국인의 사익은 경미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강화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입국 초청받은 외국인의 인권침해 방지 측면에서 성매매·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임금체불 등으로 처벌전력이 있는 중대 범죄행위 사업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한 기준 대상을 고용주가 해당 범법 행위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적법한 고용주의 초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 강화

-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계열구분 신설(교육계열·일반계열), 과목구분 기준 변경 및 필수 이수학점 상향

심사결과 다문화가정 급증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이수학점 상향, 이수과목 변경 등을 통해 이민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기본소양을 갖춘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수학점 상향 등으로 의무가 강화되나 시행일 이후 편(입학)생부터 적용되고 유예규정(1년)을 마련하고 있는 점과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로 원안의결

(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내용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 기준** 강화

-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필수 교육이수 시간 및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의 세부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허위 난민신청 교사, 탈법적 수수료 수취행위 등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의 불법행위 지속적발됨에 따라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에 대한 실효적 관리를 위해 등록절차 및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행기관의 등록은 법무부 내부지침인 '출입국 민원 대행업무 관리지침'을 통해 이미 시행 중이며 지정요건 미달, 업무 범위 위반 및 과다한 수수료 수취 등에 대해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를 하는 것은 위반 사항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재로서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신설 2)

심사내용 **소멸시효 기간 등 객관적인 사실의 통지의무 부과** 신설

- 채권추심자 및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에게 채권자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 관련 정보 통지의무 부과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하여 소멸시효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

빈발함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 등의 통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인지를 높여 방어권 행사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통지 대상인 정보가 성명, 연락처, 소멸시효 기간 등 객관적 사실에 그치고 최초 변제요구시 1회에 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양수받아 변제요구 하는 행위 금지** 신설

-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양수하거나 추심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추심업자들은 부당한 추심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들에게 장기간의 가혹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취약계층인 채무자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 등 객관적 사실의 통지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나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수받아 변제요구 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소멸시효 경과 채권의 추심으로 피해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서민들의 소액대출이라는 점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경우 旣손실 처리하고 있어 법령 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3 국무조정실

집필자 / 이정호 사무관
Tel. 044-200-2414, turtleb@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갈등관리법 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갈등관리기본법	예비심사 (2020.1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신설 1)

심사내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설

- 공론화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위해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생성한 번호)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에서7일 이내에 공론위원회 제공

심사결과 사회적으로 갈등이 첨예한 사안의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립적 표본추출이 필수적이고, 이동통신사가 공론화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시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가상번호가 제공된다는 점과 제공거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휴대전화 이용자가 가상번호 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면 제공이 공지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있고, 가상번호 생성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보전하므로 피규제비용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4 인사혁신처

집필자 이정호 사무관
Tel. 044-200-2414, turtleb@korea.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4개 법령에 대해 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5.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6.12.)	원안의결 1	강화1 (비중요 1)
(3)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7.13.)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4)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9.18.)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2)

심사내용 **취업심사대상자 확대**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위사업청 소관 유관단체(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퇴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확대(공정위 : 4급 → 7급 이상 / 방위사업청 소관 유관단체 :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자 → 수석연구원 이상)

심사결과 공정위 업무의 경우 기업관련 조사 등 민관유착우려가 높고, 방위사업청 소관 유관단체의 방산비리 근절이 필요한 점, 감사원에서 두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 확대를 권고한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강화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 확대(매출액 100억 원 이상 식품·의약품 인증 등 검사 기업 → 전체 식품·의약품의 인증 등 검사 기업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방위산업관련기업 → 전체 방산업체(매출액 무관) 등)

심사결과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식품·의약품 비리 및 방산비리를 근절할 필요가 있고,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강화1)

심사내용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요구 근거 마련** 강화

- 퇴직공직자가 취업승인 이후에 취급금지 업무를 취급하거나,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 한 것으로, 2019년도 심사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확보 등을 위해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기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신설1)

심사내용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기간 단축** 강화

-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민간경력자 채용공고기간 10일 이내 단축 허용

심사결과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민간경력자 채용공고 면제도 허용되고 있는 점, 재난 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이 있고 이해관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신설1)

심사내용 **채용비위 합격자 합격 취소 근거 마련** 강화

- 본인 이외의 자의 청탁으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 합격 취소 근거 마련(현재는 본인이 청탁한 경우만 합격 취소 가능)

심사결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채용비위로 합격하였음에도, 본인이 직접 청탁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합격 취소 불가시 공정한 인사행정의 원칙 훼손 될 수 있다는 점, 공공기관은 이미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경찰청

집필자 현대경 사무관
Tel. 044-200-2442, hyun422678@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총 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총 6건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0.06.12)	개선권고 1	강화 1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1	강화 1
(3)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0.07.31)	원안의결 1	강화 1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1	신설 1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20)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계		개선권고 1 원안의결 5	신설2, 강화4 (중요 1, 비중요5)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강화** 강화

① '심야시간 주거지역 등'에 대한 소음기준 강화(5dB(A))
- 야간(해진후~해뜨기전, 60dB(A)) ⇒ 심야(00~07시) 별도 구분, 55dB(A)로 상향

② 최고소음도(Lmax) 기준 신설
- 지역·시간에 따라 75~95dB(A) 설정, '1시간에 3회' 초과한 경우 위반

③ 국경일, 호국·보훈성 기념일(19개) 행사장 개최시간 소음기준 강화

- 그 밖의 지역 ⇒ 주거지역 등(중앙행정기관 개최 행사장에 한함)

심사결과 야간집회 허용으로 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평온권(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환경부 환경기준과 WHO 등의 수면방해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나, 주거지역·학교 등은 개정 기준안으로 유지하되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등가소음은 현행과 같이 최고소음은 심야 미적용하고 국군의 날과 경찰의 날은 행사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벌점공제(특혜점수) 제한** 강화

- ①자동차 등을 범죄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살인죄 등의 범죄를 일으키거나 ②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공제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

심사결과 자동차 등 이용 범죄의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가 적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범칙금·과태료 미납자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재가입) 제한** 강화

- 서약서 접수 제외대상에 현행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 이외에 '도로교통법령 위반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추가

심사결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자발적 준법운전 유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칙금·과태료 미납자에 특혜점수 부여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자 수가 적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보호자 미동승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운전면허 벌점부과** 신설

-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시 면허정지 벌점 부과(30점)

심사결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승·하차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2년간 유예하고 한시적으로(2년)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 의무를 부여하여 규제의 부담을 줄이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인원 제한** 신설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1인,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인

심사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성 기준에 맞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승차 인원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해외 입법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초과속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강화** 강화

- (취소처분)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h 초과한 경우
- (정지처분) ① 제한속도보다 100㎞/h 초과한 경우 : 벌점 100점
  ② 제한속도보다 80㎞/h 초과 100㎞/h이하인 경우 : 벌점 80점
  ③ 제한속도보다 60㎞/h 초과 80㎞/h이하인 경우 : 벌점 60점

심사결과 초과속 운전행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속도위반의 위험성과 반복성이 높은 행위는 면허취소, 그 외 초과속 행위는 위반 속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점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해외 입법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소방청

집필자 김진용 사무관
Tel. 044-200-2447, wisdom7784@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총 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0.01.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0.01.17)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3)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0.03.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0.04.03)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4)
(5)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예비심사 (2020.04.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6)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0.08.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8)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비심사 (2020.11.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0.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0.12.31)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1)
(11)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예비심사 (2020.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20	신설 7, 강화 13 (비중요 20)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자체소방대 편성대상 및 편성기준** 강화

-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에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지정수량 50만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를 포함

심사결과 지정수량 50만배 이상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주로 석유정제공장, 석유비축기지 등에 설치되며 화재 시 폭발성을 내포하고 있는 高위험성 시설이므로 자체소방대와 같은 별도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며,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처리 기준 및 절차** 강화

- 위험물 시설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기술검토 적용범위를 지정수량 '3,000배 이상'에서 지정수량 1,000배 이상'으로 확대

심사결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화재 위험성, 지정수량 3,000배 미만 시설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 시,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검토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규모별 현황, 설치·운영 장소, 영세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3)

심사내용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강화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전통시장과 상점'을 포함

심사결과 소방대상물의 관리 권원이 분리·운영되는 전통시장과 상점은 화재 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現 도·소매 시장에 한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규정을 전통시장과 상점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소방안전관리자가 1인이 대형 건축물과 좁고 복잡한 전통시장의 화재에 혼자 대응하기보다 다수의 소방안전관리가 공동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화재 감시 및 유사시 안전확보에 효율적 수단으로 보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확대** 강화

-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 △지하연계 복합건출물 포함

심사결과 화재장소별·원인별 분석 결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주거 공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초고층 아파트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화재발생 시 더욱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나, 성능위주설계 소방대상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 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고, 기존 법규에서 제시한 방화설계 적용이 곤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화재안전성을 구현해야 하는 건축물을 성능위주설계 대상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500m 미만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강화

-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하는 것으로, △'전력구·통신구'의 소방시설 설치 적용제외기준을 삭제, △ '소화기구, 유도등' 설치 규정 신설

심사결과 지하구 내 화재 발생 시, 전력공급 마비, 통신장애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중단 등 2차 피해규모가 크므로 전력·통신망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화재안전시스템의 강화 필요성이 인정됨. 해외 사례 등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산후조리원, 조산원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소방시설 기준 강화** 강화

- 특정소방대상물 상 근리생활시설로 분류된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을 '노유자시설'로 변경

심사결과 재난약자가 거주하는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은 노유자시설 이용자와 피난특성이 유사함에도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4)

심사내용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의 실시기준** 강화

-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중간 정기검사' 실시하고, △(검사시기)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최근 정밀 정기검사 또는 중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 △ (검사항목) 구조 및 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심사결과 소화설비, 통기관 대기밸브 등의 부속설비는 사용빈도가 높아 고장 발생도 많은데, 現 1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정기검사 시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본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의 비용발생(검사수수료 발생 등)이 크지 않은 점, 미국 등의 해외사례(5년마다 정기점사 실시)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의 기술기준 준수의무(불꽃감지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신설) 강화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1,00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심사결과 대단위로 설치된 옥외탱크저장소는 인력으로 외부요인에 의한 화재위험 감지가 힘든 구조이므로 외부 위험요인을 자동 감지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일본·미국·영국의 경우 가연성 저장·취급 설비에 화재발생 감지기 등 경보설비를 설치토록 규정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의 기술기준 준수의무(화염방지장치 설치 및 인화방지장치 기준 구체화) 강화

- 옥외탱크저장소의 통기관에 저장물질에 따라 '화염방지장치' 또는 '인화방지장치' 설치하는 것으로, △ (화염방지장치)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통기관에 설치, △ (인화방지장치) 그 외 옥외탱크저장소의 통기관에 '40메쉬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 것을 설치

심사결과 당해 규제는 위험물 시설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설비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재위험에 대비하려는 것으므로, 타법의 기준 등에서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교육 기준 개선 강화

-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의 안전교육 교육시기 강화하는 것으로, △ (안전관리자) 現 신규 종사 후 2년마다 1회 → 改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1회, 그 후 2년마다 1회, △ (위험물운송자) 現 신규 종사 후 3년마다 1회 → 改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1회, 그 후 3년마다 1회

심사결과 △위험물 사고의 주요 원인, △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요건 취득 후 당해 업무 종사까지의 기간, △당해 규정의 악용 소지 등을 고려 시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 시기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 사례의 교육기준과 비교 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강화 1)

심사내용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강화

- 가스관선택밸브 플랜지의 구조 및 재료 기준 강화하여 △ (구조) 플랜지의 치수 및 허용공차는 “KS B 1426(강제 관 플랜지 통칙)”을 준용, △ (재료) “KS B 1426”의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되 일체형은 제외
- 가스관선택밸브의 내구성 시험기준 강화하여 △(강도시험) 수압시험 유지시간 “1분”으로 강화△ (내압시험) 최고사용압력 기준 “現 1.5배 → 改 5/3배”로 강화하고, 시험 후 플랜지 연결나사 등의 손상이 없을 것

심사결과 당해 규제는 가스관선택밸브 플랜지의 규격 표준화 및 내구성 시험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기술영향평가 등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형식 및 기술기준은 타법의 기준 등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위험물안전관리법 (강화 2)

심사내용 제조소등의 중지신고 강화

- 제조소등의 ‘용도중지(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중지)’ 신고절차 및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취소·사용정지’ 사유 신설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기점검 및 점기검사 강화

- 제조소등의 소유자, 점유자 등 관계인은 제조소등을 정기점검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 제출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강화

-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소방시설(소화기구·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심사결과 당해 규제는 국민의 안전·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제정도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위험물안전관리법 (신설 1)

심사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확인 및 평가** 신설

-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제출(시·도지사에게)하여야 하는바, 예방규정의 적정성 및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소방청장에게 평가받도록 규제 신설

심사결과 현행법상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관한 점검 조항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유사 입법례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의 정기적인 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의무화** 신설

- 소방산업 관련,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소방사업자의 범위(피보험자)와 가입대상 신설로, △(피보험자 범위)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가입대상)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위 피보험자에게 발주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심사결과 소방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산업으로, 소방시설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와 소방사업자의 지원·육성을 위해 의무 보험(공제)의 필요성이 높음. 해외사례에서도 대부분 소방산업과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보험가입 대상이 국가 등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사업자에 한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신종업종 추가 지정** 신설

-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를 다중이용업소법 상 '다중이용업'으로 분류하고, 안전관리 기준 적용

심사결과 신규 분류되는 업종은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주로 목재패널로 구성된 다수의 구획된 방 또는 설치물 대부분이 가연성 물질로 구성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어 다중이용업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인정됨. 본 규제는 신규 업소에 한해 적용(공포 후 6개월 시행)되고 대부분 특정소방대상물에 입점하고 있어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에 대해서는 설치 부담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대상 신규지정** 신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대상으로 신규 다중이용업(방탈출, 키즈카페, 만화카페) 추가 지정

심사결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검·확인이 필요함. 현행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고시원, 전화방업, 수면방 등에 비추어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발코니 및 부속실의 형식기준 구체화** 강화

- 4층 이하의 다중이용영업장에 설치되어야 할 발코니 또는 부속실의 기준에 바닥면적 기준(1.12㎡ 이상)을 추가함

심사결과 현행 규격으로는 발코니의 바닥면적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유효한 공간 확보를 위한 면적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규정대로 발코니를 설치한다면 '면적 1.12㎡ 이상'은 자연히 준수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마련 신설

- 기존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구 분	주요 개정 내용
소화기 설치	•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 등에 5개 이상 설치
자동소화장치 설치	• 제어반 또는 분전반 및 케이블접속부마다 자동소화장치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 경계구역 없이 발화지점(1m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
연소방지재 설치	• 일정 성능이상의 연소방지재 설치
방화벽 설치	• 분기구와 역사·국사 등의 연결부위에 설치 •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자동폐쇄장치 부착

심사결과 지하구는 시설물의 특성상 화재 발생시 접근이 어려워 초기 화재 진압이 어렵고 순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므로 화재 예방의 필요성이 크며, 유사기준 등과 비교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국민권익위원회

집필자 이지영 사무관
Tel. 044-200-2445, jjyy00@opm.go.kr

가.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0년도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0.03.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예비심사 (2020.06.1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1)
(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0.10.30)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2)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0.11.13)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2)
계	-	원안의결 9	신설 4, 강화 5 (비중요 9)

나. 2020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이첩·송부받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기간 규정**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가능토록 규정

심사결과 신고 처리 결과에 따른 공직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조사기간 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규제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유사입법례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비교시 규제수준 및 정도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등의 가족에 대한 채용 제한** 신설

-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 신설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신설

-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또는 그 가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 신설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20대 국회 폐기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19년도 심사시 원안의결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旣 심의한 내용과 동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보호 의무 규정** 신설

-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 또는 지시 행위 금지, 위반시 경위 확인 및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심사결과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노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분보호를 위한 의무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고자 등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공익신고자 제도에서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이 매우 중요하고, 공익 달성 등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공개 경위조사 강화** 강화

-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공개 경위 확인시 신고자,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해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협조 의무 규정

심사결과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신고자 신분노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확한 경위 확인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관련자들의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협조 의무 등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미국 등 해외사례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공익신고자 제도에서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이 매우 중요하고, 공익 달성 등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강화

-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직무에 △견습생 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제12호), △형의 집행, 수용자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 추가

심사결과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旣 규정되어있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부정청탁 근절 및 국민 신뢰 제고 등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고자보호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준용(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심사결과 청탁금지법의 신고자 보호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간접제재수단으로 이행강제금 규정을 준용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분보장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신고자 보호 강화 등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크며,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신고자의 신분공개 경위조사 대상 확대** 신설

- 부패신고자 등의 신분공개 경위 확인시 자료 제출·의견 진술 대상을 기존 관계기관에서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확대

심사결과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신고자 신분노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위 확인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 조사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협조 의무 등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미국 등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부패신고자 제도에서 신고자 등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고, 공익 달성 등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강화** 강화

- △(취업제한 대상자)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 해당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이거나 경과된 자 포함
  △(취업제한 기관)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추가 등
  △퇴직일 또는 벌금형 판결 등이 확정된 날등으로부터 5년 동안 제한

심사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및 공직자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피규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나, 본 개정안은 현행 규정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화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12절 규제영향분석

집필자 권회근 사무관
Tel. 044-200-2913, beatitud0@korea.kr

1 제도 개요

가. 의의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생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이는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 시 복수의 규제 대안 및 비규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모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나. 목표

(1)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제고

규제의 내용에 따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므로, 다양한 규제 및 비규제대안의 광범위한 비교·검토를 통해 부작용과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품질 높은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

(2)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사전예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부담만 양산하여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과적인 규제의 사전 방지

(3) 규제자의 민주적·합리적 역량 강화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비규제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대안을 설계하는 규제자의 역량 강화

(4)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좋은 규제의 제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롯한 각종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소통과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제공

다.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제영향분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법 제7조1항)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규정(법 제7조2항)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관련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4항, 시행령 제6조4항)

2 작성항목 및 요소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개요,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실효성,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순으로 구성되며, 구성요소별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에는 △문제 정의의 정확성 △정부개입의 정당성 △규제목표의 명확성 △규제대안의 다양성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규제대안 선택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와 협의 △집행의 현실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세부항목
규제개요	규제사무명, 규제조문, 위임법령, 입법예고,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규제목표, 규제내용,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비용편익분석, 영향평가여부, 일몰설명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비용관리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규제의 목표,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Ⅱ.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일몰 및 우선허용·사후규제 등,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비용·편익분석
Ⅲ.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규제의 집행 가능성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경과, 향후 평가계획, 종합결론

3 작성대상 및 절차

가. 작성 대상 및 유형

모든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대상이 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1항)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쟁점사항 등에 따라 분석서 작성유형을 표준형과 간이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의무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관련 규제는 간이형으로 작성하고 그 이외는 표준형으로 작성

나. 작성 절차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서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은 규제 등록단위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2개 이상의 규제가 하나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연계 시행되는 경우 분석 내용을 통합하여 1개의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이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2항). 다만,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과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에 대하여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 강화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수립·통보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4항 및 5항)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법 제8조의 2),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여 차등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19년 7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정할 때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법 제5조의2)

(2)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및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법 제7조2항, 시행령 제6조3항)

아울러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술규제에 대한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대한 국제기준 적합성 등 규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경쟁영향평가(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영향평가(중소벤처기업부), 기술영향평가(산업통상자원부)

(3)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7조3항)

* 규제조정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및 기술·중기·경쟁 영향평가 결과, 이해관계자·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심의

(4) 예비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심사를 거쳐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예비심사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조1항) 이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13조2항)

(5)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 여부*를 결정하고,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 8개 요건에 해당될 경우(령 제8조의2)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가.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의 신설·강화규제 심사 건에 대해 경쟁영향, 중소기업영향, 기술영향 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작업단에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심사시 작업단의 의견을 검토·반영한다.

각 작업단은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평가의뢰(국무조정실→작업단), ②의견수렴 및 평가(작업단), ③검토의견 제출(작업단→국무조정실), ④규제심사(국무조정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2013.4.15.)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공정위) :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중기부) :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기술규제개혁작업단(산업부) :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나. 경쟁영향평가

(1) 개념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나 여러 규제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평가하며,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추진경과

OECD경쟁위원회는 규제당국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스스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며 2007년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kit)을 제작하여 각 국가에 배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위가 담당토록 제도화하였고 2010년 10월 OECD 경쟁위원회(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실제 운용사례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다.

(3) 목적

제안된 규제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규제안의 도입단계에서부터 경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신설·강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상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2020년도 경쟁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 815개 법령의 신설·강화규제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총 21건에 대해서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하였다. 작업단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한 21건 중 17건이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었고, 3건이 심사 진행중이다.

(6) 2020년도 경쟁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상품심사 기준	특약 가입비율이 낮다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특약의 부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쟁능력과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해당 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2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의 벌점부과 대상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시 책임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표사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이 아닌 사유로 벌점을 받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주택 선분양 제한을 받는 등의 불이익 가능성이 있어 해당 사업자의 경쟁능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출자비율에 따라 벌점 부과)를 유지할 필요
3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시설·장비기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사무실과 실험실을 별도로 갖추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사무실 면적까지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의 제출 자료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할 자료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하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이를 토대로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간 자유로운 측정대행 수수료 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	① 이용자위원회에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위원회의 권한에서 이용요금 부분(이용약관에 규정된 이용요금표 등 가격에 관한 사항 포함)은 제외할 필요 ② 이용약관 신고요건 중 요금 및 이용 조건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의 경우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이용약관(이용요금 포함) 신고제하에서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결정 등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약관 신고요건에서 해당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다. 중소기업영향평가

(1) 개념

중소기업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추진경과

2008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6차 회의를 통해 8개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13년 6월에는 중기영향분석 시 중소기업의 규제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다.

특히, 2018년 4월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등화를 검토하고 차등화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요청할 때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법 제8조의2. 2018.4.17개정 2018.10.17 시행)

(3) 목적

각 부처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및 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상

중소기업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법령(고시 등 포함) 중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피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비영리 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부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5) 2020년도 중소기업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에 807개 법령의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86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55건이 반영(반영률 64.0%)되었다.

(6) 2020년도 중소기업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1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계획 조정안 및 수선·변경·증설,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보고 방법	국가산업단지 등 국가에 의해 단지 내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은 규제 적용의 예외 필요
2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추가	기존의 낚시어선업자 규제 적용 배제, '선박 승무 경력 1년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의 출입항 기록 120일 이상'으로 경력요건 완화, 시행 시기 유예·조정 등 대안 검토 필요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제출대상 확대	수탁공장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전공정을 위탁하고 있는 위탁제조사에 GMP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중복 규제로 판단, 또한 의약품 허가를 위한 허가기간 및 추가생산 비용 부담 우려
4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 의무 구축	규제 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측정기 배치여부를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5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감리원 추가 배치 규정	편익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 행정처분 대상 건설회사의 규모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수교육 실시로 전환하거나, 중소기업을 배려한 차등화 적용, 시행시기 연장 등 대안 마련이 필요
6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준수사항 추가	도입 취지에 위배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단서조항(제1호 : 중개의 대상이 되는 데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 제2호 : 중개대상물이 거래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을 신설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7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업 허가 요건 등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허가단위별 상시 인력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8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대체자료 기재 승인에 관한 기준	화학물질안전정보(화평법)를 통해 비공개 승인된 물질에 대해 영업비밀 입증 자료 제출을 면제(동 고시에 반영)하거나, 비공개 승인제도 통합운영 등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산안법 시행('21.1.16) 전에 마련할 필요

라. 기술영향평가

(1) 개념

기술영향평가*는 정부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표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과도한 시험·검사·인증은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며, 유사한 시험검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시험·검사 해야하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작용하게 되므로 기술영향평가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이나 적합성 평가(시험·검사·인증 등)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2) 추진경과

'12.7월 국가기술표준원은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술기준,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시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도록「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을 개정하고, 기술규제영향평가와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를 위해「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실 훈령 제696호)을 개정하여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에 신설하였다.('12.12월)

명확한 업무처리지침의 설정을 위해 '14.1월 '기술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정하였고, '15.8월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된 '신설인증 규제심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모든 신설·강화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15년부터 기술규제 기업애로개선지원단(舊,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기술규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16년에는 10개(총리주재 현장점검회의 보고), '17년 16개(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18년 20개(규제개혁위원회 보고), '19년 15개(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20년 41개(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개선을 추진하여 기술규제 합리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18.12월에는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검토" 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국가표준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19년부터 범부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19년 28개(개선 21개, 폐지 7개 / 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20년 27개(개선 20개, 통합 3개, 폐지 4개 / 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정비대상 제도를 발굴 하는 등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대상

기술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2020년도 기술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20개 부처(청)의 180개 법령의 기술영향평가를 요청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검토완료·회신하였고, 총 75건(19.6%)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5) 2020년도 기술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조정의견
1	국토교통부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의 착공전 확인·사용전 검사의 대상공사	타법에서 제조허가 및 완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계설비에 대한 제외 문구를 명시하거나 타법에 따른 제조허가 및 완성검사 중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술기준과 중복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결과의 상호인정 조항 신설 검토 필요
2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기·절차 및 산정 방법	초기연도의 할당량 산정 시 적용되는 '초기 할당계수'는 2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이에 따라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이 초기할당 계수를 많이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최초로 총량을 할당하는 사업장의 초기 할당계수의 적용 시 2가지 방법에 적용받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3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동물용 의약품 중 기준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강화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장비의 확보와 보급이 필요하며 축수산업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유예기간 1년으로는 촉박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필요
4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후지하안전 영향조사 대상사업(소규모) 추가	소규모 사업의 경우 동 개정안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단계에서 조사 시기를 명기하여야 하나,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 [별표 7]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방법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항목을 추가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를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조정의견
5	환경부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검사	열효율 산정방법을 별도로 설정하기 보다 '열효율의 산정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따른다'로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열효율 계산식을 수정할 경우, 피규제자는 효율 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열효율 측정을 하고, 별도로 동 인증기준에 따라 측정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6	해양수산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수입선박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수입되는 선박의 디젤기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적용시기를 내항선에 한하여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어, 외항선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적용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제안함
7	국토교통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기계시주차장의 구조물 설치기준 추가	동 개정안 제13조제8항에서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주행로에 보수자 및 점검자의 안전을 위해 매 2단 마다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망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안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필요
8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두 개 이상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검사기관의 경우 사무실 등을 중복해서 갖출 필요가 없으므로, '시설기준을 중복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별표 10의2, 1. 공통기준, 나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도 타 기관에 시험, 검사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시험검사 대행기관의 자격 확대 필요(별표 10의2, 1. 공통기준, 사목)

5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도입

가. 도입배경

사회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 규제로 인한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부작용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규제영향분석은 피규제자 집단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그 밖의 영향집단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규제 집단에 대한 규제영향 이외에 집단간 영향이나 일반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반영하였다.

나. 개념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피규제 집단(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은 물론 피규제자 이외 사회전체(피규제자 이외 집단 + 정부)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피규제자 이외 사회전체에 나타는 규제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래 표에서와 같이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과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비용·편익분석 작성 구분

<table>
<tr><th colspan="2">영향집단</th><th>비용</th><th>편익</th><th>순비용</th></tr>
<tr><td rowspan="2">피규제 기업·
소상공인</td><td>직접</td><td colspan="3">비용 관리제</td></tr>
<tr><td>간접</td><td colspan="3" rowspan="2">피규제자 비용·편익</td></tr>
<tr><td colspan="2">피규제 일반국민</td></tr>
<tr><td colspan="2">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td><td colspan="3" rowspan="2">피규제자 이외 비용·편익
(사회적 비용편익)</td></tr>
<tr><td colspan="2">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td></tr>
<tr><td colspan="2">정부</td><td colspan="3">행정비용</td></tr>
<tr><td colspan="2">총합계</td><td></td><td></td><td></td></tr>
</table>

다. 주요내용

- (분석원칙)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에게 나타나는 비용절감, 영업이익 등 2차적 영향에 대하여는 정량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전체·일반국민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생명·안전·환경 등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정량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정성분석을 실시한다.
- (분석방법)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적 영향집단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규제의 분야별 또는 수단별 유형을 구분한 후 비용·편익에 대한 분야별·수단별 색인표*에 유사한 분석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게시판에 등록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사례'를 찾아 참고하여 작성한다.

  *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국내외 사례를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등 규제분야와 진입, 가격, 품질, 거래 등 규제수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비용과 편익 항목별로 색인표를 구성(사례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분석서게시판>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사례' 게시)

구 분		유형 및 항목내용
비용/편익	비용 (9)	행정부담, 노동, 교육훈련, 외부서비스, 설비, 원재료, 운영, 지연, 기타
	편익 (18)	시장안정성제고, 산업육성, 경쟁촉진, 공정거래, 비용절감, 매출증가, 환경오염예방, 자원재활용, 안전사고예방, 자연재해예방, 산업재해예방, 질병예방·건강증진, 사회적 약자보호, 일자리 확대, 비용 절감, 소득(매출)증가
분야/부분	분야 (10)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노동, 교육, 금융, 농림·어업, 건설·에너지, 산업일반
	부문 (10)	자격, 입지, 가격, 생산관리, 경영관리, 교육훈련, 기업간 거래, 기업·소비자간 거래, 행정, 지배구조

- (심사검증) 각 부처는 규제심사관 사전 협의시 사회적 비용·편익(피규제자 이외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정량적 분석 가능성 등을 협의하여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에 반영하고 규제연구센터, 규제 심사관은 사회적 영향분석의 색인 사례를 활용하여 심사·검증시 확인하여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량 또는 정성분석이 가능한데도 누락된 경우, 분석을 보완하여 재심사·검증한다.

05

규제개혁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국민의 생각이 모여

규제 개혁을 이루다

제1절 2020년 규제개혁 평가 806
제2절 2021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811

05

규제개혁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20년 규제개혁 평가

집필자 윤나라 주무관
Tel. 044-200-2452, nemo1934@korea.kr

1 규제혁신 평가 개요

2020년 규제혁신 평가는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및 민생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규제혁신 핵심분야인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도 등 주요과제를 평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등을 포함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개선과 규제개혁 만족도도 평가의 주요 항목에 포함되었다. 또한, 각 기관 및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였다.

규제혁신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별 규제정비 종합계획 상 정비과제수, 부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개(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를 제외한 3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33개 기관을 장관급 기관(20개)과 차관급 기관(13개)로 구분하였으며,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과제 성격·부처 특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4개 분과(경제1·2, 사회1·2)로 나누어 1년간의 규제혁신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항목은 크게 규제혁신성과 60%, 규제품질관리 20%,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20%로

구성하였다. 규제혁신성과 항목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등 과제발굴 실적, 규제 샌드박스 운영실적 등 신산업 혁신성과와 민생분야 규제정비 실적 포함되었다. 규제심사 항목에는 절차 준수도 및 일몰규제 정비, 규제비용관리제 등이 포함되었고, 규제혁신 체감도 항목에는 규제개혁 만족도와 국민소통 실적이 포함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규제혁신 노력이 가점으로 반영되었다.

2008년부터 규제개혁 추진에 현장·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활용하고 있다.

2 2020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2020년 규제혁신의 중점과제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을 통해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주요 성과로는 신산업 분야의 속도감 있는 발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입법방식 유연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를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 기본계획 최초 수립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한 점을 들 수 있다.

2020년 규제혁신의 또다른 주요과제는 국민불편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주민과 지역기업의 건의사항을 개선하였으며,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애로 300여건을 해소하였다. 또한, 공유경제 활용,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19년도 마련한 적극행정 제도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집중하였다. 적극행정은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선현장의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현장대화, 목요대화,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개최 등 현장·학계·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으로 인해 체감도조사 결과가 작년대비 상승하였으나, 국민과 기업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서 규제혁신 성과창출,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개선 등을 통한 보다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005년 이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규제개혁의 현장 체감도를 파악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하는데 지표로 삼아왔다. 기관별로 정책수요자·전문가·내부고객(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올해도 규제개혁 평가 대상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중순부터 1달여 동안 진행되었다.

만족도 조사결과, 33개 기관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71.6점으로 산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3.7점 상승하였다. 기관별로 구분하여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79.9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양수산부부(79.1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75.3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환경부(58.8점), 문화체육관광부(61.9점) 등의 순이었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경찰청의 만족도가 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세청(88.0점), 소방청(86.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문화재청(67.6점), 식품의약안전처(67.0점) 등의 순이었다.

종합만족도는 2016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가 2019년 다시 하락하였으나, 2020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전문가의 만족도 점수는 79.6점으로 일반국민 만족도(69.4)와 내부고객 만족도(68.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다. 마찬가지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장관급 기관의 경우 2019년에 소폭 하락이 있었으나,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차관급 기관의 경우 2018년 이후 만족도가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3 부처별 평가결과

2020년 부처별 평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공통과제를 준수하게 이행한 것은 물론이고 중점을 두고 추진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등을 열심히 추진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신산업 관련 기반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코로나19 적극·신속 대응(복지부), 국민생활불편 해소(농림축산식품부)를 추진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적극·신속 대응(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국민생활 밀접분야 규제혁신(경찰청)을 추진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처 공통과제에 대한 이행도 등이 저조하고, 규제개혁 건의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기관이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으로는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차관급 기관으로는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흡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4 분야별 평가 결과

가. 경제 분야 규제혁신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 개별 규제개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올해 209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47건은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였다.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10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혁신기업이 활발히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래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3개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4개 신산업 유망분야(친환경차, VR·AR, 로봇, AI)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기업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131개 공공기관 규정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206건을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이와 같이 제도를 통한 규제체계 혁신과 더불어, 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여 소통을 통한 과제개선을 병행하였다. 수소경제, 드론 등 핵심테마 중심으로 현장애로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총 66건을 해소하고, 주요 정제단체 및 산업 전 분야 협·단체 대상으로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여 총 17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실증 효과가 확인된 사업을 중심으로 법령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규제혁신의 새로운 체계가 신산업·국정 성과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국민불편·민생부담 분야 규제혁신

국민 편익 증진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려고 노력하였다. 2월에는 지역개발 촉진 등 지자체 주민과 지역기업이 건의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였고, 8월에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2만여건을 종합정비하였다. 또한, 공유경제 활용 및 중소기업 인증 부담을 완화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절감을 촉진하였다.

한편,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불만 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접수하고 해결하고 있다.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현장대화, 목요대화,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온라인으로는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 300여건을 해소하였다.

민생불편에 대한 규제신문고, 지역건의 등 전방위적인 규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평소 규제애로 개선 요구가 빈발한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 공직 분야 규제혁신

규제혁신 제도의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장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적극행정은 2020년는 도입 2년차를 맞이하여 공직사회 전반으로 제도를 확산하였으며, 방역 현장에 창의적 해법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하여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가를 입증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부 부처 공무원이 왜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지를 입증토록 규제혁신의 추진방식을 전환하였다. 2019년에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의 체계 구축과 제도의 정착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0년에는 제도의 확산과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하여 추진하였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행정규칙·건의과제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경제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여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적극행정 성과를 코로나19 방역에서 국정과제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2절 2021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집필자 / 석선영 서기관
Tel. 044-200-2397, ssy1214@korea.go.kr

1 기본방향

'21년은 규제샌드박스 등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및 기업부담·국민불편 핵심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규제 정비와 더불어 신설·강화·존치 규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규제혁신이 경제반등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021 규제혁신 추진방향

2 세부 추진방향

가.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규제샌드박스, 적극행정 등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을 대상으로 규제를 집중 정비하는 등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 신청 외에 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 2050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핵심정책에 적극행정을 집중 적용하여 성과를 창출한다. 또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하고, 과제발굴-과제검토 등 규제개선 전 단계에서 민간과 긴밀히 협력한다.

나.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신산업 5대 분야(DNA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다.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 가상·증강현실 규제를 개선하고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그린뉴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기술·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한다.

다.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분야(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환경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뉴노멀·고령화 시대에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의 이동편의와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진흥·행정·제재·인증·조달 등 공공관리와 행정절차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라.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는 등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규제심사·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규제는 중요규제에 포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규제를 사후관리하여 국민생활·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전반으로 일몰 설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록

국민의 생각이 모여

규제 개혁을 이루다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816
2. 규제개혁 관련 법령 820

부록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가. 본 위원회 개최 일지

집필자 / 이정호 사무관
Tel. 044-200-2414, turtleb@korea.kr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444회 ('20.1.7)	국무조정실	2019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보고					
제445회 ('20.1.10)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46회 ('20.1.23)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2019년 활동결과	보고					
제447회 ('20.2.10)	국무조정실	2020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보고					
제448회 ('20.2.14)	국무조정실	2019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보고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49회 ('20.2.28)	국무조정실	2019년 하반기 규제신문고 운영성과	보고					
	국무조정실	2019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요 활동실적	보고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0	1	0	2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0	0	0	1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450회 ('20.3.19)	농림축산식품부	'19년 농림부 재검토 일몰규제 재심사안	의결	1	0	0	0	1
제451회 ('20.3.30)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0	1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1	0	0	2
제452회 ('20.4.1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의결	0	0	0	1	1
제453회 ('20.4.24)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2	0	0	0	2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54회 ('20.5.8)	국무조정실	과제발굴 경제1소위 활동 결과	보고					
	국무조정실	과제발굴 경제2소위 활동 결과	보고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1	0	2
	교육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의결	0	0	1	0	1
제455회 ('20.5.22)	국무조정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보고					
	국무조정실	2020년 일몰규제 심사계획	보고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456회 ('20.6.12)	경찰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57회 ('20.6.26)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4	0	4
제458회 ('20.7.10)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	의결	1	0	0	0	1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59회 ('20.7.31)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0	1	1
	금융위원회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0	1	1	0	2
제460회 ('20.8.14)	국무조정실	2020년 상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보고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0	0	0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1	0	0	0	1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461회 ('20.9.11)	국무조정실	2020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혁신추진단 주요 활동실적	보고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62회 ('20.9.25)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0	0	1	0	1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463회 ('20.10.23)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0	1	0	3
	국무조정실	교육부 등 2020년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0	0	0	1
제464회 ('20.11.13)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1	0	2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0	1
제465회 ('20.11.27)	국무조정실	2020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보고					
	국무조정실	신산업 현장애로 정비결과	보고					
	국무조정실	제1차 신산업 규제혁신 기본계획	의결	1	0	0	0	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0	1	0	2
	법무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0	0	0	2
제466회 ('20.12.18)	국가기술표준원	2020년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의결	1	0	0	0	1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0	1	0	2
제466회 ('20.12.29)	국무조정실	2021년 기존규제 정비지침	보고					
계	안건수 : 51 (의결안건 36건, 보고안건 15건)			24	7	16	2	49

나.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집필자 / 장이나 사무관
Tel. 044-200-2398, dlskjulia@opm.go.kr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제526회 ('20.4.10)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의결	1			
제527회 ('20.6.28)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의결			1	
제525회 ('19.6.28)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의결		1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의결		1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의결		1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의결		1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의결		1		
안건수 : 15				**1**	**5**	**1**	**0**

다.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집필자 / 신용현 사무관
Tel. 044-200-2443, trustyonghyun@opm.go.kr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개선	철회
제555회 ('20.2.2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1		
제556회 ('20.11.13)	교육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의결	1		1
안건수 : 3				**2**	**0**	**1**

2 규제개혁 관련 법령

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1. 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제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 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구술·전화·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이하 "기존규제 정비요청"이라 한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재답변한 때에는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재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현지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①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운영계획에는 조사의 종류·조사방법·공동조사 실시계획·중복조사 방지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조사대상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방법이나 그 밖에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조사방법

제9조(출석·진술 요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출석요구의 취지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4. 제출자료
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시료채취) ①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치한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신청인의 성명·조사일시·신청이유 등이 기재된 공동조사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의 장에게 공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실시

제16조(개별조사계획의 수립)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의 시급성으로 행정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목적·종류·대상·방법 및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①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 연기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래의 조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거부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기초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제출) ①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조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교체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①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제25조(자율신고제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자율관리체제의 구축)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이하 “자율관리체제”라 한다)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자가 법령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법령등의 준수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①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조사의 결과 및 공동조사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대상 행정기관과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라.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①「행정조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행정기관

②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의 목적
3. 조사대상자의 범위
4. 조사의 기간 및 시기

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4조(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①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거부결정서에 그 이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본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신청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수임인(受任人)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출석요구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조사대상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일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보상)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에 조사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조사대상자는 손실의 원인이 된 시료채취가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2.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청구인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영치조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치조서(領置調書)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공동조사 실시 분야) ①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건설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2. 유해·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3. 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 「식품위생법」 제1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

②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조사원의 구성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둘 이상의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간에 서로 협의하여 조사를 주관할 행정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조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주관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조사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원의 구성
3.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4. 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제11조(조사의 연기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장부 및 관련 서류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領置)된 경우
3. 조사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결정사항을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충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①조사대상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
2. 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
3.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4조(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확인·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인·점검 실시계획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㊵ 생략

제33조 생략

마.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6. 7. 19.] [국무총리훈령 제669호, 2016. 7.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비용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을 제외한 비용(이하 "규제순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규제(이하 "기존규제"라 한다)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2.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5.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6.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규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기존규제의 정비 추진 현황 등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의 우선 적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이하 "경제규제"라 한다)를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등에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단순한 조문형식의 변경이 아니라 국제기준 및 외국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첨단기술·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의 진입제한이나 경영활동에 관한 기존규제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적극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일몰제)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기한 경과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소기업 규제 경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규제 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비용관리 대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예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고시 등(이하 "고시 등"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시 등이 상위 법령 또는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고시 등이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한 사항인지 여부
3. 고시 등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
4. 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이 전문적·기술적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고시 등에 위임이 불가피한지 여부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관 규제의 통합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정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와 의견을 제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7. 8. 23.] [국무조정실훈령 제111호, 2017. 8. 2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시행령 제20조 각 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법 제26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중요규제등의 결정) ① 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한다.

1. 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경우
2. 기타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9조(분과위원회에 안건위임)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안건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정도
2.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필요성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 회의개요
2. 당해 안건의 심의사항
3. 발언자 실명을 제외한 주요 발언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회의록은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밀을 요하거나 사생활 보호 등 특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분과위원회
2. 행정사회분과위원회
3. 삭제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12조(소관) ① 경제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②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5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수행한다.

제16조(규제조정실의 직무) 규제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5. 삭제

제17조(심의안건 설명) 규제조정실 실장과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자문기구·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8조(자문기구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자문기구를 둔다.

1. 비용분석위원회
2.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3. 기술규제위원회

② 자문기구는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기구는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분석, 신산업 및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한다.

④ 자문기구는 논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기구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20조(공정위에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21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적정성 검증
2. 비용편익분석기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제·개정 지원
4. 규제개혁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
5. 기타 위원회 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 칙

제23조(위임) ①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규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기술규제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4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8. 16.] [국무총리훈령 제615호, 2013. 8. 16.,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과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업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 및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 관련 국민 건의사항의 접수에 관한 사항
4.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 개선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단에는 공동단장 3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공동단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각각 겸임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④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각자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규제개혁위원회에의 보고) 추진단은 규제 개선의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의 개최) 추진단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2. 11.] [국무총리훈령 제643호, 2015. 2. 11.,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선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규제개선건의"란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규제정보시스템(규제정보의 제공, 기존규제의 폐지·개선의 요청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접수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제3조(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 규제개선건의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규제개혁신문고를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한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규제개선건의의 처리) ①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규제개선건

의에 대한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을 정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건의 처리의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으로 지정받은 행정기관은 답변 기한 내에 규제개선건의의 수용 여부를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재답변할 것을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2항에 따른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제3항에 따른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규제개선건의에 대한 각 처리단계별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답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다만, 1회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소명: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3.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의 재답변: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

⑥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규제개선건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의 개최)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선 사항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규제개혁위원회에의 보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선건의의 처리 실적,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상황, 만족도 평가 및 현장점검 실시 결과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단의 운영)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2. 29.] [국무총리훈령 제77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의 면제·유예 등에 관한 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제4조(업무수행방법) 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를 위하여 각 작업단에 소관 분야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작업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규제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각 작업단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방안 검토 및 현장 점검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각 작업단은 국무조정실에 반기별로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요청) 각 작업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작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업단의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적용례)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발령 후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 규제개혁백서

발 행 일 : 2021. 3.
발 행 처 : 규제개혁위원회
편집·인쇄 :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